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163-10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I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163-10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I)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보 건 복 지 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귀 부의 위탁사업에 의거하여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부랑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차 홍 봉

연구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진

·책임연구원 정무성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총괄위원장)

·수석연구원 유수현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신요양시설 분과위원장)

·수석연구원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복지시설 분과위원장)

·수석연구원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랑인복지시설 분과위원장)

·수석연구원 손광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관 분과위원장)

·연구원 김수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사무국장)

·연구원 김은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대리)

·연구원 강진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연구원)

·연구원 나진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연구원)

·연구원 이승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연구원)

·연구원 정아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연구원)

머 리 말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개별 사회복지시설들이 객관적으로 타 시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제5기(2011~2013) 평가가 시작되는 해로써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연구인력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을 설치하였다. 본 평가단에서는 학계전문가, 관계공무원,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총괄위원회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의 4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는 시설종별 평가지표의 수정·보완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평가지표설명회 및 현장평가위원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각 시설별 평가지표의 수정과 보완과정에서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포커스그룹회의와 인터넷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금번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평가과정에 사회복지현장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단순한 평가대상에서 탈피하여 평가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도 많은 사회복지 관계인들이 협조하여 주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먼저 책임연구원으로서 금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총괄하여 주신 송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각 평가대상시설의 분과를 맡아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주신 유수현 송실대학교 교수, 정원오 성공회

대학교 교수, 손광훈 경성대학교 교수, 최희철 강남대학교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서도 각 분과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보건복지부 관계공무원과 협회(연합회) 관계자, 여러 시설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포커스그룹 위원으로 기꺼이 참여하시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포커스그룹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평가를 수행해 주신 현장평가위원들과 현장평가위원의 위촉부터 평가, 관리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각 시·도청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면서 평가 준비와 평가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금번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실무자와 이·생활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협의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홍봉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총평

2011년 한 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가 화두였다. 우리 사회에 ‘복지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몰아 부치던 때도 없었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논쟁을 필두로 정치권에서는 가히 복지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복지담론이 거셌다. 덕분에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개념도 상당부분 사회 저변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복지의 담론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치적 수사에 끌려가는 복지는 선동적이고 비효율적인 체계가 되기 쉽다.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수급권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명 ‘도가니법’의 통과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더욱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적으로 위임받은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리적 환경, 재정, 전문인력의 역량과 기술 등이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존재의 정당성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확인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듬해인 1999년부터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3년을 단위로 주기를 정함에 따라 2011년은 제5기(2011년~2013년) 평가가 시작되는 첫

해이다. 제5기 평가는 지난 12년 동안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기존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된 체계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서비스최소기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표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선진화에 필요한 방향지표들을 추가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들의 서비스와 운영 선진화를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전국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4유형의 시설들이 평가 대상이었다. 2008년도와 비교하여 지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평가결과 점수는 모든 유형에 있어 3년전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크게 6개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하드웨어는 상당한 수준에 와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재정 및 조직 운영 영역도 3년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인적자원관리는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들이지만 시설 유형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들의 전문성과 처우가 아직은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프로그램과 서비스 분야이다. 이 영역 역시 3년 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과이다.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고루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데, 이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차기 평가에서는 실제로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지표내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기존에 생활시설에서는 점수가 낮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상당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시설들의 지역사회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1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만족도를 얻었다. 제5기 평가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평가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도 사회복지현장 및 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시설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현장 평가의 3인(교수, 지자체공무원, 현장전문가) 합의제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다각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시설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등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평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 평가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현장평가팀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시·도별 평가위원팀 수를 최소화하였다. 즉, 1개 시·도에 1개 현장평가팀을 구성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현장평가팀 간 편차로 인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다수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여러 팀이 평가를 하였으나 확인평가 등을 통해 관점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1년 평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제한된 일정으로 지속적인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네 분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들 및 연구원,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무난히 평가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평가를 주관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한 연구진들의 훌륭한 연구능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각 위원회와 현장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현장의

전문가들,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가장 중요한 주역은 현장 실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였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12월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총괄위원장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무성

목차

[제 1 장] 서론	1
I.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배경 및 경과	3
제 1 절 실시배경	3
제 2 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요	5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	5
2.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주요 특징	6
3.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9
4.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일정	23
제 3 절 평가대상시설 및 평가지표의 구조	24
1. 정신요양시설	24
2. 사회복지귀시설	30
3. 부랑인복지시설	31
4. 장애인복지관	38
[제 2 장] 정신요양시설	43
I. 전국 정신요양시설 현황	45
제 1 절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45
제 2 절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47
1. 생활인 현황	47
2. 종사자 현황	49
3. 자격증 소지현황	58

제 3 절 재정 현황	64
1. 전국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64
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65
제 4 절 시설 구조 및 규모	70
1. 전국 정신요양시설 구조 및 규모	70
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구조 및 규모	72
II.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 결과	89
제 1 절 평가결과 개요	89
1. 평가결과 종합	89
2.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	91
제 2 절 지역별 평가결과	94
1. 서울	94
2. 부산	96
3. 대구	98
4. 인천	100
5. 광주	102
6. 대전	105
7. 울산	107
8. 경기	108
9. 충북	111
10. 충남	113
11. 전북	115
12. 전남	117
13. 경북	119

14. 경남	121
15. 제주	123
제 3 절 영역별 평가결과	124
1. 시설 및 환경(A)	124
2. 재정 및 조직운영(B)	132
3. 인적자원관리(C)	141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54
5. 생활인의 권리(E)	166
6. 지역사회관계(F)	171
III. 정신요양시설 평가 결론 및 제언	178
제 1 절 정신요양시설의 특성 및 평가의 의의	178
제 2 절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과정과 결과 고찰	180
1.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분과위원회 · 포커스그룹 · 공청회 운영	180
2. 지표설명회, 현장평가위원 교육	185
3. 현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6
4. 확인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187
5. 평가결과의 통계적 의미	188
제 3 절 향후 정신요양시설 평가를 위한 정책 제언	191
1. 평가인증제의 도입	191
2. 서비스품질관리제의 도입	192
3. 평가요원(평가사)의 양성 필요	192
4. 평가지표의 조기 개발 및 고지	192
5. 평가결과의 활용	193

[제 3 장] 사회복지시설	195
I.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197
제 1 절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197
제 2 절 회원 및 종사자 현황	200
1. 회원 현황	200
2. 종사자 현황	202
3. 자격증 소지현황	210
제 3 절 세입세출 등 재정 현황	217
1. 재정 현황	217
제 4 절 시설 구조 및 규모	224
1. 전국 사회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224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228
II.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237
제 1 절 평가결과 개요	237
1. 평가결과 종합	237
2.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	243
제 2 절 지역별 평가결과	245
1. 서울	245
2. 부산	248
3. 대구	250
4. 인천	252
5. 광주	254
6. 대전	256

7. 울산	258
8. 경기	260
9. 충북	262
10. 충남	264
11. 전북	266
12. 전남	268
13. 경북	270
14. 경남	272
15. 제주	274
제 3 절 유형별 평가결과	276
1. 사회복지 이용시설	276
2. 사회복지 입소시설	279
3. 사회복지 주거시설	281
4. 사회복지 병행시설	284
제 4 절 사회복지 영역별 평가결과	286
1. 시설 및 환경(A)	286
2. 재정 및 조직운영(B)	293
3. 인적자원관리(C)	305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17
5. 회원의 권리(E)	327
6. 지역사회관계(F)	331
III.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론 및 제언	339
제 1 절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배경 및 의의	339
제 2 절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	341

제 3 절 지표에 대한 공청회, 사전평가, 지표 설명회	343
제 4 절 현장평가위원 교육과 현장평가시스템	344
제 5 절 평가결과의 통계적 의미	346
1. 총점	346
2. 영역별 점수	346
3. 등급별 기관의 점수	347
4. 지역별 등급 분포	348
5. 시설유형별 점수	348
6.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 평가결과	349
제 6 절 정책제언	350
1. 2008년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비교	350
2.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개선방향	352
[제 4 장]부랑인복지시설	355
I.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357
제 1 절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357
제 2 절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359
1. 생활인 현황	359
2. 종사자 현황	365
3. 자격증 소지현황	369
제 3 절 재정 현황	376
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376
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377

제 4 절 시설 구조 및 규모	381
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381
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383
II.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결과	398
제 1 절 평가결과 개요	398
1. 평가결과 종합	398
2.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	400
제 2 절 지역별 평가결과	403
1. 서울	403
2. 부산	405
3. 대구	407
4. 인천	409
5. 광주	410
6. 대전	412
7. 경기	413
8. 강원	415
9. 충북	417
10. 충남	419
11. 전북	421
12. 전남	423
13. 경북	425
14. 경남	427
15. 제주	430
제 3 절 영역별 평가결과	432

1. 시설 및 환경(A)	432
2. 재정 및 조직운영(B)	444
3. 인적자원관리(C)	451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60
5. 생활인의 권리(E)	467
6. 지역사회관계(F)	473
III.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결론 및 제언	479
제 1 절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의미와 평가지표의 방향	479
제 2 절 평가 과정	482
제 3 절 평가결과 요약 및 통계적 의미	486
제 4 절 정책 제언	489

표목차

[제 1 장] 서론

<표 I -1-1-1> 사회복지시설평가 경과	4
<표 I -2-3-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총괄위원회 위원명단	10
<표 I -2-3-2> 정신요양시설 분과위원회 명단	11
<표 I -2-3-3> 사회복지시설 분과위원회 명단	12
<표 I -2-3-4> 부랑인복지시설 분과위원회 명단	12
<표 I -2-3-5> 장애인복지관 분과위원회 명단	13
<표 I -2-3-6> 각 분과별 포커스그룹 명단	14
<표 I -2-3-7> 정신요양시설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17
<표 I -2-3-8> 사회복지시설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18
<표 I -2-3-9> 부랑인복지시설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19
<표 I -2-3-10> 장애인복지관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20
<표 I -3-1-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현황	24
<표 I -3-1-2>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26
<표 I -3-2-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30
<표 I -3-2-2>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31
<표 I -3-3-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34
<표 I -3-3-2> 부랑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35
<표 I -3-4-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현황	38
<표 I -3-4-2>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표	39

[제 2 장] 정신요양시설

<표 I -1-1-1>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분포	45
<표 I -1-1-2> 지역별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46
<표 I -2-1-1>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현황	47
<표 I -2-1-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현황	48

<표 I -2-2-1>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49
<표 I -2-2-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50
<표 I -2-3-1> 정신요양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58
<표 I -2-3-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59
<표 I -3-1-1>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65
<표 I -3-1-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66
<표 I -4-1-1> 전국 정신요양시설 규모	71
<표 I -4-2-1>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규모	74
<표 II -1-1-1>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89
<표 II -1-1-2>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90
<표 II -1-1-3>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91
<표 II -1-2-1> 2008년과 2011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92
<표 II -1-2-2> 2008년과 2011년 평가결과 비교	93
<표 II -2-1-1> 서울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94
<표 II -2-1-2> 서울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95
<표 II -2-2-1> 부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97
<표 II -2-2-2> 부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97
<표 II -2-3-1> 대구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99
<표 II -2-3-2> 대구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99
<표 II -2-4-1> 인천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01
<표 II -2-4-2> 인천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01
<표 II -2-5-1> 광주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03
<표 II -2-5-2> 광주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04
<표 II -2-6-1> 대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05
<표 II -2-6-2> 대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06
<표 II -2-7-1> 울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07
<표 II -2-8-1> 경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09
<표 II -2-8-2> 경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10
<표 II -2-9-1> 충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11

<표 II-2-9-2> 충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12
<표 II-2-10-1> 충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13
<표 II-2-10-2> 충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14
<표 II-2-11-1> 전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15
<표 II-2-11-2> 전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16
<표 II-2-12-1> 전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17
<표 II-2-12-2> 전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18
<표 II-2-13-1> 경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19
<표 II-2-13-2> 경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20
<표 II-2-14-1> 경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21
<표 II-2-14-2> 경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122
<표 II-2-15-1> 제주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123
<표 II-3-1-1>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125
<표 II-3-1-2> 시설의 외부환경	125
<표 II-3-1-3> 침실과 복도	126
<표 II-3-1-4>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127
<표 II-3-1-5> 상담실과 면회실	127
<표 II-3-1-6> 재활프로그램 공간	128
<표 II-3-1-7> 여가활동(체육/독서) 공간	128
<표 II-3-1-8>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129
<표 II-3-1-9>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130
<표 II-3-1-10> 세탁, 건조, 피복관리	130
<표 II-3-1-11> 시설환경의 안전요소	132
<표 II-3-2-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132
<표 II-3-2-2> 시설장의 전문성	133
<표 II-3-2-3> 원장의 시설 운영 방향	134
<표 II-3-2-4>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35
<표 II-3-2-5> 법인이사회 구성 및 활동	135
<표 II-3-2-6>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136

<표 II-3-2-7> 직원 1인당 급여 자부담액	137
<표 II-3-2-8>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138
<표 II-3-2-9> 후원금 비율	138
<표 II-3-2-10>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139
<표 II-3-2-11> 시설의 정보화 수준	140
<표 II-3-2-12>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140
<표 II-3-2-13> 비품관리	141
<표 II-3-3-1>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141
<표 II-3-3-2> 법정 직원 충원율	143
<표 II-3-3-3> 전체 직원 1인당 생활인수	144
<표 II-3-3-4>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145
<표 II-3-3-5> 직원의 이(퇴)직율	146
<표 II-3-3-6> 간호사의 배치수준	146
<표 II-3-3-7>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147
<표 II-3-3-8>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배치수준	148
<표 II-3-3-9>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149
<표 II-3-3-10> 교육활동비	150
<표 II-3-3-11>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151
<표 II-3-3-12> 직원대상 전문교육에 참여	151
<표 II-3-3-13> 직무교육	152
<표 II-3-3-14> 직원 복리후생제도	153
<표 II-3-3-15> 신입직원교육	153
<표 II-3-3-16> 직원인사평가	154
<표 II-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155
<표 II-3-4-2>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155
<표 II-3-4-3> 응급환자의 관리	156
<표 II-3-4-4> 생활인의 건강관리	157
<표 II-3-4-5> 진료 및 상담	157
<표 II-3-4-6> 원내의 작업요법	158

<표 II-3-4-7> 작업 수익금	159
<표 II-3-4-8> 원외 취업장	159
<표 II-3-4-9> 원외 취업장 프로그램	160
<표 II-3-4-10> 프로그램의 수행	160
<표 II-3-4-11> 전문 프로그램 수행인력	161
<표 II-3-4-12> 다양한 사회복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162
<표 II-3-4-13>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 여부	163
<표 II-3-4-14>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163
<표 II-3-4-15>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164
<표 II-3-4-16>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165
<표 II-3-4-17>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165
<표 II-3-5-1> 생활인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166
<표 II-3-5-2> 시설 외부출입	167
<표 II-3-5-3> 생활인 가족 및 친지개방	168
<표 II-3-5-4> 외출 또는 외박	168
<표 II-3-5-5>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169
<표 II-3-5-6>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170
<표 II-3-5-7> 인권보장 노력	170
<표 II-3-6-1>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171
<표 II-3-6-2> 자원봉사자의 인원과 시간	172
<표 II-3-6-3> 지역사회와의 교류	173
<표 II-3-6-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174
<표 II-3-6-5> 정신보건시설과 연계	174
<표 II-3-6-6> 시설홍보	175
<표 II-3-6-7> 외부자원개발	176
<표 II-3-6-8> 실습교육	177

[제 3 장] 사회복지시설

<표 I-1-1-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198
---------------------------------	-----

<표 I -1-1-2> 지역별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199
<표 I -2-1-1> 사회복지시설 회원 현황	200
<표 I -2-1-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회원 현황	201
<표 I -2-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203
<표 I -2-2-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206
<표 I -2-3-1>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210
<표 I -2-3-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213
<표 I -3-1-1> 사회복지시설 재정 현황	219
<표 I -3-1-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재정 현황	221
<표 I -4-1> 전국 사회복지시설 규모	225
<표 I -4-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규모	229
<표 II -1-1-1>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38
<표 II -1-1-2>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40
<표 II -1-1-3>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242
<표 II -1-2-1> 2008년과 2011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244
<표 II -1-2-2> 2008년과 2011년 평가결과 비교	245
<표 II -2-1-1> 서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46
<표 II -2-1-2> 서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47
<표 II -2-2-1> 부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48
<표 II -2-2-2> 부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49
<표 II -2-3-1> 대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51
<표 II -2-3-2> 대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51
<표 II -2-4-1> 인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53
<표 II -2-4-2> 인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53
<표 II -2-5-1> 광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55
<표 II -2-5-2> 광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55
<표 II -2-6-1> 대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57
<표 II -2-6-2> 대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57
<표 II -2-7-1> 울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59

<표 II-2-7-2> 울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59
<표 II-2-8-1> 경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61
<표 II-2-8-2> 경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61
<표 II-2-9-1> 충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63
<표 II-2-9-2> 충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63
<표 II-2-10-1> 충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65
<표 II-2-10-2> 충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65
<표 II-2-11-1> 전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67
<표 II-2-11-2> 전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67
<표 II-2-12-1> 전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69
<표 II-2-12-2> 전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69
<표 II-2-13-1> 경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71
<표 II-2-13-2> 경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71
<표 II-2-14-1> 경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73
<표 II-2-14-2> 경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73
<표 II-2-15-1> 제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75
<표 II-2-15-2> 제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275
<표 II-3-1-1> 사회복지 이용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77
<표 II-3-1-2> 사회복지 이용시설 평가결과 점수	278
<표 II-3-2-1> 사회복지 입소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79
<표 II-3-2-2> 사회복지 입소시설 평가결과 점수	280
<표 II-3-3-1> 사회복지 주거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82
<표 II-3-3-2> 사회복지 주거시설 평가결과 점수	283
<표 II-3-4-1> 사회복지 병행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284
<표 II-3-4-2> 사회복지 병행시설 평가결과 점수	285
<표 II-4-1-1>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286
<표 II-4-1-2> 공간의 크기	288
<표 II-4-1-3> 시설 내·외부 환경	289
<표 II-4-1-4>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노력	290

<표Ⅱ-4-1-5> 위생 안전에 대한 노력	290
<표Ⅱ-4-1-6> 시설의 정보화	292
<표Ⅱ-4-2-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293
<표Ⅱ-4-2-2> 시설장의 전문성	294
<표Ⅱ-4-2-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295
<표Ⅱ-4-2-4> 서류의 비치 및 관리	296
<표Ⅱ-4-2-5> 회계의 투명성	297
<표Ⅱ-4-2-6> 후원금(품)의 모금 및 관리	298
<표Ⅱ-4-2-7> 직원급여 자부담액	299
<표Ⅱ-4-2-8>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301
<표Ⅱ-4-2-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301
<표Ⅱ-4-2-10>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302
<표Ⅱ-4-2-11>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303
<표Ⅱ-4-3-1>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304
<표Ⅱ-4-3-2> 직원 충원율	307
<표Ⅱ-4-3-3>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309
<표Ⅱ-4-3-4> 직원 이(퇴)직률	310
<표Ⅱ-4-3-5> 외부교육 참여시간	312
<표Ⅱ-4-3-6> 교육활동비	313
<표Ⅱ-4-3-7> 직원채용의 공정성	314
<표Ⅱ-4-3-8> 직원(신입) 교육	315
<표Ⅱ-4-3-9> 슈퍼비전	316
<표Ⅱ-4-3-10> 직원 후생복지	317
<표Ⅱ-4-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318
<표Ⅱ-4-4-2> 프로그램의 질	319
<표Ⅱ-4-4-3>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320
<표Ⅱ-4-4-4> 주치의와의 협조	321
<표Ⅱ-4-4-5> 가족교육 및 모임	321
<표Ⅱ-4-4-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322

<표 II-4-4-7>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323
<표 II-4-4-8> 시설 이용(입소)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324
<표 II-4-4-9> 자치활동	325
<표 II-4-4-10> 사회복지 시설의 성과	326
<표 II-4-5-1> 회원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327
<표 II-4-5-2> 회원의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329
<표 II-4-5-3> 서비스 정보제공 및 회원의 자기결정권	330
<표 II-4-5-4> 인권보장노력	330
<표 II-4-6-1>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331
<표 II-4-6-2>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332
<표 II-4-6-3> 지역사회 홍보	334
<표 II-4-6-4> 자원봉사자의 관리	335
<표 II-4-6-5> 외부자원개발	336
<표 II-4-6-6>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338

[제 4 장] 부랑인복지시설

<표 I-1-1-1>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분포	357
<표 I-1-1-2> 지역별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358
<표 I-2-1-1>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 현황	359
<표 I-2-1-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 현황	360
<표 I-2-2-1>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365
<표 I-2-2-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367
<표 I-2-3-1> 부랑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370
<표 I-2-3-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371
<표 I-3-1-1>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377
<표 I-3-1-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378
<표 I-4-1-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규모	385
<표 I-4-2-1>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규모	382
<표 II-1-1-1>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398

<표 II-1-1-2>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399
<표 II-1-1-3>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340
<표 II-1-2-1> 2008년과 2011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401
<표 II-1-2-2> 2008년과 2011년 평가결과 비교	402
<표 II-2-1-1> 서울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03
<표 II-2-1-2> 서울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04
<표 II-2-2-1> 부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06
<표 II-2-2-2> 부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06
<표 II-2-3-1> 대구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08
<표 II-2-4-1> 인천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09
<표 II-2-5-1> 광주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11
<표 II-2-6-1> 대전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14
<표 II-2-7-1> 경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14
<표 II-2-7-2> 경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16
<표 II-2-8-1> 강원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16
<표 II-2-8-2> 강원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14
<표 II-2-9-1> 충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18
<표 II-2-9-2> 충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18
<표 II-2-10-1> 충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20
<표 II-2-11-1> 전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21
<표 II-2-11-2> 전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22
<표 II-2-12-1> 전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23
<표 II-2-12-2> 전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24
<표 II-2-13-1> 경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26
<표 II-2-13-2> 경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26
<표 II-2-14-1> 경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28
<표 II-2-14-2> 경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429
<표 II-1-15-1> 제주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430
<표 II-3-1-1>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432

<표 II-3-1-2> 시설의 접근성	433
<표 II-3-1-3>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	437
<표 II-3-1-4>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I	438
<표 II-3-1-5> 지원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439
<표 II-3-1-6> 식당과 조리실	440
<표 II-3-1-7>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	440
<표 II-3-1-8> 상담실	441
<표 II-3-1-9> 프로그램실	441
<표 II-3-1-10> 의무실	442
<표 II-3-1-11> 도서실 및 오락실	443
<표 II-3-1-12> 체육공간	443
<표 II-3-2-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444
<표 II-3-2-2>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445
<표 II-3-2-3>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446
<표 II-3-2-4> 후원금 비율	446
<표 II-3-2-5>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	447
<표 II-3-2-6> 예산집행의 민주성	447
<표 II-3-2-7> 시설 정보화 수준	448
<표 II-3-2-8> 시설 고유목적 수립여부	448
<표 II-3-2-9> 시설장의 운영계획 및 비전	449
<표 II-3-2-10>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제 활동과 일치여부	450
<표 II-3-2-11> 운영위원회의 활동	450
<표 II-3-3-1>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451
<표 II-3-3-2>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452
<표 II-3-3-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453
<표 II-3-3-4> 직원 이(퇴)직률	454
<표 II-3-3-5> 직원채용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455
<표 II-3-3-6> 시설장의 전문성	455
<표 II-3-3-7> 사무국장의 전문성	456

<표 II-3-3-8> 직무분담의 적절성	456
<표 II-3-3-9>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457
<표 II-3-3-10> 교육활동비	458
<표 II-3-3-11> 복무규정의 마련	459
<표 II-3-3-12> 후생복지	459
<표 II-3-3-13> 인사평가	460
<표 II-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460
<표 II-3-4-2> 연고자 조회	461
<표 II-3-4-3> 상담	462
<표 II-3-4-4> 나들이 프로그램	462
<표 II-3-4-5> 건강관리의 적절성	463
<표 II-3-4-6> 원내 자활사업	463
<표 II-3-4-7> 원외 자활사업	464
<표 II-3-4-8> 프로그램 다양성	464
<표 II-3-4-9> 프로그램 수행 적절성	465
<표 II-3-4-10>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465
<표 II-3-4-11> 특성화 프로그램	466
<표 II-3-4-12> 사례검토회의	466
<표 II-3-5-1> 생활인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467
<표 II-3-5-2> 시설 홍보	468
<표 II-3-5-3>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469
<표 II-3-5-4> 생활인 인권보장 노력	470
<표 II-3-5-5> 생활인 개인정보 비밀보장 및 접근성	470
<표 II-3-5-6> 고충처리 절차	471
<표 II-3-5-7> 자기결정권 보장	471
<표 II-3-5-8> 금전소유 및 관리 인정	472
<표 II-3-5-9> 생활인 의복의 적절성 및 개별성	472
<표 II-3-5-10> 생활인 욕구 및 음식 기호조사	473
<표 II-3-6-1>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473

<표 II-3-6-2> 자원봉사자의 실인원 및 시간	475
<표 II-3-6-3> 외부자원개발	476
<표 II-3-6-4> 자원봉사자 교육	477
<표 II-3-6-5> 자원봉사 개발 및 관리	477
<표 II-3-6-6> 지역사회와의 교류	478
<표 II-3-6-7> 지역사회 홍보	478

그림목차

[제 1 장] 서론

<그림 I -2-3-1> 사회복지시설평가단 위원회 구성도	21
<그림 I -2-3-2>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수행체계도	22
<그림 I -2-4-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일정	23

[제 2 장] 정신요양시설

<그림 II -2-1-1> 서울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96
<그림 II -2-2-1> 부산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98
<그림 II -2-3-1> 대구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00
<그림 II -2-4-1> 인천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02
<그림 II -2-5-1> 광주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04
<그림 II -2-6-1> 대전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06
<그림 II -2-7-1> 울산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08
<그림 II -2-8-1> 경기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10
<그림 II -2-9-1> 충북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12
<그림 II -2-10-1> 충남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14
<그림 II -2-11-1> 전북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16
<그림 II -2-12-1> 전남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18
<그림 II -2-13-1> 경북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20
<그림 II -2-14-1> 경남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22
<그림 II -2-15-1> 제주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24
<그림 II -3-1-1>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 분포	125
<그림 II -3-2-1>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 분포	133
<그림 II -3-3-1> 인적자원관리(C) 영역 점수 분포	142
<그림 II -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점수 분포	155
<그림 II -3-5-1> 생활인의 권리(E) 영역 점수 분포	166

<그림 II-3-6-1> 지역사회관계(F) 영역 점수 분포 171

[제 3 장] 사회복지시설

<그림 II-2-1-1> 서울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47

<그림 II-2-2-1> 부산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50

<그림 II-2-3-1> 대구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52

<그림 II-2-4-1> 인천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54

<그림 II-2-5-1> 광주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56

<그림 II-2-6-1> 대전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58

<그림 II-2-7-1> 울산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60

<그림 II-2-8-1> 경기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62

<그림 II-2-9-1> 충북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64

<그림 II-2-10-1> 충남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66

<그림 II-2-11-1> 전북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68

<그림 II-2-12-1> 전남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70

<그림 II-2-13-1> 경북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72

<그림 II-2-14-1> 경남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74

<그림 II-2-15-1> 제주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76

<그림 II-3-1-1>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점 분포 278

<그림 II-3-2-1> 사회복지 입소시설 총점 분포 281

<그림 II-3-3-1> 사회복지 주거시설 총점 분포 283

<그림 II-3-4-1> 사회복지 병행시설 총점 분포 285

<그림 II-4-1-1>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 분포 287

<그림 II-4-2-1>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 분포 293

<그림 II-4-3-1> 인적자원관리(C) 영역 점수 분포 306

<그림 II-4-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점수 분포 318

<그림 II-4-5-1> 회원의 권리(E) 영역 점수 분포 328

<그림 II-4-6-1> 지역사회관계(F) 영역 점수 분포 331

[제 4 장] 부랑인복지시설

<그림 II-2-1-1> 서울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05
<그림 II-2-2-1> 부산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07
<그림 II-2-3-1> 대구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08
<그림 II-2-4-1> 인천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10
<그림 II-2-5-1> 광주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11
<그림 II-2-6-1> 대전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13
<그림 II-2-7-1> 경기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15
<그림 II-2-8-1> 강원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17
<그림 II-2-9-3> 충북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19
<그림 II-2-10-1> 충남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20
<그림 II-2-11-1> 전북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22
<그림 II-2-12-1> 전남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25
<그림 II-2-13-1> 경북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27
<그림 II-2-14-1> 경남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29
<그림 II-2-15-1> 제주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31
<그림 II-3-1-1>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 분포	432
<그림 II-3-2-1>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 분포	444
<그림 II-3-3-1> 인적자원관리(C) 영역 점수 분포	451
<그림 II-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점수 분포	461
<그림 II-3-5-1> 생활인의 권리(E) 영역 점수 분포	467
<그림 II-3-6-1> 지역사회관계(F) 영역 점수 분포	474

[제 1 장]

서 론

I.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배경 및 경과

제 1 절 실시배경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실시되었다. 1998년 당시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하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이 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 사회복지 자원 사용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야기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법개정 이듬해인 1999년부터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 주관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99년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03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까지의 총 5개년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주관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2004년 아동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총 8개년의 평가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사업성격도 다소 변화를 보였는데, 2004년까지는 정부의 1년 단위 연구용역과제로 시행되었던 반면, 2005년 이후부터는 3년 단위의 위탁업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을 1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수별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기(1999년~2001년) 평가는 개별 시설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기(2002년~2004년) 평가는 평가 1기에서 개발하지 못한 일부 개별 시설의 평가지표를 추가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보다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3기(2005년~2007년) 평가는 개별 시설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각 시설종별 평가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

회복지시설 서비스최소기준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요구되는 각종 영역들에 대한 지표를 확대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제4기(2008년~2011년)평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소기준 더욱 발전시킨 사회복지시설유형별 최소기준을 반영하여 체계화·표준화되었다.

2011년은 제5기(2011년~2013년)가 시작되는 첫해이다. 제5기 평가의 특성은 기존 4기까지 개발되고 체계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서비스최소기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표준화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선진화에 필요한 방향지표들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들의 서비스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동안 시행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경과를 <표 I-1-1-1>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I-1-1-1> 사회복지시설평가 경과

평가연도	평가대상시설(개소)	계(개소)
1기	1999 장애인복지관(36), 정신요양시설(59)	95
	2000 노인요양시설(60), 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285), 여성생활시설(61), 영아시설(28), 정신지체생활시설(52)	519
	2001 노인양로시설(79), 아동복지시설(243), 장애인복지시설(130)	452
2기	2002 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 정신요양시설(55)	144
	2003 노인복지시설(191), 모자복지시설(56), 사회복지관(334)	581
	2004 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	460
3기	2005 부랑인복지시설(37), 사회복지귀시설(74), 장애인복지관(83), 정신요양시설(55)	249
	2006 노인복지관(88), 노인생활시설(232), 사회복지관(349)	669
	2007 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231)	491
4기	2008 부랑인복지시설(36), 사회복지귀시설(113), 장애인복지관(119), 정신요양시설(55)	323
	2009 노인복지관(139), 노인복지시설(62), 사회복지관(3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80)	671
	2010 아동복지시설(266), 장애인생활시설(289)	555
5기	2011 부랑인복지시설(37), 사회복지귀시설(163), 장애인복지관(152), 정신요양시설(59)	411

제 2 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요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은 크게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장기적 목적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둘째,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향함으로써 시설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복지대상자 및 일반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설 선택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넷째,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준에 대한 지역 및 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의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입소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둘째, 시설 입소 및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을 통하여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2.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주요 특징

1)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비계량지수 및 현장적용이 어려운 지표 등 축소하고, 정성지표의 최소화 등을 통하여 평가방법을 정밀화·과학화하였다. 시설간 유사한 지표들을 조정하여 유사지표에 대해 시설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별간 차이점을 이해하고 향후 시설의 균형발전에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할 수 있었다. 관련 법규 및 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대, 이용·생활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인권지표 등의 신규 지표를 개발하였다. 2011년부터는 평가지표(평가대상 전년도 지표공개)를 사전 공개하여 시설에서 평가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에 따라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최소기준(안)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최소기준안 개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설유형별 최소기준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최소기준안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최소 기준선을 측정 가능토록 지표를 개발하였다.

3) 우수 현장평가위원선발 및 위원간 편차 최소화

시·도를 통한 평가위원 선발을 통하여 지역내 우수 평가위원을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현장평가위원의 선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자체정화 기능을 부여하였다. 현장평가 실시 이후 평가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와 이의신청 내용 등

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평가위원 인력pool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평가팀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시·도별 평가 위원팀 수를 최소화하였다. 금번 평가에서는 현장평가위원교육 불참 시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현장평가의 수행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시설장과 평가위원이 날인 및 서명하는 평가수행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1개 시·도에 1개 내·외의 현장평가팀을 구성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현장평가팀 간 편차로 인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현장평가 종결 후, 2팀 이상의 현장평가팀이 평가를 시행한 경우, 현장평가시트가 취합된 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였다.

4) 시설평가 운영에서의 민간 및 피 평가시설의 참여확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운영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간과 피 평가시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 유형별 시설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터넷의견수렴, 공청회, 사전평가를 통해 충분히 지표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회의를 통해 시설 실무자들이 직접 평가지표개발에 주도적인 참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쌍방향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5) 평가대상 시설의 평가위원 평가

금번 평가에서는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피 평가시설이 현장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현장평가를 위한 일종의 견제도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6) 사전 및 확인평가 실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항목 및 지표에 대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평가(pre-test)를 실시하여 지표의 오류를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현장평가가 마무리 된 후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평가를 실시하였다. 확인평가는 자체평가 점수와 현장평가 점수가 현저히 차이가 있는 시설,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점수가 낮은 시설, 현장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시설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가지표 및 평가과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평가체계보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7) 우수시설에 대한 정부 표창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해 평가우수시설에 한해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 표창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의 공신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8) 인센티브 지급 대상 다양화

기존 인센티브는 우수시설에 대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시설의 노력으로 전년도 평가대비 시설운영상태가 현격하게 상향된 시설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여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시설의 노력에 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업무 동기를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1) 총괄위원회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전반에 대한 기획 · 조정 · 총괄 업무를 담당할 총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총괄위원회 구성원은 학계 전문가, 관련시설협회, 그리고 해당시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였다. 총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표 I-2-3-1>과 같다.

<표 I -2-3-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총괄위원회 위원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정무성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괄위원장
유수현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수 (분과위원장)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광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정숙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무총장	
윤선희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관련 협회 (연합회)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총장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이창섭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	
최민희	사회서비스자원과 연구위원	
박종억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정부
기정이	민생안정과 주무관	
김동민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2) 분과위원회

각 평가대상 평가지표의 타당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시설 종별로 각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분과위원회 구성원은 학계전문가, 관련 시설협회, 평가대상 시설 대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였다. 정신요양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가 개최되었고,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분과위원회는 각 7회씩 개최되었다. 각 분과의 구성원은 <표 I-2-3-2>, <표 I-2-3-3>, <표 I-2-3-4>, <표 I-2-3-5>와 같다.

<표 I-2-3-2> 정신요양시설 분과위원회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유수현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박종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정부
김낙주	충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팀장	
최정숙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무총장	협회
김규식	세광정신요양원 사무국장	
윤향숙	논산정신요양원 사무국장	시설
강용복	귀일정신요양원 사무국장	

<표 I -2-3-3> 사회복지시설 분과위원회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박종익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정부
이송자	서울시청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팀장	
윤선희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협회
배은미	태화샘솟는집 부장	
백소진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 사무국장	시설
서은선	해바라기 시설장	

<표 I -2-3-4> 부랑인복지시설 분과위원회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김동현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사무관	
기정이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주무관	정부
임광순	서울시청 자활지원과 주사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총장	협회
이현준	진성원 사무국장	
강선옥	강릉시립복지원 사무국장	시설
박옥근	성덕원 사무국장	

<표 I -2-3-5> 장애인복지관 분과위원회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손광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김동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정부
고승애	충북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협회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시설
전호찬	음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서인교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엄정호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3) 포커스그룹

각 평가대상 시설별 분과위원회 산하에 시설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을 두어 평가대상시설 관계자가 각 시설별 평가 지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였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하여 개진된 의견을 기초로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각 시설별 최종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조치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총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총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처럼 포커스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반적으로 시설장(관장) 또는 사무국장(부장) 등 관리직 위주로 구성되었기에 평가지표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현장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평가지표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표

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되는 시설의 특성상, 통합적인 형태의 평가지표로는 유형 간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포커스 그룹 회의를 통해 각 유형별로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지표로써의 조정 및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복지 자원의 규모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환경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운영 외적 요인들의 실태를 논의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포커스그룹 명단은 <표 I-2-3-6>과 같다.

<표 I-2-3-6> 각 분과별 포커스그룹 명단

분과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정신요양시설	안갑진	서울정신요양원	사무국장	
	이상용	자매정신요양원	SOS 국장	
	조미라	소화누리	사무국장	
	이수진	강화정신요양원	사무국장	
	박상용	수양원	사무국장	
	김정국	박애원	사업개발실과장	
	최미숙	영생원	사무국장	
	박애경	참사랑낙원	행정부장	
	김영국	신혜정신요양원	사무국장	
	송현섭	영남정신요양원	사무국장	
	유강순	성애원	사무국장	
	김상혁	제주정신요양원	사무국장	

<표계속>

분과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사회복지시설	김수영	서대문사회복지시설해벗누리	시설장	
	안영선	늘푸름	시설장	
	김태완	달구별정신건강센터	시설장	
	유숙	송국클럽하우스	시설장	
	윤규열	희망의쉼터	시설장	
	최완구	보람의집	시설장	
	차진경	감나무집(카프)	시설장	
	조현구	누리봄(하프웨이)	시설장	
	최동표	한마음의집	시설장	
	이옥자	섭리가정	시설장	
	고순애	새롬마을	시설장	
	이순열	우리집	시설장	
	정윤희	비콘	시설장	
	김선주	아미	시설장	
	박현수	마음건강복지센터	시설장	
	노봉근	대성재활센터	시설장	
	노경란	송파아이즌	사무국장	
부랑인복지시설	김정희	대구광역시립희망원	과장	
	서상문	늘푸른자활의집	원장	
	변정임	은혜의집	상담부장	
	조용학	자강의집	사무국장	
	우기석	나자렛집	부장	
	송치우	춘천시립복지원	사무국장	
	최선화	해남희망원	서무계장	
	오금희	창원시립복지원	총무팀장	
	김정란	창원시립복지원	복지팀장	
	허재우	제주시립희망원	사무국장	
	홍태섭	마리아구호소	생활복지사	
	김선양	해남희망원	사무국장	
	김지연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실장	
	양미화	들꽃마을	사무국장	
	박천수	기쁨원	상담부장	

분과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장애인복지관	박영숙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박광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미숙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아영	대전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전경희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신영철	천안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병운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성진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조만우	대구 상록뇌성마비복지관	팀장	
	정인택	전남 명도복지관	사무국장	
	문성은	제주도 농아복지관	사무국장	
	김미경	실로암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4)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

사회복지평가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지표를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현장평가위원은 교수, 공무원, 현장실무자의 3인 1조로 구성하였다. 2011년 평가에서는 평가위원 구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자질과 관련된 지방의 자체 정화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각 분과 및 지역별 현장평가위원은 <표 I -2-3-7> 및 <표 I -2-3-8> <표 I -2-3-9> <표 I -2-3-10>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I -2-3-7> 정신요양시설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지역	학계	실무자	공무원
서울	이명수 (서울대학교)	전준희 (화성시정신보건센터)	박성희 (서울시청)
부산	최송식 (부산대학교)	이상용 (자매정신요양원)	이하열 (부산보건소)
		김선주 (아미정신건강센터)	신창식 (부산보건소)
대구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이상용 (자매정신요양원) 박정봉 (시립희망원)	김은숙 (대구시청)
인천	정성훈 (인천의료원)	이유진 (광역정신보건센터)	조은행 (인천시청)
		김창곤 (광주대학교)	김경란 (무등정신요양원)
대전	유제춘 (대전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신현중 (소망의집)	김혜경 (대전광역시)
울산	전형미 (울산과학대학)	김병수 (울산참사랑의집)	권미령 (울산시청)
경기	손덕순 (용인송담대학)	윤향숙 (논산정신요양시설)	배이미 (수원시장안구보건소)
		김규식 (세광정신요양원)	
충북	나동석 (청주대학교)	조형주 (상록원)	김복순 (충청북도청)
		최미숙 (영생원)	
충남	이혜경 (건양대학교)	신창식 (기독교성심원)	백현옥 (충청남도청)
		윤향숙 (논산정신요양원)	박종규 (충청남도청)
전북	김형길 (한일장신대학교)	송오규 (참사랑낙원)	심민규 (전라북도청)
		최성운 (군산신애원)	
전남	권구영 (목포대학교)	손원락 (성산정신요양원)	곽영호 (전남도청)
		김선양 (해남희망원)	
경북	윤선오 (경운대학교)	정석현 (소중한사람들)	이재석 (경북도청)
		송현섭 (김천영남정신요양원)	
경남	김용진 (승실대학교)	양미행 (마산정신요양원)	최복덕 (김해시청)
		정진영 (함양정신요양원)	
제주	강세현 (제주한라대학)	윤보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양영수 (제주도청)

<표 I-2-3-8> 사회복지시설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지역	학계	실무자	공무원
서울	김경희 (서울여자간호대학)	강영옥 (하얀마음)	이송자 (서울시청)
	백종우 (경희대학교)	김용진 (이음)	최경희 (서울시청)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김은혜 (서울시청)
	조근호 (을지대학교)	이동훈 (태화해뜨는샘)	조희순 (성동구청)
	최명민 (백석대학교)	임창원(영보정신요양원)	정남숙 (노원구청)
		안소라(서울시정신보건센터)	이인순 (마포구청)
부산		최현모(여울목)	김옥희 (강동구청)
	최송식 (부산대학교)	김선주 (아미정신건강센터)	신창식 (부산보건소)
		이상용 (자매정신요양원)	
대구	김규수 (대구대학교)	임소영 (정보재활원)	최종숙 (대구시청)
인천	이미형 (인하대학교)	이유진 (광역시정신보건센터)	조은행 (인천시청)
	천영훈 (참사랑병원)		
광주	박귀서 (광주대학교)	이숙자 (빛고을보건복지센터)	배강숙 (광주광역시청)
		조동인 (인광희망의샘)	
대전	임숙빈 (을지대학교)	이혜진 (대전정신요양원)	정미영 (대덕구보건소)
	김도윤 (대전정신보건사업지원단)	김영희 (심경장원)	김용애 (서구보건소)
울산	전형미 (울산과학대학)	김병수 (울산참사랑의집)	권미령(울산광역시청)
경기	유명이 (대림대학)	김장배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전효순 (경기도청)
	이경아 (수원여자대학)	서은선 (해바라기)	이현호 (경기도청)
충북	나동석 (청주대학교)	이상진 (충주어울림센터)	김복순 (충북도청)
		안금숙 (우리들정신건강센터)	
충남	이혜경 (건양대학교)	김미정 (정다운집)	박종규 (충남도청)
		김미주 (천안시사회복지시설)	백현옥 (충남도청)
전북	김형길 (한일장신대학교)	문승연 (서남대학교)	김정희 (전북도청)
전남	권구영 (목포대학교)	손원락 (성산정신요양원)	곽영호 (전남도청)
경북	성희자 (경북대학교)	정석현 (소중한사람들)	이민자 (경북도청)
경남	엄태완 (경남대학교)	김춘심 (송인)	이현미 (경남도청)
		이윤겸 (벨엘클럽하우스)	
제주	강세현 (제주한라대학)	윤보철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양영수 (제주도청)

<표 I -2-3-9> 부랑인복귀시설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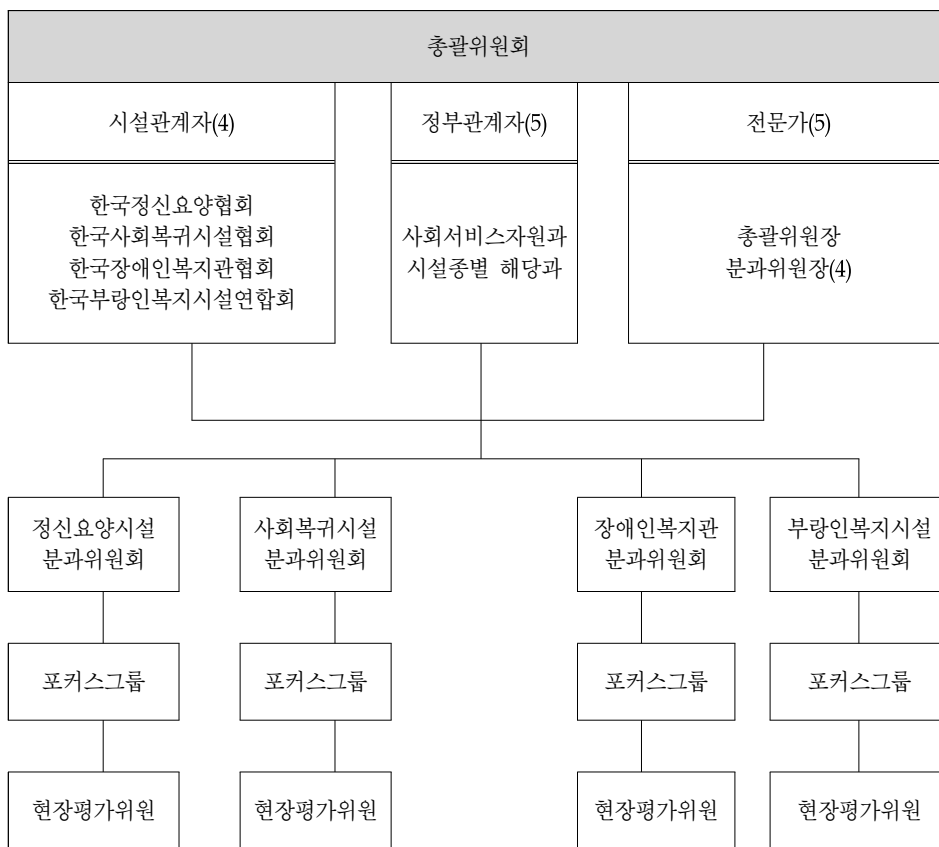
지역	학계	실무자	공무원
서울	황선영 (그리스도대학교)	유진선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임광순 (서울시청)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구혜선 (서울시청)
부산	초의수 (신라대학교)	김철주 (인성원)	김대영 (부산시청)
		김기태 (오순절)	
대구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김은숙 (대구시청)
인천	김영민 (인하대학교)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백보옥 (인천시청)
광주	정민숙 (남부대학교)	이현준 (진성원)	임안섭 (광주광역시청)
대전	이재식 (우송정보대학)	김의곤 (노숙인상담센터)	정기룡 (대전시청)
경기	이형석 (서정대학교)	임은경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나경란 (경기도청)
강원	서혜경 (한림대학교)	박옥근 (성덕원)	최은미 (강원도청)
충북	서규동 (동양대학교)	강선옥 (강릉시립복지원)	이영미 (충북도청)
충남	서규동 (동양대학교)	송치우 (춘천시립복지원)	김인기 (충남도청)
전북	김형길 (한일장신대학교)	송오규 (참사랑낙원)	심민규 (전북도청)
		최성운 (군산신애원)	
전남	권구영 (목포대학교)	손원락 (성산정신요양원)	곽영호 (전남도청)
		김선양 (해남희망원)	
경북	윤선오 (경운대학교)	송현섭 (김천영남정신요양원)	이재석 (경북도청)
경남	장유미 (창신대학교)	정석현 (소중한사람들)	서중석 (진주시청)
		이광민 (새삶의집)	
		김태영 (진주시복지원)	
제주	강세현 (제주한라대학)	윤보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양영수 (제주도청)

<표 I-2-3-10> 장애인복지관 시·도별 현장평가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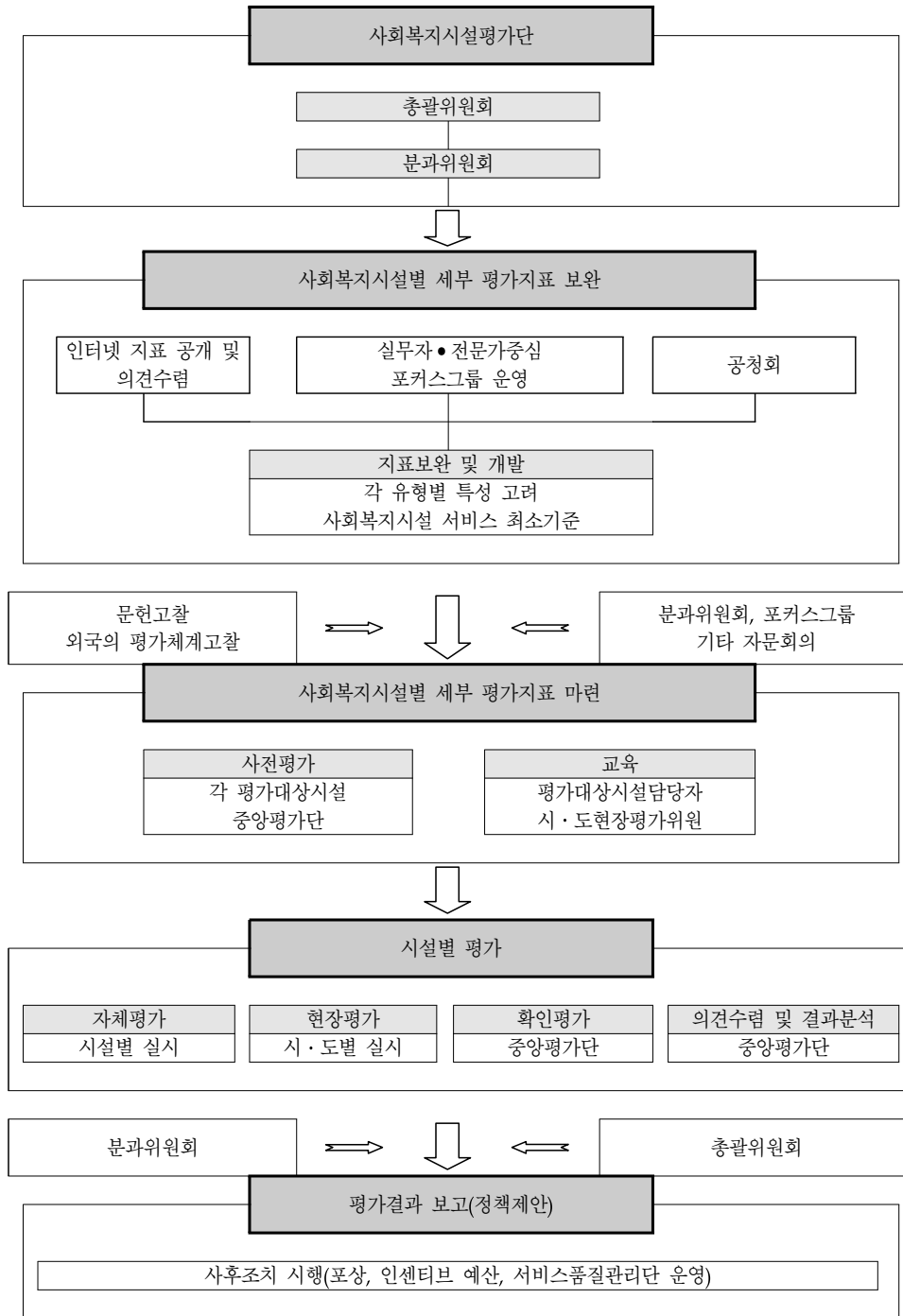
지역	학계	실무자	공무원
서울	백은령 (총신대학교)	황주연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추경민 (서울시청)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서혜미 (하상장애인복지관)	차영선 (서울시청)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박영숙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정자 (서울시청)
	이종남 (극동대학교)	고유경 (성민복지관)	나홍주 (서울시청)
	조원일 (경기대학교)	이학준(성모자애복지관)	최현수 (서울시청)
	강윤주 (한국재활복지대학)	조석영(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윤원근 (서울시청)
부산	손광훈 (경성대학교)	남정원 (북구장애인복지관)	김정대 (부산시청)
대구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	서준기 (달구벌종합복지관)	박병철 (대구시청)
		박정봉 (시립희망원)	
인천	정선영 (인천대학교)	권오영 (송암보호작업장)	박은경 (인천시청)
광주	정민숙 (남부대학교)	마광석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손수지 (광주광역시청)
대전	이채식 (우송정보대학)	이하성 (시립산성종합복지관)	임인식 (대전서구청)
		황석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	전형미 (울산과학대학)	김병수 (울산 참사랑의집)	김종해 (울산시청)
경기	양희택 (협성대학교)	정완출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최선숙 (경기도청)
	임승규 (수원여자대학)	류재영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희자 (안산시청)
강원	류만희 (상지대학교)	엄정호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최은미 (강원도청)
		김영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명선 (원주시청)
충북	서규동 (동양대학교)	한금희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선경 (충북도청)
		이재원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	권경주 (건양대학교)	이영미 (충남서부 장애인복지관)	박정완 (충남도청)
		이정원 (충남남부 장애인복지관)	
전북	김동주 (우석대학교)	진용철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이정표 (전북도청)
		문정선 (전주시장애인복지관)	
전남	김황용 (광주대학교)	정인택 (명도복지관)	박홍근 (전남도청)
		이준재 (광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이현지 (대구가톨릭대학)	이시윤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중 (경북도청)
		이광준 (경북장애인 종합복지관)	
경남	박무일 (창원전문대학)	류학기 (남해군장애인종합복지관)	구선녀 (경남도청)
제주	고보선 (제주산업정보대학)	박광수 (창암재활원)	백은숙 (제주도청)

5) 각 위원회 및 포커스그룹, 현장평가위원 조직 구성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그림 I-2-3-1>과 같은 조직의 구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림 I-2-3-2>의 평가 수행체계에서 세부 추진과정 및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림 I-2-3-1> 사회복지시설평가단 위원회 구성도



<그림 I-2-3-2>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수행체계도

4.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일정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기간(월)	주요 사항	세부 사항
1월~2월	사회복지시설 평가단 구성	○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3월~5월	평가지표 보완 · 수정 · 개발	○ 시 · 도 평가담당자 간담회 ○ 자체평가 시 · 도 담당자 간담회 ○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회의 ○ 평가지표 의견수렴 공청회 ○ 인터넷지표 공개 의견수렴 ○ 사전평가
6월	평가지표확정 및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평가지표 최종확정 ○ 평가대상시설 평가지표설명회 ○ 시설자체평가 및 보고서 제출 ○ 현장평가위원 교육
7월~10월	현장평가 실시 및 확인평가 실시	○ 현장평가 실시 ○ 중앙에서 확인평가 실시
11월	결과분석	○ 평가결과 취합 ○ 평가지표별 결과 분석
12월	평가보고서제출	○ 시 · 도 평가 담당자 간담회 ○ 결과보고서 제출(보건복지부)

<그림 I -2-4-1>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일정

제 3 절 평가대상시설 및 평가지표의 구조

1. 정신요양시설

1) 평가대상 시설

금번 정신요양시설에서 평가대상시설은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치·신고 된 시설이며, 평가대상 시설의 확정은 각 시·도에서 대상시설을 파악하여 중앙평가단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금번 평가에 참여한 정신요양시설은 총 59개소이며, 각 시·도별 개수는 <표 I-3-1-1>을 통해 제시되었다.

<표 I-3-1-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9	3	3	3	2	4	4	1	6	-	4	11	4	4	5	4	1

2) 평가 지표의 구조와 수정보완사항

2011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는 2008년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2010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보고서에서 제안한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공청회,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회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

처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여 배점 및 지표의 수 변화는 해당 분과 본문을 통해 기술되었다. <표 I-3-1-2>은 2008년과 2011년의 각 개별 세부지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 -3-1-2>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 시설의 외부환경	내용의 중복으로 A1, A2 통합	A1. 시설의 내·외부환경
	A2. 과도한 통제시설		
	A3. 침실과 복도	유지	A2. 침실과 복도
	A4.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유지	A3.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A5. 상담실 과 면회실	유지	A4. 상담실과 면회실
	A6. 재활 프로그램 공간	유지	A5. 재활 프로그램 공간
	A7. 여가활동(체육/독서)공간	유지	A6. 여가활동(체육/독서)공간
	A8. 식당과 조리실	수정	A7. 식당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A9.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유지	A8.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A10. 세탁, 건조, 피복관리	유지	A9. 세탁, 건조, 피복관리
	A11. 화재대비	수정	A10. 시설환경의 안전요소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원장의 전문성	유지	B1. 원장의 전문성
	B2. 원장의 시설 운영방향	수정	B2. 원장의 시설 운영방향
	B3. 운영위원회의 구성	B3과B4 통합	B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B4. 운영위원회의 활동	신설	B4. 법인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B5. 연간사업계획	수정	B5.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B6. 직원1인당 급여 자부담액	유지	B6. 직원1인당 급여 자부담액
	B7.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유지	B7.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B8.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유지	B8. 후원금 비율
	B9. 후원금 투명관리		
	B10. 회계의 투명성	수정	B9.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B11. 법인카드 사용비율	유지	B10. 법인카드(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
	B12. 시설의 정보화 수준	수정	B11. 시설의 정보화 수준
	B13.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유지	B12. 사업비 비율
	신설	B13. 비품관리	

영역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C. 인적자원 관리	C1.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공통지표로 신설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C1. 전체 직원1인당 관리 생활인 수	유지	C2. 전체 직원 1인당 관리 생활인 수
	C2. 전체직원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 지 비율	유지	C3.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의 이(퇴)직률	유지	C4. 직원의 이(퇴)직률
	C4. 간호사의 배치 수준	유지	C5. 간호사의 배치 수준
	C5. 사회복지사의 배치 수준	유지	C6. 사회복지사의 배치 수준
	C6.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 수준	유지	C7.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 수준
	C7. 직원의 외부 교육 참여	수정	C8. 외부교육 참여시간
	C8. 교육활동비	수정	C9. 교육활동비
	C9.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수정	C10.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C10. 직원대상 전문교육 참여	유지	C11. 직원대상 전문교육에 참여
	C11. 직무교육	유지	C12. 직무교육
	C12. 직원 복리후생제도	내용 중복으로 C12, C14 통합	C13. 직원의 후생복지
	C13. 추가 채용인력	삭제	
	C14. 직원상조회	내용 중복성으로 C14를 C12로 통합	
	신설	C14. 신입직원교육	
	신설	C15. 직원 인사평가	

영역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유지	D1.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D2. 식용수와 간식제공	삭제	
	D3. 응급환자 관리	유지	D2. 응급환자의 관리
	D4. 생활인의 건강관리	유지	D3. 생활인의 건강관리
	D5. 진료 및 상담	수정	D4. 진료 및 상담
	D6. 치아관리	삭제	
	D7. 원내의 작업요법	유지	D5. 원내의 작업요법
	D8. 작업 수익금	유지	D6. 작업 수익금
	D9. 원외 취업장	유지	D7. 원외 취업장
	D10. 원외 취업장 프로그램	유지	D8. 원외 취업장 프로그램
	D11. 프로그램 다양성	수정	D9. 프로그램의 수행
	D12. 전문프로그램 수행 인력	수정	D10. 전문프로그램 수행 인력
	D13. 사회복지 원외 프로그램	D12, D15를 통합하여 D13으로 수정	D11. 다양한 사회복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D14.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수정 및 통합	D12.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을 실시여부
	D15. 직업재활 프로그램	D13 통합	
	D16.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유지	D13.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D17. 가족 면회	수정	D14.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D18. 서비스 욕구조사	D18, D19를 통합하여 D18으로 수정	D15.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9.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신설	D16.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여부

영역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E. 생활인의 권리	E1. 시설 외부출입	유지	E1. 시설 외부출입
	E2. 생활인 가족 및 친지개방	D15.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으로 내용포함 되어 수정	E2. 생활인의 자유
	E3. 외출 또는 외박	유지	E3. 외출 또는 외박
	E4. 생활인의 인권보호	삭제 D12, E4, E6에 내용포함 시킴.	
		신설	E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신설	E5.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신설	E6. 인권보장 노력
F. 지역사회 관계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수정	F1. 자원봉사자의 인원과 시간
	F2. 지역사회 주민에 개방	내용중복으로 F2, F3, F4를 F2로 수정·통합	F2. 지역사회와의 교류
	F3. 시설내에서 개최한 지역주민과의 행사		
	F4. 시설외부에서 주최 참여한 지역주민과의 행사		
		B9에 있던 문항을 이동	F3.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F5. 정신보건시설과 연계	유지	F4. 정신보건시설과 연계
	F6. 시설홍보	유지	F5. 시설홍보
	F7. 외부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지	F6. 외부자원개발
	신설	F7. 실습교육	

2. 사회복지시설

1) 평가대상 시설

사회복지시설은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치·신고 된 시설로써, 평가대상 시설의 확정은 각 시·도에서 대상시설을 파악하여 중앙평가단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금번 평가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은 총 163개소로, 각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I-3-2-1>로 제시되었다.

<표 I-3-2-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63	50	9	13	4	7	12	2	19	-	6	8	14	2	11	4	2

2) 평가 지표의 구조와 수정보완사항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2008년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2010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공청회,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회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여 배점 및 지표의 수 변화는 해당 분과 본문을 통해 기술되었다. <표 I-3-2-2>는 2008년과 2011년의 각 개별 세부지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 -3-2-2>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지리적 접근성	삭제(유형 공통적용 불가)	
	시설환경	내용 수정 주관적인 평가 표현삭제 '분위기 밝고, 아늑하다'	A2 시설 내·외부 환경
	공간의 크기	유지	A1. 공간의 크기
	시설구비 및 안정성	삭제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노력	내용 수정	A3.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노력
	시설의 정보화	정보화 문항이 총3개로 A5문항으로 통합	
	침실공간의 쾌적성	삭제(유형 공통적용 불가)	
	체육오락시설	삭제(유형 공통적용 불가)	
	직원의 정보화	평가항목 및 내용 변경(A5)	A5. 시설의 정보화
	회원의 정보화	평가항목 및 내용 변경(A5)	
생활위생시설의 적정성	내용수정	A4.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노력	
B. 재정 및 조직운영	시설장의 전문성	내용 수정 (경력 추가)	B1.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의 실제 근무여부	삭제	
	시설의 자율적 운영	삭제	
	운영위원회	내용수정 (기존의 지표는 단순 개최횟수만 파악)	B2.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서류(문서관리 규정 및 규정에 열거된 서류)의 비치	내용수정	B3. 서류의 비치 및 관리
	직원 1인당 급여 자부담액	유지	B6. 직원1인당 급여 자부담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유지	B7.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유지	B8. 후원금 비율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유지	B9. 사업비 비율
	후원금 투명관리	내용수정	B5. 후원금(품)관리의 투명성
	회계의 전산화	삭제	
	후원활동	삭제(B5로 흡수)	
	후원관리기록	삭제(B5로 흡수)	
	정보관리지침의 문서화	삭제	
		신설	B4. 회계의 투명성
	신설	B10.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영역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C. 인적자원 관리		신설(타분과와 공통 지표)	C1. 직원 충원율
	전체 직원 1인당 관리 회원 수	삭제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유지	C2. 전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이·퇴직율	유지	C3. 직원의 이·퇴직율
	직원의 다학제적 접근	삭제	
	직원채용의 투명성	유지(제목만 변경)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신입직원 교육훈련	수정 (신입직원에서 전체 직원교육에 대한 문항으로 변경)	C7. 직원(신입) 교육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유지	C4.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교육활동비	유지	C5. 교육활동비
	슈퍼비전	유지(제목만 변경)	C8. 직원대상 슈퍼비전
	직원의 후생복지	내용변경	C9. 직원복지후생제도
관리인(또는 시설장)의 시설관련 근무시간	삭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	내용 수정	D1. 재활프로그램의 질
	취업자 비율	삭제(D9에서 흡수)	
	재입원 비율	변경, 대체문항	D7. 기관 이용(입소)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주치의와의 협조	내용 수정 (기존 지표는 모임횟수만 확인)	D3. 주치의와의 협조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내용 수정	D2.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가족교육 및 모임	내용 수정(⑤문항 추가)	D4. 가족교육 및 모임
	서비스 욕구 조사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로 통합	D5.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설 운영철학과 중장기 사업계획	B영역에서 흡수(B10)	
	연간사업계획	B영역에서 흡수(B10)	
	회원의 시설운영에 대한 참여정도	변경, 대체문항	D8. 자치활동
	자체평가의 실시정도 및 반영여부	B영역에서 흡수(B10)	
	개발된 취업장 수	현황자료로 활용	
	서비스 과정의 가족참여	D4에서 흡수	
	사회적응을 위한 외부활동	삭제	
	낮동안의 프로그램 실시 또는 연계프로그램	삭제	
	상담 및 사례관리	삭제(D1에서 흡수)	
	관리인(또는 시설장)의 야간상주 여부	삭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	이동(F영역에서 D영역으로 이동)	D6.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신설	D9. 사회복지시설의 성과(실적)

영역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E. 생활인의 권리	회원의 인권보호	삭제 타문항에 흡수 (E1, E3) 인권교육 추가	E3. 인권보장노력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내용수정	E1. 회원의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시설정보제공노력	내용수정(E2흡수)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삭제	
	자기결정권	내용수정	E2. 서비스 정보제공 및 회원의 자기결정권
	자치활동보장	삭제	
F. 지역사회 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유지(제목만 변경)	F1.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	수정- D6으로 이동	
	지역사회홍보	내용수정	F2. 지역사회홍보
	자원봉사개발 및 관리	내용수정	F3. 자원봉사자의 관리
		신설	F4. 외부민간자원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내용수정 (기존 지표는 연계실적만 확인)	F5.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회원의 지역사회적응	삭제	

3. 부랑인복지시설

1) 평가대상 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은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치·신고 된 시설로써, 평가대상 시설의 확정은 각 시·도에서 대상시설을 파악하여 중앙평가단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금번 평가에 참여한 부랑인복지시설은 총 37개소로, 각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I -3-3-1>로 제시되었다.

<표 I -3-3-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7	4	3	1	1	1	1	-	3	3	2	1	3	6	2	4	2

2) 평가 지표의 구조와 수정보완사항

2011년 부랑인복지시설 평가지표는 2008년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2010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공청회,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회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여 배점 및 지표의 수 변화는 해당 분과 본문을 통해 기술되었다. <표 I -3-2-2>는 2008년과 2011년의 각 개별 세부지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 -3-2-2> 부랑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A1. 시설의 접근성	-	A1. 시설의 접근성
A2.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	-	A2.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
A3.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I	-	A3.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I
A4. 지원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	A4. 지원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A5. 식당과 조리실	-	A5. 식당과 조리실
A6.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	-	A6.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
A7. 상담실	-	A7. 상담실
A8. 프로그램실	-	A8. 프로그램실
A9. 의무실	-	A9. 의무실
A10. 도서관과 오락실	-	A10. 도서관과 오락실
A11. 체육공간	-	A11. 체육공간
B1. 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해설추가	B1. 법인의 자부담(전입금)비율
B2. 사업비 비율	해설추가	B2. 사업비 비율
B3. 후원금 비율	-	B3. 후원금 비율
B4. 직원 1인당 자부담액	지표삭제	
B5. 후원금품 관리	-	B4. 후원금품 관리
B6. 예산집행의 민주성	B6과 통합,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B5.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B7. 법인카드 사용여부	B7과 통합,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B8. 시설 고유 목적(사명)의 명확성	-	B7. 시설 고유 목적(사명)의 명확성
B9. 시설장의 운영계획과 비전	-	B8. 시설장의 운영계획과 비전
B10. 운영계획의 수립정도와 실제 활동과의 일치성	-	B9. 운영계획의 수립정도와 실제 활동과의 일치성
B11. 운영위원회의 활동	-	B10. 운영위원회의 활동
	지표추가	B6. 정보화에 대한 노력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C1.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	지표삭제	
C2. 직원 자격증 소지 비율	평가기준강화, 해설수정	C2. 직원 자격증 소지 비율
C3. 직원의 이·퇴직률	해설수정	C3. 직원의 이·퇴직률
C4.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	C4.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C5. 시설장의 전문성	문항추가, 문항수정, 평가기준강화	C5. 시설장의 전문성
C6.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문항추가, 문항수정, 평가기준강화	C6. 사무국장의 전문성
C7. 직무분담의 적절성	-	C7. 직무분담의 적절성
C8. 직원 자체교육제도 시행	지표삭제	
C9. 직원 1인당 외부교육시간	문항추가	C8. 직원 1인당 외부교육시간
C10. 교육활동비	해설수정	C9. 교육활동비
C11. 복무규정 마련	-	C10. 복무규정 마련
C12. 후생복지	평가기준강화	C11. 후생복지
C13. 인사평가		C12. 인사평가
	지표추가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D1. 초기 입소 시 연고자 조회	D3과 통합,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D1. 연고자 조회
D2. 상담		D2. 상담
D3. 연고자 조회 노력	D1과 통합,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D4. 외출·외박 경험	지표삭제	
D5. 외출 연간 경험 빈도	지표삭제	
D6.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평가기준강화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D7. 간식제공	지표삭제	
D8. 치아관리	D9와 통합	
D9. 건강관리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D4. 건강관리
D10. 원내 자활사업	-	D5. 원내 자활사업
D11. 원외 자활사업	-	D6. 원외 자활사업
D12. 프로그램의 다양성	-	D7. 프로그램의 다양성
D13. 프로그램의 수행	-	D8. 프로그램의 수행
D14. 사회복지 프로그램	-	D9. 사회복지 프로그램
D15.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D16. 사례검토회의	-	D11. 사례검토회의
D17. 시설의 정보화	평가영역변경,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B7. 정보화에 대한 노력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E1. 시설정보 제공노력	-	E1. 시설정보 제공노력
E2.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	E2.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E3. 인권의 존중	-	E3. 인권의 존중
E4. 비밀보장 및 본인기록에 대한 접근성	-	E4. 비밀보장 및 본인기록에 대한 접근성
E5. 고충처리절차의 마련여부	-	E5. 고충처리절차의 마련여부
E6.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	E6.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E7.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	E7.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E8. 의복의 적절성과 개별성	-	E8. 의복의 적절성과 개별성
E9.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기호조사	문항추가	E9.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기호조사
F1. 자원봉사자 실 인원 및 시간	-	F1.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
F2. 자원봉사자 교육	-	F3. 자원봉사자 교육
F3.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	F4.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F4. 지역사회와의 교류	-	F5. 지역사회와의 교류
F5. 지역사회홍보	-	F6. 지역사회홍보
	지표추가	F2. 외부민간자원개발

4. 장애인복지관

1) 평가대상 시설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치·신고된 시설로써, 평가대상시설의 확정은 각 시·도에서 대상시설을 파악하여 중앙평가단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금번 평가에 참여한 장애인복지관은 총 152개소로,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I-3-4-1>로 제시되었다.

<표 I-3-4-1> 2011년 시·도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2	37	7	6	7	3	5	3	18	6	7	11	10	11	9	7	5

2) 평가 지표의 구조와 수정보완사항

2011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는 2008년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2010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공청회,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회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여 배점 및 지표의 수 변화는 해당 분과 본문을 통해 기술되었다. <표 I-3-4-2>는 2008년과 2011년의 각 개별 세부지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 -3-4-2>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표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C8. 직원채용과 신입직원 교육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C6. 인력개발 : 종사자의 선발·훈련·개발과 신입직원교육
C9.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	C12.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C10. 직원의 근무여건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C11. 종사자의 근무여건 : 고충처리·자치조직·근무시간
C11. 인사평가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C10. 직무평가 및 포상
	지표추가	C7. 장애인 종사자 고용실적
D1-1. 접수진단·판정평가 부문의 서비스 이용인원	문항수정, 해설추가	D1-1. 접수진단·판정평가 부문의 서비스 이용인원
D1-2. 접수면접의 적절성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1-2. 접수면접의 적절성
D1-3. 재활계획회의(판정회의)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1-3. 재활계획회의
D1-4. 기관차원에서의 욕구 및 만족도조사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1-4. 기관차원에서의 재활서비스 욕구사정
D1-5. 인식개선 프로그램	영역변경,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F11. 인식개선프로그램
	지표추가	D1-5. 기관차원에서의 만족도조사
	지표추가	D1-6. 사례관리
D1-6. 연구개발실적	영역변경	F14. 연구개발실적
D2-1.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인원	문항수정	D2-1.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인원
D2-2.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표삭제	
D2-3. 사정의 체계성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2-2. 의료재활사정의 체계성
D2-4. 개별화된 서비스	문항삭제	D2-3. 개별화된 서비스
D2-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2-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2-6.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2-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2-7. 사례회의	평가기준강화	D2-6. 사례회의
D2-8. 프로그램 운영평가	-	D2-7. 프로그램 운영평가
D2-9.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	D2-8.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D3-1. 교육재활서비스 이용인원	문항수정	D3-1. 교육재활서비스 이용인원
D3-2.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표삭제	
D3-3. 사정의 체계성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3-2. 교육재활사정의 체계성
D3-4. 개별화된 서비스	문항삭제	D3-3. 개별화된 서비스
D3-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3-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3-6.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3-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3-7. 사례회의	평가기준강화	D3-6. 사례회의
D3-8. 프로그램 운영평가	-	D3-7. 프로그램 운영평가
D3-9.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	D3-8.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D4-1.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문항수정	D4-1.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D4-2.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표삭제	
D4-3. 사정의 체계성	지표삭제	
D4-4. 개별화된 서비스	지표삭제	
D4-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4-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4-6.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4-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4-7. 사례회의	지표삭제	
D4-8. 프로그램 운영평가	-	D4-6. 프로그램 운영평가
D4-9.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지표삭제	
D4-10. 사회교육 연간실적	영역변경	F10. 연구개발실적
D4-11.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정도	영역변경	F12.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정도
	지표추가	D4-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지표추가	D4-3.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D5-1.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인원 및 실적	문항수정	D5-1.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인원
D5-2.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표삭제	
D5-3. 사정의 체계성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5-2. 직업재활 사정의 체계성
D5-4. 개별화된 서비스	문항삭제	D5-3. 개별화된 서비스
D5-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5-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5-6.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5-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5-7. 사례회의	평가기준강화	D5-6. 사례회의
D5-8. 프로그램 운영평가	-	D5-7. 프로그램 운영평가
D5-9.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	D5-8.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D6-1. 재가복지·가정지원·가정봉사원 운영실적 및 이용인원	문항수정	D6-1. 재가복지·가정지원·가정봉사원 운영실적 및 이용인원
D6-2.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표삭제	
D6-3. 사정의 체계성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6-2. 재가복지사업의 체계성
D6-4. 개별화된 서비스	문항삭제	D6-3. 개별화된 서비스
D6-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D6-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6-6.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6-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6-7. 사례회의	평가기준강화	D6-6. 사례회의
D6-8. 프로그램 운영평가	-	D6-7. 프로그램 운영평가
D6-9.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	D6-8.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D7. 특성화사업 운영실적 및 이용인원	-	D7-1. 특성화사업 운영실적 및 이용인원
D71-1. 사정의 체계성	지표삭제	
D71-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평가기준강화	D71-1.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D71-3. 개별화된 서비스	지표삭제	
D71-4.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평가기준강화	D71-2.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D71-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수정	D71-3.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71-6.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71-4.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71-7. 사례회의	지표삭제	
D71-8. 프로그램 운영평가		D71-5. 프로그램 운영평가
D71-9. 종결평가와 사후지도	지표삭제	
D8-1. 도서대출 및 보급(제공)사업 이용인원	-	D8-1. 도서대출 및 보급(제공)사업 이용인원
D8-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평가기준강화	D8-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D8-3. 프로그램 수행과정	평가기준강화	D8-3.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D8-4.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8-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8-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수정	D8-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8-6. 프로그램 운영평가	-	D8-6. 프로그램 운영평가
D8-7. 도서의 다양성	문항의 간소화	D8-7. 도서의 다양성
D8-8.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도서대출 및 보급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D8-8.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도서대출 및 보급
D9-1. 도서제작사업	-	D9-1. 도서제작사업
D9-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평가기준강화	D9-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D9-3. 프로그램 수행과정	평가기준강화	D9-3.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D9-4.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9-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9-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수정	D9-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9-6. 프로그램 운영평가	-	D9-6. 프로그램 운영평가
D9-7. 도서의 다양성	문항의 간소화	D9-7. 도서의 다양성
D9-8.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시각장애인용 도서제작	문항추가, 평가기준강화	D9-8.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도서대출 및 보급

2008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1년도 평가지표
D10-1. 정보제공사업	-	D10-1. 정보제공사업
D10-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평가기준강화	D10-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D10-3. 프로그램 수행과정	평가기준강화	D10-3.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D10-4.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10-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10-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수정	D10-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10-6. 프로그램 운영평가	-	D10-6. 프로그램 운영평가
D10-7. 신규 정보제공 서비스의 양	-	D10-7. 신규 정보제공 서비스의 양
D10-8. 이용자 관리 및 운영	-	D10-8. 이용자 관리 및 운영
D11-1. 생활용품 및 재활기기 보급사업	-	D11-1. 생활용품 및 재활기기 보급사업
D11-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평가기준강화	D11-2. 프로그램의 계획기반
D11-3. 프로그램 수행과정	평가기준강화	D11-3.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D11-4.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	D11-5.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D11-5.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문항수정	D11-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11-6. 프로그램 운영평가	-	D11-6. 프로그램 운영평가
D11-7. 생활용품 및 재활기기의 개발	-	D11-7. 생활용품 및 재활기기의 개발
D11-8. 생활용품 및 재활기기의 관리	-	D11-8. 생활용품 및 재활기기의 관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문항추가, 해설추가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 및 가족의 자기결정권	평가기준강화	E2.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자기결정권
	지표추가	E4. 이용자의 동등한 참여 : 차별금지, 참정권보장, 자치활동
	지표추가	E5. 이용자의 인권교육
	지표추가	E6. 이용자의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F1. 지역사회 조직실적	-	F9. 지역사회 조직실적
F2. 자원봉사자의 활용	-	F5. 자원개발 : 자원봉사자의 관리
F3. 자원봉사자 관리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F4. 계몽·홍보 연간실적
F4. 지역사회 내 후원활동	-	F1. 자원개발:자원개발의 효율성과 후원자 및 후원금(품)의 관리
F5. 지역 내 관련단체와의 연계수준	F9와 통합	
F6. 계몽·홍보 연간실적		F3. 자원개발 및 홍보
F7. 시설정보 제공노력	신규 F2에 통합	
F8. 실습교육		F13. 실습교육
F9. 지역사회와의 교류	F5와 통합 문항추가, 해설추가, 평가기준강화	F7. 시설의 정보공개와 개방성
		F8.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표추가	F2. 외부자원개발
	지표추가	F6.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 2 장]

정신요양시설

I. 전국 정신요양시설 현황

제 1 절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금번 평가에 참여한 59개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개소(5.08%), 부산 3개소(5.08%), 대구 3개소(5.08%), 인천 2개소(3.39%), 광주 4개소(6.78%), 대전 4개소(6.78%), 울산 1개소(1.69%), 경기 6개소(10.17%), 충북 4개소(6.78%), 충남 11개소(18.64%), 전북 4개소(6.78%), 전남 4개소(6.78%), 경북 5개소(8.47%), 경남 4개소(6.78%), 제주 1개소(1.69%)로써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시설이 입지하였으며, 경기와 경북에 각각 6개소와 5개소로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이 분포하였다. 2008년 평가와 비교하면 평가대상시설이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씩 총 4개소가 증가하였다(<표 I-1-1-1> 참조).

<표 I-1-1-1>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분포

지역구분	2011년 참여기관	2008년 참여기관	증감 (2011-2008)	
전국	59(100.00)	55(100.00)	▲4	
지역	서울	3(5.08)	1(1.82)	▲2
	부산	3(5.08)	2(3.64)	▲1
	대구	3(5.08)	2(3.64)	▲1
	인천	2(3.39)	2(3.64)	-
	광주	4(6.78)	4(7.27)	-
	대전	4(6.78)	4(7.27)	-
	울산	1(1.69)	1(1.82)	-
	경기	6(10.17)	6(10.91)	-
	충북	4(6.78)	4(7.27)	-
	충남	11(18.64)	11(20.00)	-
	전북	4(6.78)	4(7.27)	-
	전남	4(6.78)	4(7.27)	-
	경북	5(8.47)	5(9.09)	-
	경남	4(6.78)	4(7.27)	-
제주	1(1.69)	1(1.82)	-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주체는 전체의 93.22%인 55개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었으며, 4개소(6.78%)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각각 서울과 대구, 경기, 충북지역에 위치하였다. 한편, 시설의 종교적 성향은 기독교적 성향의 시설이 25개소(42.37%)였으며, 종교적 성향이 없는 시설은 25개소(42.37%)였다. 그 외에는 천주교가 6개소(10.17%), 불교 2개소(3.39%), 원불교 1개소(1.69%)로 나타났다(<표 I -1-1-2> 참조).

<표 I -1-1-2> 지역별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지역구분	계	법인유형		종교성향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없다
전국	59 (100.00)	55 (93.22)	4 (6.78)	25 (42.37)	6 (10.17)	2 (3.39)	1 (1.69)	-	25 (42.37)
서울	3 (100.00)	2 (66.67)	1 (33.33)	1 (33.33)	2 (66.67)	-	-	-	-
부산	3 (100.00)	3 (100.00)	-	2 (66.67)	-	-	-	-	1 (33.33)
대구	3 (100.00)	2 (66.67)	1 (33.33)	-	1 (33.33)	-	-	-	2 (66.67)
인천	2 (100.00)	2 (100.00)	-	-	-	-	-	-	2 (100.00)
광주	4 (100.00)	4 (100.00)	-	2 (50.00)	1 (25.00)	-	-	-	1 (25.00)
대전	4 (100.00)	4 (100.00)	-	2 (50.00)	-	-	-	-	2 (50.00)
울산	1 (100.00)	1 (100.00)	-	1 (100.00)	-	-	-	-	-
지역	경기	6 (100.00)	5 (83.33)	1 (16.67)	2 (33.33)	1 (16.67)	-	-	3 (50.00)
충북	4 (100.00)	3 (75.00)	1 (25.00)	2 (50.00)	1 (25.00)	-	-	-	1 (25.00)
충남	11 (100.00)	11 (100.00)	-	6 (54.55)	-	-	-	-	5 (45.45)
전북	4 (100.00)	4 (100.00)	-	1 (25.00)	-	1 (25.00)	1 (25.00)	-	1 (25.00)
전남	4 (100.00)	4 (100.00)	-	2 (50.00)	-	-	-	-	2 (50.00)
경북	5 (100.00)	5 (100.00)	-	2 (40.00)	-	1 (20.00)	-	-	2 (40.00)
경남	4 (100.00)	4 (100.00)	-	1 (25.00)	-	-	-	-	3 (75.00)
제주	1 (100.00)	1 (100.00)	-	1 (100.00)	-	-	-	-	-

제 2 절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1. 생활인 현황

1) 전국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현황

전국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정원은 최소 49명에서 최대 640명으로 평균 241.37명이었으며, 현원은 최소 44명에서 최대 490명으로 평균 197.24명이었다. 입소율은 82.77%로 나타났다(<표 I -2-1-1> 참조).

<표 I -2-1-1>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정원	59	49	640	241.37	106.47	82.77%
현원	59	44	490	197.24	86.66	

※입소율: 정원대비 현원비율을 의미하며, 정원 및 현원의 평균을 통해 계산됨.

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현황

지역별로 정신요양시설의 정원 및 현원을 살펴보면 <표 I -2-1-2>와 같다. 입소율을 기준할 때 광주 93.15%, 충북 92.32%, 전북 85.53%, 충남 85.16%, 대구 84.99%, 울산 84.00%, 대전 83.91%, 제주 83.60%, 경남 82.98%, 서울 80.97%, 전남 79.32%, 경북 78.52%, 부산 77.36%, 경기 75.63%, 인천 67.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I -2-1-2> 참조).

<표 I -2-1-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서울	정원	3	200	640	346.67	254.03	80.97%
	현원	3	184	361	244.67	100.78	
부산	정원	3	150	360	260.00	105.36	77.36%
	현원	3	87	304	211.00	111.77	
대구	정원	3	150	259	222.33	62.64	84.99%
	현원	3	155	196	182.33	23.67	
인천	정원	2	128	194	161.00	46.67	67.09%
	현원	2	84	133	108.50	34.65	
광주	정원	4	120	243	163.75	57.40	93.15%
	현원	4	111	200	150.00	41.58	
대전	정원	4	168	300	243.25	59.35	83.91%
	현원	4	123	252	206.50	61.02	
울산	정원	1	150	150	150.00	.	84.00%
	현원	1	126	126	126.00	.	
경기	정원	6	181	595	312.33	145.46	75.63%
	현원	6	97	459	240.83	121.60	
충북	정원	4	160	400	239.25	109.74	92.32%
	현원	4	113	490	238.50	171.31	
충남	정원	11	49	300	188.00	81.05	85.16%
	현원	11	44	286	158.27	71.26	
전북	정원	4	176	277	233.25	42.75	85.53%
	현원	4	154	223	198.75	31.63	
전남	정원	4	128	463	319.50	156.40	79.32%
	현원	4	115	397	240.75	116.72	
경북	정원	5	210	349	266.20	57.15	78.52%
	현원	5	147	363	211.40	87.79	
경남	정원	4	202	300	240.75	44.95	82.98%
	현원	4	172	237	197.50	28.59	
제주	정원	1	250	250	250.00	.	83.60%
	현원	1	209	209	209.00	.	

※입소율: 정원대비 현원비율을 의미하며, 정원 및 현원의 평균을 통해 계산됨.

2. 종사자 현황

1) 전국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정신요양시설의 법정직원은 최소 18명에서 최대 88명으로 평균 35.44명이었으며, 현재 직원은 최소 16명에서 최대 64명으로 평균 32.53명이었다. 이에 따른 직원충원율은 92.92%로 조사되었다. 각 직종별 종사인력 현황 중 가장 많은 인력구조를 보인 직종은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으로써 평균 14.31명이었으며, 각 시설별로 가장 큰 편차를 보인 인력은 평균 14.31명인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과 평균 6.07명인 간호사였다(<표 I -2-2-1> 참조).

<표 I -2-2-1>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법정 직원 수	59	18	88	35.44	11.22	92.92%
현 직원 수	59	16	64	32.53	10.09	
시설장	59	1	1	1.00	0.00	
사무국장	59	0	1	0.95	0.22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59	0	1	0.86	0.35	
간호사	59	1	26	6.07	3.76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59	4	40	14.31	6.88	
영양사	59	0	1	0.98	0.13	
사무원	59	0	2	1.36	0.52	
전문요원	59	0	2	1.31	0.68	
작업지도원	59	0	1	0.92	0.28	
조리원	59	2	6	2.75	0.88	
위생원	59	0	5	1.03	0.56	
관리인	59	0	2	1.10	0.36	
기타	59	0	5	0.41	0.98	

※충원율: 법정직원대비 현직원 비율을 의미하며, 법정 직원 수 및 현직원수의 평균치를 통해 계산됨.

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각 지역별로 정신요양시설의 법정직원 및 현 직원, 법정직원대비 현 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표 I -2-2-2>와 같다.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인 곳은 제주로 38명의 법정직원과 43명의 현 직원으로 나타나 113.16%의 직원 충원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평균 35.33명의 법정직원과 평균 37.33명의 현직원이 충원되어 104.77%의 충원율을 보인 경기도 나타났다. 그 외에 각 지역별로 직원 충원율을 보면 부산 102.30%, 경남 101.24%, 경북 98.87%, 대전 97.23%, 서울 95.32%, 인천 95.05%, 전북 94.78%, 전남 91.46%, 충남 88.01%, 대구 83.81%, 충북 79.50%, 울산 79.31%, 광주 76.8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I -2-2-2> 참조).

<표 I -2-2-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서울	법정 직원 수	3	33	50	41.33	8.50	95.32%
	현 직원 수	3	34	50	39.33	9.24	
	시설장	3	1	1	1.00	0.00	
	사무국장	3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3	1	1	1.00	0.00	
	간호사	3	6	10	7.33	2.31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3	14	25	18.00	6.08	
	영양사	3	1	1	1.00	0.00	
	사무원	3	1	2	1.33	0.58	
	전문요원	3	1	2	1.33	0.58	
	작업지도원	3	1	1	1.00	0.00	
	조리원	3	3	4	3.33	0.58	
	위생원	3	1	1	1.00	0.00	
	관리인	3	1	2	1.33	0.58	
기타	3	0	1	0.67	0.58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부산	법정 직원 수	3	19	42	33.00	12.29	102.30%
	현 직원 수	3	19	46	34.00	13.75	
	시설장	3	1	1	1.00	0.00	
	사무국장	3	0	1	0.67	0.58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3	1	1	1.00	0.00	
	간호사	3	2	9	6.67	4.04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3	7	21	14.33	7.02	
	영양사	3	1	1	1.00	0.00	
	사무원	3	1	2	1.33	0.58	
	전문요원	3	1	1	1.00	0.00	
	작업지도원	3	1	1	1.00	0.00	
	조리원	3	2	3	2.67	0.58	
	위생원	3	1	1	1.00	0.00	
	관리인	3	1	2	1.67	0.58	
기타	3	0	2	0.67	1.15		
대구	법정 직원 수	3	24	38	32.00	7.21	83.81%
	현 직원 수	3	21	31	26.67	5.13	
	시설장	3	1	1	1.00	0.00	
	사무국장	3	0	1	0.67	0.58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3	0	1	0.67	0.58	
	간호사	3	3	6	4.67	1.53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3	9	14	12.33	2.89	
	영양사	3	0	1	0.67	0.58	
	사무원	3	1	1	1.00	0.00	
	전문요원	3	0	0	0.00	0.00	
	작업지도원	3	0	0	0.00	0.00	
	조리원	3	2	2	2.00	0.00	
	위생원	3	0	1	0.33	0.58	
	관리인	3	0	1	0.67	0.58	
기타	3	2	4	2.67	1.15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인천	법정 직원 수	2	18	23	20.50	3.54	95.05%
	현 직원 수	2	17	22	19.50	3.54	
	시설장	2	1	1	1.00	0.00	
	사무국장	2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2	1	1	1.00	0.00	
	간호사	2	2	3	2.50	0.71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2	5	8	6.50	2.12	
	영양사	2	1	1	1.00	0.00	
	사무원	2	1	1	1.00	0.00	
	전문요원	2	1	2	1.50	0.71	
	작업지도원	2	1	1	1.00	0.00	
	조리원	2	2	2	2.00	0.00	
	위생원	2	1	1	1.00	0.00	
	관리인	2	1	1	1.00	0.00	
	기타	2	0	0	0.00	0.00	
광주	법정 직원 수	4	29	42	32.75	6.18	76.85%
	현 직원 수	4	22	30	25.00	3.56	
	시설장	4	1	1	1.00	0.00	
	사무국장	4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3	6	4.25	1.26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4	8	12	9.50	1.91	
	영양사	4	1	1	1.00	0.00	
	사무원	4	1	1	1.00	0.00	
	전문요원	4	1	1	1.00	0.00	
	작업지도원	4	1	1	1.00	0.00	
	조리원	4	2	2	2.00	0.00	
	위생원	4	1	1	1.00	0.00	
	관리인	4	1	2	1.25	0.50	
	기타	4	0	0	0.00	0.00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대전	법정 직원 수	4	26	41	35.25	6.90	97.23%
	현 직원 수	4	25	40	34.00	6.98	
	시설장	4	1	1	1.00	0.00	
	사무국장	4	0	1	0.75	0.5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4	9	6.50	2.38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4	9	19	15.25	4.79	
	영양사	4	1	1	1.00	0.00	
	사무원	4	1	1	1.00	0.00	
	전문요원	4	2	2	2.00	0.00	
	작업지도원	4	0	1	0.75	0.50	
	조리원	4	2	3	2.75	0.50	
	위생원	4	1	1	1.00	0.00	
	관리인	4	1	1	1.00	0.00	
	기타	4	0	0	0.00	0.00	
울산	법정 직원 수	1	29	29	29.00	.	79.31%
	현 직원 수	1	23	23	23.00	.	
	시설장	1	1	1	1.00	.	
	사무국장	1	1	1	1.00	.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3	3	3.00	.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1	9	9	9.00	.	
	영양사	1	1	1	1.00	.	
	사무원	1	1	1	1.00	.	
	전문요원	1	2	2	2.00	.	
	작업지도원	1	1	1	1.00	.	
	조리원	1	2	2	2.00	.	
	위생원	1	1	1	1.00	.	
	관리인	1	1	1	1.00	.	
	기타	1	0	0	0.00	.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경기	법정 직원 수	6	19	52	35.33	10.63	104.77%
	현 직원 수	6	20	63	37.33	14.28	
	시설장	6	1	1	1.00	0.00	
	사무국장	6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6	0	1	0.17	0.41	
	간호사	6	3	14	7.33	3.67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6	6	33	15.83	9.35	
	영양사	6	1	1	1.00	0.00	
	사무원	6	2	2	2.00	0.00	
	전문요원	6	1	2	1.50	0.55	
	작업지도원	6	1	1	1.00	0.00	
	조리원	6	2	6	3.17	1.47	
	위생원	6	1	1	1.00	0.00	
	관리인	6	1	1	1.00	0.00	
	기타	6	0	0	0.00	0.00	
충북	법정 직원 수	4	28	88	48.25	27.04	79.50%
	현 직원 수	4	23	64	37.50	18.34	
	시설장	4	1	1	1.00	0.00	
	사무국장	4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3	26	9.50	11.09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4	9	40	18.75	14.38	
	영양사	4	1	1	1.00	0.00	
	사무원	4	1	2	1.75	0.50	
	전문요원	4	1	2	1.75	0.50	
	작업지도원	4	1	1	1.00	0.00	
	조리원	4	2	6	3.50	1.73	
	위생원	4	1	5	2.00	2.00	
	관리인	4	1	2	1.25	0.50	
	기타	4	0	0	0.00	0.00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충남	법정 직원 수	11	19	52	33.18	9.60	88.01%
	현 직원 수	11	16	41	28.91	7.85	
	시설장	11	1	1	1.00	0.00	
	사무국장	11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11	1	1	1.00	0.00	
	간호사	11	1	8	4.55	2.34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11	4	21	12.27	5.26	
	영양사	11	1	1	1.00	0.00	
	사무원	11	1	2	1.09	0.30	
	전문요원	11	0	2	0.91	0.54	
	작업지도원	11	0	1	0.91	0.30	
	조리원	11	2	5	2.64	0.92	
	위생원	11	1	1	1.00	0.00	
	관리인	11	1	1	1.00	0.00	
	기타	11	0	5	0.55	1.51	
전북	법정 직원 수	4	31	45	39.25	6.95	94.78%
	현 직원 수	4	32	39	36.25	3.10	
	시설장	4	1	1	1.00	0.00	
	사무국장	4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6	8	6.75	0.96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4	12	16	14.75	1.89	
	영양사	4	1	1	1.00	0.00	
	사무원	4	2	2	2.00	0.00	
	전문요원	4	2	2	2.00	0.00	
	작업지도원	4	1	1	1.00	0.00	
	조리원	4	3	3	3.00	0.00	
	위생원	4	1	1	1.00	0.00	
	관리인	4	1	1	1.00	0.00	
	기타	4	0	2	0.75	0.96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전남	법정 직원 수	4	23	48	40.25	11.59	91.46%
	현 직원 수	4	23	53	36.25	12.74	
	시설장	4	1	1	1.00	0.00	
	사무국장	4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4	14	7.75	4.50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4	6	28	19.00	10.89	
	영양사	4	1	1	1.00	0.00	
	사무원	4	1	2	1.50	0.58	
	전문요원	4	0	2	1.25	0.96	
	작업지도원	4	1	1	1.00	0.00	
	조리원	4	2	3	2.75	0.50	
	위생원	4	1	1	1.00	0.00	
	관리인	4	1	1	1.00	0.00	
	기타	4	0	0	0.00	0.00	
경북	법정 직원 수	5	27	52	34.20	10.13	98.87%
	현 직원 수	5	26	51	33.80	9.88	
	시설장	5	1	1	1.00	0.00	
	사무국장	5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5	1	1	1.00	0.00	
	간호사	5	4	11	6.00	2.83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5	11	27	15.20	6.65	
	영양사	5	1	1	1.00	0.00	
	사무원	5	0	2	1.20	0.84	
	전문요원	5	0	2	1.40	0.89	
	작업지도원	5	1	1	1.00	0.00	
	조리원	5	2	4	3.00	0.71	
	위생원	5	1	1	1.00	0.00	
	관리인	5	1	1	1.00	0.00	
	기타	5	0	0	0.00	0.00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경남	법정 직원 수	4	25	45	33.25	9.54	101.24%
	현 직원 수	4	29	36	31.75	2.99	
	시설장	4	1	1	1.00	0.00	
	사무국장	4	1	1	1.00	0.00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4	7	5.75	1.26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4	12	16	13.00	2.00	
	영양사	4	1	1	1.00	0.00	
	사무원	4	1	2	1.50	0.58	
	전문요원	4	1	2	1.25	0.50	
	작업지도원	4	1	1	1.00	0.00	
	조리원	4	2	3	2.50	0.58	
	위생원	4	1	1	1.00	0.00	
	관리인	4	1	2	1.50	0.58	
	기타	4	0	1	0.25	0.50	
제주	법정 직원 수	1	38	38	38.00	.	113.16%
	현 직원 수	1	43	43	43.00	.	
	시설장	1	1	1	1.00	.	
	사무국장	1	1	1	1.00	.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1	0	0	0.00	.	
	간호사	1	8	8	8.00	.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1	21	21	21.00	.	
	영양사	1	1	1	1.00	.	
	사무원	1	1	1	1.00	.	
	전문요원	1	2	2	2.00	.	
	작업지도원	1	1	1	1.00	.	
	조리원	1	3	3	3.00	.	
	위생원	1	1	1	1.00	.	
	관리인	1	1	1	1.00	.	
	기타	1	2	2	2.00	.	

※충원율: 법정직원대비 현직원비율을 의미하며, 법정직원수 및 현직원수의 평균치를 통해 계산됨.

3. 자격증 소지현황

1) 전국 정신요양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는 평균 40.10명이었다. 이는 <표 I-2-2-1>의 평균 32.04명인 현 직원과 비교할 때 122.27%의 자격증 소지율을 보이는 수치이다.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평균 11.85명의 사회복지사 2급으로 나타났다(<표 I-2-3-1> 참조).

<표 I-2-3-1> 정신요양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단위: 명

자격증 소지자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총 자격증 소지자	59	10.00	140.00	40.10	21.00	122.27%
사회복지사	1급	59	0	16	4.76	3.55
	2급	59	2	26	11.85	5.64
정신과전문의	59	0	1	0.83	0.38	
간호사	59	1	18	5.93	3.62	
영양사	59	0	3	1.07	0.37	
정신보건전문요원	59	0	14	2.85	2.39	
작업치료사	59	0	1	0.02	0.13	
기타자격	59	0	106	12.80	16.59	

※소지율: <표 I-2-2-1>의 현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을 의미함.

※교사: 특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포함함.

※1인 다수 자격증 모두 인정함.

※기타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함.

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각 지역별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59.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 156.18%, 제주 132.00%, 경북 130.40%, 울산 127.00%, 충북 124.50%, 서울 118.00%, 경남 117.25%, 경기 110.17%, 대전 109.75%, 광주 108.25%, 전북 104.25%, 인천 98.50%, 대구 80.00%, 부산 79.3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2-3-2> 참조).

<표 I-2-3-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서울	총 자격증 소지자	3	34	82	50.67	27.15	118.00%
	사회복지사	1급	3	3	6	4.33	1.53
		2급	3	12	21	16.67	4.51
	정신과전문의	3	1	1	1.00	0.00	
	간호사	3	3	18	8.67	8.14	
	영양사	3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3	2	3	2.33	0.58	
	작업치료사	3	0	0	0.00	0.00	
	기타자격	3	4	35	16.67	16.26	
	총 자격증 소지자	3	16	50	33.00	17.00	79.33%
부산	사회복지사	1급	3	1	15	7.33	7.09
		2급	3	5	7	6.33	1.15
	정신과전문의	3	0	1	0.67	0.58	
	간호사	3	1	10	6.67	4.93	
	영양사	3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3	1	7	4.33	3.06	
	작업치료사	3	0	0	0.00	0.00	
	기타	3	3	13	6.67	5.51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대구	총 자격증 소지자	3	22	39	29.00	8.89	80.00%
	사회복지사	1급	3	0	7	4.00	3.61
		2급	3	5	12	9.33	3.79
	정신과전문의	3	0	1	0.67	0.58	
	간호사	3	3	4	3.67	0.58	
	영양사	3	0	1	0.67	0.58	
	정신보건 전문요원	3	0	3	1.33	1.53	
	작업치료사	3	0	0	0.00	0.00	
	기타	3	8	11	9.33	1.53	
	총 자격증 소지자	2	19	32	25.50	9.19	98.50%
인천	사회복지사	1급	2	5	8	6.50	2.12
		2급	2	3	5	4.00	1.41
	정신과전문의	2	1	1	1.00	0.00	
	간호사	2	2	2	2.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2	1	2	1.50	0.71	
	작업치료사	2	0	0	0.00	0.00	
	기타	2	2	17	9.50	10.61	
광주	총 자격증 소지자	4	29	45	34.00	7.44	108.25%
	사회복지사	1급	4	4	16	10.25	4.92
		2급	4	2	8	4.75	2.75
	정신과전문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3	6	4.50	1.29	
	영양사	4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4	2	14	6.00	5.42	
	작업치료사	4	0	0	0.00	0.00	
기타	4	2	12	6.50	4.12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대전	총 자격증 소지자	4	29	45	36.25	6.90	109.75%
	사회복지사	1급	4	1	6	3.25	2.22
		2급	4	9	20	13.00	4.97
	정신과전문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5	16	9.50	4.80	
	영양사	4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4	3	5	4.00	0.82	
	작업치료사	4	0	0	0.00	0.00	
	기타	4	2	9	4.50	3.11	
	울산	총 자격증 소지자	1	22	22	22.00	.
사회복지사		1급	1	3	3	3.00	.
		2급	1	10	10	10.00	.
정신과전문의		1	0	0	0.00	.	
간호사		1	4	4	4.00	.	
영양사		1	1	1	1.00	.	
정신보건 전문요원		1	2	2	2.00	.	
작업치료사		1	0	0	0.00	.	
기타		1	2	2	2.00	.	
경기		총 증 소지자	6	13	51	36.50	14.53
	사회복지사	1급	6	3	8	5.17	1.72
		2급	6	4	15	11.17	3.97
	정신과전문의	6	0	1	0.17	0.41	
	간호사	6	3	12	6.50	3.73	
	영양사	6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6	1	10	3.50	3.51	
	작업치료사	6	0	0	0.00	0.00	
	기타	6	0	17	9.00	5.93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충북	총 자격증 소지자	4	12	48	31.50	14.89	124.50%
	사회복지사	1급	4	0	10	5.25	4.11
		2급	4	5	14	10.25	3.86
	정신과전문의	4	0	1	0.75	0.50	
	간호사	4	4	9	6.50	2.38	
	영양사	4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4	1	4	2.75	1.50	
	작업치료사	4	0	0	0.00	0.00	
	기타	4	0	13	5.00	5.72	
	총 자격증 소지자	11	10	140	39.55	34.55	156.18%
충남	사회복지사	1급	11	1	5	2.73	1.35
		2급	11	3	19	11.18	5.25
	정신과전문의	11	1	1	1.00	0.00	
	간호사	11	1	11	4.55	3.01	
	영양사	11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11	0	3	1.45	1.04	
	작업치료사	11	0	0	0.00	0.00	
	기타	11	0	106	17.64	29.59	
총 자격증 소지자	4	44	98	59.50	25.79	104.25%	
전북	사회복지사	1급	4	3	8	4.75	2.22
		2급	4	15	24	18.75	4.50
	정신과전문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4	5	4.50	0.58	
	영양사	4	1	3	2.00	0.82	
	정신보건 전문요원	4	3	6	4.75	1.26	
	작업치료사	4	0	0	0.00	0.00	
	기타	4	7	66	23.75	28.24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전남	총 자격증 소지자	4	30	66	43.00	16.12	159.75%
	사회복지사	1급	4	3	14	6.00	5.35
		2급	4	12	26	17.75	5.91
	정신과전문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5	11	7.75	2.75	
	영양사	4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4	1	4	2.50	1.29	
	작업치료사	4	0	0	0.00	0.00	
	기타	4	0	14	7.00	5.94	
	경북	총 자격증 소지자	5	27	69	51.60	18.35
사회복지사		1급	5	2	4	3.00	1.00
		2급	5	9	26	14.40	7.02
정신과전문의		5	1	1	1.00	0.00	
간호사		5	2	13	6.20	4.66	
영양사		5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5	1	4	2.00	1.22	
작업치료사		5	0	1	0.20	0.45	
기타		5	7	43	23.80	13.31	
경남		총 자격증 소지자	4	27	60	43.50	14.20
	사회복지사	1급	4	2	5	2.75	1.50
		2급	4	11	14	12.25	1.50
	정신과전문의	4	1	1	1.00	0.00	
	간호사	4	3	9	6.00	2.58	
	영양사	4	1	1	1.00	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4	1	5	2.00	2.00	
	작업치료사	4	0	0	0.00	0.00	
	기타	4	8	26	18.50	8.58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제주	총 자격증 소지자	1	52	52	52.00	.	132.00%
	사회복지사	1급	1	13	13	13.00	.
		2급	1	15	15	15.00	.
	정신과전문의	1	0	0	0.00	.	
	간호사	1	10	10	10.00	.	
	영양사	1	2	2	2.00	.	
	정신보건 전문요원	1	4	4	4.00	.	
	작업치료사	1	0	0	0.00	.	
	기타	1	8	8	8.00	.	

※소지율: <표 I -2-2-2>의 현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을 의미함.
 ※교사: 특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포함함.
 ※1인 다수 자격증 모두 인정함.
 ※기타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함.

제 3 절 재정 현황

1. 전국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의 세입총액은 평균 2,076,206천원이었으며, 세출총액은 평균 2,034,822천원으로 나타났는데,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각 시설별로 세입과 세출금액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인건비의 총액은 평균 1,118,663천원이었으며, 프로그램은 28,726천원, 관리운영비 183,855천원, 시설개선/장비구입 333,801천원, 생계비 302,805천원, 기타 67,963천원이었다 (<표 I -3-1-1> 참조).

<표 I -3-1-1>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단위: 천원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세입 총액	59	699,025	4,114,930	2,076,206	838,540
세출 총액	59	648,205	4,114,905	2,034,822	840,318
인건비 총액	59	497,501	1,958,421	1,118,663	354,024
프로그램비 총액	59		85,484	28,726	19,574
관리운영비 총액	59	73,463	654,700	183,855	96,975
시설개선/장비구입	59		2,615,829	333,801	546,179
생계비	59	60,866	933,122	302,805	152,657
기타	57		441,276	67,963	89,219

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표 I -3-1-2>를 통해 각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재정현황을 비교해보면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타난 지역은 전북(4개소)로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의 평균이 모두 2,559,016천원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세입 총액 및 세출 총액을 보인 지역은 울산(1개소)으로 세입과 세출 총액이 모두 1,259,810천원이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입지시설이 1개소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인건비 총액의 경우 제주(1개소)가 평균 1,487,411천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소요했으며, 인천(2개소)이 652,588천원으로 가장 작은 금액을 보였다.

프로그램 비 총액은 평균 69,100천원의 서울(3개소)이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고, 경남(4개소)이 평균 12,452천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관리운영비 총액에서는 경북(5개소)이 평균 273,211천원, 울산(1개소)이 98,520천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시설개선/장비구입 총액은 평균 813,988천원의 대구(3개소)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던 반면 울산(1개소)이 3,525천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생계비 총액은 평균 454,758천원의 경기(6개소)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고, 인천(2개소)이 평균 195,457천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비용 총액은 평균 202,028천원의 서울(3개소)이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던 반면 울산(1개소)가 4,650천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표 I -3-1-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재정 현황

※단위: 천원

지역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서울	세입 총액	3	1,807,454	3,462,637	2,402,302	920,552
	세출 총액	3	1,807,454	3,462,637	2,402,302	920,552
	인건비총액	3	1,018,165	1,958,421	1,337,941	537,436
	프로그램 비 총액	3	59,853	77,809	69,100	8,990
	관리운영비 총액	3	156,658	323,532	243,021	83,591
	시설개선/장비구입	3	55,458	364,164	174,113	166,276
	생계비	3	308,370	508,494	376,099	114,668
	기타	3	176,705	230,216	202,028	26,870
	부산	세입 총액	3	898,807	2,980,255	1,999,595
세출 총액		3	898,807	2,980,255	1,999,595	1,045,911
인건비 총액		3	589,699	1,675,332	1,200,948	555,607
프로그램 비 총액		3	11,496	26,531	16,868	8,386
관리운영비 총액		3	85,021	449,568	223,029	197,742
시설개선/장비구입		3	2,123	349,015	132,539	188,781
생계비		3	94,264	444,629	278,259	175,846
기타		3	49,138	278,522	147,955	117,942
대구		세입 총액	3	979,126	3,074,031	2,257,211
	세출 총액	3	979,126	3,009,335	2,235,645	1,097,852
	인건비 총액	3	545,311	1,189,014	894,662	325,357
	프로그램 비 총액	3	7,063	29,289	16,158	11,650
	관리운영비 총액	3	109,626	211,922	156,535	51,673
	시설개선/장비구입	3	9,730	1,237,605	813,988	696,839
	생계비	3	235,087	337,823	273,528	56,035
	기타	3	3,681	215,333	80,101	117,445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인천	세입 총액	2	1,194,900	3,081,845	2,138,372	1,334,272
	세출 총액	2	887,473	2,238,958	1,563,216	955,645
	인건비 총액	2	567,703	737,474	652,588	120,047
	프로그램 비 총액	2	21,856	41,087	31,472	13,598
	관리운영비 총액	2	85,242	140,677	112,960	39,199
	시설개선/장비구입	2	30,913	1,087,009	558,961	746,772
	생계비	2	161,359	229,554	195,457	48,221
	기타	2	3,157	20,399	11,778	12,192
광주	세입 총액	4	1,058,355	1,762,966	1,376,120	298,607
	세출 총액	4	1,039,563	1,693,070	1,344,889	276,622
	인건비 총액	4	724,966	1,107,071	863,811	168,246
	프로그램 비 총액	4	7,018	41,145	25,436	14,032
	관리운영비 총액	4	82,121	167,177	122,399	35,064
	시설개선/장비구입	4	27,946	296,830	105,659	128,055
	생계비	4	163,781	301,546	217,014	65,489
	기타	3	1,765	31,569	13,760	15,729
대전	세입 총액	4	1,843,521	2,224,403	2,025,211	158,874
	세출 총액	4	1,843,521	2,203,505	2,015,616	152,101
	인건비 총액	4	851,982	1,470,440	1,223,725	278,543
	프로그램 비 총액	4	18,983	78,956	39,630	27,102
	관리운영비 총액	4	76,065	272,481	192,475	89,269
	시설개선/장비구입	4	7,187	757,107	221,327	358,110
	생계비	4	186,589	400,118	294,515	88,531
	기타	3	53,441	64,301	58,591	5,451
울산	세입 총액	1	1,259,810	1,259,810	1,259,810	.
	세출 총액	1	1,259,810	1,259,810	1,259,810	.
	인건비 총액	1	826,250	826,250	826,250	.
	프로그램 비 총액	1	21,884	21,884	21,884	.
	관리운영비 총액	1	98,520	98,520	98,520	.
	시설개선/장비구입	1	3,525	3,525	3,525	.
	생계비	1	268,981	268,981	268,981	.
	기타	1	4,650	4,650	4,650	.
경기	세입 총액	6	1,608,048	3,802,248	2,503,756	972,495
	세출 총액	6	1,512,291	3,802,248	2,487,210	991,373
	인건비 총액	6	639,497	1,777,626	1,176,500	390,597
	프로그램 비 총액	6	18,267	56,981	34,418	14,584
	관리운영비 총액	6	148,781	340,315	228,260	64,461
	시설개선/장비구입	6	59,484	1,813,350	514,826	677,437
	생계비	6	143,302	933,122	454,758	270,601
	기타	6	335	175,692	78,449	69,644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북	세입 총액	4	1,213,767	3,443,999	1,983,835	1,003,125
	세출 총액	4	1,213,767	3,443,999	1,945,887	1,029,160
	인건비 총액	4	828,640	1,872,299	1,207,102	478,828
	프로그램 비 총액	4	-	48,808	27,385	20,228
	관리운영비 총액	4	73,463	257,582	156,074	82,415
	시설개선/장비구입	4	-	80,103	40,477	33,888
	생계비	4	185,512	824,034	364,170	308,473
	기타	4	31,016	441,276	152,293	194,323
충남	세입 총액	11	699,025	4,046,459	1,856,172	915,908
	세출 총액	11	648,205	4,046,459	1,803,850	917,167
	인건비 총액	11	497,501	1,446,113	969,378	289,130
	프로그램 비 총액	11	4,852	28,418	18,026	7,016
	관리운영비 총액	11	78,066	229,049	142,069	57,596
	시설개선/장비구입	11	2,120	2,615,829	419,686	776,006
	생계비	11	60,866	442,969	224,418	109,349
	기타	11	893	137,463	30,271	45,799
전북	세입 총액	4	1,889,885	3,826,004	2,559,016	887,948
	세출 총액	4	1,889,885	3,826,004	2,559,016	887,948
	인건비 총액	4	1,162,910	1,314,661	1,264,611	71,309
	프로그램 비 총액	4	19,457	41,953	32,627	9,633
	관리운영비 총액	4	116,568	214,262	171,023	40,407
	시설개선/장비구입	4	69,240	1,915,428	731,357	872,300
	생계비	4	233,281	355,146	292,307	56,221
	기타	4	22,659	92,532	67,091	31,684
전남	세입 총액	4	1,056,163	4,114,930	2,296,802	1,299,184
	세출 총액	4	1,056,163	4,114,905	2,269,884	1,304,724
	인건비 총액	4	741,266	1,844,337	1,308,928	454,547
	프로그램 비 총액	4	4,306	45,158	33,351	19,446
	관리운영비 총액	4	123,940	211,135	162,371	36,165
	시설개선/장비구입	4	25,000	1,431,153	388,678	695,350
	생계비	4	202,289	587,494	379,472	161,379
	기타	4	-	21,989	8,051	9,720
경북	세입 총액	5	1,501,092	3,419,962	2,110,260	760,826
	세출 총액	5	1,501,092	3,419,963	2,110,260	760,826
	인건비 총액	5	933,216	1,887,821	1,187,493	396,768
	프로그램 비 총액	5	5,759	85,484	33,145	34,168
	관리운영비 총액	5	119,614	654,700	273,211	218,549
	시설개선/장비구입	5	56,983	447,531	211,269	169,184
	생계비	5	247,930	467,243	317,813	94,938
	기타	5	12,000	244,691	69,579	99,154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남	세입 총액	4	1,721,455	2,243,247	1,882,094	242,890
	세출 총액	4	1,708,388	2,243,247	1,862,825	255,419
	인건비 총액	4	1,100,320	1,493,934	1,237,327	180,296
	프로그램 비 총액	4	4,273	24,286	12,452	8,859
	관리운영비 총액	4	170,580	278,087	221,889	50,120
	시설개선/장비구입	4	22,381	62,175	40,609	17,916
	생계비	4	260,427	309,907	282,686	20,404
	기타	4	1,020	216,665	67,863	101,857
	제주	세입 총액	1	2,498,218	2,498,218	2,498,218
세출 총액		1	2,446,243	2,446,243	2,446,243	.
인건비 총액		1	1,487,411	1,487,411	1,487,411	.
프로그램 비 총액		1	49,598	49,598	49,598	.
관리운영비 총액		1	251,936	251,936	251,936	.
시설개선/장비구입		1	336,626	336,626	336,626	.
생계비		1	315,080	315,080	315,080	.
기타		1	5,592	5,592	5,592	.

제 4 절 시설 구조 및 규모

1. 전국 정신요양시설 구조 및 규모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의 대지면적은 평균 11,762.81㎡로 나타났는데 작게는 766.00㎡에서 크게는 65,767.00㎡로 시설 간 대지면적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이었다. 마찬가지로 건물면적은 평균 143,483.06㎡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최소 355.70㎡에서 최대 6,321,245.00㎡로써 각 시설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국 정신요양시설의 각 실(室)별 개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침실은 최소 3개에서 최대 82개로 평균 33.53개의 침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최소 185.96㎡에서 최대 2,563.67㎡로 평균 841.29㎡였다. 거실은 평균 3.22개로 최소 0개에서 최대 8개까지 나타났고, 면적은 거실이 없기 때문에 최소 0㎡에서 최대 1,037.70㎡로 평균 283.63㎡였다. 사무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로 평균 3.92개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의 면적은 최소 8.10㎡에서 최대 349.37㎡로 평균 131.74㎡로 나타났다. 의무실의 경우 평균 1.68개로 나타났는데 최소 0개에서 최대 6개까지 시설간의 차이를 보였고, 면적으로는 최소 8.88㎡에서 최대 1,729.00㎡까지 평균 70.39㎡였다. 상담실 및 면회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8개였고 평균 3.31개로 조사되었다. 상담실 및 면회실의 면적은 최소 8.00㎡에서 최대 299.18㎡로 평균 68.31㎡의 넓이를 보였다. 평균 2.47개의 휴게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휴게실이 없는 시설에서 최대 10개의 휴게실을 보유한 시설까지 다양하였다. 휴게실의 면적은 평균 115.50㎡로써 최소 10.03㎡에서 최대 720.00㎡의 넓이로 나타났다. 조리실은 평균 1.48개였는데, 1개에서 6개까지 시설마다 다양하게 나타났고, 면적 또한 59.28㎡에서 789.80㎡까지 평균 301.10㎡였다. 목욕탕의 경우는 최소 0개에서 최대 10개가 보유되었으며, 평균 3.25개였다. 목욕탕의 면적은 평균 146.91㎡로 0㎡에서 735.97㎡까지 시설마다 차이가 발생하였다. 세탁장은 최소 0개에서 최대 6개로 평균 1.27개였으며, 면적은 최소 0㎡에서 최대 428.00㎡로 평균 63.57㎡였다. 건조장은 평균 1.16개가 보유되었고, 면적은 평균 169.03㎡였다.

0개에서 4개까지 시설마다 편차가 적었으나, 면적에서는 0㎡에서 1,010.46㎡로 시설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화장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81개로 평균 13.03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면적은 33.84㎡에서 742.33㎡로 평균 168.77㎡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실은 전혀 없는 시설부터 최대 13개로 평균 3.84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0㎡에서 2,007.00㎡로 평균 474.08㎡가 확보되었다. 기타 공간은 평균 7.35개였는데 최소 0개에서 최대 53개의 공간이 보유되어 있었고, 최소 0㎡에서 최대 2,442.67㎡로 평균 743.61㎡의 규모가 확보되어 각 시설마다 기타 공간에 대한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I-4-1-1> 참조).

<표 I-4-1-1> 전국 정신요양시설 규모

※단위: 개(개수), m²(면적)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지면적	58	766.00	65,767.00	11,762.81	10,656.75	
건물	59	355.70	6,321,245.00	143,483.06	856,458.99	
침실	개수	58	3.00	82.00	33.53	14.72
	면적	58	185.96	2,563.67	841.29	458.84
거실	개수	59	0.00	8.00	3.22	2.18
	면적	58	0.00	1,037.70	283.63	253.46
사무실	개수	59	1.00	12.00	3.92	2.47
	면적	58	8.10	349.37	131.74	71.46
의무실	개수	59	0.00	6.00	1.68	1.21
	면적	56	8.88	1,729.00	70.39	227.31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58	1.00	8.00	3.31	1.55
	면적	57	8.00	299.18	68.31	47.77
휴게실	개수	59	0.00	10.00	2.47	1.86
	면적	56	10.03	720.00	115.50	149.19
조리실 및 식당	개수	58	1.00	6.00	1.48	0.98
	면적	58	59.28	789.80	301.10	132.64
목욕탕	개수	59	0.00	10.00	3.25	2.50
	면적	58	0.00	735.97	146.91	120.32
세탁장	개수	59	0.00	6.00	1.27	1.03
	면적	58	0.00	428.00	63.57	70.10
건조장	개수	56	0.00	4.00	1.16	0.80
	면적	54	0.00	1,010.46	169.03	193.55
화장실	개수	59	1.00	81.00	13.03	12.02
	면적	57	33.84	742.33	168.77	102.91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58	0.00	13.00	3.84	3.02
	면적	58	0.00	2,007.00	474.08	389.06
기타	개수	46	0.00	53.00	7.35	9.83
	면적	57	0.00	2,442.67	743.61	656.02

※무응답 시설 제외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조사됨.

* 각 항목별 개수와 면적의 시설수가 다르게 응답되었기 때문에 각 실(室)이 최소 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응답에 따라 면적의 값이 나올 수 있음

2.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구조 및 규모

각 지역별로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규모에 대해 비교해보면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충북(4개소)이 평균 23,665.75㎡로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평균 20,304.50㎡의 대지면적을 확보한 인천(2개소), 평균 17,218.00㎡의 대구(3개소), 14,294.00㎡의 서울(2개소), 평균 13,212.33㎡와 평균 12,730.50㎡의 대지면적을 응답한 경기(6개소)와 광주(4개소) 등이 비교적 정신요양시설의 대지면적이 넓은 지역이었다. 반면, 평균 6,803.02㎡의 부산(3개소)과 6,549.00㎡의 경남(4개소)은 상대적으로 정신요양시설의 대지면적이 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건물에서는 평균 1,582,323.95㎡로 대전(4개소)이 가장 넓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평균 490,780.02㎡의 전남(4개소)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2개소)이 1,693.05㎡로 건물면적이 가장 좁았다. 나머지 지역의 정신요양시설들은 전북(4개소), 제주(1개소), 충북(4개소)이 각각 4505.12㎡, 4,292.86㎡, 4,200.38㎡로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였고 전반적으로 2,600~3,600㎡ 정도의 수준으로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각 실(室)별로 비교해보면 침실의 경우, 개수에서는 전남(4개소)과 제주(1개소)가 각각 평균 47.50개, 43개로 가장 많은 침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충북(4개소), 경기(6개소)이 각각 평균 1,161.68㎡, 평균 1,086.97㎡로 침실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정신요양시설이 입지하고 있었다.

거실은 제주(1개소) 및 충북(4개소)이 각각 평균 8개와 평균 5.25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577.01㎡의 서울(3개소), 평균 519.93㎡의 충북(4개소), 평균 424.87㎡의 전북(4개소)이 각각 거실의 면적이 넓은 편이었다.

사무실은 제주(1개소)와 경기(6개소)가 각각 평균 7개와 5.83개로 가장 많은 실 개수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주(1개소)가 259.29㎡로 상대적으로 가장

넓은 사무실이 유지되고 있었다.

의무실은 제주(1개소), 충북(4개소)이 각각 평균 3개, 2.50개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대구(3개소)가 평균 595.17㎡로 가장 넓었다. 상담실 및 면회실은 제주(1개소)가 5개, 경남(4개소)이 평균 4.50개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은 평균 159.60㎡의 전남(3개소)이 가장 넓은 상담실 및 면회실을 가지고 있었다.

휴게실에 대해서는 경북(5개소), 경기(6개소), 부산(2개소)이 각각 평균 4.40개, 3.67개 3.00개의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구(3개소)의 휴게실이 평균 244.33㎡로 가장 넓었다. 또한 경기(5개소) 역시 평균 228.67㎡의 넓은 휴게실이 확보되어 있었다.

조리실 및 식당은 인천(2개소)과 광주(4개소)에서 각각 평균 3.50개, 2.75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제주(1개소)에서 417.90㎡로 가장 넓은 조리실이 운영되었다.

가장 많은 목욕탕이 확보된 지역은 제주(1개소)가 9개로 가장 많이 있었고 다음으로 광주(4개소)와 울산(1개소)이 각각 평균 5.25개, 5.00개로 많이 있었으며, 대구(3개소)와 경북(5개소)에서는 각각 평균 266.66㎡와 평균 191.54㎡로 목욕탕 넓이가 가장 넓었다.

세탁장의 경우는 광주(4개소)와 경남(4개소)이 각각 평균 2.00개로 가장 많았고, 전북(4개소)이 186.58㎡로 가장 넓은 세탁장을 확보하고 있었다.

건조장은 대전(4개소)에 평균 2.00개의 건조장 및 평균 면적 405.97㎡로 가장 많고 넓게 확보되어 있었다.

화장실은 제주(1개소)에 가장 많은 20개의 화장실이 확보되어 있었고, 화장실의 면적은 대전(4개소)이 322.99㎡로 가장 넓었다.

프로그램실 및 강당은 제주(1개소)와 서울(3개소)에서 각각 평균 8개와 7.33개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경북(5개소)과 제주(1개소)에서 각각 평균 893.66㎡와 833.80㎡로 가장 넓었다.

기타 공간은 전북(1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이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 면에서는 울산(1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이 1,408.00㎡로 가장 넓게 확보되어 있었다(<표 I-4-2-1> 참조).

<표 I-4-2-1>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규모

※단위: 개(개수), m²(면적)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서울	대지면적	2	6,764.00	21,824.00	14,294.00	10,649.03
	건물	3	985.49	6,163.04	3,292.58	2,634.35
	침실	개수 3 면적 3	25.00 704.58	49.00 1,478.00	34.00 970.19	13.08 439.93
	거실	개수 3 면적 3	2.00 46.00	4.00 905.04	2.67 577.01	1.15 464.10
	사무실	개수 3 면적 3	2.00 83.90	7.00 228.00	4.67 158.97	2.52 72.24
	의무실	개수 3 면적 3	1.00 20.00	1.00 60.00	1.00 35.25	0.00 21.63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3 면적 3	2.00 21.00	3.00 67.00	2.33 44.20	0.58 23.00
	휴게실	개수 3 면적 2	1.00 29.53	4.00 126.00	2.00 77.77	1.73 68.21
	조리실 및 식당	개수 3 면적 3	1.00 215.00	1.00 380.00	1.00 302.49	0.00 82.95
	목욕탕	개수 3 면적 3	1.00 40.00	4.00 180.00	3.00 106.45	1.73 70.27
	세탁장	개수 3 면적 3	1.00 41.00	2.00 176.00	1.33 88.08	0.58 76.20
	건조장	개수 3 면적 3	1.00 54.00	1.00 400.00	1.00 245.87	0.00 176.06
	화장실	개수 3 면적 3	16.00 41.00	19.00 357.00	17.00 213.36	1.73 159.94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3 면적 3	2.00 146.97	13.00 1,335.00	7.33 705.39	5.51 597.21
	기타	개수 1 면적 3	6.00 45.36	6.00 1,036.00	6.00 588.45	. 502.18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부산	대지면적	3	3,791.00	10,132.06	6,803.02	3,182.39	
	건물	3	2,002.00	5,024.95	3,656.21	1,531.56	
	침실	개수	3	14.00	44.00	34.00	17.32
		면적	3	540.00	1,002.00	822.10	247.38
	거실	개수	3	2.00	7.00	4.00	2.65
		면적	3	252.00	532.00	389.57	140.06
	사무실	개수	3	1.00	7.00	4.33	3.06
		면적	3	41.00	263.00	146.33	111.43
	의무실	개수	3	1.00	5.00	2.33	2.31
		면적	3	12.87	75.00	41.29	31.40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3	2.00	4.00	3.00	1.00
		면적	3	30.00	86.90	53.97	29.49
	휴게실	개수	3	2.00	4.00	3.00	1.00
		면적	3	54.00	251.29	132.10	104.87
	조리실 및 식당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162.00	383.00	282.17	111.76
	목욕탕	개수	3	2.00	8.00	4.33	3.21
		면적	3	72.00	405.00	184.45	191.01
	세탁장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36.00	38.40	36.80	1.39
	건조장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33.60	100.00	66.80	46.95
	화장실	개수	3	6.00	12.00	9.00	3.00
		면적	3	108.00	240.00	155.17	73.62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3	0.00	5.00	3.33	2.89
		면적	3	0.00	502.00	276.72	254.92
	기타	개수	3	5.00	15.00	8.33	5.77
면적		3	218.00	1345.11	708.37	577.64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구	대지면적	3	2863.00	41,884.00	17,218.00	21,456.87	
	건물	3	1,585.72	3906.96	2,690.86	1164.59	
	침실	개수	3	22.00	48.00	33.67	13.20
		면적	3	532.00	860.96	647.21	185.30
	거실	개수	3	0.00	4.00	2.67	2.31
		면적	3	0.00	176.27	106.09	93.46
	사무실	개수	3	1.00	4.00	2.33	1.53
		면적	3	58.00	153.85	96.58	50.59
	의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12.50	1,729.00	595.17	982.05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3	3.00	3.00	3.00	0.00
		면적	3	29.03	57.00	47.47	15.97
	휴게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12.00	671.00	244.33	369.99
	조리실 및 식당	개수	3	1.00	3.00	2.00	1.00
		면적	3	187.50	789.80	404.43	334.62
	목욕탕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14.00	735.97	266.66	406.84
	세탁장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20.00	101.00	52.83	42.62
	건조장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92.00	677.79	319.26	314.18
	화장실	개수	3	1.00	10.00	6.33	4.73
		면적	3	82.58	175.00	135.96	47.85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3	1.00	5.00	3.67	2.31
		면적	3	379.32	936.80	569.37	318.26
	기타	개수	3	1.00	53.00	19.33	29.19
		면적	3	615.01	1,808.00	1,076.30	640.82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인천	대지면적	2	15,558.00	25,051.00	20,304.50	6,712.56	
	건물	2	705.12	2,680.98	1,693.05	1,397.14	
	침실	개수	2	16.00	24.00	20.00	5.66
		면적	2	225.58	422.72	324.15	139.40
	거실	개수	2	2.00	3.00	2.50	0.71
		면적	2	140.24	310.83	225.54	120.63
	사무실	개수	2	1.00	6.00	3.50	3.54
		면적	2	59.28	122.97	91.13	45.04
	의무실	개수	2	1.00	1.00	1.00	-
		면적	2	9.57	29.64	19.61	14.19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45.24	49.45	47.35	2.98
	휴게실	개수	2	1.00	4.00	2.50	2.12
		면적	2	45.24	105.78	75.51	42.81
	조리실 및 식당	개수	2	1.00	6.00	3.50	3.54
		면적	2	59.28	225.58	142.43	117.59
	목욕탕	개수	2	1.00	3.00	2.00	1.41
		면적	2	160.62	163.97	162.30	2.37
	세탁장	개수	2	1.00	1.00	1.00	-
		면적	2	29.70	31.20	30.45	1.06
	건조장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59.30	159.30	159.30	.
	화장실	개수	2	7.00	14.00	10.50	4.95
		면적	2	100.13	112.85	106.49	8.99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2	2.00	2.00	2.00	-
		면적	2	99.86	255.45	177.66	110.02
기타	개수	2	6.00	12.00	9.00	4.24	
	면적	2	517.56	967.60	742.58	318.23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광주	대지면적	4	4,296.00	26,122.00	12,730.50	10,206.20	
	건물	4	2,296.92	4,211.61	3,144.75	847.93	
	침실	개수	4	28.00	52.00	36.50	10.63
		면적	4	399.17	830.57	576.85	181.53
	거실	개수	4	2.00	5.00	3.75	1.50
		면적	4	52.89	290.39	175.05	119.89
	사무실	개수	4	1.00	8.00	4.00	3.16
		면적	4	86.58	141.04	115.09	22.31
	의무실	개수	4	-	5.00	1.75	2.22
		면적	3	13.22	94.98	44.59	44.08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4	1.00	5.00	3.25	2.06
		면적	4	19.84	84.57	44.76	30.81
	휴게실	개수	4	1.00	2.00	1.75	0.50
		면적	4	25.21	97.08	48.60	32.82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	1.00	4.00	2.75	1.50
		면적	4	197.57	339.80	247.49	64.77
	목욕탕	개수	4	1.00	9.00	5.25	3.30
		면적	4	89.23	130.70	107.27	18.33
	세탁장	개수	4	1.00	5.00	2.00	2.00
		면적	4	12.40	104.25	47.84	43.43
	건조장	개수	4	1.00	3.00	1.50	1.00
		면적	4	33.00	261.40	174.36	99.93
	화장실	개수	4	5.00	17.00	11.25	5.06
		면적	4	92.23	197.48	124.75	49.04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4	2.00	7.00	4.25	2.22
		면적	4	256.46	456.44	327.41	88.29
	기타	개수	3	-	-	-	-
		면적	4	-	2,442.67	927.27	1,078.96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전	대지면적	4	5,451.00	15,191.00	8,281.00	4,621.83	
	건물	4	1,129.40	6,321,245.00	1,582,323.95	3,159,280.95	
	침실	개수	3	17.00	44.00	30.67	13.50
		면적	4	536.40	1,323.00	864.71	334.38
	거실	개수	4	-	2.00	1.00	1.15
		면적	4	-	183.00	73.47	89.80
	사무실	개수	4	1.00	5.00	2.25	1.89
		면적	4	42.12	216.00	126.20	71.17
	의무실	개수	4	1.00	2.00	1.50	0.58
		면적	4	25.60	59.16	39.04	14.40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3	1.00	2.00	1.67	0.58
		면적	4	15.00	96.66	51.46	40.24
	휴게실	개수	4	-	5.00	2.75	2.22
		면적	3	36.51	344.76	162.09	161.86
	조리실 및 식당	개수	3	1.00	1.00	1.00	-
		면적	4	240.64	510.00	377.84	143.77
	목욕탕	개수	4	1.00	4.00	2.75	1.50
		면적	4	49.14	272.70	142.04	94.02
	세탁장	개수	4	1.00	2.00	1.50	0.58
		면적	4	16.32	43.88	29.93	11.25
	건조장	개수	4	1.00	4.00	2.00	1.41
		면적	4	84.00	1,010.46	405.97	436.33
	화장실	개수	4	9.00	15.00	12.50	3.00
		면적	4	159.69	742.33	322.99	281.29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3	1.00	3.00	2.00	1.00
		면적	4	186.00	986.09	464.73	356.05
	기타	개수	4	-	16.00	6.75	8.06
		면적	4	-	1,795.69	602.85	846.54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울산	대지면적	1	8,425.00	8,425.00	8,425.00	.	
	건물	1	3,139.00	3,139.00	3,139.00	.	
	침실	개수	1	39.00	39.00	39.00	.
		면적	1	616.00	616.00	616.00	.
	거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62.00	62.00	62.00	-
	사무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98.00	98.00	98.00	.
	의무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3.00	13.00	13.00	.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1	4.00	4.00	4.00	.
		면적	1	57.00	57.00	57.00	.
	휴게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94.00	94.00	94.00	.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225.00	225.00	225.00	.
	목욕탕	개수	1	5.00	5.00	5.00	.
		면적	1	83.00	83.00	83.00	.
	세탁장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6.00	16.00	16.00	.
	건조장	개수	0				.
		면적	0				.
	화장실	개수	1	12.00	12.00	12.00	.
		면적	1	164.00	164.00	164.00	.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303.00	303.00	303.00	-
	기타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1,408.00	1,408.00	1,408.00	-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기	대지면적	6	2,731.00	35,556.00	13,212.33	12,093.44	
	건물	6	901.10	5,625.00	3,584.53	2,062.36	
	침실	개수	6	14.00	82.00	40.17	23.30
		면적	6	598.78	2,027.90	1,086.97	493.83
	거실	개수	6	-	5.00	2.83	1.72
		면적	6	-	456.00	245.19	172.14
	사무실	개수	6	3.00	8.00	5.83	1.72
		면적	6	118.66	349.37	202.41	77.44
	의무실	개수	6	1.00	4.00	2.00	1.26
		면적	6	27.50	104.60	63.56	24.99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6	2.00	7.00	4.17	1.83
		면적	6	42.49	177.98	94.56	47.95
	휴게실	개수	6	1.00	10.00	3.67	3.33
		면적	6	43.70	720.00	228.67	261.23
	조리실 및 식당	개수	6	1.00	2.00	1.33	0.52
		면적	6	158.10	533.80	358.22	137.05
	목욕탕	개수	6	1.00	5.00	2.67	1.86
		면적	6	78.00	303.34	159.65	81.10
	세탁장	개수	6	1.00	6.00	1.83	2.04
		면적	6	15.00	175.51	85.10	61.00
	건조장	개수	6	-	2.00	1.17	0.75
		면적	6	-	631.08	226.49	226.34
	화장실	개수	6	4.00	57.00	18.50	19.35
		면적	6	117.00	251.13	194.42	59.87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6	1.00	10.00	4.33	3.27
		면적	6	43.70	595.80	366.21	203.48
	기타	개수	5	-	12.00	4.00	5.66
		면적	6	-	2,026.25	1,026.68	760.27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북	대지면적	4	3,342.00	65,767.00	23,665.75	28,954.86	
	건물	4	1,916.13	8,602.80	4,200.38	3,037.63	
	침실	개수	4	25.00	54.00	36.50	12.40
		면적	4	518.36	2,536.60	1,161.68	929.28
	거실	개수	4	2.00	7.00	5.25	2.22
		면적	4	338.78	1,037.70	519.93	345.25
	사무실	개수	4	3.00	6.00	4.25	1.50
		면적	4	52.20	212.69	113.93	70.21
	의무실	개수	4	1.00	6.00	2.50	2.38
		면적	4	8.88	36.00	22.96	12.65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4	2.00	6.00	3.75	1.71
		면적	4	16.66	89.00	58.87	30.51
	휴게실	개수	4	1.00	6.00	2.50	2.38
		면적	4	10.03	547.00	161.41	257.73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	1.00	1.00	1.00	-
		면적	4	77.97	580.75	358.29	216.24
	목욕탕	개수	4	1.00	6.00	2.75	2.36
		면적	4	27.00	421.20	164.52	183.62
	세탁장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4	-	155.00	50.79	70.69
	건조장	개수	4	1.00	3.00	1.50	1.00
		면적	3	-	384.17	169.06	196.18
	화장실	개수	4	6.00	24.00	13.00	7.75
		면적	4	122.80	282.00	193.03	80.55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4	1.00	4.00	1.75	1.50
		면적	4	133.65	1,150.60	470.97	460.47
	기타	개수	4	-	12.00	6.25	5.68
		면적	3	-	215.66	134.61	117.39

충남	대지면적	11	766.00	19,000.00	10,477.91	5,642.49	
	건물	11	624.96	5,139.51	3,051.33	1,314.83	
	침실	개수	11	3.00	45.00	25.45	11.72
		면적	10	185.96	2,563.67	760.22	677.11
	거실	개수	11	-	7.00	2.55	2.34
		면적	10	-	915.84	305.37	312.90
	사무실	개수	11	1.00	9.00	3.00	2.53
		면적	10	8.10	240.90	104.44	69.58
	의무실	개수	11	1.00	3.00	1.55	0.82
		면적	10	14.40	60.06	28.66	17.21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11	1.00	6.00	2.73	1.49
		면적	10	8.00	109.20	50.86	33.85
	휴게실	개수	11	1.00	3.00	1.55	0.69
		면적	10	21.60	66.00	47.82	15.52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1	1.00	2.00	1.18	0.40
		면적	10	64.62	468.99	295.55	122.48
	목욕탕	개수	11	1.00	8.00	3.64	2.34
		면적	10	42.00	278.82	145.65	89.34
	세탁장	개수	11	-	1.00	0.82	0.40
		면적	10	-	152.00	47.20	52.88
	건조장	개수	11	-	2.00	0.82	0.60
		면적	10	-	231.00	108.99	70.38
	화장실	개수	11	3.00	81.00	14.18	22.35
		면적	9	33.84	141.15	96.56	37.83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11	1.00	6.00	2.55	1.97
		면적	10	68.64	603.25	274.46	168.12
	기타	개수	8	-	12.00	4.00	4.50
		면적	10	-	1,744.36	594.67	649.89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북	대지면적	4	6,623.00	15,283.00	10,732.50	3,873.47	
	건물	4	3,950.00	5,383.09	4,505.12	661.66	
	침실	개수	4	14.00	62.00	35.75	19.97
		면적	4	735.60	1,349.13	951.98	280.87
	거실	개수	4	3.00	4.00	3.75	0.50
		면적	4	145.18	958.75	424.87	366.25
	사무실	개수	4	3.00	6.00	3.75	1.50
		면적	4	98.34	253.68	159.35	67.21
	의무실	개수	4	1.00	3.00	2.00	1.15
		면적	4	22.08	108.00	55.32	37.08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4	3.00	4.00	3.50	0.58
		면적	4	55.44	89.00	69.73	14.47
	휴게실	개수	4	1.00	4.00	2.25	1.50
		면적	4	11.44	145.76	99.61	61.75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	1.00	4.00	2.00	1.41
		면적	4	165.20	361.10	279.74	82.60
	목욕탕	개수	4	1.00	8.00	4.00	3.16
		면적	4	38.40	149.76	94.11	45.53
	세탁장	개수	4	1.00	1.00	1.00	-
		면적	4	36.00	428.00	186.58	172.67
	건조장	개수	4	-	2.00	1.00	0.82
		면적	4	-	200.00	99.91	83.85
	화장실	개수	4	7.00	15.00	10.25	3.59
		면적	4	126.40	230.56	166.56	45.07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4	2.00	11.00	5.50	3.87
		면적	4	212.04	766.76	488.77	277.34
	기타	개수	1	21.00	21.00	21.00	.
		면적	4	-	1,911.11	892.22	789.81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남	대지면적	4	1,810.00	20,599.00	9,005.75	8,096.30	
	건물	4	3,036.82	1,949,352.00	490,780.02	972,383.30	
	침실	개수	4	22.00	63.00	47.50	19.33
		면적	4	342.50	1,245.16	962.04	419.21
	거실	개수	4	1.00	8.00	3.50	3.11
		면적	4	48.64	298.00	155.82	106.70
	사무실	개수	4	2.00	12.00	5.50	4.51
		면적	4	30.45	288.15	125.94	113.82
	의무실	개수	4	-	2.00	1.00	0.82
		면적	3	26.85	31.00	28.62	2.14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4	2.00	6.00	4.25	1.71
		면적	3	77.95	299.18	159.60	121.46
	휴게실	개수	4	1.00	3.00	2.00	1.15
		면적	4	18.60	90.18	62.20	34.67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4	165.50	444.34	267.74	122.38
	목욕탕	개수	4	-	10.00	3.50	4.43
		면적	4	-	166.30	84.36	73.38
	세탁장	개수	4	-	2.00	1.00	0.82
		면적	4	-	146.81	46.85	69.33
	건조장	개수	4	-	2.00	1.25	0.96
		면적	4	-	530.86	165.12	251.37
	화장실	개수	4	6.00	30.00	13.75	10.97
		면적	4	60.00	318.13	172.34	111.47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4	2.00	11.00	5.00	4.24
		면적	4	341.29	1,849.55	789.29	711.06
	기타	개수	4	5.00	15.00	8.75	4.35
		면적	4	243.70	1,024.74	630.80	323.11

경북	대지면적	5	7,352.00	9,925.00	8,586.40	1,039.48	
	건물	5	355.70	5,673.29	2,991.78	2,096.25	
	침실	개수	5	19.00	59.00	32.20	15.71
		면적	5	575.74	1,171.00	808.15	240.48
	거실	개수	5	-	8.00	2.80	3.11
		면적	5	-	397.77	198.49	179.10
	사무실	개수	5	1.00	5.00	3.20	1.64
		면적	5	88.33	187.00	131.14	39.47
	의무실	개수	5	1.00	2.00	1.40	0.55
		면적	5	23.25	81.00	43.53	24.09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5	2.00	5.00	3.60	1.14
		면적	5	34.61	194.72	96.07	63.00
	휴게실	개수	5	2.00	7.00	4.40	2.30
		면적	5	29.99	262.00	116.61	94.87
	조리실 및 식당	개수	5	1.00	1.00	1.00	-
		면적	5	252.90	331.50	290.33	34.90
	목욕탕	개수	5	1.00	4.00	1.80	1.30
		면적	5	59.91	261.80	191.54	80.14
	세탁장	개수	5	1.00	1.00	1.00	-
		면적	5	23.37	123.47	52.15	41.12
	건조장	개수	5	-	2.00	1.20	0.84
		면적	5	-	160.68	80.14	76.09
	화장실	개수	5	4.00	13.00	9.40	4.10
		면적	5	122.33	170.00	149.29	23.57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5	1.00	10.00	4.60	3.36
		면적	5	294.58	2,007.00	893.66	649.68
	기타	개수	4	-	36.00	11.50	16.52
		면적	5	-	928.22	519.76	431.84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남	대지면적	4	3,939.00	7,965.00	6,549.00	1,791.18	
	건물	4	3,434.61	5,072.81	3,979.02	767.90	
	침실	개수	4	27.00	35.00	29.75	3.59
		면적	4	676.07	942.21	799.64	120.77
	거실	개수	4	4.00	5.00	4.75	0.50
		면적	4	305.42	500.85	375.22	86.09
	사무실	개수	4	2.00	8.00	4.25	2.87
		면적	4	49.59	188.66	104.77	62.41
	의무실	개수	4	1.00	4.00	2.25	1.26
		면적	4	12.96	122.00	50.54	48.62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4	3.00	8.00	4.50	2.38
		면적	4	51.65	96.33	71.02	21.26
	휴게실	개수	4	1.00	6.00	3.00	2.16
		면적	4	26.28	295.44	116.33	122.67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	1.00	2.00	1.50	0.58
		면적	4	159.60	280.50	221.95	55.92
	목욕탕	개수	4	1.00	6.00	2.50	2.38
		면적	4	49.00	263.22	154.77	87.61
	세탁장	개수	4	1.00	5.00	2.00	2.00
		면적	4	21.66	97.92	65.42	31.83
	건조장	개수	4	-	2.00	1.00	0.82
		면적	4	-	165.00	100.25	77.58
	화장실	개수	4	13.00	21.00	15.50	3.70
		면적	4	165.79	246.28	212.59	36.58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4	1.00	9.00	4.25	3.59
		면적	4	216.05	756.06	443.76	228.81
	기타	개수	2	10.00	12.00	11.00	1.41
		면적	4	576.05	2,371.29	1,262.77	777.74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제주	대지면적	1	11,237.00	11,237.00	11,237.00	.	
	건물	1	4,292.86	4,292.86	4,292.86	.	
	침실	개수	1	43.00	43.00	43.00	.
		면적	1	779.69	779.69	779.69	.
	거실	개수	1	8.00	8.00	8.00	.
		면적	1	304.56	304.56	304.56	.
	사무실	개수	1	7.00	7.00	7.00	.
		면적	1	259.29	259.29	259.29	.
	의무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97.69	97.69	97.69	.
	상담실 및 면회실	개수	1	5.00	5.00	5.00	.
		면적	1	86.34	86.34	86.34	.
	휴게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66.14	66.14	66.14	.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417.90	417.90	417.90	.
	목욕탕	개수	1	9.00	9.00	9.00	.
		면적	1	80.50	80.50	80.50	.
	세탁장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23.95	123.95	123.95	.
	건조장	개수	1	-	-	-	.
		면적	1	-	-	-	.
	화장실	개수	1	20.00	20.00	20.00	.
		면적	1	178.33	178.33	178.33	.
	프로그램실 및 강당	개수	1	8.00	8.00	8.00	.
		면적	1	833.80	833.80	833.80	.
기타	개수	1	-	-	-	.	
	면적	1	-	-	-	.	

※무응답 시설 제외.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조사됨.

II.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 결과

제 1 절 평가결과 개요

1. 평가결과 종합

금번 평가에서 정신요양시설은 100점 만점에 최소 67.25점에서 최대 97.20점까지 분포되었고 평균 89.87점을 받았다. 각 하위 평가영역별로 100점 환산점수(영역별 취득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97.84(9.78)점이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83.86(10.06)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3.02(16.6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4.00(35.72)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91.07(9.11)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5.86(8.59)점으로 나타났다 (<표II-1-1-1> 참조).

<표II-1-1-1>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59	67.25	97.20	89.87	5.03
시설 및 환경(A)	59	80.00 (8.00)	100.00 (10.00)	97.84 (9.78)	4.11 (0.41)
재정 및 조직운영(B)	59	60.42 (7.25)	97.92 (11.75)	83.86 (10.06)	8.09 (0.97)
인적자원관리(C)	59	60.83 (12.17)	93.33 (18.67)	83.02 (16.60)	6.14 (1.2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9	65.63 (24.94)	100.00 (38.00)	94.00 (35.72)	7.08 (2.69)
생활인의 권리(E)	59	75.00 (7.50)	100.00 (10.00)	91.07 (9.11)	6.54 (0.65)
지역사회관계(F)	59	61.43 (6.14)	100.00 (10.00)	85.86 (8.59)	8.15 (0.8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정신요양시설의 총점은 각 등급에 따라 최우수(A) 37개소(62.71%), 우수(B) 18개소(30.51%), 양호(C) 3개소(5.08%), 보통(D) 1개소(1.69%)의 시설이 분포하였고 미흡(F)인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을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57개소(96.61%),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에 34개소(57.63%),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40개소(67.80%),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49개소(83.05%),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에 37개소(62.71%),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30개소(50.85%)로 나타났다(<표Ⅱ-1-1-2> 참조).

<표Ⅱ-1-1-2>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총점	37(62.71)	18(30.51)	3(5.08)	1(1.69)	-
시설 및 환경(A)	57(96.61)	2(3.39)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1(18.64)	34(57.63)	10(16.95)	4(6.78)	-
인적자원관리(C)	6(10.17)	40(67.80)	11(18.64)	2(3.39)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9(83.05)	6(10.17)	2(3.39)	2(3.39)	-
생활인의 권리(E)	37(62.71)	17(28.81)	5(8.47)	-	-
지역사회관계(F)	17(28.81)	30(50.85)	10(16.95)	2(3.39)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표Ⅱ-1-1-3>은 정신요양시설의 지역별 총점의 등급분포이다. 비율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최우수(A) 등급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였다.

<표 II-1-1-3>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서울(N=3)	2(66.67)	1(33.33)	-	-	-
부산(N=3)	1(33.33)	1(33.33)	1(33.33)	-	-
대구(N=3)	2(66.67)	1(33.33)	-	-	-
인천(N=2)	2(100.00)	-	-	-	-
광주(N=4)	4(100.00)	-	-	-	-
대전(N=4)	1(25.00)	3(75.00)	-	-	-
울산(N=1)	1(100.00)	-	-	-	-
경기(N=6)	2(33.33)	4(66.67)	-	-	-
강원(N=0)	-	-	-	-	-
충북(N=4)	2(50.00)	1(25.00)	1(25.00)	-	-
충남(N=11)	6(54.55)	4(36.36)	1(9.09)	-	-
전북(N=4)	4(100.00)	-	-	-	-
전남(N=4)	3(75.00)	1(25.00)	-	-	-
경북(N=5)	4(80.00)	1(20.00)	-	-	-
경남(N=4)	4(100.00)	-	-	-	-
제주(N=1)	1(100.00)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2.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

1) 지표수 및 배점의 변화

<표 II-1-2-1>은 2008년과 2011년의 정신요양시설평가에서 이용된 지표 수 및 배점의 변화에 대한 사항이다.

지표 수는 총 1개가 감소하였는데, '재정 및 조직운영(B)' 및 '인적자원관리(C)',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 영역의 지표와 배점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C)',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 영역에서 지표의 증감이 나타났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지표의 수에서 증감없이 배점만 달라졌다. 각 영역별 배점의 변화를 보면 <표II-1-2-1>와 같다.

<표II-1-2-1> 2008년과 2011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평가영역	배점(%)			지표 수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총점	100	100	-	68	67	-1
A. 시설 및 환경	10	10	-	11	1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12	-3	13	12	-1
C. 인적자원 관리	15	20	+5	14	15	+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0	38	-2	19	16	-3
E. 생활인의 권리	10	10	-	4	6	+2
F. 지역사회관계	10	10	-	7	7	-

※증감은 2011년 기준으로 2008년과 달라진 수준을 의미함.

2) 평가결과 비교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금번 평가에서는 총점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8.07점이 높아졌다. 모든 영역에서 최소 2.22에서 최대 10.80까지 점수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F.지역사회관계'에서 10.80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다음으로 'D.프로그램 및 서비스', 'E.생활인의권리', 'B.재정 및 조직 운영'의 순으로 점수가 증가되었다(<표Ⅱ-1-2-2> 참조).

<표Ⅱ-1-2-2> 2008년과 2011년 평가결과 비교

평가영역	점수비교		
	2008	2011	증감
총점	81.80	89.87	8.07
A. 시설 및 환경	95.62	97.84	2.22
B. 재정 및 조직운영	76.40	83.86	7.46
C. 인적자원 관리	75.83	83.02	7.1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4.07	94.00	9.93
E. 생활인의 권리	82.66	91.07	8.41
F. 지역사회관계	75.06	85.86	10.8

※증감은 2011년 기준으로 2008년과 달라진 수준을 의미함.

※총점을 제외한 각 평가영역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제 2 절 지역별 평가결과¹⁾

1. 서울

서울지역의 정신요양시설은 총점의 경우 2개소가 최우수(A)에, 1개소는 우수(B)에 해당되었다. 최우수(A)의 경우 '시설 및 환경(A)'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D)'에 각각 3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B)' 2개소, '생활인의 권리(E)'와 '지역사회관계(F)'에 각 1개소가 해당되었고, 우수(B)의 경우 '재정 및 조직운영(B)'에 1개소, '인적자원관리(C)'에 3개소, '생활인의 권리(E)'와 '지역사회관계(F)'에 각 2개소가 해당되었다(<표Ⅱ-2-1-1> 참조).

<표Ⅱ-2-1-1> 서울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서울	총점	2(66.67)	1(33.33)	-	-	-
(N=3)	시설 및 환경(A)	3(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2(66.67)	1(33.33)	-	-	-
	인적자원관리(C)	-	3(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33.33)	2(66.67)	-	-	-
	지역사회관계(F)	1(33.33)	2(66.67)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1) 금번 평가에서 정신요양시설은 총 59개소로써 1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입지한 울산과 제주의 경우, 결과 점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경우 개(個) 시설의 정보가 여과없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정보보호를 위해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였다.

서울은 정신요양시설의 총점 평균이 91.77점이었으며, 각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 평균 96.67(9.67)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92.36(11.08)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5.00(17.0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5.16(36.16)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89.58(8.96)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9.05(8.90)점이었다(<표Ⅱ-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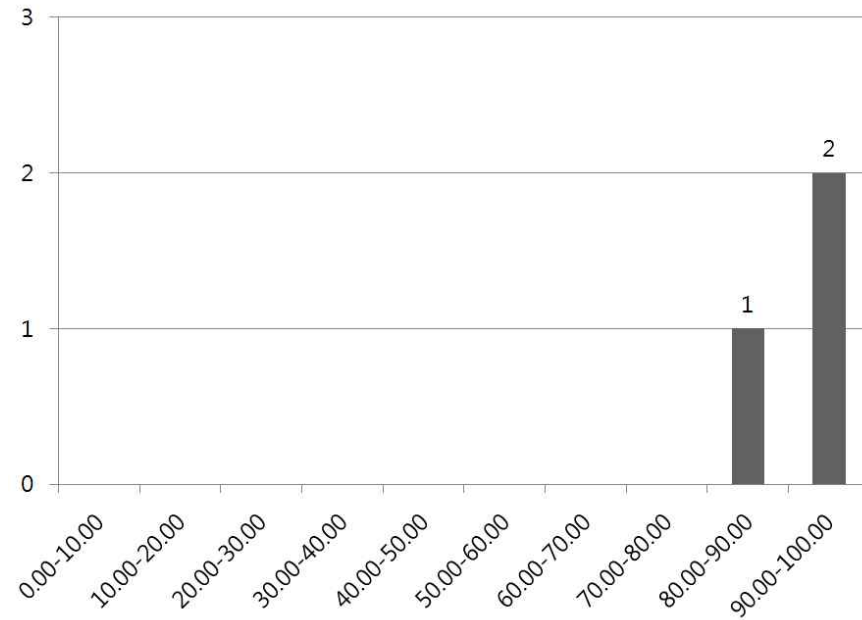
<표Ⅱ-2-1-2> 서울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	89.83	92.81	91.77	1.68
시설 및 환경(A)	3	92.50 (9.25)	100.00 (10.00)	96.67 (9.67)	3.82 (0.38)
재정 및 조직운영(B)	3	87.50 (10.50)	95.83 (11.50)	92.36 (11.08)	4.34 (0.52)
인적자원관리(C)	3	83.33 (16.67)	86.67 (17.33)	85.00 (17.00)	1.67 (0.3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	90.63 (34.44)	97.50 (37.05)	95.16 (36.16)	3.92 (1.49)
생활인의 권리(E)	3	87.50 (8.75)	93.75 (9.38)	89.58 (8.96)	3.61 (0.36)
지역사회관계(F)	3	83.57 (8.36)	94.64 (9.46)	89.05 (8.90)	5.54 (0.55)

※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서울의 정신요양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1개소와 90.00이상~100.00점에 2개소가 분포하였다(<그림Ⅱ-2-1-1> 참조).



<그림Ⅱ-2-1-1> 서울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2. 부산

부산의 3개 정신요양시설은 최우수(A)와 우수(B), 보통(D)에 각각 1개소 (33.33%)가 해당되었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2개소 우수(B)에 1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와 보통(D)에 각각 2개소, 1개소,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 2개소, 보통(D) 1개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 2개소 보통(D)에 1개소,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와 우수(B), 양호(C)에 각각 1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와 양호(C)와 보통(D)에 각각 1개소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었다(<표Ⅱ-2-2-1> 참조).

<표 II-2-2-1> 부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부산	총점	1(33.33)	1(33.33)	-	1(33.33)	-
(N=3)	시설 및 환경(A)	2(66.67)	1(33.33)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2(66.67)	-	1(33.33)	-
	인적자원관리(C)	-	2(66.67)	-	1(33.33)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66.67)	-	-	1(33.33)	-
	생활인의 권리(E)	1(33.33)	1(33.33)	1(33.33)	-	-
	지역사회관계(F)	-	1(33.33)	1(33.33)	1(33.33)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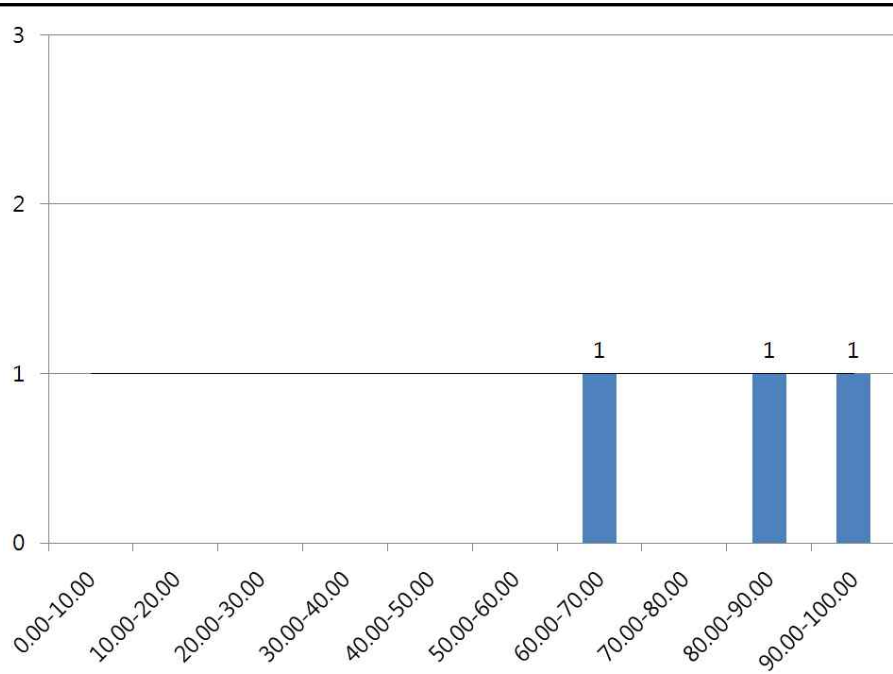
부산의 정신요양시설 총점 평균은 82.94점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환경(A)’ 평균 95.00(9.50)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0.56(9.67)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75.00(15.0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86.46(32.86)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84.03(8.40)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75.12(7.51)점이었다(<표 II-2-2-2> 참조).

<표 II-2-2-2> 부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	67.25	92.69	82.94	13.72
시설 및 환경(A)	3	85.00 (8.50)	100.00 (10.00)	95.00 (9.50)	8.66 (0.87)
재정 및 조직운영(B)	3	66.67 (8.00)	87.50 (10.50)	80.56 (9.67)	12.03 (1.44)
인적자원관리(C)	3	60.83 (12.17)	83.33 (16.67)	75.00 (15.00)	12.33 (2.4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	65.63 (24.94)	98.44 (37.41)	86.46 (32.86)	18.11 (6.88)
생활인의 권리(E)	3	75.00 (7.50)	95.83 (9.58)	84.03 (8.40)	10.69 (1.07)
지역사회관계(F)	3	61.43 (6.14)	85.36 (8.54)	75.12 (7.51)	12.33 (1.24)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60.00점 이상~70.00점미만, 80.00점 이상~90.00점미만, 90.00점 이상~100.00점에 각각 1개의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그림 II-2-2-1> 참조).



<그림 II-2-2-1> 부산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3. 대구

총 3개의 대구지역 정신요양시설은 우수(B) 등급에 2개소, 양호(C)에 각 1개소가 해당되었다. 각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 최우수(A) 3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B)' 우수(B) 2개소, 양호(C) 1개소,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 3개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우수(B)와 양호(C), 보통(D)에 각 1개소,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와 우수(B), 양호(C)에 각 1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 1개소, 양호(C)에 2개소가 분포하였다(<표 II-2-3-1> 참조).

<표Ⅱ-2-3-1> 대구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대구	총점	-	2(66.67)	1(33.33)	-	-
(N=3)	시설 및 환경(A)	3(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2(66.67)	1(33.33)	-	-
	인적자원관리(C)	-	3(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	1(33.33)	1(33.33)	1(33.33)	-
	생활인의 권리(E)	1(33.33)	1(33.33)	1(33.33)	-	-
	지역사회관계(F)	-	1(33.33)	2(66.67)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대구의 정신요양시설 총점 평균은 82.66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 평균 95.00(9.50)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3.34(10.00)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5.00(17.0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77.60(29.49)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86.81(8.68)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79.88(7.99)점이었다(<표Ⅱ-2-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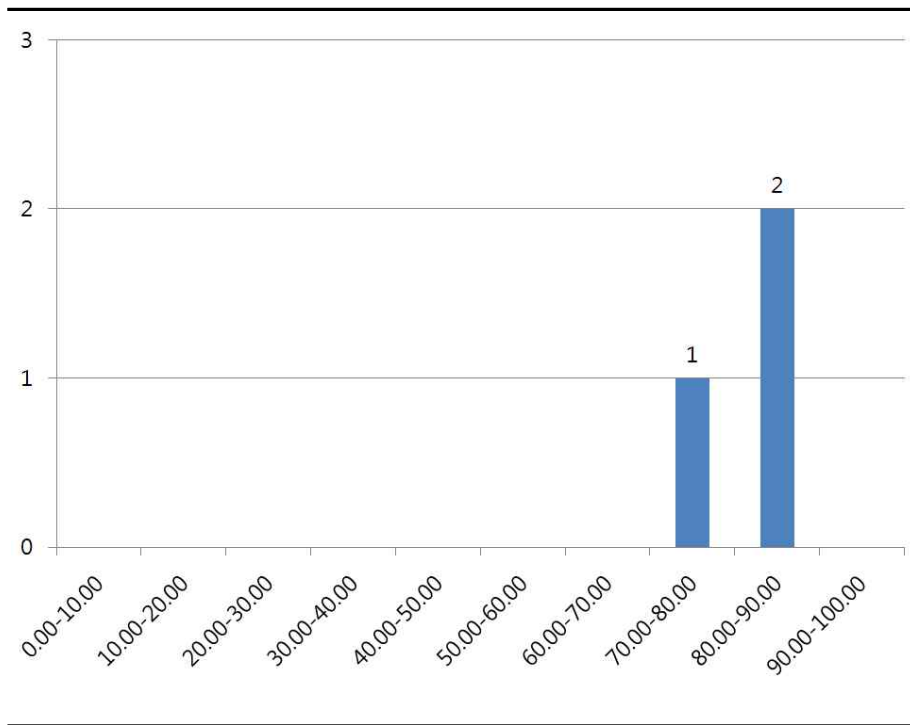
<표Ⅱ-2-3-2> 대구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	79.91	86.21	82.66	3.23
시설 및 환경(A)	3	90.00 (9.00)	100.00 (10.00)	95.00 (9.50)	5.00 (0.50)
재정 및 조직운영(B)	3	79.17 (9.50)	85.42 (10.25)	83.34 (10.00)	3.61 (0.43)
인적자원관리(C)	3	80.00 (16.00)	89.17 (17.83)	85.00 (17.00)	4.64 (0.9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	67.19 (25.53)	89.06 (33.84)	77.60 (29.49)	10.97 (4.17)
생활인의 권리(E)	3	79.17 (7.92)	95.83 (9.58)	86.81 (8.68)	8.42 (0.84)
지역사회관계(F)	3	74.29 (7.43)	85.71 (8.57)	79.88 (7.99)	5.71 (0.57)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70.00점 이상~80.00점미만, 80.00점 이상~90.00점에 각각 1개, 2개의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그림 II-2-3-1> 참조).



<그림 II-2-3-1> 대구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4. 인천

인천은 총 2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입지하였는데, 모두 최우수(A)에 해당되었다. '시설 및 환경(A)'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에 2개의 시설이 모두 해당되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1개 시설,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2개의 시설이 분포하였으며, '생활인의 권리(E)'는 각각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1개의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표 II-2-4-1> 참조).

<표Ⅱ-2-4-1> 인천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인천	총점	2(100.00)	-	-	-	-
(N=2)	시설 및 환경(A)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50.00)	1(50.00)	-	-	-
	인적자원관리(C)	-	2(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	1(50.00)	1(50.00)	-	-
	지역사회관계(F)	2(100.00)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인천의 정신요양시설 총점 평균은 91.15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 평균 100.00(10.00)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7.50(10.50)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5.00(17.0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5.31(36.22)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81.25(8.13)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93.04(9.30)점이었다(<표Ⅱ-2-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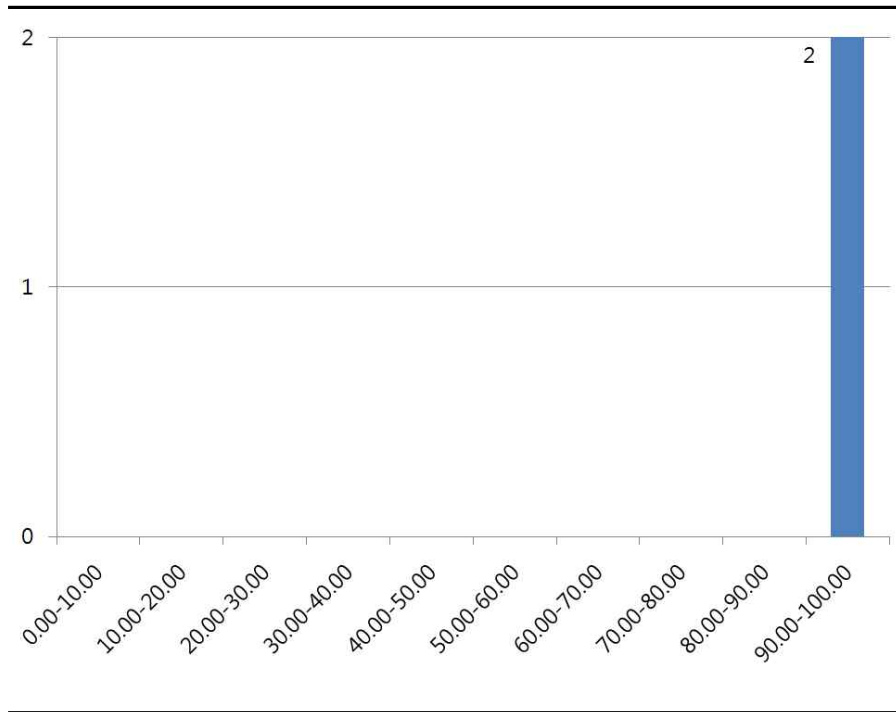
<표Ⅱ-2-4-2> 인천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2	90.28	92.02	91.15	1.23
시설 및 환경(A)	2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0.00 (0.00)
재정 및 조직운영(B)	2	81.25 (9.75)	93.75 (11.25)	87.50 (10.50)	8.84 (1.06)
인적자원관리(C)	2	85.00 (17.00)	85.00 (17.00)	85.00 (17.00)	0.00 (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	94.84 (36.04)	95.78 (36.40)	95.31 (36.22)	0.66 (0.25)
생활인의 권리(E)	2	79.17 (7.92)	83.33 (8.33)	81.25 (8.13)	2.94 (0.29)
지역사회관계(F)	2	92.14 (9.21)	93.93 (9.39)	93.04 (9.30)	1.27 (0.13)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한편, 인천 소재 2개의 정신요양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으로 나타났다(<그림 II-2-4-1> 참조).



<그림 II-2-4-1> 인천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5. 광주

광주지역의 4개 정신요양 시설이 모두 총점 최우수(A)에 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전 영역에서 최우수(A) 등급에 가장 많은 시설이 해당되는 등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시설 및 환경(A)',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 세 개의 영역에서 4개 기관이 모두 최우수(A) 등급에 해당하였고,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 1개 시설이 유일하게 양호(C)가 나타났다(<표 II-2-5-1> 참조).

<표 II-2-5-1> 광주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광주 (N=4)	총점	4(100.00)	-	-	-	-
	시설 및 환경(A)	4(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25.00)	2(50.00)	1(25.00)	-	-
	인적자원 관리(C)	1(25.00)	3(75.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4(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3(75.00)	1(25.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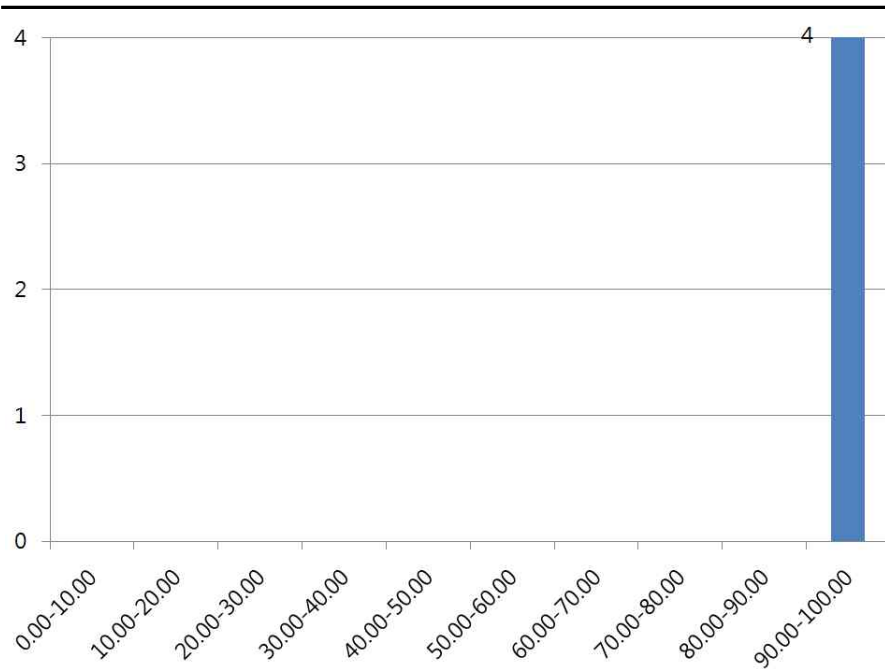
광주는 정신요양시설의 총점 평균이 95.41점이었으며, 각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 평균 100.00(10.00)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7.50(10.50)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8.96(17.7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9.61(37.85)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98.96(9.90)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93.66(9.37)점이었다(<표 II-2-5-2> 참조).

한편, 그래프 상으로 볼 때, 90.00점 이상~100.00점에 4개소가 해당되었다(<그림 II-2-5-1> 참조).

<표Ⅱ-2-5-2> 광주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92.56	97.20	95.41	2.03
시설 및 환경(A)	4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0.00 (0.00)
재정 및 조직운영(B)	4	77.08 (9.25)	95.83 (11.50)	87.50 (10.50)	7.80 (0.94)
인적자원관리(C)	4	86.67 (17.33)	93.33 (18.67)	88.96 (17.79)	3.14 (0.6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98.91 (37.58)	100.00 (38.00)	99.61 (37.85)	0.52 (0.20)
생활인의 권리(E)	4	95.83 (9.58)	100.00 (10.00)	98.96 (9.90)	2.09 (0.21)
지역사회관계(F)	4	80.71 (8.07)	100.00 (10.00)	93.66 (9.37)	8.78 (0.88)

※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5-1> 광주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6. 대전

대전의 4개 정신요양시설은 각각 최우수(A) 1개소(25.00%), 우수(B) 3개소(75.00%)의 분포를 보였다. 각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4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 2개소, 우수(B) 1개소, 보통(D)에 1개소이며,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3개소, 양호(C)에 1개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삭제)에 각 4개소,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에 1개소 우수(B) 2개소, 양호(C) 1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1개소 및 3개소의 시설이 분포되었다(<표 II-2-6-1> 참조).

<표 II-2-6-1> 대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대전	총점	1(25.00)	3(75.00)	-	-	-
(N=4)	시설 및 환경(A)	4(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2(50.00)	1(25.00)	-	1(25.00)	-
	인적자원관리(C)	-	3(75.00)	1(25.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25.00)	2(50.00)	1(25.00)	-	-
	지역사회관계(F)	1(25.00)	3(75.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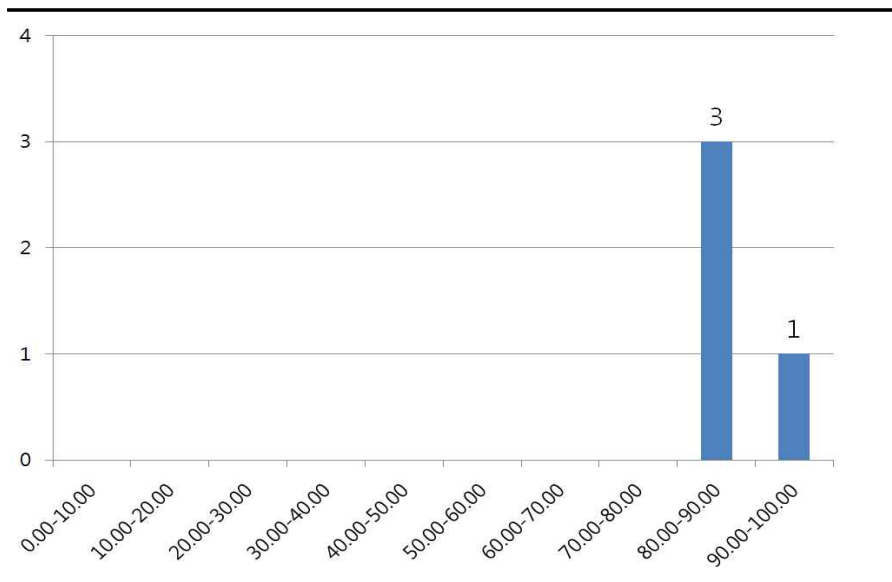
대전 소재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89.23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대해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96.88(9.69)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82.29(9.88)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2.30(16.46)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4.10(35.76)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86.46(8.65)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8.04(8.81)점이었다(<표 II-2-6-2> 참조).

<표Ⅱ-2-6-2> 대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84.14	95.56	89.23	4.75
시설 및 환경(A)	4	90.00 (9.00)	100.00 (10.00)	96.88 (9.69)	4.73 (0.47)
재정 및 조직운영(B)	4	60.42 (7.25)	93.75 (11.25)	82.29 (9.88)	15.73 (1.89)
인적자원관리(C)	4	76.67 (15.33)	86.67 (17.33)	82.30 (16.46)	4.27 (0.85)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90.47 (34.38)	98.44 (37.41)	94.10 (35.76)	3.52 (1.34)
생활인의 권리(E)	4	75.00 (7.50)	100.00 (10.00)	86.46 (8.65)	10.42 (1.04)
지역사회관계(F)	4	82.86 (8.29)	95.71 (9.57)	88.04 (8.81)	5.81 (0.58)

※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대전 소재 각 정신요양시설의 점수 분포구간을 보면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3개소,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각각 1개소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그림Ⅱ-2-6-1> 참조).



<그림Ⅱ-2-6-1> 대전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7. 울산

울산 소재 1개 정신요양시설의 총점은 최우수(A)에 해당되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 '지역사회관계(F)'에서는 최우수(A)에 해당되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B)'과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해당되었다(<표Ⅱ-2-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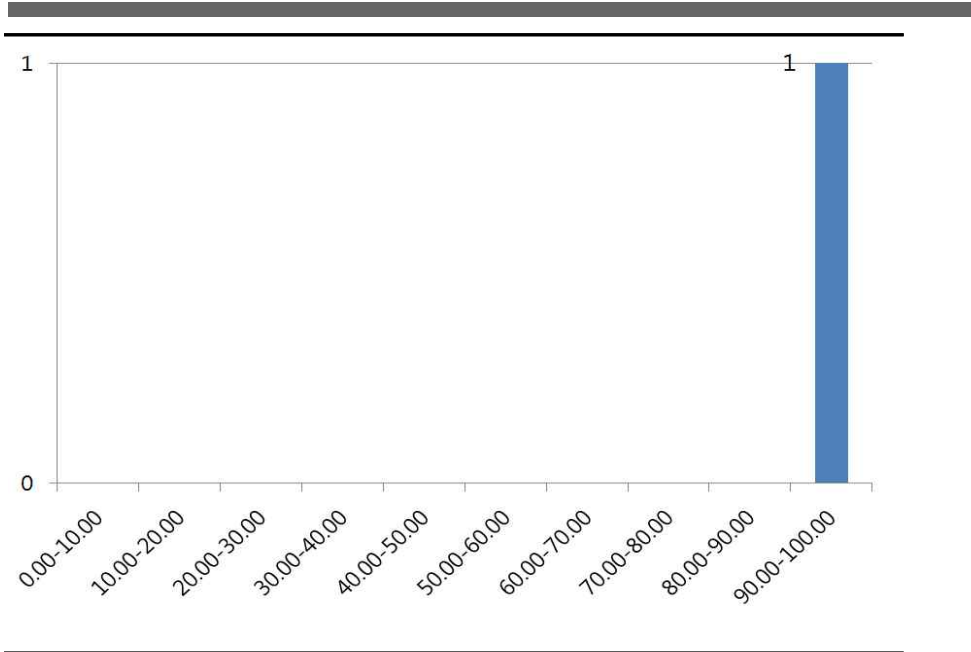
울산의 정신요양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해당하였다(<그림Ⅱ-2-7-1> 참조).

<표Ⅱ-2-7-1> 울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울산	총점	1(100.00)	-	-	-	-
(N=1)	시설 및 환경(A)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C)	-	1(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100.00)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그림 II-2-7-1> 울산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8. 경기

경기도 정신요양시설의 총점은 최우수(A) 2개소(33.33%), 우수(B) 4개소(66.67%)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된 점수구간을 비교해보면, '시설 및 환경(A)'의 경우, 최우수(A)에 6개소(100.00%),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에 3개소(50.00%),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3개소(5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 3개소,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 4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2개소(33.33%)였다(<표 II-2-8-1> 참조).

<표 II-2-8-1> 경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기	총점	2(33.33)	4(66.67)	-	-	-
(N=6)	시설 및 환경(A)	6(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3(50.00)	2(33.33)	1(16.67)	-	-
	인적자원관리(C)	-	3(50.00)	2(33.33)	1(16.67)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50.00)	3(50.00)	-	-	-
	생활인의 권리(E)	4(66.67)	2(33.33)	-	-	-
	지역사회관계(F)	2(33.33)	2(33.33)	2(33.33)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경기 소재 정신요양시설의 총점은 평균 89.51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99.17(9.92)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88.89(10.67)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9.86(15.97)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3.13(35.39)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91.32(9.13)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4.34(8.44)점이었다(<표 II-2-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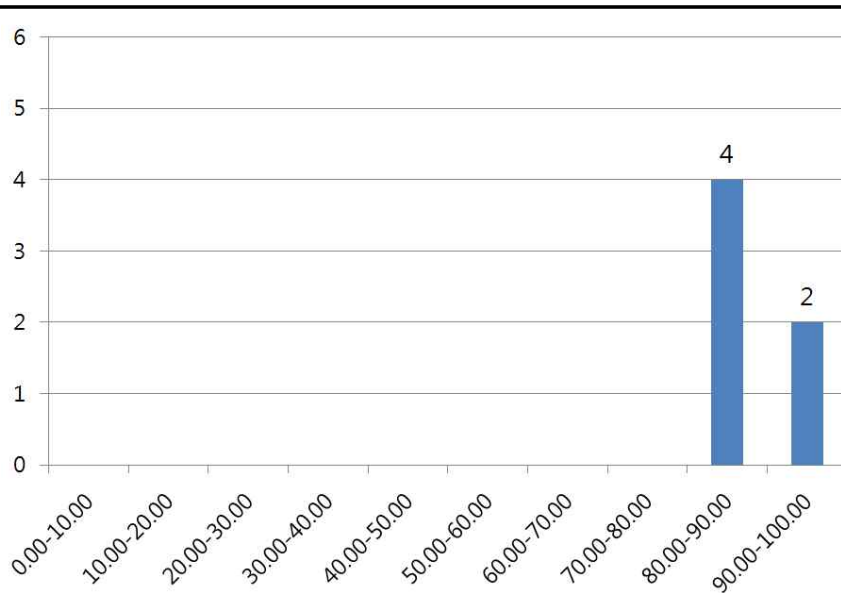
경기 소재 정신요양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 90.00점 이상~100.00점에 각각 4개소, 2개소의 시설이 해당되었다(<그림 II-2-8-1> 참조).

<표Ⅱ-2-8-2> 경기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6	85.94	96.19	89.51	4.86
시설 및 환경(A)	6	97.50 (9.75)	100.00 (10.00)	99.17 (9.92)	1.29 (0.13)
재정 및 조직운영(B)	6	75.00 (9.00)	97.92 (11.75)	88.89 (10.67)	8.51 (1.02)
인적자원관리(C)	6	68.33 (13.67)	88.33 (17.67)	79.86 (15.97)	7.74 (1.55)
프로그램 및 서비스(D)	6	87.50 (33.25)	98.91 (37.58)	93.13 (35.39)	5.17 (1.96)
생활인의 권리(E)	6	81.25 (8.13)	97.92 (9.79)	91.32 (9.13)	6.10 (0.61)
지역사회관계(F)	6	73.57 (7.36)	95.71 (9.57)	84.34 (8.44)	8.62 (0.86)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8-1> 경기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9. 중복

중복은 총 4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이 입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총점은 최우수(A)와 우수(B), 양호(C)에 각각 2개소, 1개소, 1개소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각 영역별로 '시설 및 환경(A)'의 경우 최우수(A)에 4개소(100.00%),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3개소, 1개소, '인적자원관리(C)'는 최우수(A), 우수(B)에 각 1개소, 양호(C)에 2개소였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 3개소, 양호(C)에 1개소,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2개소였고, '지역사회관계(F)' 영역에서는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2개소의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표Ⅱ-2-9-1> 참조).

<표Ⅱ-2-9-1> 중복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중복	총점	2(50.00)	1(25.00)	1(25.00)	-	-
(N=4)	시설 및 환경(A)	4(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3(75.00)	1(25.00)	-	-
	인적자원관리(C)	1(25.00)	1(25.00)	2(5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75.00)	-	1(25.00)	-	-
	생활인의 권리(E)	2(50.00)	2(50.00)	-	-	-
	지역사회관계(F)	-	2(50.00)	2(50.00)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중복의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87.09점의 총점을 받았다. '시설 및 환경(A)'이 가장 높은 평균 98.75(9.88)점이었고, '인적자원관리(C)'가 평균 78.96(15.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기타 다른 영역의 평균 취득점수는 <표Ⅱ-2-9-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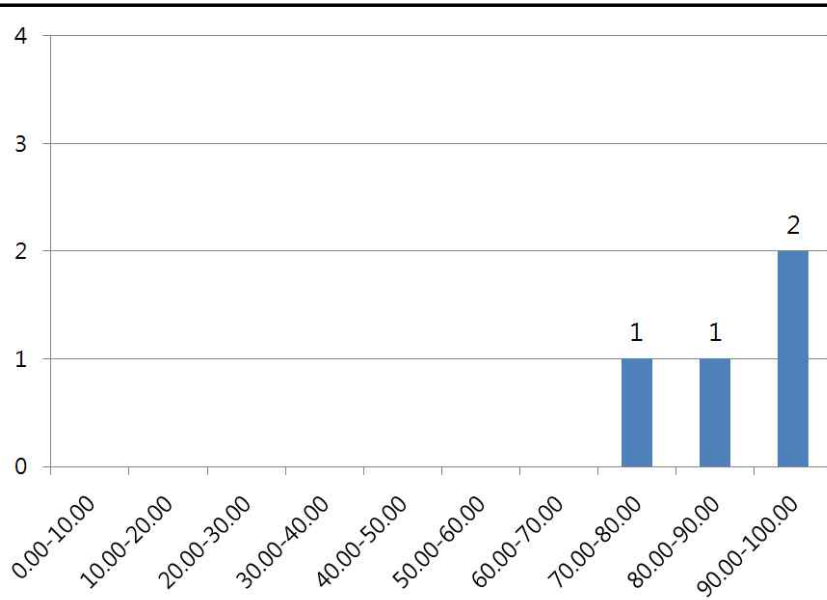
총점에서는 70.00점 이상~80.00점미만과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각 1개소, 90.00점 이상~100.00점에 2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이 분포하였다

(<그림 II-2-9-1> 참조).

<표II-2-9-2> 충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79.62	91.01	87.09	5.32
시설 및 환경(A)	4	97.50 (9.75)	100.00 (10.00)	98.75 (9.88)	1.44 (0.14)
재정 및 조직운영(B)	4	77.08 (9.25)	83.33 (10.00)	80.73 (9.69)	2.62 (0.31)
인적자원관리(C)	4	71.67 (14.33)	90.00 (18.00)	78.96 (15.79)	8.15 (1.6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79.69 (30.28)	97.34 (36.99)	91.13 (34.63)	7.85 (2.98)
생활인의 권리(E)	4	85.42 (8.54)	93.75 (9.38)	90.11 (9.01)	3.56 (0.36)
지역사회관계(F)	4	74.64 (7.46)	88.93 (8.89)	80.98 (8.10)	7.44 (0.74)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 II-2-9-1> 충북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0. 충남

충남에서는 총 11개 시설이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이 중 최우수(A)가 6개소(54.55%)가 우수(B)가 4개소(36.36), 양호(C)가 1개소(9.09)에 해당되었다. 각 등급별로는 '시설 및 환경(A)'에서는 최우수(A)에 10개소(90.91%),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우수(B)에 7개소(63.64%), '인적자원관리(C)'에서는 우수(B)에 6개소(54.55%), '프로그램 및 서비스(D)'에서는 최우수(A)에 10개소(90.91%), '생활인의 권리(E)'에서는 최우수(A)에 8개소(72.73%), '지역사회관계(F)'에서는 최우수(A)와 우수(B)에 각 5개소(45.45%)로 각각 가장 많은 시설이 해당되고 있는 구간으로 나타났다(<표 II-2-10-1> 참조).

<표 II-2-10-1> 충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충남	총점	6(54.55)	4(36.36)	1(9.09)	-	-
(N=11)	시설 및 환경(A)	10(90.91)	1(9.09)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9.09)	7(63.64)	2(18.18)	1(9.09)	-
	인적자원관리(C)	-	6(54.55)	5(45.45)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0(90.91)	1(9.09)	-	-	-
	생활인의 권리(E)	8(72.73)	3(27.27)	-	-	-
	지역사회관계(F)	5(45.45)	5(45.45)	-	1(9.09)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충남 정신요양시설 총점은 평균 89.87점이었으며, 영역별 평균 점수는 '시설 및 환경' 96.82(9.68)점, '재정 및 조직운영(B)' 81.82(9.82)점, '인적자원관리(C)' 79.85(15.97)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95.55(36.31)점, '생활인의 권리(E)' 92.80(9.28)점, '지역사회관계(F)' 88.08(8.81)점으로 나타났다(<표 II-2-1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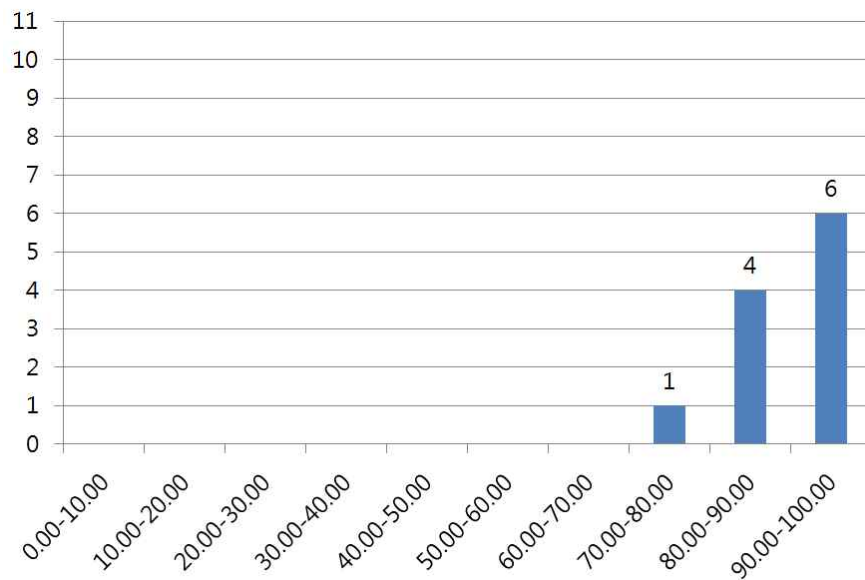
충남지역 정신요양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가장 많은 6개소가 해당되었다. 기타 점수대별 분포는 <그림 II-2-10-1>과 같다.

<표Ⅱ-2-10-2> 충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1	79.92	94.57	89.87	4.05
시설 및 환경(A)	11	80.00 (8.00)	100.00 (10.00)	96.82 (9.68)	6.13 (0.61)
재정 및 조직운영(B)	11	64.58 (7.75)	97.92 (11.75)	81.82 (9.82)	8.08 (0.97)
인적자원관리(C)	11	70.00 (14.00)	85.83 (17.17)	79.85 (15.97)	4.55 (0.9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	85.94 (32.66)	100.00 (38.00)	95.55 (36.31)	4.23 (1.61)
생활인의 권리(E)	11	83.33 (8.33)	100.00 (10.00)	92.80 (9.28)	4.50 (0.45)
지역사회관계(F)	11	68.93 (6.89)	99.29 (9.93)	88.08 (8.81)	9.12 (0.91)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10-1> 충남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1. 전북

전북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4곳은 모두 최우수(A)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환경(A)',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에서 모두 4개 시설이 최우수(A)에 해당되었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1개소와 3개소,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 양호(C)에 각각 3개소, 1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 1개소, 우수(B)에 3개소가 해당되고 있었다(<표 II-2-11-1> 참조).

<표 II-2-11-1> 전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전북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N=4)	시설 및 환경(A)	4(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25.00)	3(75.00)	-	-	-
	인적자원관리(C)	-	3(75.00)	1(25.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4(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25.00)	3(75.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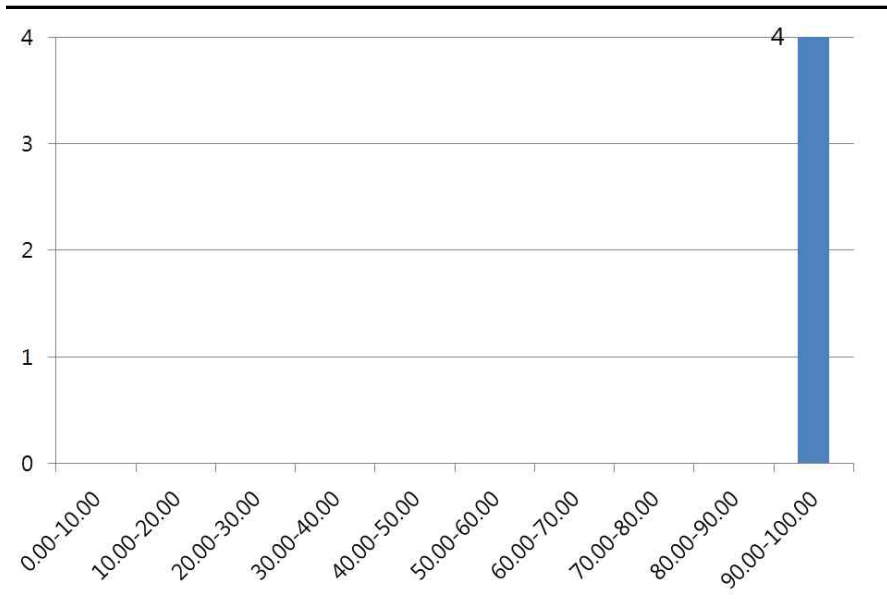
전북지역의 정신요양시설 총점은 평균 92.75점이었으며, 영역별 평균을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100.00(10.00)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86.98(10.44)점, '인적자원관리(C)'는 82.92(16.5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98.32(37.36)점, '생활인의 권리(E)'는 94.79(9.48)점, '지역사회관계(F)'는 88.84(8.883)점으로 나타났다(<표 II-2-11-2> 참조).

그래프로 볼 때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4개소 모두가 해당하였다(<그림 II-2-11-1> 참조).

<표Ⅱ-2-11-2> 전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91.13	93.58	92.75	1.15
시설 및 환경(A)	4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0.00 (0.00)
재정 및 조직운영(B)	4	81.25 (9.75)	91.67 (11.00)	86.98 (10.44)	4.62 (0.55)
인적자원관리(C)	4	78.33 (15.67)	85.83 (17.17)	82.92 (16.59)	3.23 (0.6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96.88 (36.81)	100.00 (38.00)	98.32 (37.36)	1.46 (0.56)
생활인의 권리(E)	4	93.75 (9.38)	95.83 (9.58)	94.79 (9.48)	1.20 (0.12)
지역사회관계(F)	4	81.43 (8.14)	96.07 (9.61)	88.84 (8.88)	5.98 (0.60)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11-1> 전북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2. 전남

전남 소재 정신요양시설 4개소는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3개소와 1개소가 해당되고 있었다. 각 등급별 시설의 분포는 <표Ⅱ-2-12-1>과 같다.

<표Ⅱ-2-12-1> 전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남	총점	3(75.00)	1(25.00)	-	-	-
(N=4)	시설 및 환경(A)	4(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3(75.00)	1(25.00)	-	-
	인적자원관리(C)	1(25.00)	3(75.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75.00)	1(25.00)	-	-	-
	생활인의 권리(E)	2(50.00)	1(25.00)	1(25.00)	-	-
	지역사회관계(F)	-	2(50.00)	2(5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전남지역의 정신요양시설 총점은 평균 89.74점이었으며, 영역별 평균을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99.38(9.94)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81.25(9.75)점, '인적자원관리(C)'는 85.21(17.0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94.57(35.94)점, '생활인의 권리(E)'는 89.06(8.91)점, '지역사회관계(F)'는 81.70(8.17)점으로 나타났다(<표Ⅱ-2-1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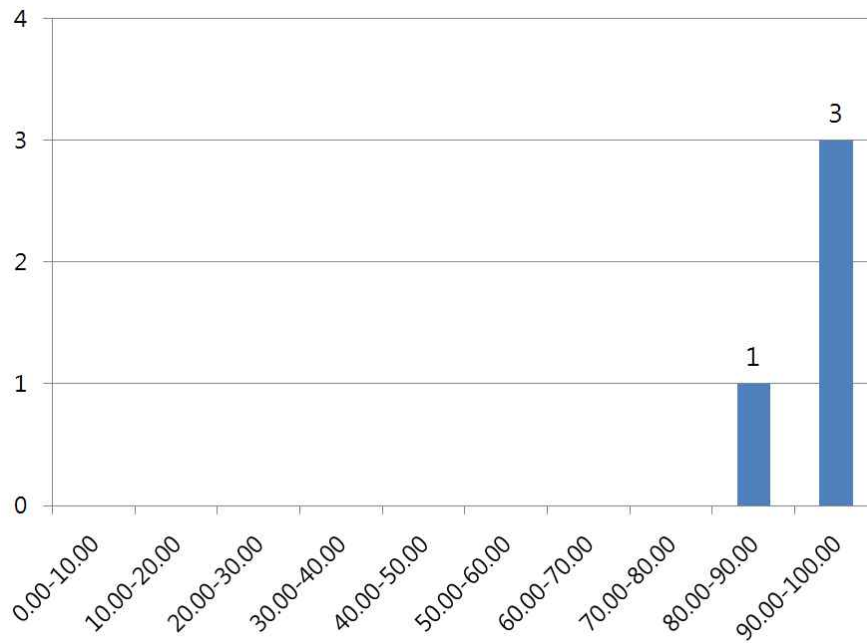
전남은 80.00점 이상~90.00미만과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각 1개소, 3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이 해당되었다(<그림Ⅱ-2-12-1> 참조).

<표Ⅱ-2-12-2> 전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84.09	92.19	89.74	3.83
시설 및 환경(A)	4	97.50 (9.75)	100.00 (10.00)	99.38 (9.94)	1.25 (0.13)
재정 및 조직운영(B)	4	70.83 (8.50)	87.50 (10.50)	81.25 (9.75)	7.22 (0.87)
인적자원 관리(C)	4	81.67 (16.33)	90.00 (18.00)	85.21 (17.04)	3.62 (0.7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87.50 (33.25)	99.53 (37.82)	94.57 (35.94)	5.29 (2.01)
생활인의 권리(E)	4	77.08 (7.71)	95.83 (9.58)	89.06 (8.91)	8.90 (0.89)
지역사회관계(F)	4	78.21 (7.82)	85.00 (8.50)	81.70 (8.17)	3.28 (0.33)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12-1> 전남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3. 경북

경북지역 5개 정신요양시설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4개소와 1개소가 분포하였다. 각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 5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 2개소와 양호(C) 2개소, 보통(D) 1개소, ‘인적자원관리(C)’는 최우수(A) 2개소와 우수(B) 3개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 5개소,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 4개소와 우수(B) 1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5개 시설 모두 우수(B)에 분포하였다(<표Ⅱ-2-13-1> 참조).

<표Ⅱ-2-13-1> 경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북	총점	4(80.00)	1(20.00)	-	-	-
(N=5)	시설 및 환경(A)	5(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2(40.00)	2(40.00)	1(20.00)	-
	인적자원관리(C)	2(40.00)	3(6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4(80.00)	1(20.00)	-	-	-
	지역사회관계(F)	-	5(10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경북 소재 정신요양시설의 총점은 평균 91.07점이었다. 각 영역별 평균점수의 경우, ‘시설 및 환경(A)’은 97.50(9.75)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77.91(9.35)점, ‘인적자원관리(C)’는 89.00(17.8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95.63(36.34)점, ‘생활인의 권리(E)’는 94.17(9.42)점, ‘지역사회관계(F)’는 84.14(8.41)점이었다(<표Ⅱ-2-1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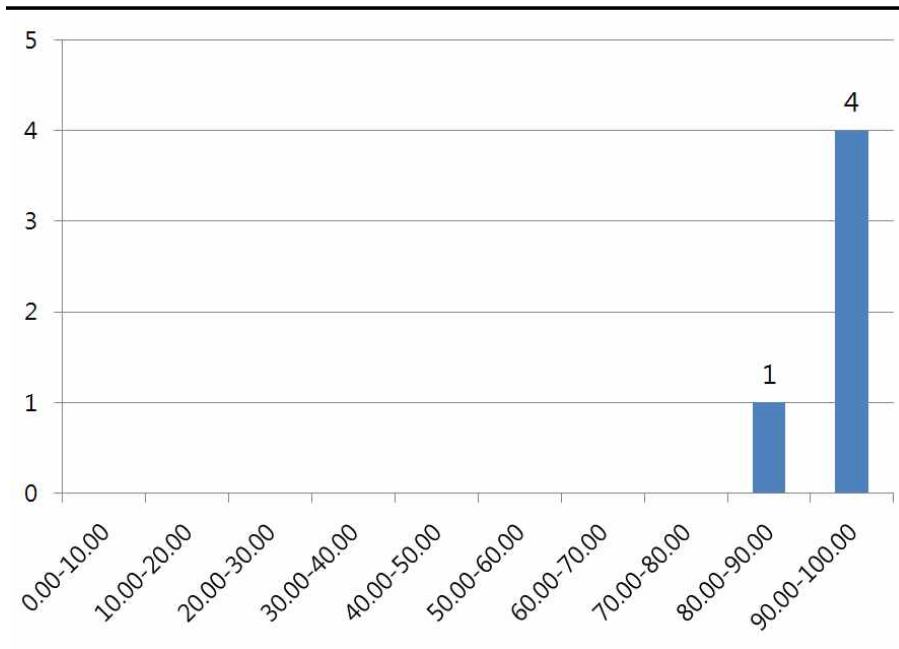
경북 소재 정신요양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1개소, 90.00점 이상~100.00점에 4개소가 각각 분포하였다(<그림Ⅱ-2-13-1> 참조).

<표Ⅱ-2-13-2> 경북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5	88.84	92.21	91.07	1.45
시설 및 환경(A)	5	90.00 (9.00)	100.00 (10.00)	97.50 (9.75)	4.33 (0.43)
재정 및 조직운영(B)	5	64.58 (7.75)	87.50 (10.50)	77.91 (9.35)	8.67 (1.04)
인적자원 관리(C)	5	85.00 (17.00)	93.33 (18.67)	89.00 (17.80)	3.60 (0.7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	94.22 (35.80)	96.88 (36.81)	95.63 (36.34)	1.04 (0.40)
생활인의 권리(E)	5	87.50 (8.75)	100.00 (10.00)	94.17 (9.42)	4.75 (0.47)
지역사회관계(F)	5	82.50 (8.25)	86.43 (8.64)	84.14 (8.41)	1.67 (0.17)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13-1> 경북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4. 경남

경남지역에는 총 4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이 입지하였는데, 모두 최우수(A)에 해당되었다. 각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의 경우 최우수(A) 4개소,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 3개소와 양호(C) 1개소,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 4개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 4개소,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 3개소 우수(B) 1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 3개소와 양호(C) 1개소의 시설 분포를 보였다(<표Ⅱ-2-14-1> 참조).

<표Ⅱ-2-14-1> 경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남	총점	4(100.00)	-	-	-	-
(N=4)	시설 및 환경(A)	4(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3(75.00)	1(25.00)	-	-
	인적자원관리(C)	-	4(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3(75.00)	1(25.00)	-	-	-
	지역사회관계(F)	-	3(75.00)	1(25.00)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경남의 정신요양시설들은 평균 90.57점의 점수를 받았다. 각 하위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은 평균 96.25(9.63)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82.29(9.88)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5.63(17.1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6.84(36.80)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90.36(9.07)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0.80(8.08)점으로 나타났다(<표Ⅱ-2-1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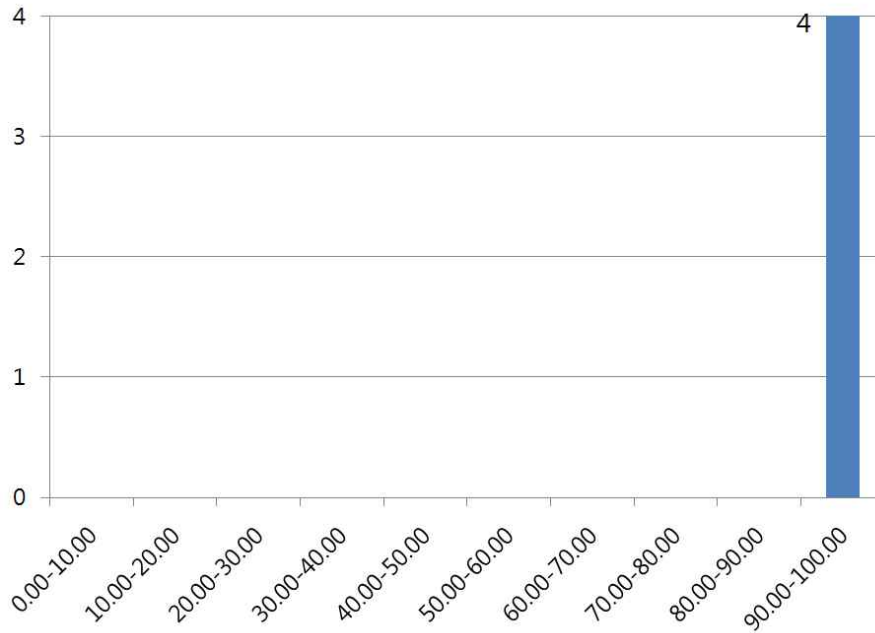
경남지역 시설 분포 현황은 <그림Ⅱ-2-14-1>과 같다. 90.00점 이상~100.00점에 4개소 모두가 해당되었다.

<표Ⅱ-2-14-2> 경남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90.11	91.13	90.57	0.44
시설 및 환경(A)	4	92.50 (9.25)	100.00 (10.00)	96.25 (9.63)	4.33 (0.43)
재정 및 조직운영(B)	4	79.17 (9.50)	83.33 (10.00)	82.29 (9.88)	2.08 (0.25)
인적자원관리(C)	4	83.33 (16.67)	87.50 (17.50)	85.63 (17.13)	2.19 (0.4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93.75 (35.63)	98.91 (37.58)	96.84 (36.80)	2.19 (0.83)
생활인의 권리(E)	4	85.42 (8.54)	93.75 (9.38)	90.63 (9.07)	3.61 (0.36)
지역사회관계(F)	4	75.00 (7.50)	83.57 (8.36)	80.80 (8.08)	3.98 (0.40)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2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14-1> 경남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15. 제주

제주의 1개 정신요양시설은 총점의 경우 최우수(A)에 해당되었다. 영역에 따라서는 '시설 및 환경(A)', '프로그램 및 서비스(C)', '생활인의 권리(E)', '인적자원관리(C)'에서 최우수(A)였고,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만 우수(B) 등급에 해당되었다(<표 II-2-1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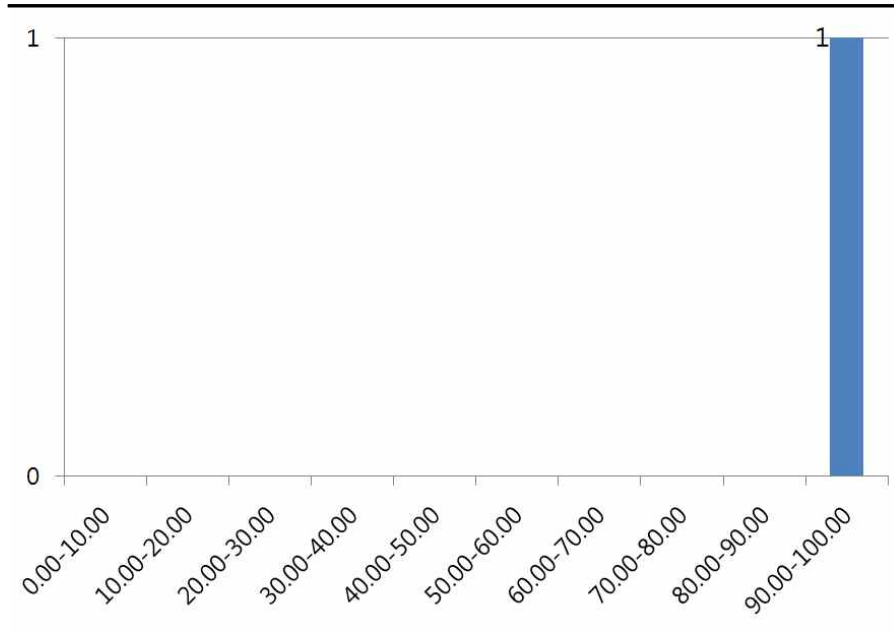
<표 II-2-15-1> 제주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제주	총점	1(100.00)	-	-	-	-
(N=1)	시설 및 환경(A)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C)	1(100.00)	-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100.00)	-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제주의 정신요양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해당되었다(<그림 II-2-15-1> 참조).



<그림Ⅱ-2-15-1> 제주 정신요양시설 총점 분포

제 3 절 영역별 평가결과²⁾

1. 시설 및 환경(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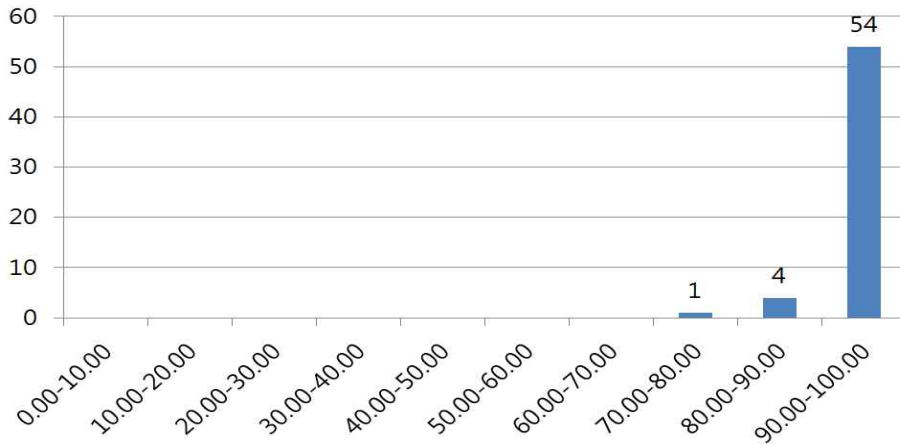
금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은 ‘시설 및 환경(A)’ 영역에서 평균 97.84(9.78)점을 취득하였다(<표Ⅱ-3-1-1> 참조).

그래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 정신요양시설들은 70.00점 이상~80.00점 미만에 1개소,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4개소이며,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가장 많은 54개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그림Ⅱ-3-1-1> 참조).

2) 각주1)과 같은 이유로 각 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Ⅱ-3-1-1>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59	80.00 (8.00)	100.00 (10.00)	97.84 (9.78)	4.11 (0.41)



<그림Ⅱ-3-1-1>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 분포

1) 시설의 내·외부환경

본 지표는 시설의 내·외부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시설의 내·외부환경이 생활인들에게 적절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옥외 휴식시설은 전체 생활인의 10% 정도가 쉴 수 있어야 인정하였다. 평균 3.81점을 취득하였고, 우수(4) 49개소(83.05%), 양호(3) 9개소(15.25%), 보통(2) 1개소(1.69%)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1-2> 참조).

<표Ⅱ-3-1-2> 시설의 외부환경

	1)시설의 외부환경 및 내부 환경 구조가 적절한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의 내·외부환경		49 (83.05)	9 (15.25)	1 (1.69)	-	3.81 (0.43)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2) 침실과 복도

본 지표는 시설의 침실과 복도의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침실과 복도의 상태, 청결함, 1인당 방 면적을 평가하여 생활인의 적절한 생활환경 확보 여부를 파악하였다.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날 경우는 냄새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가장 상태가 나쁜 복도나 침실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생활인이 침실에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장 비좁을 것으로 보이는 침실 3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1인당 방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93점이었고, 우수(4) 55개소(93.22%), 양호(3) 4개소(6.78%)로 조사되었다(<표Ⅱ-3-1-3> 참조).

<표Ⅱ-3-1-3> 침실과 복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침실과 복도	2)침실과 복도는 적절한가?	55 (93.22)	4 (6.78)	-	-	3.93 (0.2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3)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본 사항은 생활인을 위한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설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생활인이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과 지원시설의 적절한 설치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인 사물함은 임의로 추출한 10개의 개인사물함 중 적절한 개인사물이 들어있고, 평소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물함이 8개 이상일 경우를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아주 우수한 조명시설은 작은 글씨의 책을 읽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4점 만점에 평균 3.90점이며, 우수(4)에 55개소(93.22%), 양호(3)와 미흡(1)에 각각 3개소(5.08%), 1개소(1.69%)의 시설이 해당되었다(<표Ⅱ-3-1-4> 참조).

<표Ⅱ-3-1-4>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3)사생활 보호 및 생활편의 등을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55 (93.22)	3 (5.08)	-	1 (1.69)	3.90 (0.4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4) 상담실과 면회실

이 지표는 정신요양시설의 상담실과 면회실의 설치여부 및 적절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생활관동에 상담실이 1개 이상이라는 의미는 건물당 1개 이상을 의미하며, 냉난방과 편안한 의자 등 상담에 필요한 가구를 갖추고, 상담내용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면회실의 경우, 매점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면회공간이 적정하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우수(4) 55개소(93.22%), 양호(3) 2개소(3.39%), 미흡(2) 2개소(3.39%)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86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1-5> 참조).

<표Ⅱ-3-1-5> 상담실과 면회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상담실과 면회실 4)상담실과 면회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55 (93.22)	2 (3.39)	-	2 (3.39)	3.86 (0.57)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5) 재활프로그램 공간

본 사항은 프로그램실에 대한 지표로써, 공간의 확보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보호 작업장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인정되었으며, 지표에서의 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은 공간면적, 냉난방, 효과적인 프로그

램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평균 3.92점이며, 우수(4)에 55개소(93.22%), 양호(3)와 보통(2)에 각각 3개소(5.08%)와 1개소(1.69%)가 분포되었다(<표 II-3-1-6> 참조).

<표 II-3-1-6> 재활프로그램 공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재활프로그램 공간	5)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있는가?	55 (93.22)	3 (5.08)	1 (1.69)	-	3.92 (0.3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6) 여가활동(체육/독서) 공간

본 지표는 생활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과 독서공간의 활용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적절한 운동장은 생활인의 50%정도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크기로 운동장의 환경이나 바닥상태가 울퉁불퉁하지 않는 등 운동하기에 적합한 경우를 뜻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쾌적한 실내공간은 생활인 비례 10%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의미한다. 운동기구는 농구·배구·탁구·족구대, 헬스기구 등을 의미하며 적절한 위치여부나 수시 활용여부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정신보건법 관련 서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실내공간이 있어야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인 비례 10%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들은 우수(4) 53개소(89.83%), 양호(3) 5개소(8.47%), 보통(2) 1개소(1.69%)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평균 3.88점의 점수를 받고 있었다(<표 II-3-1-7> 참조).

<표 II-3-1-7> 여가활동(체육/독서) 공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여가활동(체육 /독서) 공간	6)여가활동(체육/독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는가?	53 (89.83)	5 (8.47)	1 (1.69)	-	3.88 (0.3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7)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 상태

본 지표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식당 및 조리실의 적절한 환경과 위생 상태를 평가하였다. 충분한 용량의 냉장고와 냉동고를 구비하고 식기소독기 등을 사용하며 취사조리실이 청결한 경우에 한해 위생적으로 음식과 식기가 관리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식당을 법인 내 타시설과 공유할 경우에는 전체 생활인의 수에 타 시설 이용자수를 가산하여 적용하였다. 다만 식당좌석이 생활인 대상 1/2이상이라고 할 때의 생활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병동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균 3.97점이었고,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57개소(96.61%)와 2개소(3.39%)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1-8> 참조).

<표Ⅱ-3-1-8>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7)식당과 조리실은 적절한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57 (96.61)	2 (3.39)	-	-	3.97 (0.18)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8)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본 사항은 생활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세면실 및 목욕시설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개별적인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이 포함된 지표이다. 일반 문 및 칸막이는 높이가 150cm이상이며, 문 하단 공간은 15cm이하이어야 하며, 적절한 변기 수는 여자용의 경우, 정원 10인당 변기 1개, 남자용은 정원 15인당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를 의미한다. 단, 남자의 경우 정원 15인당 대변기만 2개인 경우 소변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며, 이동식을 제외한 옥외 화장실도 포함하여 평가하되,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변기는 2개로 계산하였다.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은 동결기를 기준으로 최소한 아침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온수가 나와야 하며, 화장실은 불쾌한 냄새가 없고, 화장실용 신발이 별도 구비되어 있으며, 화장지 사용이 자유로워야 인정하였다.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77개소(96.61%)와 2개소(3.39%)의 시설이 분포한 가운데 평균 3.97점으로 나타났다(<표Ⅱ-3-1-9> 참조).

<표Ⅱ-3-1-9>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8)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은 적절한가?	57 (96.61)	2 (3.39)	-	-	3.97 (0.1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9) 세탁, 건조, 피복관리

본 지표는 생활시설의 피복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생활인들의 피복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건조설비는 건조기 또는 비를 가릴 수 있는 널대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점 만점에 평균 3.92점이었고,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54개소(91.53%), 5개소(8.47%)의 시설 분포를 보였다(<표Ⅱ-3-1-10> 참조).

<표Ⅱ-3-1-10> 세탁, 건조, 피복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세탁, 건조, 피복관리	9)세탁, 건조, 피복관리 설비는 적절한가?	54 (91.53)	5 (8.47)	-	-	3.92 (0.2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0) 시설환경의 안전요소

본 지표는 생활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활인들의 안전을 위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소방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에 의한 소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방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을 관련 내부기안 또는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소방법규에 의한 방염처리 여부,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이상 유무를 보았다. 상해, 화재 등의 보험가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3항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고, 여기서의 상해보험은 영업보상책임배상의 대물, 대인을 의미한다. 안전 점검 실시 및 조치결과 반영 기록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항, 동법시행령 제18조4항에 의거하여 각 시설이 시설물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며, 조치 결과를 반영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2항에 의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방역활동은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항 [별표 4]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횟수는 2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번,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번으로 총5회 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의 방역활동은 외부의 방역회사에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역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체방역은 인정하지 않았다. 시설 및 환경개선이 3년 이내에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설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고 이에 대한 실행이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98점이었고,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58개소(98.31%), 1개소(1.69%)의 시설 분

포를 보였다(<표 II-3-1-11> 참조).

<표 II-3-1-11> 시설환경의 안전요소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환경의 안전요소	10)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58 (98.31)	1 (1.69)	-	-	3.98 (0.13)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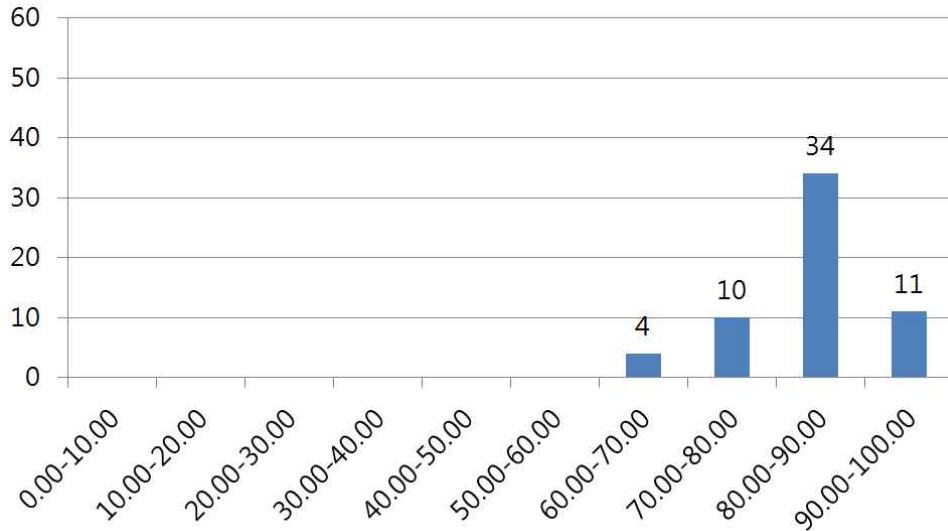
2. 재정 및 조직운영(B)

정신요양시설의 '재정 및 조직운영(B)'은 100점으로 표준화할 경우 평균 83.86점이었다. 이는 12.00점 만점 중 10.06점의 수준이다(<표 II-3-2-1> 참조).

<표 II-3-2-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59	60.42 (7.25)	97.92 (11.75)	83.86 (10.06)	8.09 (0.97)

<그림 II-3-2-1>은 정신요양시설의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분포이다. 60.00점 이상~70.00점 미만에 4개소, 70.00점 이상~80.00점미만 구간에 10개소와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34개소, 90.00~100.00점에 11개소로 분포하였다(<그림 II-3-2-1> 참조).



<그림 II-3-2-1>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 분포

1) 원장의 전문성

원장의 소지 자격증 및 경력 수준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하였다. 인사기록 카드, 관련 자격증 사본, 재학 및 훈련증명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하되, 자격증은 법적자격증만을 유효하게 인정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 정신보건시설 경력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였다. 평균 3.19점의 점수를 받았고, 우수(4)에 32개소(54.24%), 양호(3)에 16개소(27.12%), 보통(2)에 1개소(1.69%), 미흡(1)에 10개소(16.95%)의 시설이 분포하였다(<표 II-3-2-2> 참조).

<표 II-3-2-2> 시설장의 전문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원장의 전문성 1)원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32 (54.24)	16 (27.12)	1 (1.69)	10 (16.95)	3.19 (1.11)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2) 원장의 시설 운영 방향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침서를 근거로 원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평가하였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회계의 투명성은 상세한 수준까지 예산 및 결산자료를 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점 만점 중 평균 3.83점을 획득했으며, 우수(4)와 양호(3), 보통(2)에 각각 51개소(86.44%), 6개소(10.17%), 2개소(3.39%)가 분포되었다(<표Ⅱ-3-2-3> 참조).

<표Ⅱ-3-2-3> 원장의 시설 운영 방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원장의 시설운영 방향	2)원장의 시설운영방향은 적절하고 구체적 계획이 있고 반영되었는가?	51 (86.44)	6 (10.17)	2 (3.39)	-	3.83 (0.46)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3)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본 지표는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평가지표이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3)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 명부, 회의록, 시·군·구청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또한 서면회의 또는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실적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르

- 3)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며,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서면회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에는 서면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평균 3.71점의 점수를 취득하였으며, 우수(4)에 43개소(72.88%), 양호(3)에 15개소(25.42%), 보통(2)에 1개소(1.69%)의 시설이 해당되었다. (<표Ⅱ-3-2-4> 참조).

<표Ⅱ-3-2-4>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3)운영위원회의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43 (72.88)	15 (25.42)	1 (1.69)	-	3.71 (0.49)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4) 법인이사회 구성 및 활동

본 사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회의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내용으로써, 특수 관계부존재각서, 법인이사회 명단, 회의록, 관련문서를 통해 평가하였다. 4점 만점 중 평균 3.97점이었고, 우수(4) 57개소(96.61%), 양호(3) 2개소(3.39%),의 시설 분포를 보였다 (<표Ⅱ-3-2-5> 참조).

<표Ⅱ-3-2-5> 법인이사회 구성 및 활동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법인이사회 구성 및 활동	4)법인이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57 (96.61)	2 (3.39)	-	-	3.97 (0.1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본 사항은 정신요양시설의 연간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사업진행의 일치

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사업(운영)계획서는 수행과제와 전략이 제시된 계획서를 말하며, 추진한 사업계획서와 평가서 내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각 배점 등급별로 보면 우수(4)는 49개소(83.05%), 양호(3)는 9개소(15.25%), 보통(2)은 1개소(1.69%)의 분포를 보였고, 4점 만점에 평균 3.81점의 수준이었다(<표Ⅱ-3-2-6> 참조).

<표Ⅱ-3-2-6>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사업(운영)계획 의 수립	5)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49 (83.05)	9 (15.25)	1 (1.69)	-	3.81 (0.43)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6) 직원 1인당 급여 자부담액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정량지표이며 상대평가방식으로 배점되었다. 시설이 직원들의 급여를 위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지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직원 직원과 자부담 직원을 모두 포함하였고 자부담의 범위는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것으로 하였다. 또한, 평가의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1년으로 하였다. 직원의 수는 월평균으로 하여 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는 각 월의 직원 수 총합 ÷ 12(12개월 직원 수의 평균)이며, 각 월의 직원 수는 급여이체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평가 자료는 시·군·구에 보고한 종사자 현황 자료와 종사자관리카드 명단을 활용하였다. 본 지표의 점수는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으로 평균 2.56점이었다. 자부담 총액은 평균 25,120천원이었으며, 시설 간 편차가 24,222천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평균 780천원이었다(<표Ⅱ-3-2-7> 참조).

<표Ⅱ-3-2-7> 직원 1인당 급여 자부담액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원 1인당 자부담액	산출점수	1.00	4.00	2.56	1.13	
	6)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얼마인가?	자부담총액(천원)	0.00	125,820	25,120	24,222
	현 직원(명)	16.00	84.00	32.78	11.95	
	1인당 자부담액(천원)	0.00	2,773	780	654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직원 1인당 자부담액 = $\frac{2010년\ 1월\ 1일\ \sim\ 2010년\ 12월\ 31일\ 총\ 급여\ 중\ 기관자부담\ 총금액}{2010년\ 월평균\ 확보\ 직원수}$

7)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본 지표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근거로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이다. 본 지표의 평가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입금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관 '08 전입금'으로 하였고,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하였다. 또한 개인 시설인 경우 개인 출연금(보증금 제외)을 보며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 인정하였다. 평가자료는 2008년~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의미한다.

각 사항별 기술통계량을 보면, 법인 전입금은 평균 61,234천원, 보조금 결산금액은 평균 5,194,317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평균 880,932천원, 전입금 비율은 평균 1.37%였다. 한편, 정신요양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평균 2.41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2-8> 참조).

<표 II-3-2-8>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산출점수		1.00	4.00	2.41	1.26
운영법 7) 운영법인의 인의 자부담(전입금) 전입금 이 어느 비율 정도인가?	법인전입금(천원)	0.00	786,903	61,234	126,567
	보조금(천원)	1,815,783	10,571,671	5,194,317	1,777,645
	기능 보장비(천원)	0.00	3,077,189	880,932	874,051
	전입금비율(%)	0.00	10.48	1.37	2.48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 $\frac{2008년 \sim 2010년 \text{ 법인 전입금}}{2008년 \sim 2010년 \text{ 보조금 결산금액} - \text{기능보장사업비}} \times 100$

8) 후원금 비율

본 지표는 보조금 결산금액 대비 후원금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지표이다. 평가대상기간은 2008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의 3년이며, 후원금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후원금수입'이며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으로 하였다. 정신요양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법인(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 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경우는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하였다. 4점 만점에서 평균 2.56점이었고,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비율에 대한 평균은 각각 139,004천원과 3.48%였다(<표 II-3-2-9> 참조).

<표 II-3-2-9> 후원금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8) 시설의					
산출점수		1.00	4.00	2.56	1.13
후원금 비율	후원금비율은				
	후원금수입(천원)	0.00	592,980	139,004	105,775
	후원금비율(%)	0.00	14.50	3.48	2.71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후원금 비율 = $\frac{2008년 \sim 2010년 \text{ 후원금 수입}}{2008년 \sim 2010년 \text{ 보조금 결산금액} - \text{기능보장사업비}} \times 100$

9)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본 지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지표로써, 외부감사란 외부의 공인기관(세무법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미하며 단순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본 지표의 평가를 위해 직원면담, 지출결의서, 감사보고서, 재정보증보험증권, 정기간행물 등 관련문서를 활용하였다. 평균 3.95점이었고, 우수(4) 56개소(94.92%), 양호(3) 3개소(5.08%), 로 분포되었다(<표Ⅱ-3-2-10> 참조).

<표Ⅱ-3-2-10>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표준편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9)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6 (94.92)	3 (5.08)	-	-	3.95 (0.22)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10) 시설의 정보화 수준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인터넷 접속 여부를 통해 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되었는데, 평가위원들은 전산프로그램 및 인터넷 접속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업무에 활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회계 및 생활인, 후원자 관리 등 이용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활용은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명이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 내 네트워크가 구축·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업무용 PC의 경우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품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하였다(2010.12.31 상근직원 현원기준). 평가결과 우수(4)에 46개소(77.97%), 양호(3) 및 보통(2)에 각각 12개소(20.34%), 1개소(1.69%)의 분포를 보였고, 4점 만점에 평균 3.76점이었다(<표Ⅱ-3-2-11> 참조).

<표II-3-2-11> 시설의 정보화 수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의 정보화수준					
10)시설의 정보화 수준은 적절한가?	46 (77.97)	12 (20.34)	1 (1.69)	-	3.76 (0.47)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1) 사업비 비율

본 지표는 보조금 결산금액 대비 사업비 비율을 파악하는 정량지표이며, 2008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평가기간으로 하였다. 사업비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관 '03 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이고, 본 지표의 근거 서류로는 2008년~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가 해당되었다. 평균 2.56점을 받았으며, 3개년 간 사업비 수입은 평균 1,219,296천 원이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평균 27.98%로 나타났다. 두 사항 모두 각 시설별로 편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표II-3-2-12> 참조).

<표II-3-2-12> 보조금 결산 금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산출점수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업비 비율					
11)시설의 보조금 결산 금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사업비수입(천원)	263,663	3,220,372	1,219,296	572,526	
사업비비율(%)	14.52	58.82	27.98	7.24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frac{\text{결산 금액 대비 사업비}}{\text{비율}} = \frac{2008년 \sim 2010년 \text{ 사업비}}{2008년 \sim 2010년 \text{ 보조금 결산 금액} - \text{기능보강사업비}} \times 100$$

12) 비품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비품에 대한 관리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본 지표에서 말하는 기록이 충실하다는 것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또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또는 전산으로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관찰과 비품관리대장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평가결과는 우수(4)에 56개소(94.92%), 양호(3)에 3개소(5.08%)의 분포를 보였고, 4점 만점에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다(<표 II-3-2-13> 참조).

<표 II-3-2-13> 비품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비품관리	12)비품관리대장의 비치와 기록은 어떠한가?	56 (94.92)	3 (5.08)	-	-	3.95 (0.2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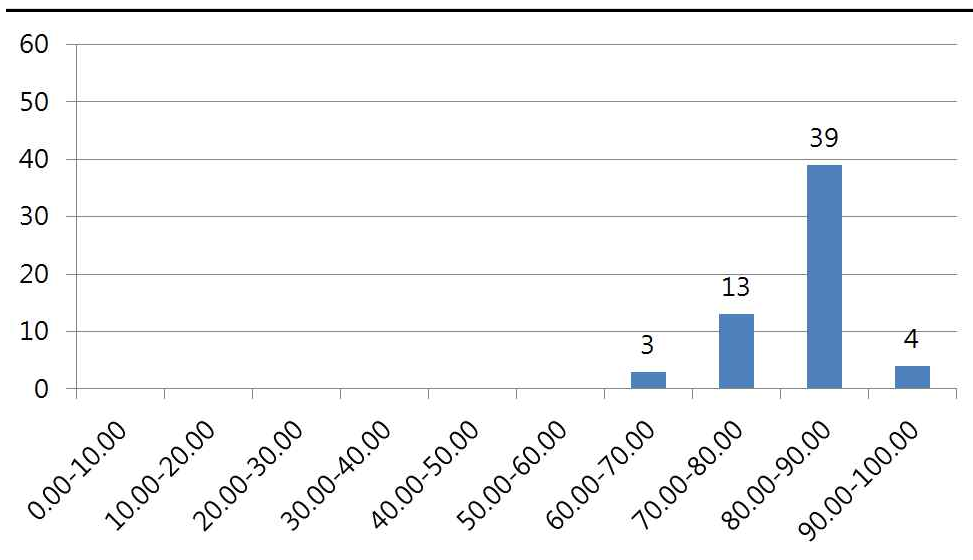
3. 인적자원관리(C)

전국의 55개 정신요양시설들의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100점 기준으로 평균 83.02점이었다. 이는 20.00점 만점 중 16.60점에 해당된다(<표 II-3-3-1> 참조).

<표 II-3-3-1>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59	60.83 (12.17)	93.33 (18.67)	83.02 (16.60)	6.14 (1.23)

정신요양시설의 '인적자원관리(C)'는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39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이외 60.00점 이상~70.00점 미만에 3개소, 70.00점 이상~80.00점 미만에 13개소, 90.00점 이상~100.00점에 4개소의 시설이 해당되었다(<그림 II-3-1-3> 참조).



<그림 II-3-3-1> 인적자원관리(C) 영역 점수 분포

1) 법정 직원 충원율

본 사항은 법정 대비 직원 충원율을 파악하는 지표로써,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직원의 범위는 정부지원 직원(시설장 포함)과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되 수습직원, 임시직, 파트직은 제외하였다. 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는 각 월의 직원 수 총합 ÷ 12(12개월 직원 수의 평균)이고, 각 월의 직원 수는 급여 이체일을 기준으로 확보한 직원 수로 하였다. 또한 법정 직원 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근거하였고 휴직인 경우 대체 근무자가 확인되면 인정하였다. 산출값은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평균 2.54점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법정 직원수는 평균 38명으로 법정 충원율이 88.24%로 나왔다.(<표Ⅱ-3-3-2> 참조).

<표Ⅱ-3-3-2> 법정 직원 충원율

	산출점수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법정 직원 1)법정 직원 수 대비 충원율 직원 충원율은?	산출점수	1.00	4.00	2.54	1.13
	법정 직원 수(명)	17	88	38	13
	법정 충원율(%)	64.86	127.27	88.24	15.99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text{※산출식: } \text{법정 직원 충원율} = \frac{\text{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text{2010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수}} \times 100$$

2) 전체 직원 1인당 생활인수4)

본 사항은 전체 직원 1인당 관리 생활인 수를 파악하는 지표로써,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로 구성되었다. 직원 1인에게 할당되는 생활인이 적을수록 서비스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수치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적정인원 평가계산에서 월 평균 생활인 수는 각 월의 생활인 수 총합 ÷12(12개월 직원 수의 평균)으로 하였고, 일일 입소자 현황표를 기준(매월 말)으로 하였다. 여기에 월 평균 확보 직원 수는 각 월의 직원 수 총합 ÷12(12개월 직원 수의 평균)로 하였으며, 각 월의 직원 수는 급여이체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평균 2.59점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생활인수는 평균 199.38명으로 직원 1인당 관리 생활인수는 평균 5.96명의 수준이었다(<표Ⅱ-3-3-3> 참조).

4)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직원 1인당 생활인이 적은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본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낮은 점수를 배점하였다.

<표Ⅱ-3-3-3> 전체 직원 1인당 생활인수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산출점수	1.00	4.00	2.59	1.10
직원 1인당 생활인수	2)직원 1인당 관리 생활인수는?	월평균 생활인수(명)	46.00	490.00	199.38	86.82
		직원1인당 관리생활인수(명)	2.88	7.73	5.96	0.95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text{※산출식: 직원 1인당 생활인수} = \frac{\text{2010년 월 평균 생활인 수}}{\text{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3)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본 지표는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인사기록카드와 자격증 사본 등 관련문서를 확인하였고,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직원의 범위는 정부지원 직원(시설장 포함)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되 수습직원, 임시직, 파트직은 제외하였다. 자격증의 범위는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점역 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의 국가인정 자격증 소지자만을 인정하였고, 또한 직업 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재학생은 제외하였다. 단, 직무관련 복수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하였다.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지원 직원과 자부담 직원을 모두 포함하였다.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으로 평균 2.54점이었고, 자격증소지 직원은 평균26명, 자격증소지 비율은 평균 78.0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Ⅱ-3-3-4> 참조).

<표Ⅱ-3-3-4>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산출점수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3)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비율은?		1.00	4.00	2.54	1.12
		자격증소지 직원 수(명)	8	45	26	9
		자격증소지 비율(%)	50.00	53.57	78.08	72.28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text{자격증소지 직원비율} = \frac{\text{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격증소지 직원 수}}{\text{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times 100$

4) 직원의 이(퇴)직율⁵⁾

본 지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총 3년 동안 직원의 이(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사항이다. 직원의 범위는 정부지원 직원(시설장 포함)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되 수습직원, 임시직, 파트직은 제외하였고, 또한 이·퇴직자의 범위는 이·퇴직 사유가 본인의 사망, 동일법인 내 인사 발령, 정년퇴직에 의한 것은 제외하였고, 재입사의 경우 퇴직시기가 평가기간 중이면 이·퇴직한 직원 수에 산정하였다. 다만, 유학, 결혼으로 인한 지자체 행정구역 외 이사로 인하여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였으나, 반드시 그 근거가 확인될 수 있어야 적용하였다. 평가 자료는 인사기록카드, 해당기간(12분기) 시·군·구에 보고한 종사자 현황 자료, 해당기간(12분기) 종사자 명단(월급명세서 등 참조), 종사자관리카드 명단, 퇴사자 명단 등을 활용하였다. 금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59개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2.53점을 받았는데, 최소점수는 1.00점, 최대점수는 4.00점으로 나타났다. 이(퇴)직 직원은 평균 10명, 이(퇴)직률은 평균 29.68%였다(<표Ⅱ-3-3-5> 참조).

5) 직원의 이(퇴)직률이 낮을수록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전제할 수 있으므로 수치가 클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II-3-3-5> 직원의 이(퇴)직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원의 이(퇴)직율	4)직원의 이(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	산출점수	1.00	4.00	2.53	1.12
		이(퇴)직 직원 수(명)	0	48	10	9
		이(퇴)직율(%)	0.00	87.50	29.68	20.23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직원 이(퇴)직율= $\frac{2008년\ 1월\ 1일\ \sim\ 2010년\ 12월\ 31일\ 이\ 퇴직한\ 직원\ 수}{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times 100$

5) 간호사의 배치수준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종사자 현황 확인을 근거로 정신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수준을 평가하였다. 간호사는 현원대비 간호사를 의미하며, 정규간호사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우수(4), 40%이상 양호(3), 30%이상 보통(2), 20%이상 미흡(1)으로 등급을 배점하였는데, 우수(4) 47개소(79.66%), 양호(3) 3개소(5.08%), 보통(2) 4개소(6.78%), 미흡(1) 5개소(8.47%)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었다. 또한, 4점 만점에 평균 3.56점의 수준이었다(<표II-3-3-6> 참조).

<표II-3-3-6> 간호사의 배치수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간호사의 배치수준	5)간호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47 (79.66)	3 (5.08)	4 (6.78)	5 (8.47)	3.56 (0.9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6)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본 지표는 사회복지사 대비 생활인의 수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사회복지사는 현원대비 사회복지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사 1인당 생활인이 50명 미만일 경우는 우수(4), 50명~99명은 양호(3), 100명~199명은 보통(2), 200명 이상은 미흡(1)으로 평가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4.00점이었으며, 59개 시설(100.00%) 모두 우수(4)에 해당되고 있었다. 한편,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1급 사회복지사는 평균 4명이었고, 2급 사회복지사는 평균 10명으로, 사회복지사 배치수준은 평균 12.64명이었다(<표Ⅱ-3-3-7> 참조).

<표Ⅱ-3-3-7>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6)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59 (100.00)	-	-	-	4.00 (0.00)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1급 사회복지사수(명)	0	16	4		3
	2급 사회복지사수(명)	1	21	10		5
	사회복지사 배치수준(명)	6.07	23.40	12.64		4.07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 산출식: 사회복지사 배치수준 = $\frac{2010년\ 월평균\ 생활인\ 수}{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7)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배치수준

본 지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대비 생활인의 수를 통해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배치수준을 평가하는 사항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현원대비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의미하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에서 산정되었더라도 이곳에서 중복산정을 인정하였다. 전문요원 1인당 생활인이 150명 미만일 경

우는 우수(4), 150명~199명은 양호(3), 200명 이상은 보통(2), 정신보건 전문요원 및 수련 중인 직원이 없는 경우는 미흡(1)으로 배점하였다.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46개소(77.97%), 6개소(10.17%), 3개소(5.08%), 4개소(6.78%)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었고, 평균 3.59점을 받았다. 한편,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전문요원은 평균 3명이었고, 수련 중인 직원은 평균 0명이었다. 또한, 전문요원 대비 생활인의 수는 평균 84.01명의 수준이었다(<표Ⅱ-3-3-8> 참조).

<표Ⅱ-3-3-8>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배치수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표준편차)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7)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46 (77.97)	6 (10.17)	3 (5.08)	4 (6.78)	3.59 (0.87)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문요원 수(명)	0	14	3	2	
	수련중인 직원 수(명)	0	2	0	1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수준(명)	0.00	226.50	84.01	56.95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 산출식: 전문요원 배치수준 = $\frac{2010\text{년 월평균 생활인 수}}{\text{정신보건전문요원} + \text{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중인 직원} \times 1/2}$

8)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정신요양시설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외부교육이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의미한다. 직원은 정부지원 직원(시설장 포함)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되 수습직원, 임시직, 파트직은 제외하였고 출장복명서, 내부기안, 성적증명서, 수료증,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등이 평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이버 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만 인정하였고,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으로 하였다. 업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 당 10시간을 인정하나 휴학 중일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해외연수 중의 기관견학은 방문기관 당 3시간 인정하였으며,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본 사항에서는 1인당 최대 60시간 한도만 인정하였다. 본 지표는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고 평균 2.58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20.19시간이었고, 외부강사초청 교육시간은 평균 20.48시간이었다(<표Ⅱ-3-3-9> 참조).

<표Ⅱ-3-3-9>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외부교육 참여시간	8)연간 직원 1인당 교육에 참여한 평균시간은?	산출점수	1.00	4.00	2.58	0.88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시간)	5.04	80.24	20.19	12.86	
	외부강사초청 교육시간	1.00	243.00	20.48	33.73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 $\frac{2010년\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9) 교육활동비

본 사항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직원 1인당 연간 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교육비란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 금액(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 등)을 지칭한다. 단,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았다. 내부교육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내부문서와 강사료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 등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

였다. 한편,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지원 직원과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였다. 전국의 59개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2.53점의 점수를 보였다. 교육활동비는 시설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가운데 평균 5,318천원이었고,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173천원이었다(<표Ⅱ-3-3-10> 참조).

<표Ⅱ-3-3-10> 교육활동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교육 활동비	9)연간 직원 1인당 평균	산출점수	1.00	4.00	2.53	1.12
	교육비	교육활동비(천원)	1,295	17,459	5,318	3,429
	지출액은?	1인당 교육비 지출액(천원)	38	831	173	122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 $\frac{2010년\ 전체\ 직원의\ 내부교육활동비 + 외부교육활동비}{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10)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본 지표는 정신요양시설의 직원채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는 지표로써,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직원채용이 진행되는지를 평가하였다.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라고 함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격과 능력을 채용하기 이전에 명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채용절차 명문화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는 신문이나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채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문에는 지역신문, 베틀신문과 같은 정보지도 포함하였다. 만일 2008년~2010년까지 직원채용이 없는 경우 직원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를 하고 있음과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본 지표의 증빙자료로는 공개채용 지출증빙서류, 공개채용 광고스크랩, 이력서철, 인사규정 등의 관련 문서를 근거로 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92점이었고, 우수(4)에 55개소(93.22%), 양호(3)와 보통(2)에 각 3개소(5.08%), 1개소(1.69%)의 시설이 해당

되었다(<표 II-3-3-11> 참조).

<표 II-3-3-11>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선발기준 및 10)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55 (93.22)	3 (5.08)	1 (1.69)	-	3.92 (0.3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1) 직원대상 전문교육에 참여

정신요양시설의 직원이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교육이수확인서, 사례관리보고서, 교육자료, 직원면담 등 관련문서를 근거로 참여정도 및 제출된 보고서의 양을 측정하였다. 지표에서의 전문교육이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상담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관련 학회 또는 협회는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임상심리학회, 정신간호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요양시설협회를 뜻한다. 한편, 사례관리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시행 교육을 위해 사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들은 4점 만점에 평균 3.88점이었고, 우수(4), 양호(3)에 각 55개소(93.22%), 2개소(3.39%), 보통(2)과 미흡(1)에 각 1개소(1.69%)의 시설이 해당되었다(<표 II-3-3-12> 참조).

<표 II-3-3-12> 직원대상 전문교육에 참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직원대상 11)보건복지부 관련 학회, 협회 전문교육에 참여	55 (93.22)	2 (3.39)	1 (1.69)	1 (1.69)	3.88 (0.49)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2) 직무교육

본 사항은 직원 교육일지 (현황 표), 외부강사 교육자료, 직원면담, 강의자료내용 정리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에서 직원을 위한 슈퍼비전 및 전문가 초빙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직무교육이란 전문교육 외의 위생교육, 소방교육, 영양 및 조리교육, 생활인과 관련된 윤리교육을 의미한다. 슈퍼 비전은 슈퍼바이저가 업무에 관한 지도사항 기록을 의미하며, 다만 공문수발지시 사항은 제외하였다. 우수(4) 50개소(84.75%), 양호(3) 7개소(11.86%), 보통(2)과 미흡(1)에 각각 1개소(1.69%)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평균은 3.80점으로 나타났다(<표II-3-3-13> 참조).

<표II-3-3-13> 직무교육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12)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직원대상 슈퍼비전 및 전문가 초빙 직무교육이 있는가?	50 (84.75)	7 (11.86)	1 (1.69)	1 (1.69)	3.80 (0.5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3) 직원의 후생복지

본 사항은 정신요양시설 내에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평가하는 내용이다. 평가내용 중 직원의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자체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을 말고, 포상제도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에 부상이 주어지는 경우만을 인정하였으며, 직원을 위한 별도의 자료실과 휴식공간을 한 장소로 이용할 시 하나만 인정하였다. 기타 후생복지로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안식년(월), 해외연수, 성과급 등 직원 후생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하나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금

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들은 4점 만점에 평균 3.95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와 양호(3)에 56개소(94.92%), 3개소(5.08%)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었다(<표Ⅱ-3-3-14> 참조).

<표Ⅱ-3-3-14> 직원 복리후생제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직원의 복리후생제도	13)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는 어떠한가?	56 (94.92)	3 (5.08)	-	-	3.95 (0.2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4) 신입직원교육

본 사항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입직원교육에는 신규 채용자(임용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태도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획안, 관련문서, 직원면담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신요양 시설들은 우수(4) 57개소(96.61%), 양호(3) 1개소(1.69%), 미흡(1) 1개소(1.69%)의 시설이 각각 분포한 가운데 평균 3.93점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표Ⅱ-3-3-15> 참조).

<표Ⅱ-3-3-15> 신입직원교육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신입직원 교육	14)신입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7 (96.61)	1 (1.69)	-	1 (1.69)	3.93 (0.41)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5) 직원인사평가

본 사항은 직원의 직무평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내용 중 직무평정 관련 규정이란 직원들의 능력,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을 의미하며, 평가시스템이란 하향식평가 외 상향평거나 동료평가 등의 다면평가체제로써, 이 중 하나라도 시행되면 점수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정(표), 직원 업무평가 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신요양시설들은 우수(4) 55개소(93.22%), 양호(3) 1개소(1.69%), 보통(1) 3개소(5.08%)의 시설이 각각 분포한 가운데 평균 3.88점을 나타냈다(<표Ⅱ-3-3-16> 참조).

<표Ⅱ-3-3-16> 직원인사평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직원인사 평가	15)직원의 직무평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55 (93.22)	1 (1.69)	3 (5.08)	-	3.88 (0.4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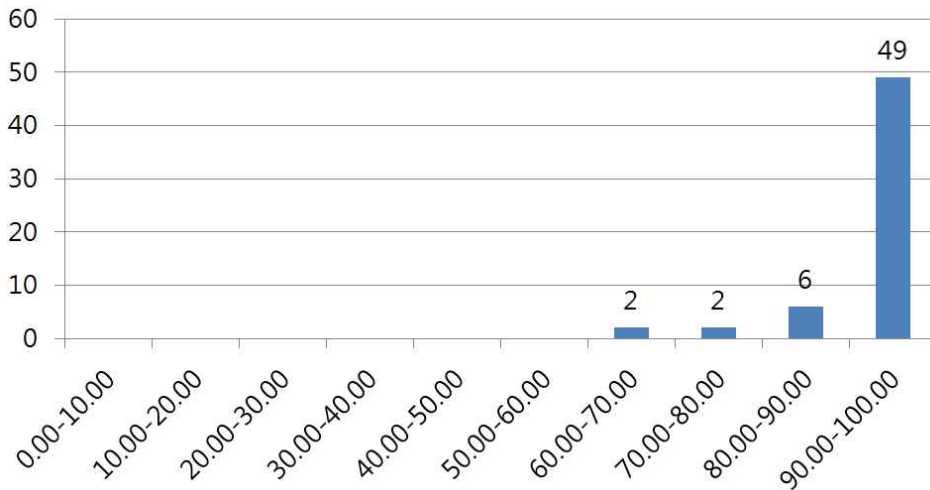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40.00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었다. 금번 평가에서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들은 100점 기준으로 평균 94.00(35.72)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4-1> 참조).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에서는 49개소가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분포하여 가장 밀집된 구간으로 나타났다. 이외 60.00점 이상~70.00점 미만과 70.00점 이상~80.00점미만 구간에 각 2개소씩으로 나타났으며,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6개소가 해당되었다(<그림Ⅱ-3-4-1> 참조).

<표Ⅱ-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59	65.63 (24.94)	100.00 (38.00)	94.00 (35.72)	7.08 (2.69)



<그림Ⅱ-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점수 분포

1)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본 사항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의 청결한 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4점 만점에 평균 3.93점이었으며, 우수(4), 양호(3), 보통(2)에 각각 56개소(94.92%), 2개소(3.39%), 1개소(1.69%)의 시설이 분포하였다(<표Ⅱ-3-4-2> 참조).

<표Ⅱ-3-4-2>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1)생활인의 의류와 침구는 청결한가?	56 (94.92)	2 (3.39)	1 (1.69)	-	3.93 (0.31)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2) 응급환자의 관리

긴급후송체계 관련서류(병록일지, 전문의 지시사항, 서면확인기록)를 이용하여, 생활인 중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긴급후송체계 관련서류는 후송기관과의 협약 내지 공문서류, 후송방법 서류 등을 의미한다. 4점 만점에 3.98점을 받았고, 각 배점 등급에 따라서 살펴보면, 우수(4) 58개소(98.31%)와 양호(3) 1개소(1.69%)로 나타났다(<표Ⅱ-3-4-3> 참조).

<표Ⅱ-3-4-3> 응급환자의 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응급환자의 관리	2)응급환자의 처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가?	58 (98.31)	1 (1.69)	-	3.98 (0.13)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3) 생활인의 건강관리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시도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평가내용 중 적절한 관리란 전염성 질환(이질, 설사, 눈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격리공간의 확보 등을 말함을 뜻한다. 또한, 건강검진은 5종 이상의 건강검진일 경우 인정하였으며,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암 검사와 같이 암 검사나 심전도 검사 등 특정성별이나 연령층만 시행해도 인정하였다. 각 배점등급에 따라 우수(4) 52개소(88.14%), 양호(3) 6개소(10.17%), 미흡(1) 1개소(1.69%)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85점으로 나타났다(<표Ⅱ-3-4-4> 참조).

<표Ⅱ-3-4-4> 생활인의 건강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생활인의 건강관리	3)생활인의 건강관리는 적절한가?	52 (88.14)	6 (10.17)	-	1 (1.69)	3.85 (0.48)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4) 진료 및 상담

여기에서는 진료와 상담의 빈도 및 기록, 체계적 관리, 실질적 활동, 개별 건강관리를 평가하였다. 빈도는 월1회 이상의 빈도는 진료기록부 또는 업무 일지를 임의로 5개를 추출하여 4개 이상에서 확인(전자 차트 포함), 상담기록은 2줄 이상 실질적 내용이 있으며, 환자를 위한 유익한 정보가 포함된 환자상태 및 상담내용이 기록된 것(생활인으로부터 기록의 진실성 확인, 주요 대상자에 대한 기록 확인)으로 관찰기록을 포함하였다.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 함은 입원환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연락, 간식비 지급, 간병인 등을 의미한다.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규정이나 계획 및 지침이 있을 경우 인정하였다. 축탁의 활동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만 해당되며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건강관리 문서 내용을 인정하였다. 각 배점등급에 따라 우수(4) 55개소(93.22%)와 양호(3) 4개소(6.78%)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93점으로 나타났다(<표Ⅱ-3-4-5> 참조).

<표Ⅱ-3-4-5> 진료 및 상담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진료 및 상담	4)진료 및 상담은 적절한가?	55 (93.22)	4 (6.78)	-	-	3.93 (0.25)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5) 원내의 작업요법

본 지표는 생활인의 원내 작업요법운영에 대한 지표로써, 작업요법의 자발성, 작업처방, 보상,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인의 임의추출 면담과 진료기록부로 생활인 및 가족동의서(무연고자 제외)를 확인하였다. 지표에서의 작업요법은 외부의 하청, 판매를 위한 자체 생산 및 주방 일을 포함한 개념이며, 적절한 보상여부는 생활인의 기능과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식수준에서 결정하며, 서면화된 기록(작업일지, 임금통장 확인 등)을 근거로 확인토록 하였다. 한편, 본 지표의 증빙자료로는 현장 확인, 생활인면담, 작업일지, 정신과전문의기록 등이 해당된다. 정신요양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평균 3.85점을 획득하였는데, 우수(4)에 51개소(86.44%), 양호(3)에 7개소(11.86%), 보통(2)에 1개소(1.69%)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었다(<표Ⅱ-3-4-6> 참조).

<표Ⅱ-3-4-6> 원내의 작업요법

	5)원내 작업요법의 운영은 적절한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원내의 작업요법		51 (86.44)	7 (11.86)	1 (1.69)	-	3.85 (0.41)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6) 작업 수익금

본 사항은 생활인들의 작업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우수(4) 54개소(91.53%)과 양호(3) 5개소(8.47%)가 각각 분포되었고, 평균 3.92점이었다(<표Ⅱ-3-4-7> 참조).

<표 II-3-4-7> 작업 수익금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작업 수익금 6)작업 수익금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4 (91.53)	5 (8.47)	-	-	3.92 (0.28)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7) 원외 취업장

현재 정신요양시설에서 원외 취업장을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원외취업자와 급여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하였다. 원외취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단, 근로계약서 미체결 시 원외취업자로 인정 하지 않았다. 원외취업자 급여총액은 취업자 급여명세서 및 통장사본(급여는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확인하였으며, 원외취업자 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80%이상이면 인정하였다. 또한 월 급여 총액이 최저 임금 이상(2010년 최저임금기준: 시간당 4,110원)일 경우 인정하였다. 정신요양시설들의 원외 취업 장수는 평균 7개였고, 원외취업자는 평균 9명이었다. 또한, 이들의 급여총액은 평균 21,548천원이었다. 정신요양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평균 2.62점을 받았다(<표 II-3-4-8> 참조).

<표 II-3-4-8> 원외 취업장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원외 취업장 7)원외 취업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산출점수	1.00	4.00	2.62	0.95
	원외 취업 장수(개)	0	58	7	12
	원외취업자수(명)	0	49	9	9
	급여총액(천원)	0	156,751	21,548	29,487

※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 N=59

8) 원의 취업장 프로그램

본 사항은 정신요양시설의 원의 취업장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4점 만점에 평균 3.51점이었고,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46개소(77.97%), 양호(3) 5개소(8.47%), 미흡(1) 8개소(13.56%)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4-9> 참조).

<표Ⅱ-3-4-9> 원의 취업장 프로그램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원의 취업장 프로그램 8)원의 취업장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46 (77.97)	5 (8.47)	-	8 (13.56)	3.51 (1.0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9) 프로그램의 수행

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 매뉴얼, 주간프로그램 계획표, 생활인 및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생활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계획 및 매뉴얼 구비여부, 일지작성, 평가, 계획표 유무 및 공유에 대해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은 프로그램의 목적, 방법, 참여기준, 준비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신요양시설들은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57개소(96.61%)와 2개소(3.39%)의 시설이 해당된 가운데 평균 3.97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4-10> 참조).

<표Ⅱ-3-4-10> 프로그램의 수행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프로그램의 수행 9)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57 (96.61)	2 (3.39)	-	-	3.97 (0.1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0) 전문 프로그램 수행인력

주간프로그램 계획표, 교육훈련 복명서, 업무(직무)분장표를 근거로 정신요양시설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였다. 지표에서의 전문 프로그램이란 사회적응훈련,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취업훈련, 약물관리훈련 등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되, 국립정신병원에서 하는 전체시설대상 교육은 제외하여 적용하였다. 평균 3.88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수(4) 54개소(91.53%), 양호(3) 3개소(5.08%), 보통(2) 2개소(3.39%)의 시설이 분포되었다(<표Ⅱ-3-4-11> 참조).

<표Ⅱ-3-4-11> 전문 프로그램 수행인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문 프로그램 10)전문 취업장 프로그램 수행하는 인력은 적절한가?	54 (91.53)	3 (5.08)	2 (3.39)	-	3.88 (0.4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11) 다양한 사회복지 원의 프로그램 실시여부

본 사항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인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원의 프로그램의 횟수를 파악하였다. 평가내용 중 지역사회연대(연계)라 함은,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등의 자원을 지원 및 연계하여 활용,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작업이라 함은, 촉탁의 및 작업지도원이 인정 하에 공동 및 개인으로 실시하여 해당 금액이 개별 통장으로 입금되고 관련 서류 및 일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취업 전 훈련 및 취업 후 유지 및 관리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적인 직업재활 훈련이다. 사회적응훈련이라 함은 프로그램계획서 상 사회복지 원의 프로그램인 경우가 해당되며, 시설 내 공동가정 훈련이란 지역사회로의 이주 능력이 있거나 희망하는 자에게 시설 내에 가정과 유사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활동 등에 대한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다. 본 지표에서 정신요양시설들은 평균 3.90점의 점수를 받았고 우수(4) 55개소(93.22%), 양호(3)와 보통이 각각 2개소(3.39%)로 분포하였다(<표 II-3-4-12> 참조).

<표 II-3-4-12> 다양한 사회복지 원외 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다양한 사회복지 원외 프로그램 실시 여부	11) 생활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55 (93.22)	2 (3.39)	2 (3.39)	-	3.90 (0.40)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12)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 여부

본 지표는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사항이다. 평가내용 중 사회기술훈련은 대인관계 기술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 등을 포하는 것이다. 개인적 지지망 훈련은 생활인의 욕구 및 필요에 따라 1:1 혹은 1:2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활동 및 예술 요법은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강사료가 지급되는 경우만 인정하였다. 또한 기타로 자립생활 훈련, 전염병 예방, 성교육 등 생활인의 생활기술 향상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하나로 인정하였다. 평가결과 4점 만점에 평균 3.95점을 받았으며, 우수(4) 57개소(96.61%)와 양호(3)와 보통(2) 각각 1개소(1.69%)로 나타났다.<표 II-3-4-13> 참조).

<표II-3-4-13>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 여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 로그램 실시여부	12)생활인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57 (96.61)	1 (1.69)	1 (1.69)	-	3.95 (0.29)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13)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본 사항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인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집중적 사례검토회의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집중적 사례검토회의란 한 생활인의 사례에 대해 최소 30분 이상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는 학술적 모임을 의미한다. 우수(4)에 56개소(94.92%)이고, 양호(3)와 보통(2)에 각각 2개소(3.39%), 1개소(1.69%)의 시설이 분포하였으며, 평균 3.93점이었다(<표II-3-3-14> 참조).

<표II-3-4-14>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집중적 사례검토회의	13)집중적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가?	56 (94.92)	2 (3.39)	1 (1.69)	-	3.93 (0.31)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14)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요양시설 거주 생활인의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원가정의 방문, 보호자 모임 개최, 보호자 요구 반영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무연고 생활인의 경우 생활인 본인의 권리를 옹호하여 줄 수 있는 자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설의

노력을 확인하며, 연고자가 있는 생활인이 한명도 없는 시설의 경우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노력과 부모교육 실시 항목은 점수를 인정을 하고, 무연고 생활인이 한명도 없는 시설(실비시설 등)의 경우 무연고 생활인을 위한 가족 관련 노력의 항목은 점수를 인정하였다. 평가내용 중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는 개별서비스계획회의참여, 개별서신, 가정통신문, 시설소식지, 건강 진단표 발송 등을 확인하였고, 무연고 생활인을 위한 가족 관련 노력은 본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 가정체험프로그램, 결연가족 맺기 등을 확인하였다. 무연고 생활인의 경우 옹호인이 시설을 방문하는 것과 외부에서의 만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보호자 교육은 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 방문교육 등을 의미하며, 시행 시는 실적으로 파악하고, 시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시설의 노력 정도로 파악하고, 시설이 주관하지 않는 자조모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무연고 생활인은 결연가족 등 옹호인의 요구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46개소(77.97%), 10개소(16.95%), 2개소(3.39%), 1개소(1.69%)로 각각 분포하였다.<표Ⅱ-3-3-15> 참조.

<표Ⅱ-3-4-15>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14)가족 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보호자에게 교육(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46 (77.97)	10 (16.95)	2 (3.39)	1 (1.69)	3.71 (0.62)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15)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반영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지표로써, 평가는 욕구조사보고서, 만족도조사보고서 등 관련문서가 활용되었다. 평균 3.81점의 점수를 받았고,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53개소(89.83%), 3개소(5.08%), 1개소

(1.69%), 2개소(3.39%)의 시설이 분포하였다(<표 II-3-4-16> 참조).

<표 II-3-4-16>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15)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53 (89.83)	3 (5.08)	1 (1.69)	2 (3.39)	3.81 (0.63)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16)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본 사항은 기관에 맞는 사례관리 매뉴얼 소지, 욕구사정, 개별 목표 및 계획수립 및 실행, 점검 등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 개별 차트를 확인하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차트에는 대상자명, 사정결과 요약, 대상자의 강점과 선호 및 가족이나 클라이언트의 기대나 욕구를 반영한 목표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실행은 전체 생활인, 점검 및 평가는 계획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37개소(62.71%), 14개소(23.73%), 4개소(6.78%), 4개소(6.78%)의 시설이 분포하였으며, 평균 3.42점이었다(<표 II-3-4-17> 참조).

<표 II-3-4-17>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16)생활인의 개별욕구와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37 (62.71)	14 (23.73)	4 (6.78)	4 (6.78)	3.42 (0.89)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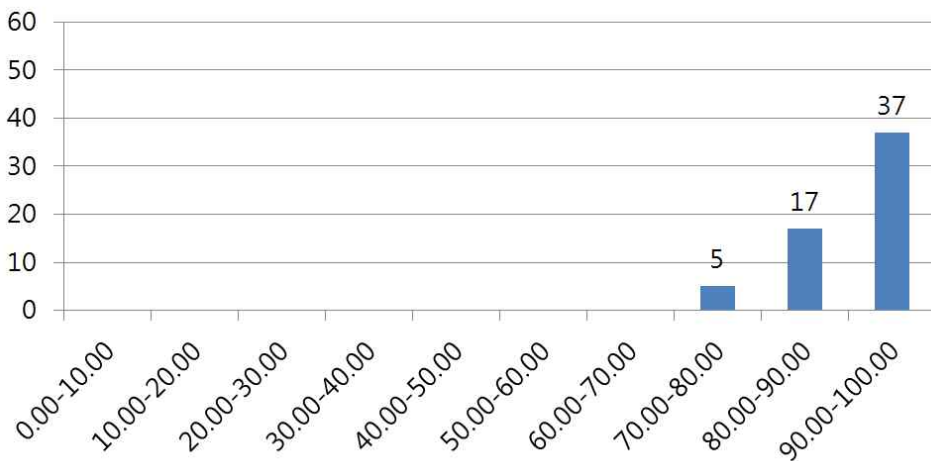
5. 생활인의 권리(E)

‘생활인의 권리(E)’는 금번 평가에서 신설된 영역으로써 10.00점 배점으로 구성되었다. 정신요양시설들은 본 영역에서 100점 기준으로 평균 91.07(9.11)점이었다(<표Ⅱ-3-5-1> 참조).

<표Ⅱ-3-5-1> 생활인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59	75.00 (7.50)	100.00 (10.00)	91.07 (9.11)	6.54 (0.65)

정신요양시설들은 ‘생활인의 권리(E)’ 영역은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가장 많은 37개소가 분포하였고, 다음으로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17개소, 70.00이상~80.00점 미만에 5개소가 분포되었다(<그림Ⅱ-3-5-1> 참조).



<그림Ⅱ-3-5-1> 생활인의 권리(E) 영역 점수 분포

1) 시설 외부출입

본 지표는 시설 생활인이 외부 출입을 하는 데에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평가하는 사항이다. 시설출입이 자유로운 생활인은 투약/식사시간 제외하고 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자유롭게 시설외부출입 가능한 생활인을 의미한다. 시설외부출입이 자유로운 생활인 명부에서 2명을 임의 추출하여 확인하였다. 우수(4)에 35개소(59.32%), 양호(3) 18개소(30.51%), 보통(2)과 미흡(1)에 각각 4개소(6.78%), 2개소(3.39%)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었고, 평균 3.46점을 받았다. 한편, 현재 정신요양시설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생활인은 평균 56명이며, 출입이 자유로운 생활인의 비율은 평균 28.71%이다(<표Ⅱ-3-5-2> 참조).

<표Ⅱ-3-5-2> 시설 외부출입

시설	1)시설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생활인이 얼마나 있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35 (59.32)	18 (30.51)	4 (6.78)	2 (3.39)	3.46 (0.77)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출입이 자유로운 생활인수(명)	1	252	56		49
	출입이 자유로운 생활인비율(%)	0.53	108.82	28.71		24.2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2) 생활인의 자유

정신요양시설이 종교 활동, 참정권, 외부방문자 만남, 의견반영, 개별취향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우수(4)에 59개소(100.00%)의 모든 시설이 해당되어 평균 4.00점을 받았다(<표Ⅱ-3-5-3> 참조).

<표Ⅱ-3-5-3> 생활인 가족 및 친지개방

생활인의 자유	2)생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59 (100.00)	-	-	-	4.00 (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3) 외출 또는 외박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인의 외출 또는 외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외출은 행사가 아닌 개별 또는 3명 내외 인원이 사회적응 훈련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외출한 것을 의미하며, 외출/외박 기록일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생활인에게 확인하였다. 본 지표는 가족 및 친지 등과 접촉하는데 있어 자유로운 정도를 파악하는 목적을 지니므로 외박 인원에서 무연고자는 제외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2.57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사항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외출자 연인원은 평균 2,125 명으로 비율은 평균 1,147.74%였고, 외박자 연인원은 평균 73명으로 비율은 평균 49.96%로 나타났다(<표Ⅱ-3-5-4> 참조).

<표Ⅱ-3-5-4> 외출 또는 외박

	산출점수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외출 또는 외박	3)외출 또는 외박은 활발하게 시행되는가?	1.00	4.00	2.57	0.93
	외출자 연인원(명)	46	15,771	2,125	3,403
	외출자 비율(%)	22.89	9,186.78	1,147.74	1,908.95
	외박자 연인원(명)	0	178	73	48
	외박자 비율(%)	0.00	138.46	49.96	30.42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59

※산출식: 외출자 비율= $\frac{\text{연 외출인원수}}{\text{2010년 월 평균 생활인 수}}$ 외박자 비율= $\frac{\text{연 외박인원수}}{\text{무 연고자를 제외한 2010년 월 평균 생활인 수}}$

4)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본 지표에서는 개인정보의 기록관리 및 비밀보장 규정, 기록 관리, 전산의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시 동의 등에 대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기록관리,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규정이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및 기록은 기록보관소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경우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점수를 인정하였으며, 국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점수를 인정하였다. 개인정보 및 기록의 외부유출의 경우 공적인 요청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그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우수(4)에 59개소(100.00%)의 시설이 모두 해당되어 평균 4.00점이었다(<표Ⅱ-3-5-5> 참조).

<표Ⅱ-3-5-5>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4)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는 적절한가?	59 (100.00)	-	-	4.00 (0.00)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5)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본 지표에서는 생활인의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적절히 처리되는가를 평가한 것이며, 업무일지와 고충처리 지침 및 일지, 회의록 등을 통해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54개소(91.53%), 4개소(6.78%)이며, 미흡(1)에 1개소(1.69%)의 시설이 해당되었고, 평균은 3.88점으로 나타났다(<표Ⅱ-3-5-5> 참조).

<표Ⅱ-3-5-6>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5)생활인의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결과는 적절하게 처리되는가?	54 (91.53)	4 (6.78)	-	1 (1.69)	3.88 (0.46)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6) 인권보장 노력

본 지표는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규정, 인권교육실적, 인권 진정함, 운영일지 등 관련문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되었다. 생활인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진정함의 설치·운영 1항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해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평가내용 중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의 경우 인권규정이 시설의 명문화된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56개소(94.92%), 3개소(5.08%)이의 시설이 해당되었고, 평균은 3.95점으로 나타났다(<표Ⅱ-3-5-5> 참조).

<표Ⅱ-3-5-7> 인권보장 노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인권보장 노력	6)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56 (94.92)	3 (5.08)	-	-	3.95 (0.22)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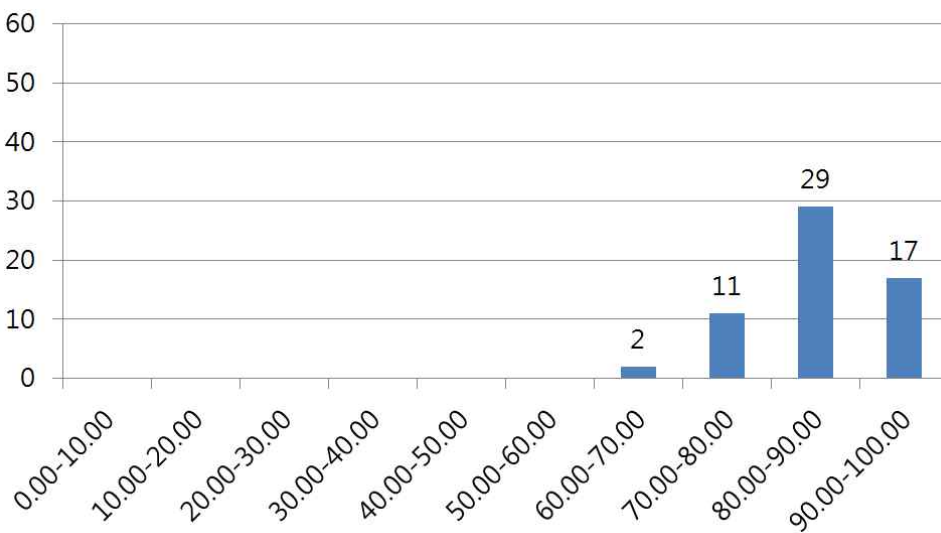
6. 지역사회관계(F)

정신요양시설의 '지역사회관계(F)'는 10.00점 만점이며 평균 8.59점이었다. 이는 100점으로 표준화할 경우 85.86점에 해당된다(<표Ⅱ-3-6-1> 참조).

<표Ⅱ-3-6-1>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59	61.43 (6.14)	100.00 (10.00)	85.86 (8.59)	8.15 (0.82)

정신요양시설들의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60.00점 이상~70점 미만에 2개소, 70.00점 이상~80.00점 미만에 11개소, 80.00점 이상~90.00점미만 29개소, 90.00점 이상~100.00점 미만에 17개소가 분포하여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그림Ⅱ-3-6-1> 참조).



<그림Ⅱ-3-6-1> 지역사회관계(F) 영역 점수 분포

1) 자원봉사자의 인원과 시간

본 지표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실인원과 시간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자원봉사자는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중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1개 시스템을 선택하여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등록된 DB만을 평가근거로 하였다. 단, 국가공공기관 DB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민간개발DB는 80%만 인정하였다. 자료는 자원봉사관련 DB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시설에서는 별도 출력하여 문서화할 필요는 없도록 하였으며, 법인 내 여러 시설이 동일 DB를 사용할 경우, 시설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사용 중인 DB는 평균적으로 1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1년 동안 자원봉사자 실인원은 평균 536명이었고,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는 평균 17명이었다. 또한, 1년간 자원봉사자들의 총 봉사시간은 평균 6,428.15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요양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평균 2.56점을 받았다(<표Ⅱ-3-6-2> 참조).

<표Ⅱ-3-6-2> 자원봉사자의 인원과 시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산출점수	1.00	4.00	2.56	1.05
		사용 중인 DB	1	2	1	0
자원봉사자의 인원과 시간	1)자원봉사자 실 인원 및 시간은?	봉사자실 인원(명)	48	2,384	536	558
		직원 1인당 봉사자수(명)	2	82	17	19
		총 봉사 시간(시간)	256.00	42,612.00	6,428.15	8,116.11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산출점수(100%) =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의 수'의 점수(50%) + '총 자원봉사시간'의 점수(50%)

**N=59

*산출식: 자원봉사자 실 인원= $\frac{2010년\ 1월\ 1일\ \sim\ 2010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 실인원수}{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2) 지역사회와의 교류

본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을 얼마나 개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내용 중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시설에서 주관하는 지

역주민과의 체육대회, 걷기대회, 일일찾집, 바자회 뿐 아니라,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음악회, 걷기대회, 축제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캠페인, 봉사동아리, 사진전 등을 뜻하며, 지역사회시설(헬스클럽, 사회체육센터, 사설학원, 복지관 등) 이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시설 연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평가결과 우수(4)에 대해 53개소(89.83%), 양호(3)와 보통(2)에 각각 3개소(5.08%)의 시설이 분포하였으며, 평균 3.85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6-3> 참조).

<표Ⅱ-3-6-3>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지역사회와의 교류	2)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53 (89.83)	3 (5.08)	3 (5.08)	-	3.85 (0.4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3)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본 사항은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가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 중 원금(품)의 사용내역을 연1회 이상 공개하는 여부는 정기적인 소식지나 시설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또 개인별 수령액을 연1회 후원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개별 후원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액수를 통보하는 것(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포함)을 의미하며, 소식지에 일괄적으로 후원금 사용처를 제시한 것도 소식지나 관공서 게시판에 후원금 사용처를 게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평가는 근거규정, 사업계획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소식지, 관공서 게시판, 사진, 시설홈페이지 게시물 등 관련문서자료를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우수 52개소(88.14%), 양호(3) 5개소(8.47%), 보통(2)과 미흡(1)이 각각 1개소(1.69%)씩 분포하였으며, 평균 3.83점을 얻었다(<표Ⅱ-3-6-4> 참조).

<표Ⅱ-3-6-4>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후원금(품)의 관리 및 후원자 관리	52 (88.14)	5 (8.47)	1 (1.69)	1 (1.69)	3.83 (0.53)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59

4) 정신보건시설과 연계

본 사항은 퇴원 시점에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가 활발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써, 의뢰서 사본을 평가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전체 퇴소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 퇴소한 자와 사망인은 제외하였다. 정신요양시설의 전체 퇴소자는 평균 17명이었고, 의뢰서가 발부된 생활인은 평균 14명이었다. 또한, 의뢰서 발부 비율은 평균 41.48%였다. 평균 78.90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6-5> 참조).

<표Ⅱ-3-6-5> 정신보건시설과 연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정신보건 시설과 연계	산출점수	1.00	4.00	3.47	1.04
	4)퇴원 시점에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는 활발한가?				
	전체 퇴소자수(명)	0	78	17	18
	의뢰서 발부 생활인수(명)	0	78	14	17
	의뢰서 발부 비율(%)	0.00	100.00	78.90	34.38

※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 N=59

※ 산출식: $\text{의뢰서 발부 생활인수} = \frac{\text{의뢰서를 발부한 퇴소자 수}}{\text{전체 퇴소자}} \times 100$

5) 시설홍보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물(리플렛) 등을 통해 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노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지표에서의 홈페이지는 법인산하에 여러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 시설에 대한 소개가 있으면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소식지는 인쇄하여 발행한 것을 말하며 발행기록을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우수(4)와 양호(3) 각각 58개소(98.31%), 1개소(1.69%)의 시설분포를 보인 가운데 평균 3.98점이었다(<표Ⅱ-3-6-6> 참조).

<표Ⅱ-3-6-6> 시설홍보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홍보	5)시설 홍보를 하고 있는가?	58 (98.31)	1 (1.69)	-	-	3.98 (0.13)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6) 외부자원개발

본 사항은 시설의 외부 자원개발 건수 및 규모를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2008년~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사업제안서 등 관련문서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평가내용 중 민간자원은 공동 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재원을 의미하며, 정부자원은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자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한다.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는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총액으로 환산하지 않았다. 민간지원금의 평균금액은 27,443천원, 정부지원금은 평균 33,591천원으로 각각 평균 0.69%, 1.05%를 보였다. 프로포절 체결은 평균 7.76건이며, 직원1인당 프로포절 건수는

평균으로는 0.27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2.55점을 나타내었다(<표 II-3-6-7> 참조).

<표 II-3-6-7> 외부자원개발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외부 자원 개발	6)시설의 외부 자원개발 건수 및 규모는 어떠한가?	산출점수	1.00	4.00	2.55	0.78
		민간지원금(천원)	0	106,194	27,443	26,599
		민간지원 비율(%)	0.00	2.85	0.69	0.71
		정부지원금(천원)	0	692,890	33,591	106,072
		정부지원금 비율(%)	0.00	24.65	1.05	3.68
		프로포절 체결건수(건)	0.00	36.00	7.76	7.79
		직원 1인당 프로포절 건수(건)	0.00	1.43	0.27	0.30

※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 N=59

※ 산출식:	$\frac{2008\text{년} \sim 2010\text{년} \text{ 외부민간지원금 총액}}{2008\text{년} \sim 2010\text{년} \text{ 보조금 결산액} - \text{기능보강사업비}} \times 100$
	$\frac{2008\text{년} \sim 2010\text{년} \text{ 정부지원금 총액}}{2008\text{년} \sim 2010\text{년} \text{ 보조금 결산액} - \text{기능보강사업비}} \times 100$
	$\frac{2008\text{년} \sim 2010\text{년} \text{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2010\text{년} \text{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times 100$

7) 실습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써, 실습계획서, 실습매뉴얼, 실습지도자 자격증, 실습일지를 평가 자료로 사용하였다. 문서화된 실습계획서를 확인하여 실습 내용을 판단하였고, 실습매뉴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작한 매뉴얼 및 자체 매뉴얼 모두를 살펴보았다. 실습지도자의 경력 산정의 시점은 실습당시의 경력시점으로 실습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은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언어치료사의 경우 사설치료실의 경력도 인정하였다. 단, 경력이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인정하였다. 평균 3.80점의 점수를 받았고, 우수(4) 50개소(84.75%), 양호(3) 7개소(11.86%)이며,

보통(2)과 미흡(1)이 각각 1개소(1.69%)의 분포로 보였다(<표Ⅱ-3-6-8> 참조).

<표Ⅱ-3-6-8> 실습교육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실습교육	7)실습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0 (84.75)	7 (11.86)	1 (1.69)	1 (1.69)	3.80 (0.5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59

III. 정신요양시설 평가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정신요양시설의 특성 및 평가의 의의

정신요양시설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먼저 정신요양시설의 특성을 알아보고 시설평가의 의의를 다루고자 한다. 정신요양시설은 그 명칭에서 “요양(療養)”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요양이란 말은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휴양하면서 하는 치료’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요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 요양원이란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병을 앓는 환자들이 입소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한다.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의 주 기능을 “치료”에 둘 것인지 아니면 “휴양”에 둘 것인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의료인인 간호사의 고용을 강제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의료시설로 보는 정서가 강하기는 하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를 받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의료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대상자가 입소하는 시설의 성격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시설장 대부분이 비 의료인이며, 사회복지사의 채용과 활용을 선호하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정신요양시설은 치료보다는 휴양 보호를 주 기능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의료서비스의 요구가 크지 않은 만성정신질환자 가운데 사회

지지체계가 거의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장기거주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 요양 중심의 주거 시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신요양시설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시설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요양시설의 평가는 이러한 일반인의 시각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신요양시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요양시설의 평가는 1999년의 1차 평가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하여 왔으며 2011년이 5차 평가에 해당된다. 정신요양시설의 평가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시설운영의 선진화에 목적을 두고, 행정적 절차와 운영방법, 프로그램 변화의 적합성, 개입의 전달체계, 사회적 책임수행 등을 사정하고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1년도의 평가에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66개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하였다. 2011년도의 평가에서는 2008년도의 평가에 비해 생활인의 권리와 인적자원관리의 지표를 강화하였고, 반면에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지표는 축소하였다. 이는 지난 네 차례의 시설평가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각 시설 간 차이도 좁혀졌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서비스 최소기준안과 2008년도의 평가지표를 기초로 검토하여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인 지표를 삭제하고, 유사한 평가지표는 수정 통합하였으며, 지표의 내용과 평가자료 및 해설을 정교하게 수정

하였다. 또한 비품관리, 신입직원 교육, 직원인사평가, 개별화된 사례관리서비스의 실시여부,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 고충처리절차의 마련여부, 인권보장노력, 실습교육 등의 지표를 신설하여 인적자원의 관리와 생활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와 생활인의 권리보장 노력을 강조하였다.

제 2 절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과정과 결과 고찰

1.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분과위원회·포커스그룹·공청회 운영

정신요양시설평가를 현실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포커스그룹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개발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내용과 포커스그룹 그리고 공청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분과위원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의 실정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실무지도자를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차례 가졌다.

분과위원회는 학계에서 교수 1인, 정부에서 공무원 2인(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충북 도청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장), 정신요양협회에서 사무총장 1인, 그리고 현장에서 정신요양시설 사무국장 3인 등 7인으로 구성하여 총 6회의 모임을 가졌다. 제1차 분과위원회는 2011년 4월 21일에 개최하여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했고, 전년도 평가지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포커스그룹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제2차 분과위원회(4월 26일)에서는 2008년도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수정·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표개발을 위한 분과위원 회의를 1회 더 추가하기로 하였다.

제3차 분과위원회(5월 4일)에서는 전년도의 평가지표 중 유지할 지표와 수정 및 통합할 지표, 그리고 신설할 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소기준안에 의해 법인이사회의 구성과 활동(B4), 비품관리(B13), 신입직원교육(C13), 직원 인사평가(C14),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D17), 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권리(E4),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E5), 인권보장 노력(E6), 실습교육(F7) 등의 지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시설의 내부 환경과 외부환경을 내용의 중복으로 인하여 통합하고(A1),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도 통합하였으며(B3), 회계의 투명성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B9)으로 수정하였다. 또 직원상조회를 직원의 후생복지(C12)와 통합수정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D12),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을 실시여부(D13),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D16), 지역사회와의 교류(F2) 등의 지표는 내용중복 등의 이유로 지표를 통합 수정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신설, 수정통합 및 개발된 평가지표 초안을 차기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하기로 하였다.

제4차 분과위원회는 5월 11에 개최하였고 제3차 회의에서 초안으로 작성된 평가 지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회의에서 신설한 평가지표는 모두 9개였으며, 내용의 중복으로 통합 수정된 지표는 6개, 그리고 평가내용을 현실적으로 수정한 지표는 9개였다. 이렇게 수정한 평가지표의 수정·개발을 위한 포커스그룹 회의를 열어 수립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수정·보완하기로 하였다.

포커스그룹은 정신요양시설의 실무자 중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중간지도자 16명을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두 차례의(5월 17일과 5월

24일) 그룹회의를 가졌다. 1차 포커스그룹(5월 17일)에서는 과거의 시설평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와 현 시점에서 시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평가지표에 대한 공통지표 검토 및 조율, 평가영역 조정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포커스그룹에서 대두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즉, ①시설의 규모와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의 현실반영, ②PC보유대수 산출 방법, ③변별력이 없는 간호사 비율의 수정, ④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지침내용 반영, ⑤직원인사평가의 승진과 연계성 관계, ⑥치아관리 지표의 삭제요청, ⑦개별화된 사례관리를 전체 생활인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의 곤란 참작 ⑧후원금(품)의 사용처 및 방법의 확인 필요성 등이었다. 2차 포커스그룹(5월 24일)에서는 ①PC보유대수를 2010년 12월.31일 현재 상근직원의 현원 60%로 적용하도록 하고, ②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포함시켜줄 것과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시 대체 휴무로 인정하지 않고, ③원외작업장의 경우 임금수준을 2010년 최저임금수준의 80%로 책정하기를 원했으며, ④외부프로그램 지원지표에 제출건수를 포함시켜주길 건의했고, ⑤그 외에 자구수정이나 전년도 평가지표 내용의 유지 등에 관한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제5차 분과위원회는 1-2차 포커스그룹토의를 마친 후 5월 24일 오후4시에 개최하였고, 포커스그룹에서 논의되었던 수정된 공통지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날 다룬 내용은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직원 1인당 내부·외부 교육활동비, 외부민간자원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었다. 포커스그룹에서 수렴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은 분과위원회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5월 31일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강당에서 가졌다. 이 공청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차례의 분과위원회와 두 차례의 포커스그룹회의를 통해 작성된 평가지표 초안을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시간을 통해 이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먼저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 ①기능보강사업 중일 경우 시설 및 환경영역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②적절한 운동기구 설치와 3종류 이상이라고 했을 때 동일 공간에 있는 것도 인정할 것인지 질의가 있었다.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①원장의 전문성에 간호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 개선, ②서비스 회원의 종합적인 정보가 관리된다는 문항과 D1, D2 지표가 겹치게 제시되었음을 지적했으며, ③전문프로그램 수행 인력에 직원현원의 60%이상은 높은 편이므로, 2교대 직원의 경우에는 차감을 희망했고, ④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에는 어떠한지 설명을 요청했다.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서는 ①직원의 이·퇴직률 지표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②지방의 경우, 직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산점 부여를 주장하였고, ③조리사 배치수준을 지표로 추가해 주기를 희망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에서는 ①원의 취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설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희망했고, ②프로그램 카운트에 기술된 훈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관계영역에서는 실습교육 지표가 사회복지사 실습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나, 정신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영양사 실습 등도 실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주시기를 희망했다.

공청회를 마친 후 제6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제기되었거나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즉, ①'평가내용과 해설내용을 문장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②'A영역의 경우, 현장평가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도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지표상의 '및'이라고 표현된 문항의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인정한다.', ④'방충망이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야 인정함.', ⑤'원장의 전문성에 간호사를 포함시키되, 보건 전문 간호사로 정신보건시설 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⑥'원장의 시설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반영된 실적이 확인되어야 인정한다.', ⑦'이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는 특수관계 부존재각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⑧'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발전계획과 부합한다.'는 문항을

‘중·장기발전계획서가 있다’로 수정하고, 원장의 시설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반영된 실적이 확인되어야 인정한다.’, ⑨‘업무용 PC보유대수의 직원 현원에는 2교대 직원(생활지도원, 간호사)을 포함’, ⑩‘원의 취업장의 경우, 기존 내용을 유지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수령할 경우만 인정한다.’, ⑪‘지표에 제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더 실시한 경우라도 본 문항의 경우 양적평가가 아닌 질적평가 문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⑫‘육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단순 조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통계처리가 된 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⑬‘자원봉사자 DB검색방법을 첨부하여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⑭실습의 경우, 간호사 실습 등 모든 실습을 포함한다.’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는 6개 영역에 66개의 지표로 완성되었다. 이 평가지표를 2008년도 평가지표와 비교해 보면, 총 68개 지표에서 66개 지표로 축소시켰으며 이중 공통지표는 모두 10개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 및 환경영역은 11개 지표를 10개로 축소하였고,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은 13개에서 12개 지표로 축소하였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19개 지표를 16개로 축소하였다. 반면에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14개 지표에서 15개 지표로 늘렸고 생활인의 권리 영역도 4개 지표를 6개 지표로 늘렸다.

각 영역별 배점도 조정하여 배점을 축소한 영역은 재정 및 조직운영(15점 -->1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40점-->38점)이고, 인적자원관리영역(15점 -->20점)은 배점을 높였다. 따라서 2011년 평가지표는 2008년도 평가지표에 비해 인적자원의 관리와 생활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와 생활인의 권리보장 영역에 많은 비중을 둔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렇게 작성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사전평가를 두 차례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정확성과 현장평가 적용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사전 현장평가는 6월 3일 서울정신요양시설에서 실시하였고, 두 번째 사전평

가는 6월 7일 논산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평가의 결과 평가지표에 별다른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다.

2. 지표설명회, 현장평가위원 교육

정신요양시설의 평가지표 설명회는 59개 평가대상 시설의 평가담당실무자들을 대상으로 6월 14일 여의도의 이룸센터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와 두 차례의 포커스그룹, 그리고 평가지표 의견수렴 공청회를 통하여 완성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지표설명회에서는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개요를 설명하고 평가에 임하는 평가담당실무자들의 윤리와 자세를 교육시킨 후 현장평가의 진행절차와 평가항목별 채점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시설 평가담당실무자들에게는 시설 자체평가의 정직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고 시설 자체평가와 평가위원의 평가 사이에 차이가 심할 경우 5점까지 감점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이 평가지표 설명회에서는 전년도 평가에서처럼 향후 시설평가의 방향을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건의가 있었다.

현장평가위원을 위한 교육은 6월 23일 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현장평가위원 교육에서는 정신요양시설 평가의 개요를 설명하고 평가에 임하는 현장평가위원의 윤리와 자세를 교육시킨 후 현장평가의 진행절차와 평가항목별 채점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과거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불만사례를 예시하여 평가위원의 권위적이고도 고압적인 평가 자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평가위원이 평가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평가 시 평가위원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평가위원

들에게는 평가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3. 현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번 평가를 통하여 확인된 현장평가제도의 문제는 객관적이고도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유연하고도 공정한 평가위원의 확보, 그리고 시설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및 시설특성의 반영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이고도 변별력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피 평가 시설들은 지난 년도의 평가지표를 근거로 시설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평가지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려는 개선 노력의 결과 현행 지표상으로 시설간의 변별력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각 시설들의 개선노력 여하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지표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 간의 비교를 위하여 정량지표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기 평가 위한 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 각 시설에 공지함으로써 각 시설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평가에 대비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하고도 공정한 평가위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정한 평가위원의 확보는 평가활동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다. 평가위원의 훈련경험과 지식 및 정보량의 정도, 그리고 인성이 평가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몇 차례의 평가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도 평가위원을 학계, 공무원, 실무자를 한 조로 구성하여 위촉하였다. 그런데 현장평가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을 평가하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

무원의 경우 지역 내 시설이 저평가될 경우 자신의 근무고과와 연계하여 이를 받아드리게 되므로 그들의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는 평가참관자로만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평가자로는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를 대표하여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들의 경우 유연성과 시설에 대한 현실감이 부족하여 평가과정에서 시설실무자들과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계 평가위원의 위촉 시 사전교육을 선행한 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평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만들어 평가 전에 사전 지식을 함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규모와 접근성을 제한적으로나마 고려한 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대형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생활인규모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정량지표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규모가 다른 시설을 동일선상에서 획일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경우도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접근성에 따라 시설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표에 대해 이를 반영하였다. 추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시설의 고유성을 반영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4. 확인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현장평가를 종료 후 확인평가를 요청한 사례가 전년도 평가에서는 5개 시설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1개 시설에 대해서만 확인평가를 실시하였다. 확인평가의 수가 감소한 것은 그만큼 평가의 지표가 정교하게 작성되었고, 평가위원의 평가자세도 성숙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확인평가를 요청한 시설의 경우 시설 기능 보강차원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식당과 교육 공간)을 임시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 일부 평가 자료에 대하여 평가위원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하향 평가 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확인평가를 요청하였다.

확인평가는 9월 26일에 평가위원장과 정신요양시설협회 사무총장 및 평가단 연구원이 한 팀이 되어 확인평가를 실시하였다. 확인 평가의 결과 평가지표상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평가지표나 정성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시설 내 자체 평가위원이 새로 바뀐 평가항목이나 관련 자료의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시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확인평가의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는 피 평가자의 평가지표 미숙지의 문제,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평가지표나 정성평가항목의 문제, 그리고 평가위원의 유연성 문제 등으로 집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피 평가자에 대한 평가지표의 철저한 교육과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유연한 자세와 평가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5. 평가결과의 통계적 의미

금번 정신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89.8점으로 2008년도의 평가결과(81.8점)와 비교할 때 총점 기준으로 평균 8.07점이 상승하였으며, 최소 67.25점에서 최대 97.20점까지 분포되었으며 표준편차는 5.03이었다.

각 하위 평가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영역(A)은 평균 97.84점이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B)은 평균 83.86점, 인적자원관리 영역(C)은 평균 83.0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D)은 평균 94.00점, 생활인의 권리 영역(E)은 평균 71.01점, 지역사회관계 영역(F)은 평균 85.86점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를 2008년과 비교해 보면 6개의 전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점수 상승률을 각 영역별로 분석해보면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다. 반면에 시설 및 환경 영역이 가장 적게 상승하였으며 인적자원관리영역이 그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시설 및 환경 영역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상승폭이 높을 수 없지만, 6개 영역 중 최하위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 영역이 상승폭이 높지 않은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전국이 모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이 통계결과는 지난 3년 전의 평가결과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요양시설들이 기본적인 하드웨어(hardware)를 잘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물리적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관리영역이 80점대로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어서 정신요양시설의 인력활용에 취약성이 그대로 담보상태에 있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미미하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경우 2008년도의 평가에서 6개 영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최하위의 자리를 탈피하였다. 이는 정신요양시설들이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사회에 개방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이번 평가에서 6개 영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상승폭도 두 번째로 큰 영역이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2009년도에 실시했던 서비스 품질관리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신요양시설들이 서비스 품질관리 활동을 통하여 서로 자극을 주고 정보를 교환하며 협조하여온 결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평가지표에 충족할 만큼 다양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도 알차고 생활인들에게 유용하도록 질적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다 학제적 차원의 사례회의를 통해 생활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전문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신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통해 시설 및 환경영역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우수했고,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 생활인의 권리영역,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양호했으나 인적자원관리영역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 각 시설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세워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향후 정신요양시설 평가를 위한 정책 제언

이번 제4차 정신요양시설의 평가를 마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향후 시설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와 평가제도, 그리고 평가결과의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평가인증제의 도입

지금까지 수년간 시설평가를 실시해온 결과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전 영역이 두드러지게 발전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 간 평가결과 점수의 표준편차가 작으므로 시설 간 큰 차이 없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설 평가 인증제를 도입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간의 서열화 보다는 시설들의 환경과 운영수준 및 서비스 제공수준 등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여 정착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역별 우수시설로 평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평가결과를 시설의 서열화 보다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인증제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시설 간의 경쟁이나 반목 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우수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활시설은 인증과 평가제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좋겠다. 아울러 평가 인증원을 설립하여 시설개선과 발전에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서비스품질관리제의 도입

이번 평가에서는 2008년도 시설평가에서 하위에 속하는 몇몇 시설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서비스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한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표상으로 보여주었다. 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시설들의 2008년도 평가점수가 63.42점이었는데, 2011년도에 이 시설들의 평가 점수 평균이 88.78로 괄목할 만한 상승하였음을 볼 때 서비스 품질관리운동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시설의 평가는 시설의 서열화 보다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 각 시설의 취약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품질 관리단의 상시 운영과 행·재정적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평가요원(평가사)의 양성 필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평가시기에만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제도는 평가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적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간의 동질성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원의 설립과 함께 평가요원을 양성하여 이들을 상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4. 평가지표의 조기 개발 및 고지

현행 평가에서 평가지표를 평가 대상기간이 지난 시기에 각 시설에 알려

주므로 평가기준이나 지표에 변화가 주어질 경우 시설들이 당황하고 그 준비를 위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미리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미리 알려주고 3년간 이 지표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평가대상기간 동안 이 목표에 맞출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평가의 결과로 시설을 서열화하여 인센티브 등의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무의미해질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평가인증제와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의 평가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평가결과의 활용

이번 평가의 결과는 시설에 대한 서열화와 인센티브의 배분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인증제로 진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우수한 시설에 대해 포상하는 것과 아울러 3년 전의 평가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상승효과를 보인 시설에 대해 격려 차원의 보상도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시설들에는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이나 발전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미흡한 결과를 보인 시설에 대해서도 품질관리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미흡한 영역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즉, 모범적 운영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열어 각 시설들에게 시설운영방법이나 프로그램 실천사례를 제시하여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사회복귀시설

I.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제 1 절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사회복지시설은 2011년도 평가에 총 163개의 시설이 참여하였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 50개소(30.67%), 부산 9개소(5.52%), 대구 13개소(7.98%), 인천 4개소(2.45%), 광주 7개소(4.29%), 대전 12개소(7.36%), 울산 2개소(1.23%), 경기 19개소(11.66%), 충북 6개소(3.68%), 충남 8개소(4.91%), 전북 14개소(8.59%), 전남 2개소(1.23%), 경북 11개소(6.75%), 경남 4개소(2.45%), 제주 2개소(1.23%)로 서울과 경기, 전북 및 대구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였다. 2008년 평가와 비교하여 총 50개 시설이 증가되었는데, 서울 25개소, 전북과 경북 지역이 각각 5개소가 증가되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각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은 총 73개소로써 2008년 대비 2개 시설이 증가되었는데, 서울과 대구가 각각 19개소(26.03%), 9개소(12.33%), 경기와 경북이 7개소(9.59%)로 가장 많은 시설이 입지하였다. 입소시설은 총 16개소가 금번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2008년 13개소에 비해 3개의 시설이 증가되었다. 경남은 입소시설이 이번 평가에서 새롭게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대구, 광주, 전북은 시설이 모두 없어져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주거시설의 경우는 총 30개의 시설이 증가되어 2008년 29개소에서 금년에는 59개소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19개소가 증가되었으며, 충북에서 1개소가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1년부터는 병행시설이 따로 분리되어 추가되었는데 병행시설의 경우는 총 14개의 시설이 감소되어 2008년 29개소에서 금년에는 15개소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특히 전북에서 6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부산과 경남이 각각 2개소, 1개소 증가하였으며, 또한 금번 평가에 새롭게 참여하였다. 서울지역에서는 7개소가 감소되었다. (<표 I -1-1-1> 참조).

<표 I -1-1-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지역구분	전체			유형구분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전국	113 (100.00)	163	▲50	71 (100.00)	73 (100.00)	▲2	13 (100.00)	16 (100.00)	▲3	29 (100.00)	59 (100.00)	▲30		15 (100.00)	▲15
서울	25 (22.12)	50	▲25	17 (23.94)	19 (26.03)	▲2	1 (7.69)	5 (31.25)	▲4	7 (24.14)	26 (44.07)	▲19		-	
부산	6 (5.31)	9	▲3	6 (8.45)	7 (9.59)	▲1	-	-	-	-	-	-		2 (13.33)	▲2
대구	11 (9.73)	13	▲2	8 (11.27)	9 (12.33)	▲1	1 (7.69)	-	▽1	2 (6.90)	3 (5.08)	▲1		1 (6.67)	▲1
인천	3 (2.65)	4	▲1	2 (2.82)	3 (4.11)	▲1	-	-	-	1 (3.45)	1 (1.69)	-			
광주	7 (6.19)	7	-	5 (7.04)	5 (6.85)	-	1 (7.69)	-	▽1	1 (3.45)	1 (1.69)	-		1 (6.67)	▲1
대전	11 (9.73)	12	▲1	6 (8.45)	6 (8.22)	-	1 (7.69)	2 (12.50)	▲1	4 (13.79)	4 (6.78)	-			
울산	1 (0.88)	2	▲1	1 (1.41)	2 (2.74)	▲1	-	-	-	-	-	-			
지역 경기	17 (15.04)	19	▲2	12 (12.68)	9 (9.59)	▽2	1 (7.69)	1 (6.25)	-	7 (24.14)	11 (18.64)	▲4			
충북	4 (3.54)	6	▲2	3 (4.23)	2 (2.74)	▽1	1 (7.69)	2 (12.50)	▲1	-	2 (3.39)	▲2			
충남	5 (4.42)	8	▲3	-	-	-	3 (23.08)	4 (25.00)	▲1	2 (6.90)	4 (6.78)	▲2			
전북	9 (7.96)	14	▲5	5 (7.04)	2 (2.74)	▽3	2 (15.38)	-	▽2	2 (6.90)	4 (6.78)	▲2		8 (53.33)	▲8
전남	1 (0.88)	2	▲1	-	-	-	-	-	-	1 (3.45)	1 (1.69)	-		1 (6.67)	▲1
경북	6 (5.31)	11	▲5	3 (4.23)	7 (9.59)	▲4	2 (15.38)	1 (6.25)	▽1	1 (3.45)	2 (3.39)	▲1		1 (6.67)	▲1
경남	3 (2.65)	4	▲1	3 (4.23)	2 (2.74)	▽1	-	1 (6.25)	▲1	-	-	-		1 (6.67)	▲1
제주	2 (1.77)	2	-	2 (2.82)	2 (2.74)	-	-	-	-	-	-	-		-	-

2011년 평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로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이 추가되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78개소, 기타가 42개소, 의료법인 12개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각각 11개소, 8개소, 학교법인이 5개소로 나타났다. 시설의 종교성향에서는 없다 115개소를 제외하면 기독교 34개소, 천주교 6개소, 불교 2개소, 원불교 1개소의 순이었다. 법인유형에서는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았으나, 인천, 울산, 경북, 제주 등은 사회복지법인보다는 타 주체에 의해 시설이 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교성향이 없는 시설이 많았던 가운데 서울과 대전에서는 기독교적 성향을 지닌 시설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I -1-1-3> 참조).

<표 I -1-1-2> 지역별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지역	법인유형							종교성향					
	사회 복지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	학교 법인	의료 법인	기타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없다	계
전국	78 (100.00)	8 (100.00)	11 (100.00)	5 (100.00)	12 (100.00)	42 (100.00)	156 (100.00)	34 (100.00)	6 (100.00)	2 (100.00)	1 (100.00)	115 (100.00)	158 (100.00)
서울	23 (29.49)	4 (50.00)	3 (27.27)	-	2 (16.67)	17 (40.48)	49 (31.41)	11 (32.35)	3 (50.00)			34 (29.57)	48 (30.38)
부산	4 (5.13)	-	1 (9.09)	1 (20.00)	1 (8.33)	2 (4.76)	9 (5.77)	1 (2.94)		1 (50.00)		7 (6.09)	9 (5.70)
대구	7 (8.97)	-	2 (18.18)	-	-	4 (9.52)	13 (8.33)	2 (5.88)				11 (9.57)	13 (8.23)
인천	-	1 (12.50)	-	-	-	2 (4.76)	3 (1.92)	1 (2.94)				3 (2.61)	4 (2.53)
광주	2 (2.56)	1 (12.50)	-	-	-	4 (9.52)	7 (4.49)	2 (5.88)	1 (16.37)	1 (50.00)		3 (2.61)	7 (4.43)
대전	7 (8.97)	1 (12.50)	-	-	-	3 (7.14)	11 (7.05)	4 (11.76)	2 (33.33)			6 (5.22)	12 (7.59)
울산	-	-	1 (9.09)	-	1 (8.33)	-	2 (1.28)					2 (1.74)	2 (1.27)
경기	9 (11.54)	-	2 (18.18)	2 (40.00)	2 (16.67)	3 (7.14)	18 (11.54)	1 (2.94)				18 (15.65)	19 (12.03)
충북	3 (3.85)	-	-	-	1 (8.33)	2 (4.76)	6 (3.85)	2 (5.88)				4 (3.48)	6 (3.80)
충남	4 (5.13)	-	-	-	-	2 (4.76)	6 (3.85)	2 (5.88)				4 (3.48)	6 (3.80)
전북	10 (12.82)	1 (12.50)	-	1 (20.00)	2 (16.67)	-	14 (8.97)	3 (8.82)			1 (100.00)	10 (8.70)	14 (8.86)
전남	2 (2.56)	-	-	-	-	-	2 (1.28)	1 (2.94)					1 (0.63)
경북	4 (5.13)	-	-	1 (20.00)	2 (16.67)	3 (7.14)	10 (6.41)	2 (5.88)				9 (7.83)	11 (6.96)
경남	3 (3.85)	-	-	-	1 (8.33)	-	4 (2.56)	2 (5.88)				2 (1.74)	4 (2.53)
제주	-	-	2 (18.18)	-	-	-	2 (1.28)					2 (1.74)	2 (1.27)

제 2 절 회원 및 종사자 현황

1. 회원 현황

1) 전국 사회복지시설 회원 현황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회원 정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40명으로 평균 28.83명이었으며, 현원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54명으로 평균 28.81명이었다. 이용(입소)율은 93.93%였다. 각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평균 38.17명과 평균 41.44명으로 이용률은 107.04%였고, 입소시설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평균 31.69명과 평균 31.69명으로 입소율은 81.54%였다. 주거시설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평균 8.73명과 평균 7.02명으로 80.71%의 입소율을 보였다. 병행시설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평균 60.67명과 평균 59.64명으로 95.40%의 병행율을 보였다(<표 I-2-1-1> 참조).

<표 I-2-1-1> 사회복지시설 회원 현황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단위: 명
전체	정원	161	5	140	28.83	23.51	93.93%
	현원	160	3	154	28.81	24.64	
이용시설	정원	71	12	120	38.17	18.76	107.04%
	현원	71	12	116	41.44	19.62	
입소시설	정원	16	15	50	31.69	13.37	81.54%
	현원	16	6	49	26.19	12.76	
주거시설	정원	59	5	10	8.73	1.66	80.71%
	현원	59	3	10	7.02	1.78	
병행시설	정원	15	30	140	60.67	33.36	95.40%
	현원	14	24	154	59.64	33.05	

※이용(입소)율: 정원대비 현원비율을 의미하며, 정원 및 현원의 평균을 통해 계산됨.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회원 현황

<표 I -2-1-2>는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의 회원 정원 및 현원을 보여주고 있다. 회원 정원은 전반적으로 제주, 부산과 전북에서 각각 평균 50.00명, 47.33명, 40.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 현원 전북, 제주, 부산이 각각 51.62명, 39.00명, 38.22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I -2-1-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회원 현황

단위: 명

지역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이용(입소)율
서울	정원	49	5	120	23.08	21.16	87.07%
	현원	49	4	116	22.71	24.03	
부산	정원	9	20	127	47.33	35.19	90.36%
	현원	9	20	78	38.22	19.69	
대구	정원	12	7	80	32.67	22.90	93.95%
	현원	12	7	75	33.67	22.47	
인천	정원	4	10	30	25.00	10.00	102.50%
	현원	4	9	37	26.25	13.15	
광주	정원	7	5	30	20.71	8.38	104.52%
	현원	7	4	35	22.00	9.52	
대전	정원	12	10	50	32.33	18.61	102.30%
	현원	12	7	69	35.67	24.75	
울산	정원	2	30	40	35.00	7.07	96.25%
	현원	2	30	37	33.50	4.95	
경기	정원	19	6	120	26.63	30.41	88.20%
	현원	19	3	91	25.37	28.66	
충북	정원	6	10	50	30.00	17.89	89.44%
	현원	6	8	56	27.50	19.67	
충남	정원	8	10	50	19.25	14.15	86.50%
	현원	8	4	41	16.75	12.28	
전북	정원	14	8	140	40.79	33.78	119.01%
	현원	13	8	154	51.62	40.40	
전남	정원	2	7	30	18.50	16.26	82.38%
	현원	2	5	28	16.50	16.26	
경북	정원	11	5	50	29.27	13.07	100.73%
	현원	11	4	48	29.45	13.12	
경남	정원	4	15	50	30.00	14.72	90.50%
	현원	4	12	41	27.00	12.03	
제주	정원	2	50	50	50.00	0.00	78.00%
	현원	2	38	40	39.00	1.41	

※이용(입소)율: 정원대비 현원비율을 의미하며, 정원 및 현원의 평균을 통해 계산됨.

2. 종사자 현황

1)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금번 평가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직원은 평균 4.29명이었고, 현재 직원은 평균 4.31명이었다. 직원 충원율 즉, 법정직원 대비 현재직원수의 비율은 102.03%로 나타났다. 각 직종별로는 시설장(원장) 평균 0.97명,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평균 1.19명, 보조원 평균 1.86명, 영양사 평균 0.02명, 조리원 평균 0.06명, 사무원 평균 0.07명, 관리인 평균 0.06명, 기타 평균 0.15명이었다.

이용시설은 평균 4.59명의 법정직원에 현재 평균 4.59명이 충원되어 98.99%의 충원율을 보였으며, 입소시설은 법정직원과 현재직원수가 각각 평균 7.94명과 7.88명으로 99.26%의 충원율을 보였다. 주거시설은 평균 1.91명의 법정직원에 평균 2.10명이 충원되어 충원율은 108.47%로 나타났다. 병행시설은 평균 8.13명의 법정직원에 평균 7.67명이 충원되어 충원율은 94.40%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각 직종별 인원 현황은 <표 I-2-2-1>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I -2-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전체	법정 직원 수	162	1	16	4.29	2.77	102.03%
	현재 직원 수	162	1	18	4.31	2.83	
	시설장(원장)	162	0	1	0.97	0.17	
	정신보건전문요원	162	0	9	1.19	1.41	
	보조원	163	0	10	1.86	1.64	
	영양사	163	0	1	0.02	0.16	
	조리원	162	0	1	0.06	0.24	
	사무원	163	0	2	0.07	0.28	
	관리인	163	0	2	0.06	0.25	
	기타	163	0	3	0.15	0.49	
병행시설	법정 직원 수	15	5.00	16.00	8.13	3.09	94.40%
	현재 직원 수	15	5.00	18.00	7.67	3.42	
	시설장(원장)	15	1.00	1.00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15	0.00	9.00	2.27	2.12	
	보조원	15	2.00	6.00	3.93	1.53	
	영양사	15	0.00	1.00	0.07	0.26	
	조리원	15	0.00	1.00	0.33	0.49	
	사무원	15	0.00	0.00	0.00	0.00	
	관리인	15	0.00	0.00	0.00	0.00	
	기타	15	0.00	2.00	0.13	0.52	

※충원율: 법정직원대비 현재직원수비율을 의미하며, 법정 직원 수 및 현재직원수의 평균치를 통해 계산됨.

※무응답시설 제외함.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이용시설	법정 직원 수	73	1	12	4.59	1.60	98.99%
	현재 직원 수	73	1	16	4.59	2.00	
	시설장(원장)	73	0	1	0.99	0.12	
	정신보건전문요원	72	0	8	1.50	1.36	
	보조원	73	0	5	1.92	1.18	
	영양사	73	0	1	0.01	0.12	
	조리원	73	0	0	0.00	0.00	
	사무원	73	0	2	0.08	0.32	
	관리인	73	0	0	0.00	0.00	
	기타	73	0	3	0.19	0.59	
	관리인	73	0	0	0.00	0.00	
	기타	73	0	3	0.19	0.59	
입소시설	법정 직원 수	16	4	15	7.94	3.04	99.26%
	현재 직원 수	16	4	16	7.88	3.26	
	시설장(원장)	16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16	0	5	2.13	1.31	
	보조원	16	1	10	3.88	2.28	
	영양사	16	0	1	0.13	0.34	
	조리원	16	0	1	0.25	0.45	
	사무원	16	0	1	0.13	0.34	
	관리인	16	0	2	0.13	0.50	
	기타	16	0	1	0.25	0.45	
주거시설	법정 직원 수	58	1	3	1.91	0.39	108.47%
	현재 직원 수	58	1	4	2.10	0.58	
	시설장(원장)	58	0	1	0.93	0.26	
	정신보건전문요원	59	0	1	0.27	0.45	
	보조원	59	0	2	0.71	0.53	
	영양사	59	0	0	0.00	0.00	
	조리원	58	0	1	0.02	0.13	
	사무원	59	0	1	0.05	0.22	
	관리인	59	0	1	0.12	0.33	
	기타	59	0	2	0.08	0.34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각 지역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2.50%의 인천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북이 110.84%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경남은 84.66%로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현재직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평균 6.29명의 전북이었다. 그 외에는 평균 5.00명의 대전과 평균 4.75명의 경남이 비교적 현재직원수가 많은 지역이었다. <표 I -2-2-2>를 통해서는 보다 자세한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I -2-2-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서울	법정 직원 수	50	1	12	3.72	2.29	106.40%
	현재 직원 수	50	1	16	4.00	2.73	
	시설장(원장)	50	0	1	0.94	0.24	
	정신보건전문요원	50	0	8	1.30	1.67	
	보조원	50	0	5	1.52	1.16	
	영양사	50	0	1	0.02	0.14	
	조리원	49	0	0	0.00	0.00	
	사무원	50	0	1	0.06	0.24	
	관리인	50	0	0	0.00	0.00	
	기타	50	0	2	0.18	0.52	
부산	법정 직 원수	9	3	8	4.67	1.66	87.04%
	현재 직원 수	9	3	6	4.00	1.32	
	시설장(원장)	9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9	0	3	1.33	0.87	
	보조원	9	0	4	1.56	1.13	
	영양사	9	0	0	0.00	0.00	
	조리원	9	0	0	0.00	0.00	
	사무원	9	0	0	0.00	0.00	
	관리인	9	0	0	0.00	0.00	
	기타	9	0	2	0.22	0.67	
대구	법정 직원 수	13	2	13	4.54	2.96	103.25%
	현재 직원 수	13	2	12	4.54	2.70	
	시설장(원장)	13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13	0	5	1.62	1.45	
	보조원	13	0	6	1.69	1.55	
	영양사	13	0	1	0.08	0.28	
	조리원	13	0	0	0.00	0.00	
	사무원	13	0	0	0.00	0.00	
	관리인	13	0	1	0.15	0.38	
	기타	13	0	2	0.15	0.55	

<표계속>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인천	법정 직원 수	4	2	4	3.50	1.00	112.50%
	현재 직원 수	4	3	4	3.75	0.50	
	시설장(원장)	4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4	0	1	0.75	0.50	
	보조원	4	1	2	1.75	0.50	
	영양사	4	0	0	0.00	0.00	
	조리원	4	0	0	0.00	0.00	
	사무원	4	0	0	0.00	0.00	
	관리인	4	0	1	0.25	0.50	
	기타	4	0	0	0.00	0.00	
광주	법정 직원 수	7	1	5	2.86	1.21	100.00%
	현재 직원 수	7	1	5	2.86	1.21	
	시설장(원장)	7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7	0	2	0.43	0.79	
	보조원	7	0	3	1.29	1.11	
	영양사	7	0	0	0.00	0.00	
	조리원	7	0	1	0.14	0.38	
	사무원	7	0	0	0.00	0.00	
	관리인	7	0	0	0.00	0.00	
	기타	7	0	1	0.14	0.38	
대전	법정 직원 수	11	2	8	4.73	2.05	98.96%
	현재 직원 수	11	2	9	5.00	2.10	
	시설장(원장)	12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12	0	2	1.25	0.87	
	보조원	12	0	6	2.08	1.83	
	영양사	12	0	0	0.00	0.00	
	조리원	12	0	1	0.08	0.29	
	사무원	12	0	1	0.08	0.29	
	관리인	12	0	0	0.00	0.00	
	기타	12	0	3	0.25	0.87	
대구	법정 직원 수	13	2	13	4.54	2.96	103.25%
	현재 직원 수	13	2	12	4.54	2.70	
	시설장(원장)	13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13	0	5	1.62	1.45	
	보조원	13	0	6	1.69	1.55	
	영양사	13	0	1	0.08	0.28	
	조리원	13	0	0	0.00	0.00	
	사무원	13	0	0	0.00	0.00	
	관리인	13	0	1	0.15	0.38	
	기타	13	0	2	0.15	0.55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경기	법정 직원 수	19	1	15	3.63	3.48	105.18%
	현재 직원 수	19	1	16	3.74	3.68	
	시설장(원장)	19	0	1	0.95	0.23	
	정신보건전문요원	19	0	3	0.95	1.13	
	보조원	19	0	6	1.58	1.64	
	영양사	19	0	1	0.05	0.23	
	조리원	19	0	1	0.05	0.23	
	사무원	19	0	1	0.05	0.23	
	관리인	19	0	2	0.21	0.54	
	기타	19	0	1	0.05	0.23	
충북	법정 직원 수	6	2	10	5.67	3.27	88.99%
	현재 직원 수	6	2	10	4.83	2.93	
	시설장(원장)	6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6	0	3	1.17	0.98	
	보조원	6	1	4	2.33	1.21	
	영양사	6	0	1	0.17	0.41	
	조리원	6	0	1	0.33	0.52	
	사무원	6	0	0	0.00	0.00	
	관리인	6	0	0	0.00	0.00	
	기타	6	0	0	0.00	0.00	
충남	법정 직원 수	8	2	10	4.50	3.12	101.25%
	현재 직원 수	8	2	10	4.38	3.02	
	시설장(원장)	8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8	0	2	1.13	0.64	
	보조원	8	0	6	2.00	2.27	
	영양사	8	0	0	0.00	0.00	
	조리원	8	0	0	0.00	0.00	
	사무원	8	0	0	0.00	0.00	
	관리인	8	0	0	0.00	0.00	
	기타	8	0	1	0.25	0.46	
전북	법정 직원 수	14	2	16	5.93	3.75	110.84%
	현재 직원 수	14	2	18	6.29	4.07	
	시설장(원장)	13	0	1	0.92	0.28	
	정신보건전문요원	14	0	9	1.36	2.34	
	보조원	14	1	6	3.43	1.87	
	영양사	14	0	0	0.00	0.00	
	조리원	14	0	1	0.21	0.43	
	사무원	14	0	1	0.07	0.27	
	관리인	14	0	1	0.07	0.27	
	기타	14	0	2	0.21	0.58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 수 및 직종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전남	법정 직원 수	2	2	5	3.50	2.12	100.00%
	현재 직원 수	2	2	5	3.50	2.12	
	시설장(원장)	2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2	0	2	1.00	1.41	
	보조원	2	1	2	1.50	0.71	
	영양사	2	0	0	0.00	0.00	
	조리원	2	0	1	0.50	0.71	
	사무원	2	0	0	0.00	0.00	
	관리인	2	0	0	0.00	0.00	
	기타	2	0	0	0.00	0.00	
경북	법정 직원 수	11	2	14	4.91	3.39	95.26%
	현재 직원 수	11	2	13	4.55	2.98	
	시설장(원장)	11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11	0	4	0.91	1.22	
	보조원	11	0	10	2.18	2.86	
	영양사	11	0	0	0.00	0.00	
	조리원	11	0	0	0.00	0.00	
	사무원	11	0	2	0.27	0.65	
	관리인	11	0	1	0.09	0.30	
	기타	11	0	1	0.18	0.40	
경남	법정 직원 수	4	3	11	6.00	3.56	84.66%
	현재 직원 수	4	3	7	4.75	2.06	
	시설장(원장)	4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4	0	3	1.75	1.50	
	보조원	4	0	4	1.75	1.71	
	영양사	4	0	0	0.00	0.00	
	조리원	4	0	1	0.25	0.50	
	사무원	4	0	1	0.25	0.50	
	관리인	4	0	0	0.00	0.00	
	기타	4	0	0	0.00	0.00	
제주	법정 직원 수	2	4	4	4.00	0.00	100.00%
	현재 직원 수	2	4	4	4.00	0.00	
	시설장(원장)	2	1	1	1.00	0.00	
	정신보건전문요원	1	0	0	0.00	0.00	
	보조원	2	3	3	3.00	0.00	
	영양사	2	0	0	0.00	0.00	
	조리원	2	0	0	0.00	0.00	
	사무원	2	0	0	0.00	0.00	
	관리인	2	0	0	0.00	0.00	
	기타	2	0	0	0.00	0.00	

※충원율: 법정직원대비 현재직원수비율을 의미하며, 법정 직원 수 및 현재직원수의 평균치를 통해 계산됨.

3. 자격증 소지현황

1) 전국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은 평균 6.58명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소지율은 159.56%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은 평균 7.01명이 자격증을 소지하여 160.79%의 소지율을 보였다. 입소시설과 주거시설은 각각 평균 11.38명과 평균 3.36명이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소지율은 각각 118.31%와 170.22%였으며, 병행시설은 평균 12.00명이 자격증을 소지하여 156.27%의 소지율을 보였다. (<표 I-2-3-1> 참조).

<표 I-2-3-1>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전체	총 자격증 소지자	163	1	55	6.58	6.08	159.56%
사회복지사	1급	163	0	14	2.18	2.25	
	2급	163	0	5	0.97	1.11	
	3급	163	0	1	0.02	0.16	
	정신과전문의	163	0	4	0.44	0.79	
	간호(조무)사	163	0	4	0.73	0.69	
	정신보건전문요원	163	0	8	1.24	1.37	
	작업 치료사	163	0	1	0.01	0.08	
	임상심리사	163	0	1	0.02	0.16	
	영양사	163	0	2	0.04	0.22	
	기타	163	0	29	0.92	2.79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이용시설	총 자격증 소지자	73	1	32	7.01	4.86	160.79%
	사회복지사	1급	73	0	14	2.68	2.29
		2급	73	0	5	0.75	1.01
		3급	73	0	1	0.05	0.23
	정신과전문의	73	0	4	0.42	0.78	
	간호(조무)사	73	0	4	0.96	0.77	
	정신보건전문요원	73	0	8	1.41	1.35	
	작업 치료사	73	0	1	0.01	0.12	
	임상심리사	73	0	1	0.03	0.16	
	영양사	73	0	2	0.04	0.26	
	기타	73	0	10	0.64	1.74	
	입소시설	총 자격증 소지자	16	5	28	11.38	5.71
사회복지사		1급	16	1	8	3.63	2.31
		2급	16	0	5	1.88	1.36
		3급	16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16	0	4	1.13	1.20	
간호(조무)사		16	0	2	0.50	0.63	
정신보건전문요원		16	0	4	2.31	1.25	
작업 치료사		16	0	0	0.00	0.00	
임상심리사		16	0	1	0.06	0.25	
영양사		16	0	1	0.13	0.34	
기타		16	0	12	1.75	2.93	
주거시설		총 자격증 소지자	59	1	11	3.36	1.80
	사회복지사	1급	59	0	3	0.76	0.80
		2급	59	0	3	0.68	0.71
		3급	59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59	0	3	0.36	0.64	
	간호(조무)사	59	0	1	0.53	0.50	
	정신보건전문요원	59	0	2	0.44	0.60	
	작업 치료사	59	0	0	0.00	0.00	
	임상심리사	59	0	0	0.00	0.00	
	영양사	59	0	0	0.00	0.00	
	기타	59	0	7	0.59	1.26	

<표계속>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병행시설	총 자격증 소지자	15	3	55	12.00	12.48	156.27%
	사회복지사						
	1급	15	1	11	3.80	2.91	
	2급	15	0	5	2.20	1.37	
	3급	15	0	0	0.00	0.00	
	정신과전문요원자격	15	0	1	0.13	0.35	
	간호(조무)사자격	15	0	2	0.67	0.62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	15	1	8	2.40	1.88	
	작업치료사자격	15	0	0	0.00	0.00	
	임상심리사자격	15	0	1	0.07	0.26	
	영양사자격	15	0	1	0.07	0.26	
	기타	15	0	29	2.67	7.33	

※소지율: <표 I -2-2-1>의 현재 직원 수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을 의미함.

※1인 다수 자격증 모두 인정함.

※기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점역 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과, 직무 관련하여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정자격증을 의미함.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표 I -2-3-2>는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여준다. 전남지역이 평균 222.00%로 가장 높은 자격증 소지율을 보였고, 충북지역이 평균 99.17%로 자격증 소지율이 가장 낮았다(<표 I -2-3-2> 참조).

<표 I -2-3-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단위: 명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서울	총 자격증 소지자	50	1	32	6.64	6.03	167.59%	
	사회복지사	1급	50	0	14	2.28	2.80	
		2급	50	0	5	0.70	0.95	
		3급	50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50	0	4	0.54	0.81		
	간호(조무)사	50	0	4	0.70	0.79		
	정신보건전문요원	50	0	8	1.48	1.58		
	작업치료사	50	0	0	0.00	0.00		
	임상심리사	50	0	1	0.04	0.20		
	영양사	50	0	2	0.06	0.31		
	기타	50	0	10	0.84	2.01		
	부산	총 자격증 소지자	9	4	13	7.67	2.92	136.00%
사회복지사		1급	9	1	6	3.22	1.56	
		2급	9	0	3	0.89	1.05	
		3급	9	0	1	0.11	0.33	
정신과전문의		9	0	1	0.33	0.50		
간호(조무)사		9	0	2	0.89	0.60		
정신보건전문요원		9	0	4	1.89	1.27		
작업 치료사		9	0	0	0.00	0.00		
임상심리사		9	0	0	0.00	0.00		
영양사		9	0	0	0.00	0.00		
기타		9	0	2	0.33	0.71		
대구		총 자격증 소지자	13	3	19	6.23	4.13	197.77%
	사회복지사	1급	13	1	8	2.54	1.98	
		2급	13	0	1	0.46	0.52	
		3급	13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13	0	1	0.15	0.38		
	간호(조무)사	13	0	2	1.08	0.76		
	정신보건전문요원	13	0	4	1.46	1.27		
	작업 치료사	13	0	0	0.00	0.00		
	임상심리사	13	0	1	0.15	0.38		
	영양사	13	0	1	0.08	0.28		
	기타	13	0	2	0.31	0.63		

<표계속>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인천	총 자격증 소지자	4	1	6	4.75	2.50	130.25%	
	사회복지사	1급	4	0	4	2.00	1.83	
		2급	4	0	1	0.75	0.50	
		3급	4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4	0	1	0.25	0.50		
	간호(조무)사	4	0	1	0.50	0.58		
	정신보건전문요원	4	0	2	1.00	0.82		
	작업 치료사	4	0	0	0.00	0.00		
	임상심리사	4	0	0	0.00	0.00		
	영양사	4	0	0	0.00	0.00		
	기타	4	0	1	0.25	0.50		
	광주	총 자격증 소지자	7	2	7	4.57	1.90	151.71%
		사회복지사	1급	7	0	2	1.43	0.79
2급			7	0	2	1.00	0.58	
3급			7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7	0	2	0.43	0.79		
간호(조무)사		7	0	1	0.57	0.53		
정신보건전문요원		7	0	2	0.71	0.76		
작업 치료사		7	0	0	0.00	0.00		
임상심리사		7	0	0	0.00	0.00		
영양사		7	0	0	0.00	0.00		
기타		7	0	2	0.43	0.79		
대전		총 자격증 소지자	12	2	14	6.75	3.47	168.33%
		사회복지사	1급	12	0	3	1.33	1.07
	2급		12	0	3	1.58	1.16	
	3급		12	0	1	0.08	0.29	
	정신과전문의	12	0	4	1.25	1.60		
	간호(조무)사	12	0	2	0.83	0.58		
	정신보건전문요원	12	0	2	0.83	0.72		
	작업 치료사	12	0	0	0.00	0.00		
	임상심리사	12	0	0	0.00	0.00		
	영양사	12	0	0	0.00	0.00		
	기타	12	0	5	0.83	1.59		
	울산	총 자격증 소지자	2	3	6	4.50	2.12	150.00%
		사회복지사	1급	2	1	4	2.50	2.12
2급			2	0	0	0.00	0.00	
3급			2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2	0	1	0.50	0.71		
간호(조무)사		2	0	2	1.00	1.41		
정신보건전문요원		2	0	1	0.50	0.71		
작업 치료사		2	0	0	0.00	0.00		
임상심리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0	0	0.00	0.00		
기타		2	0	0	0.00	0.00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경기	총 자격증 소지자	19	1	28	5.84	6.49	169.53%
	사회복지사	1급	19	0	7	1.58	2.04
		2급	19	0	3	0.79	0.92
		3급	19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19	0	2	0.42	0.61	
	간호(조무)사	19	0	2	0.95	0.52	
	정신보건전문요원	19	0	4	0.89	1.20	
	작업 치료사	19	0	1	0.05	0.23	
	임상심리사	19	0	0	0.00	0.00	
	영양사	19	0	1	0.05	0.23	
	기타	19	0	12	1.11	2.75	
충북	총 자격증 소지자	6	3	16	8.33	5.05	99.17%
	사회복지사	1급	6	0	5	2.67	2.25
		2급	6	0	3	1.50	1.38
		3급	6	0	1	0.17	0.41
	정신과전문의	6	0	2	0.83	0.75	
	간호(조무)사	6	0	2	0.33	0.82	
	정신보건전문요원	6	0	4	1.17	1.47	
	작업 치료사	6	0	0	0.00	0.00	
	임상심리사	6	0	0	0.00	0.00	
	영양사	6	0	1	0.17	0.41	
	기타	6	0	4	1.50	1.64	
충남	총 자격증 소지자	8	2	14	5.63	3.89	126.00%
	사회복지사	1급	8	0	8	2.25	2.49
		2급	8	0	3	0.88	0.99
		3급	8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8	0	1	0.13	0.35	
	간호(조무)사	8	0	1	0.50	0.53	
	정신보건전문요원	8	0	3	1.00	1.07	
	작업 치료사	8	0	0	0.00	0.00	
	임상심리사	8	0	0	0.00	0.00	
	영양사	8	0	0	0.00	0.00	
	기타	8	0	3	0.88	1.13	

<표계속>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전북	총 자격증 소지자	14	4	55	10.50	13.09	145.07%	
	사회복지사	1급	14	1	11	2.93	2.73	
		2급	14	0	5	2.07	1.44	
		3급	14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14	0	1	0.14	0.36		
	간호(조무)사	14	0	2	0.57	0.65		
	정신보건전문요원	14	0	8	1.64	2.10		
	작업 치료사	14	0	0	0.00	0.00		
	임상심리사	14	0	0	0.00	0.00		
	영양사	14	0	0	0.00	0.00		
	기타	14	0	29	3.14	7.65		
	전남	총 자격증 소지자	2	3	7	5.00	2.83	222.00%
		사회복지사	1급	2	2	3	2.50	0.71
2급			2	0	1	0.50	0.71	
3급			2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2	0	0	0.00	0.00		
간호(조무)사		2	0	1	0.50	0.71		
정신보건전문요원		2	1	2	1.50	0.71		
작업 치료사		2	0	0	0.00	0.00		
임상심리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0	0	0.00	0.00		
기타		2	0	0	0.00	0.00		
경북		총 자격증 소지자	11	3	16	5.27	3.74	174.27%
		사회복지사	1급	11	0	7	2.09	1.92
	2급		11	0	3	0.82	0.98	
	3급		11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11	0	2	0.27	0.65		
	간호(조무)사	11	0	2	0.73	0.65		
	정신보건전문요원	11	0	3	0.91	1.04		
	작업 치료사	11	0	0	0.00	0.00		
	임상심리사	11	0	0	0.00	0.00		
	영양사	11	0	0	0.00	0.00		
	기타	11	0	2	0.45	0.69		
	경남	총 자격증 소지자	4	1	9	5.00	3.37	118.50%
		사회복지사	1급	4	0	5	1.75	2.22
2급			4	0	5	1.25	2.50	
3급			4	0	1	0.25	0.50	
정신과전문의		4	0	1	0.25	0.50		
간호(조무)사		4	0	1	0.50	0.58		
정신보건전문요원		4	0	2	0.75	0.96		
작업 치료사		4	0	0	0.00	0.00		
임상심리사		4	0	0	0.00	0.00		
영양사		4	0	0	0.00	0.00		
기타		4	0	1	0.25	0.50		

<표계속>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제주	총 자격증 소지자	2	4	4	4.00	0.00	124.00%
	사회복지사	1급	2	0	1	0.50	0.71
		2급	2	2	3	2.50	0.71
		3급	2	0	0	0.00	0.00
	정신과전문의	2	0	0	0.00	0.00	
	간호(조무)사	2	0	1	0.50	0.71	
	정신보건전문요원	2	0	1	0.50	0.71	
	작업 치료사	2	0	0	0.00	0.00	
	입상심리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0	0	0.00	0.00	
	기타	2	0	0	0.00	0.00	

※소지율: <표 I-2-2-2>의 현재 직원 수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을 의미하며, 1인 다수 자격증 모두 인정함.

※기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점역 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과, 직무 관련하여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정자격증을 의미함.

제 3 절 세입·세출 등 재정 현황

1. 재정 현황

1) 전국 사회복지시설 재정 현황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은 각 시설마다 편차가 비교적 큰 가운데 각각 평균 207,234천원과 평균 198,78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보조금인건비 총액은 평균 123,601천원이었고, 보조금 프로그램비 총액은 평균 6,570천원이었으며, 보조금관리운영비 총액은 평균 21,277천원, 자부담인건비 총액은 평균 6,112천원, 자부담 프로그램비 총액은 평균 14,106천원, 자부담 관리운영비 총액은 평균 15,48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은 각각 평균 225,702천원과 평균 218,002천원이었고, 보조금인건비 총액, 보조금 프로그램비 총액, 보조금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128,557천

원, 평균 8,595천원, 평균 22,105천원이었다. 또한 자부담인건비, 자부담 프로그램비, 자부담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7,183천원, 평균 22,605천원, 평균 12,666천원이었다. 입소시설은 평균 402,942천원의 세입 총액과 평균 374,024천원의 세출 총액을 보였고, 보조금인건비 총액, 보조금 프로그램비 총액, 보조금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246,132천원, 평균 6,169천원, 평균 39,337천원이었다. 또한 자부담인건비, 자부담 프로그램비, 자부담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10,539천원, 평균 13,112천원, 평균 36,124천원이었다. 주거시설은 평균 94,204천원의 세입 총액과 평균 90,253천원의 세출 총액을 보였고, 보조금인건비 총액, 보조금 프로그램비 총액, 보조금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57,739천원, 평균 2,329천원, 평균 9,942천원이었다. 또한 자부담인건비, 자부담 프로그램비, 자부담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3,236천원, 평균 2,798천원, 평균 10,141천원이었다. 병행시설은 평균 353,182천원의 세입 총액과 평균 345,198천원의 세출 총액을 보였고, 보조금인건비 총액, 보조금프로그램비 총액, 보조금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227,840천원, 평균 13,821천원, 평균 42,560천원이었다. 또한 자부담인건비, 자부담 프로그램비, 자부담관리운영비 총액은 각각 평균 7,126천원, 평균 18,469천원, 평균 27,668천원이었다.(<표 I -3-1-1> 참조).

<표 I -3-1-1> 사회복지시설 재정 현황

※단위: 천원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세입총액	163	36,503	926,485	207,234	163,011
	세출총액	163	36,503	815,561	198,782	151,776
	보조금인건비	163	4,935	510,273	123,601	87,399
	보조금 프로그램비	163	-	62,116	6,570	7,806
	보조금관리운영비	163	-	221,575	21,277	32,228
	자부담인건비	157	-	90,040	6,112	12,112
	자부담 프로그램비	158	-	426,243	14,106	38,462
	자부담관리운영비	160	-	165,864	15,487	19,854
이용시설	세입 총액	73	65,521	926,485	225,702	140,921
	세출 총액	73	65,521	815,561	218,002	129,507
	보조금인건비	73	4,935	385,582	128,557	57,797
	보조금 프로그램비	73	-	62,116	8,595	8,630
	보조금관리운영비	73	-	221,575	22,105	33,328
	자부담인건비	70	-	90,040	7,183	16,109
	자부담 프로그램비	70	-	426,243	22,605	54,628
	자부담관리운영비	70	-	69,222	12,666	13,468
입소시설	세입 총액	16	186,452	812,450	402,942	213,577
	세출 총액	16	184,944	812,450	374,024	191,998
	보조금인건비	16	115,505	496,194	246,132	110,314
	보조금 프로그램비	16	1,760	11,814	6,169	3,017
	보조금관리운영비	16	6,221	150,296	39,337	36,970
	자부담인건비	16	-	32,681	10,539	10,511
	자부담 프로그램비	16	427	76,823	13,112	19,829
	자부담관리운영비	16	-	165,864	36,124	39,930
주거시설	세입 총액	59	36,503	354,773	94,204	40,540
	세출 총액	59	36,503	352,760	90,253	39,318
	보조금인건비	59	28,122	76,599	57,739	12,462
	보조금 프로그램비	59	-	11,036	2,329	2,303
	보조금관리운영비	59	-	199,068	9,942	25,509
	자부담인건비	56	-	22,439	3,236	5,226
	자부담 프로그램비	57	-	22,098	2,798	4,086
	자부담관리운영비	59	-	72,167	10,141	10,833
병행시설	세입 총액	15	196,337	823,834	353,182	165,693
	세출 총액	15	192,098	806,896	345,198	157,393
	보조금인건비	15	126,773	510,273	227,840	101,581
	보조금 프로그램비	15	4,797	43,211	13,821	11,688
	보조금관리운영비	15	6,434	92,880	42,560	27,257
	자부담인건비	15	-	27,298	7,126	8,237
	자부담 프로그램비	15	-	78,833	18,469	22,154
	자부담관리운영비	15	-	78,172	27,668	24,129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재정 현황

<표 I-3-1-2>에서는 각 지역별 재정현황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재정 관련 각 사항에 대해 각 지역 중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이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입 총액은 전북지역이 평균 296,80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지역이 평균 120,758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출 총액 역시 세입 총액의 규모와 관계가 있어 전북과 울산이 각각 평균 292,952천원과 평균 116,750천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각 사항 중 먼저 보조금인건비 총액에 대해서는 전북이 평균 184,89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가 평균 91,070천원으로 가장 적은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다음으로 보조금 프로그램비 총액에서는 전남이 평균 10,05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평균 2,481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보조금관리운영비 총액에서는 경남이 평균 67,67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평균 6,429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부담인건비 총액에서는 경북이 평균 16,21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평균 606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부담 프로그램비 총액에서는 대전이 평균 45,41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평균 1,897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부담관리운영비 총액에서는 전북이 평균 30,50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평균 5,832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표 I-3-1-2> 참조).

<표 I -3-1-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재정 현황

※단위: 천원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서울	세입총액	50	52,750	926,485	199,442	168,325
	세출총액	50	49,920	815,561	184,850	139,145
	보조금인건비	50	29,945	385,582	120,260	76,614
	보조금 프로그램비	50	-	62,116	6,718	9,469
	보조금관리운영비	50	-	221,575	16,847	32,835
	자부담인건비	48	-	90,040	6,827	14,712
	자부담 프로그램비	48	-	128,155	16,723	27,920
	자부담관리운영비	48	-	49,598	14,239	12,135
부산	세입총액	9	103,090	308,018	194,488	81,007
	세출총액	9	103,090	308,018	192,043	78,312
	보조금인건비	9	72,061	191,239	116,100	43,555
	보조금 프로그램비	9	3,359	38,364	9,495	11,088
	보조금관리운영비	9	972	43,231	20,344	14,208
	자부담인건비	9	-	7,749	1,785	2,906
	자부담 프로그램비	9	271	56,785	18,376	19,790
	자부담관리운영비	9	209	38,929	13,285	13,861
대구	세입총액	13	89,430	619,669	206,963	138,635
	세출총액	13	82,960	565,867	199,669	125,792
	보조금인건비	13	52,908	379,810	134,394	87,682
	보조금 프로그램비	13	2,650	28,598	8,922	7,377
	보조금관리운영비	13	1,500	92,880	20,081	23,641
	자부담인건비	13	-	8,117	953	2,213
	자부담 프로그램비	13	-	75,572	15,522	23,375
	자부담관리운영비	13	98	15,231	5,899	5,112
인천	세입총액	4	79,477	226,633	175,244	65,473
	세출총액	4	74,270	226,633	170,565	66,403
	보조금인건비	4	49,495	131,968	107,912	39,085
	보조금 프로그램비	4	1,633	6,836	5,024	2,383
	보조금관리운영비	4	10,686	16,722	13,117	2,558
	자부담인건비	4	90	4,402	2,063	1,922
	자부담 프로그램비	4	51	11,328	8,187	5,432
	자부담관리운영비	4	5,076	69,222	21,781	31,636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광주	세입총액	7	36,503	196,337	125,495	48,366
	세출총액	7	36,503	192,098	123,177	47,217
	보조금인건비	7	29,705	126,773	91,070	30,391
	보조금 프로그램비	7	2,000	9,261	4,747	2,318
	보조금관리운영비	7	2,907	11,190	8,212	3,112
	자부담인건비	6	-	11,100	3,508	4,989
	자부담 프로그램비	7	365	31,351	9,044	10,862
	자부담관리운영비	7	811	17,679	7,085	6,764
대전	세입총액	12	71,813	758,015	262,376	204,082
	세출총액	12	68,658	713,648	249,379	196,068
	보조금인건비	12	20,477	309,163	128,417	83,419
	보조금 프로그램비	12	326	8,500	4,953	3,214
	보조금관리운영비	12	4,302	26,510	15,129	7,932
	자부담인건비	11	-	22,439	5,589	8,422
	자부담 프로그램비	11	377	426,243	45,419	126,751
	자부담관리운영비	12	2,538	59,051	19,002	17,617
울산	세입총액	2	65,521	175,994	120,758	78,117
	세출총액	2	65,521	167,979	116,750	72,449
	보조금인건비	2	56,722	135,355	96,039	55,602
	보조금 프로그램비	2	2,148	2,813	2,481	470
	보조금관리운영비	2	6,208	6,650	6,429	313
	자부담인건비	2	-	1,211	606	857
	자부담 프로그램비	2	-	6,333	3,166	4,478
	자부담관리운영비	2	-	16,059	8,029	11,355
경기	세입총액	19	59,990	812,450	174,317	184,096
	세출총액	19	50,545	812,450	164,641	180,382
	인건비총액	19	29,597	496,194	102,437	109,835
	프로그램비 총액	19	-	25,677	7,203	7,979
	보조금 프로그램비	19	5,079	89,362	19,656	22,286
	보조금관리운영비	19	-	32,681	7,516	10,261
	자부담인건비	19	-	18,670	4,966	7,080
	시설관리비총액	19	927	165,864	18,255	37,175
	총액	6	87,017	558,021	262,859	197,185
충북	세입총액	6	87,017	558,021	262,859	197,185
	세출총액	6	80,446	556,356	258,884	195,412
	인건비총액	6	51,296	309,349	131,024	93,683
	프로그램비 총액	6	169	9,727	4,884	3,490
	보조금 프로그램비	6	8,782	58,376	26,158	19,627
	보조금관리운영비	6	-	14,993	4,297	6,093
	자부담인건비	6	-	30,628	9,247	11,991
	시설관리비총액	6	50	52,340	22,425	20,079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재정항목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남	세입총액	8	83,554	431,273	200,305	147,613
	세출총액	8	83,638	423,877	196,350	142,204
	인건비총액	8	58,243	298,276	130,911	94,317
	프로그램비 총액	8	915	5,553	2,692	1,879
	보조금 프로그램비	8	7,658	24,974	12,833	6,370
	보조금관리운영비	7	-	18,448	6,391	7,949
	자부담인건비	7	-	6,400	1,897	2,437
	시설관리비총액	8	-	50,779	12,797	16,113
전북	세입총액	14	68,668	823,834	296,806	188,293
	세출총액	14	68,668	806,896	292,952	184,864
	인건비총액	14	60,362	510,273	184,894	120,022
	프로그램 비총액	14	1,532	43,211	9,853	10,823
	보조금 프로그램비	14	4,497	199,068	41,606	50,471
	보조금관리운영비	13	-	27,298	6,158	9,033
	프로그램비 총액	13	-	78,833	15,512	21,710
	시설관리비총액	13	-	78,172	30,505	29,004
전남	세입총액	2	93,139	222,007	157,573	91,124
	세출총액	2	91,470	217,013	154,242	88,772
	인건비총액	2	54,116	128,789	91,452	52,802
	프로그램비 총액	2	6,812	13,297	10,055	4,585
	프로그램비 총액	2	8,122	15,419	11,770	5,160
	보조금 프로그램비	2	6,046	13,414	9,730	5,210
	보조금관리운영비	2	1,770	8,446	5,108	4,721
	시설관리비총액	2	14,605	37,647	26,126	16,293
경북	세입총액	11	48,123	775,785	190,053	199,945
	세출총액	11	48,123	775,785	188,683	200,153
	인건비총액	11	4,935	441,628	106,701	118,755
	프로그램비 총액	11	-	11,814	2,747	4,084
	보조금 프로그램비	11	-	150,296	29,807	46,513
	보조금관리운영비	11	-	67,078	16,219	24,925
	프로그램비 총액	11	-	20,220	6,692	8,331
	시설관리비총액	11	-	26,543	11,728	10,906
경남	세입총액	4	119,259	334,650	263,283	97,705
	세출총액	4	119,259	334,650	258,957	95,388
	인건비총액	4	99,833	220,639	156,387	62,762
	프로그램비 총액	4	5,262	6,962	5,974	823
	프로그램비 총액	4	13,239	191,904	67,675	83,472
	보조금 프로그램비	4	-	9,818	2,962	4,643
	보조금관리운영비	4	60	5,973	2,060	2,711
	시설관리비총액	4	796	28,490	11,038	12,348

<표계속>

	재정항목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제주	세입총액	2	130,297	160,570	145,434	21,406
	세출총액	2	130,297	160,570	145,434	21,406
	인건비총액	2	77,155	112,179	94,667	24,766
	프로그램비 총액	2	7,766	8,172	7,969	288
	프로그램비 총액	2	19,243	20,300	19,771	747
	보조금 프로그램비	2	-	8,256	4,128	5,838
	보조금관리운영비	2	-	-	-	-
	시설관리비총액	2		11,663	5,832	8,247

제 4 절 시설 구조 및 규모

1. 전국 사회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평균 1,543.29㎡와 평균 562.21㎡였다. 각 실(室)별 개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거실은 평균 2.53개로써 평균 65.47㎡의 넓이를 확보하고 있었다. 훈련실은 평균 2.54 개에 평균 넓이는 102.61㎡였다. 사무실은 평균 1.24개이며 평균 넓이는 25.62㎡로 나타났다. 휴게실 및 쉼터는 평균 1.62㎡의 넓이로써 평균 37.29개가 확보되었다. 조리실 및 식당은 평균 1.16 개였으며 평균 넓이는 30.94㎡였고, 화장실(샤워실)은 평균 2.86개에 평균 22.00㎡의 면적이 확보되었다. 기타는 평균 3.27 개였고 평균 79.55㎡의 넓이였다.

각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이용시설은 대지 면적이 평균 2,543.64㎡, 연면적이 평균 541.73㎡였다. 가장 많은 개수를 보인 실(室)은 훈련실과 기타 공간으로써 각각 평균 2.62개와 평균 2.31개였다. 또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인 실(室)도 훈련실과 기타공간으로 각각 평균 108.30㎡와 평균 60.36㎡였다. 입소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은 평균 2,326.23㎡, 연면적은 775.30㎡였다. 가장

많은 개수를 보인 실(室)은 화장실과 거실공간으로써 각각 평균 6.38개와 평균 6.19개였다. 한편,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인 실(室)은 기타공간과 거실로 각각 평균 216.89㎡와 평균 156.33㎡였다. 주거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은 평균 298.48㎡, 연면적은 498.92㎡였다. 가장 많은 개수를 보인 실(室)은 기타공간과 화장실로 각각 평균 2.40 개와 평균 1.84개였다. 또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인 실(室)은 거실과 휴게실 및 쉼터 공간으로 각각 평균 35.14 ㎡와 평균 24.79㎡였다. 병행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은 평균 1,471.12㎡, 연면적은 669.68 ㎡였다. 가장 많은 개수를 보인 실(室)은 기타공간과 화장실로 각각 평균 8.13개와 평균 6.80개였다. 또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인 실(室)은 기타공간과 혼련실로 각각 평균 197.88㎡와 평균 157.46 ㎡였다. (<표 I -4-1> 참조).

<표 I -4-1> 전국 사회복지시설 규모

※단위: 개(개수), ㎡(면적)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대지 면적	143	0.00	55,624.00	1,543.29	6,128.40
	연면적	157	3.37	11,613.00	562.21	1,329.73
거실	개수	110	0.00	19.00	2.53	3.39
	면적	105	0.00	707.63	65.47	92.32
혼련실	개수	122	0.00	12.00	2.54	1.89
	면적	118	0.00	539.92	102.61	88.40
사무실	개수	155	1.00	6.00	1.24	0.68
	면적	146	2.29	183.52	25.62	23.69
휴게실 및 쉼터	개수	117	0.00	14.00	1.62	1.83
	면적	112	0.00	295.20	37.29	46.01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40	0.00	3.00	1.16	0.49
	면적	131	0.00	199.30	30.94	33.67
화장실 (샤워실)	개수	154	0.00	18.00	2.86	2.75
	면적	141	0.00	175.40	22.00	27.14
기타	개수	129	0.00	25.00	3.27	3.70
	면적	134	0.00	909.24	79.55	120.29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이용시설	대지 면적	57	0.00	55,624.00	2,543.64	9,421.22	
	연면적	69	3.37	5,068.87	541.73	871.43	
	거실	개수	21	0.00	2.00	0.76	0.54
		면적	22	0.00	189.13	45.69	54.91
	훈련실	개수	71	1.00	12.00	2.62	2.11
		면적	67	20.98	442.40	108.30	70.13
	사무실	개수	70	1.00	4.00	1.27	0.61
		면적	66	3.61	132.84	27.19	20.91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65	0.00	5.00	1.09	0.55
		면적	62	0.00	83.00	24.53	19.77
	조리실 및 식당	개수	54	0.00	3.00	1.11	0.46
		면적	49	0.00	199.30	34.01	40.10
	화장실 (샤워실)	개수	65	0.00	8.00	1.98	1.68
		면적	59	0.00	175.40	19.59	24.34
	기타	개수	59	0.00	15.00	2.31	2.06
		면적	59	2.76	422.73	60.36	78.43
	입소시설	대지 면적	16	191.20	12882.00	2326.23	3136.21
		연면적	16	180.09	2173.21	775.30	583.34
거실		개수	16	1.00	19.00	6.19	6.76
		면적	16	20.00	707.63	156.33	182.78
훈련실		개수	16	1.00	6.00	2.31	1.70
		면적	16	8.10	379.13	112.14	108.03
사무실		개수	16	1.00	4.00	1.50	0.97
		면적	16	20.00	94.06	45.78	19.76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15	1.00	12.00	3.20	2.98
		면적	15	16.10	295.20	91.77	77.21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6	1.00	3.00	1.25	0.58
		면적	16	9.72	153.23	53.20	36.02
화장실 (샤워실)		개수	16	2.00	16.00	6.38	3.69
		면적	16	9.18	147.57	55.71	42.03
기타		개수	15	0.00	16.00	4.53	4.21
		면적	15	12.00	909.24	216.89	228.78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주거시설	대지 면적	55	44.58	1248.00	298.48	287.15	
	연면적	57	39.54	11613.00	498.92	1965.53	
	거실	개수	58	0.00	6.00	1.83	1.36
		면적	52	0.00	98.10	35.14	20.82
	훈련실	개수	20	0.00	4.00	1.90	1.12
		면적	20	0.00	134.25	34.75	26.54
	사무실	개수	54	1.00	2.00	1.02	0.14
		면적	49	2.29	22.80	10.51	4.10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22	0.00	4.00	1.68	0.95
		면적	20	0.00	59.33	24.79	15.03
	조리실 및 식당	개수	55	0.00	2.50	1.11	0.40
		면적	51	0.00	56.07	13.61	9.60
	화장실 (샤워실)	개수	58	1.00	5.00	1.84	0.76
		면적	52	1.51	28.89	8.59	4.56
	기타	개수	40	0.00	10.00	2.40	1.58
		면적	46	0.00	138.73	23.36	23.12
병행시설	대지 면적	15	0.00	7626.96	1471.12	2043.74	
	연면적	15	311.26	1588.16	669.68	337.36	
	거실	개수	15	1.00	9.00	3.80	2.93
		면적	15	17.21	271.57	102.73	80.38
	훈련실	개수	15	1.00	6.00	3.27	1.53
		면적	15	35.10	539.92	157.46	136.38
	사무실	개수	15	1.00	6.00	1.60	1.30
		면적	15	20.16	183.52	46.52	39.53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15	0.00	14.00	2.27	3.41
		면적	15	0.00	251.96	52.23	66.69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5	1.00	3.00	1.47	0.64
		면적	15	10.80	114.90	56.10	30.35
	화장실 (샤워실)	개수	15	3.00	18.00	6.80	3.80
		면적	14	10.94	84.63	43.43	23.00
	기타	개수	15	0.00	25.00	8.13	7.04
		면적	14	53.52	411.57	197.88	112.68

※무응답 시설 제외.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조사됨.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각 지역별로 평균 대지 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곳은 대전으로 각각 평균 6977.08㎡, 평균 695.37㎡로 가장 넓었다. 각 실(室)별로 개수 및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거실 개수를 보인 지역은 전북으로 평균 4.50개였으며, 가장 넓은 거실 면적을 보인 지역은 인천으로 평균 111.07㎡였다. 또한 훈련실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개수를 보여 평균 3.57개였으며, 가장 넓은 훈련실 면적은 경기도로 평균 163.16㎡였다. 가장 많은 사무실 개수를 보인 지역은 전북으로 평균 1.64개였으며, 가장 넓은 사무실 면적을 보인 지역은 경남으로 평균 43.07㎡였다. 휴게실과 쉼터는 가장 많은 개수와 넓은 면적을 보인 지역이 충북으로 평균 5.00개, 평균 112.68㎡였다. 가장 많은 조리실 및 식당 개수와 면적을 보인 지역은 전남으로 평균 1.50개, 평균 52.39㎡였다. 가장 많은 화장실 개수를 보인 지역은 전북으로 평균 5.85개였으며, 가장 넓은 화장실 면적을 보인 지역은 충북으로 평균 31.42㎡였다. 기타 구조는 가장 많은 개수를 보인 지역이 충북으로 평균 7.00개였으며, 면적은 경남이 232.92로 가장 넓은 공간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I-4-2>를 통해 제시되었다.

<표 I-4-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규모

※단위: 개(개수), m²(면적)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서울	대지 면적	47	4.31	46537.00	1378.96	6767.24	
	연면적	48	3.37	11613.00	749.93	2133.76	
	거실	개수	37	1.00	5.00	1.41	0.90
		면적	35	1.00	112.27	39.44	26.45
	훈련실	개수	30	1.00	12.00	3.57	2.57
		면적	30	19.46	442.40	115.46	91.98
	사무실	개수	46	1.00	3.00	1.17	0.44
		면적	44	4.12	132.84	22.93	24.00
	휴게실 및 쉼터	개수	29	1.00	5.00	1.38	0.86
		면적	27	4.59	166.36	37.80	38.92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2	1.00	3.00	1.10	0.37
		면적	39	3.78	199.30	27.88	37.90
	화장실 (샤워실)	개수	47	1.00	10.00	2.47	2.01
		면적	43	3.30	102.72	16.59	18.56
	기타	개수	38	1.00	15.00	3.05	2.68
		면적	41	1.38	422.73	58.39	83.98
	부산	대지 면적	8	109.87	7626.96	1404.41	2534.59
		연면적	9	109.87	1137.39	440.54	378.62
거실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49.13	53.34	51.24	2.98
훈련실		개수	9	1.00	6.00	2.22	1.72
		면적	9	26.46	382.95	126.22	108.94
사무실		개수	9	1.00	2.00	1.11	0.33
		면적	9	11.00	59.00	22.44	15.14
휴게실 및 쉼터		개수	8	1.00	3.00	1.38	0.74
		면적	8	11.00	143.21	50.66	44.94
조리실 및 식당		개수	9	1.00	3.00	1.22	0.67
		면적	9	5.90	97.50	38.70	33.87
화장실 (샤워실)		개수	9	1.00	10.00	2.67	3.20
		면적	9	6.70	72.55	25.46	23.18
기타		개수	8	1.00	13.00	3.50	4.34
		면적	8	4.20	411.57	98.33	141.77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구	대지 면적	11	0.00	1730.00	484.61	518.48	
	연면적	13	83.46	5068.87	688.62	1349.59	
	거실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3	25.70	50.29	36.61	12.53
	훈련실	개수	11	1.00	5.00	2.36	1.12
		면적	11	21.20	210.07	93.14	67.59
	사무실	개수	13	1.00	4.00	1.31	0.85
		면적	12	9.36	57.09	28.76	16.41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10	1.00	14.00	2.70	4.16
		면적	10	8.75	251.96	55.88	71.74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0	1.00	3.00	1.30	0.67
		면적	10	0.00	168.75	35.73	51.95
	화장실 (샤워실)	개수	13	1.00	6.00	2.08	1.80
		면적	11	4.95	64.84	21.31	18.65
	기타	개수	11	1.00	18.00	3.18	4.98
		면적	11	3.62	312.13	46.91	88.96
	인천	대지 면적	2	480.00	525.60	502.80	32.24
		연면적	4	132.30	1185.03	411.39	516.10
거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2	33.00	189.13	111.07	110.40
훈련실		개수	4	2.00	4.00	3.25	0.96
		면적	4	49.50	118.29	80.78	29.82
사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3.61	12.25	9.14	4.80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4.00	11.56	8.66	4.07
조리실 및 식당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7.77	16.50	10.95	4.82
화장실 (샤워실)		개수	3	1.00	2.00	1.67	0.58
		면적	3	2.00	19.80	10.27	8.97
기타		개수	3	2.00	3.00	2.33	0.58
		면적	3	15.58	24.30	19.89	4.36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광주	대지 면적	4	138.60	296.20	195.96	72.16	
	연면적	7	87.68	1528.62	370.51	519.87	
	거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1.99	27.03	19.51	10.63
	훈련실	개수	7	1.00	2.00	1.29	0.49
		면적	7	18.30	103.90	62.09	24.93
	사무실	개수	7	1.00	1.00	1.00	0.00
		면적	7	6.60	59.01	22.06	17.09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6	1.00	2.00	1.17	0.41
		면적	6	6.84	17.63	11.49	3.62
	조리실 및 식당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14.06	29.24	20.04	8.09
	화장실 (샤워실)	개수	7	1.00	3.00	1.57	0.79
		면적	7	2.53	33.00	14.67	12.57
	기타	개수	5	1.00	12.00	3.60	4.72
		면적	5	15.68	217.22	68.23	84.53
	대전	대지 면적	9	152.70	55624.00	6977.08	18265.93
연면적		11	58.09	4504.90	695.37	1339.87	
거실		개수	7	1.00	17.00	4.14	5.84
		면적	6	14.43	225.39	84.64	79.44
훈련실		개수	9	1.00	4.00	2.22	0.97
		면적	9	8.10	318.24	101.30	91.36
사무실		개수	11	1.00	2.00	1.18	0.40
		면적	11	2.29	68.40	33.35	21.94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9	1.00	2.00	1.33	0.50
		면적	8	2.53	56.25	22.71	17.99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1	1.00	2.00	1.09	0.30
		면적	10	7.40	71.25	23.66	18.90
화장실 (샤워실)		개수	11	1.00	16.00	3.00	4.34
		면적	10	1.51	147.57	24.87	44.01
기타		개수	8	1.00	5.00	2.25	1.49
		면적	9	6.37	175.05	54.50	51.40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울산	대지 면적	1	455.30	455.30	455.30	.	
	연면적	2	129.01	802.15	465.58	475.98	
	거실	개수	0	-	-	-	-
		면적	0	-	-	-	-
	훈련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1	34.78	34.78	34.78	.
	사무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1	9.90	9.90	9.90	.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35.10	35.10	35.10	.
	조리실 및 식당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1	34.65	34.65	34.65	.
	화장실 (샤워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1	4.62	4.62	4.62	.
	기타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8.25	8.25	8.25	.
경기	대지 면적	14	44.58	12882.00	1517.92	3416.70	
	연면적	16	36.28	2561.54	437.96	767.93	
	거실	개수	13	0.00	19.00	3.54	4.77
		면적	13	0.00	707.63	81.02	188.78
	훈련실	개수	7	1.00	8.00	3.57	2.37
		면적	5	50.35	215.19	163.16	67.03
	사무실	개수	17	1.00	2.00	1.06	0.24
		면적	15	4.54	49.34	12.58	11.29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10	1.00	2.00	1.30	0.48
		면적	9	4.60	36.30	19.49	9.40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5	1.00	3.00	1.40	0.71
		면적	13	5.00	153.23	28.32	40.94
	화장실 (샤워실)	개수	16	1.00	8.00	2.75	2.23
		면적	15	3.00	175.40	26.16	50.66
	기타	개수	13	1.00	4.00	2.31	0.95
		면적	14	3.30	909.24	85.85	237.76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북	대지 면적	6	240.00	3499.00	1469.83	1107.26	
	연면적	6	128.61	1008.17	412.76	369.00	
	거실	개수	5	1.00	16.00	4.00	6.71
		면적	4	22.56	237.16	85.93	101.71
	훈련실	개수	5	1.00	3.00	2.20	1.10
		면적	5	20.98	138.23	74.54	56.02
	사무실	개수	6	1.00	3.00	1.50	0.84
		면적	5	16.80	64.00	39.18	18.68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4	1.00	12.00	5.00	5.23
		면적	4	12.88	295.20	112.68	132.93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	1.00	1.00	1.00	0.00
		면적	4	11.05	94.16	43.15	38.68
	화장실 (샤워실)	개수	6	2.00	8.00	3.50	2.35
		면적	5	7.03	69.39	31.42	27.33
	기타	개수	4	2.00	16.00	7.00	6.38
		면적	5	21.35	311.02	143.15	122.92
	충남	대지 면적	8	117.01	5108.00	1442.55	1734.36
		연면적	8	89.01	1651.83	428.59	535.96
거실		개수	8	1.00	13.00	3.25	4.20
		면적	7	20.00	420.38	99.01	149.09
훈련실		개수	6	1.00	6.00	1.83	2.04
		면적	6	16.20	379.13	105.17	138.39
사무실		개수	8	1.00	4.00	1.50	1.07
		면적	7	11.00	94.06	32.57	28.71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5	1.00	6.00	2.80	1.92
		면적	5	21.38	146.62	73.92	52.61
조리실 및 식당		개수	8	1.00	2.00	1.13	0.35
		면적	7	5.10	70.20	31.18	24.43
화장실 (샤워실)		개수	8	1.00	7.00	3.13	2.03
		면적	7	6.20	52.10	27.79	20.48
기타		개수	6	1.00	6.00	2.83	1.94
		면적	6	12.00	256.47	76.08	91.03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북	대지 면적	14	0.00	3916.60	812.55	1001.43	
	연면적	14	84.55	1588.16	467.95	370.76	
	거실	개수	12	0.00	9.00	4.50	3.12
		면적	12	0.00	271.57	103.46	79.99
	훈련실	개수	14	0.00	5.00	2.57	1.70
		면적	14	0.00	539.92	121.03	130.64
	사무실	개수	14	1.00	6.00	1.64	1.39
		면적	14	9.90	183.52	39.51	42.99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14	0.00	4.00	1.36	1.08
		면적	14	0.00	83.00	31.68	27.19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4	0.00	2.00	1.21	0.58
		면적	14	0.00	114.90	38.06	30.79
	화장실 (샤워실)	개수	13	2.00	18.00	5.85	4.43
		면적	13	7.55	84.63	30.98	21.49
	기타	개수	14	0.00	25.00	5.57	6.69
		면적	14	0.00	327.65	118.48	106.68
	전남	대지 면적	2	830.00	1220.00	1025.00	275.77
		연면적	2	167.59	563.76	365.68	280.13
거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7.21	21.73	19.47	3.20
훈련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99.83	99.83	99.83	.
사무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5.75	31.68	23.72	11.26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2	1.00	4.00	2.50	2.12
		면적	2	9.00	59.33	34.17	35.59
조리실 및 식당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24.15	80.63	52.39	39.94
화장실 (샤워실)		개수	2	2.00	6.00	4.00	2.83
		면적	1	10.67	10.67	10.67	.
기타		개수	2	2.00	2.00	2.00	0.00
		면적	1	9.01	9.01	9.01	.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북	대지 면적	11	191.10	3122.00	850.91	851.45	
	연면적	11	158.54	968.66	344.14	260.83	
	거실	개수	11	0.00	13.00	2.91	3.88
		면적	11	0.00	217.71	78.07	67.45
	훈련실	개수	11	0.00	4.00	1.82	1.17
		면적	11	14.33	186.80	75.84	56.78
	사무실	개수	11	1.00	3.00	1.45	0.82
		면적	11	8.64	54.24	21.66	14.13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10	1.00	3.00	1.30	0.67
		면적	10	7.29	91.74	27.81	24.10
	조리실 및 식당	개수	11	1.00	2.00	1.09	0.30
		면적	11	9.57	85.56	30.25	25.17
	화장실 (샤워실)	개수	11	0.00	11.00	2.82	3.09
		면적	11	0.00	101.64	23.70	30.25
	기타	개수	10	0.00	10.00	2.70	2.79
		면적	11	0.00	267.32	78.43	87.22
	경남	대지 면적	4	192.27	3303.00	1947.57	1299.91
		연면적	4	192.27	720.36	424.61	258.18
거실		개수	4	0.00	2.00	1.00	1.15
		면적	4	0.00	215.00	60.55	103.76
훈련실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3	25.20	102.00	62.80	38.42
사무실		개수	4	1.00	1.00	1.00	0.00
		면적	3	19.20	60.00	43.07	21.27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4	0.00	1.00	0.50	0.58
		면적	3	0.00	16.10	5.37	9.30
조리실 및 식당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3	23.52	50.86	41.73	15.77
화장실 (샤워실)		개수	4	0.00	6.00	2.75	2.75
		면적	3	0.00	42.80	24.60	22.11
기타		개수	4	0.00	5.00	2.75	2.22
		면적	3	102.20	472.20	232.92	207.52

<표계속>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제주	대지 면적	2	460.00	1629.00	1044.50	826.61	
	연면적	2	356.03	499.48	427.76	101.43	
	거실	개수	2	0.00	2.00	1.00	1.41
		면적	2	0.00	41.38	20.69	29.26
	훈련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47.60	95.00	71.30	33.52
	사무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6.40	28.43	22.42	8.51
	휴게실 및 컴퓨터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8.38	70.00	39.19	43.57
	조리실 및 식당	개수	2	0.00	1.00	0.50	0.71
		면적	2	0.00	41.48	20.74	29.33
	화장실 (샤워실)	개수	2	1.00	5.00	3.00	2.83
		면적	2	7.60	38.62	23.11	21.93
	기타	개수	2	0.00	4.00	2.00	2.83
		면적	2	167.03	293.59	230.31	89.49

※무응답 시설 제외.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조사됨.

II.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제 1 절 평가결과 개요

1. 평가결과 종합

금번 평가에서 사회복지시설은 100점 만점에 평균 84.59점을 취득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는 평균 88.71(8.87)점,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평균 76.44(15.29)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1.04(16.2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8.85(26.65)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95.09(9.51)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0.60(8.06)점이었다.

각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의 경우, 총점은 평균 86.00점이었고, '시설 및 환경(A)' 평균 89.73(8.97)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77.91(15.58)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2.93(16.5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89.91(26.97)점, '회원의 권리(E)' 96.35(9.63)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2.48(8.25)점으로 나타났다. 입소시설은 총점이 평균 84.63점이었으며, '시설 및 환경(A)' 평균 89.38(8.94)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77.97(15.59)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79.08(15.8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89.67(26.90)점, '회원의 권리(E)' 93.75(9.38)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0.03(8.00)점이었다. 주거시설은 총점이 평균 81.90점이었고, '시설 및 환경(A)' 평균 86.53(8.65)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73.31(14.65)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78.60(15.7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86.16(25.85)점, '회원의 권리(E)' 92.94(9.29)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77.20(7.72)점이었다. 병행시설은 총점이 평균 88.33점이었고, '시설 및 환경(A)' 평균 91.67(9.17)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0.00(16.00)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3.52(16.7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3.41(28.02)점, '회원의 권리(E)' 98.89(9.89)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5.47(8.55)점이었다(<표 II-1-1-1> 참조).

<표II-1-1-1>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163	50.44	98.19	84.59	8.94
	시설 및 환경(A)	163	50.00 (5.00)	100.00 (10.00)	88.71 (8.87)	8.86 (0.89)
	재정 및 조직운영(B)	163	40.00 (8.00)	100.00 (20.00)	76.44 (15.29)	11.50 (2.30)
	인적자원관리(C)	163	44.44 (8.89)	98.61 (19.72)	81.04 (16.21)	11.12 (2.2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63	41.67 (12.50)	100.00 (30.00)	88.85 (26.65)	10.77 (3.23)
	회원의 권리(E)	163	41.67 (4.17)	100.00 (10.00)	95.09 (9.51)	11.06 (1.11)
	지역사회관계(F)	163	37.50 (3.75)	100.00 (10.00)	80.60 (8.06)	11.69 (1.17)
이용시설	총점	73	53.79	98.19	86.00	7.96
	시설 및 환경(A)	73	65.00 (6.50)	100.00 (10.00)	89.73 (8.98)	7.72 (0.77)
	재정 및 조직운영(B)	73	50.00 (10.00)	100.00 (20.00)	77.91 (15.58)	10.04 (2.01)
	인적자원관리(C)	73	44.44 (8.89)	98.61 (19.72)	82.93 (16.59)	10.14 (2.0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73	55.56 (16.67)	100.00 (30.00)	89.91 (26.97)	9.49 (2.85)
	회원의 권리(E)	73	58.33 (5.83)	100.00 (10.00)	96.35 (9.63)	9.00 (0.90)
	지역사회관계(F)	73	37.50 (3.75)	98.00 (9.80)	82.48 (8.25)	11.48 (1.15)
입소시설	총점	16	61.60	95.86	84.63	9.90
	시설 및 환경(A)	16	50.00 (5.00)	100.00 (10.00)	89.38 (8.94)	13.77 (1.38)
	재정 및 조직운영(B)	16	57.50 (11.50)	92.50 (18.50)	77.97 (15.59)	10.89 (2.18)
	인적자원관리(C)	16	55.56 (11.11)	97.22 (19.44)	79.08 (15.82)	12.84 (2.5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6	65.28 (19.58)	100.00 (30.00)	89.67 (26.90)	11.10 (3.33)
	회원의 권리(E)	16	41.67 (4.17)	100.00 (10.00)	93.75 (9.38)	14.75 (1.48)
	지역사회관계(F)	16	61.00 (6.10)	100.00 (10.00)	80.03 (8.00)	10.20 (1.02)

<표계속>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주거시설	총점	59	50.44	93.94	81.90	10.02
	시설 및 환경(A)	59	65.00 (6.50)	100.00 (10.00)	86.53 (8.65)	9.01 (0.90)
	재정 및 조직운영(B)	59	40.00 (8.00)	95.00 (19.00)	73.31 (14.65)	13.39 (2.68)
	인적자원관리(C)	59	47.22 (9.44)	97.22 (19.44)	78.60 (15.72)	12.20 (2.4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9	41.67 (12.50)	100.00 (30.00)	86.16 (25.85)	12.60 (3.78)
	회원의 권리(E)	59	50.00 (5.00)	100.00 (10.00)	92.94 (9.29)	13.11 (1.31)
	지역사회관계(F)	59	50.00 (5.00)	100.00 (10.00)	77.20 (7.72)	12.58 (1.26)
병행시설	총점	15	79.09	94.15	88.33	4.64
	시설 및 환경(A)	15	85.00 (8.50)	100.00 (10.00)	91.67 (9.17)	5.23 (0.52)
	재정 및 조직운영(B)	15	57.50 (11.50)	90.00 (18.00)	80.00 (16.00)	8.45 (1.69)
	인적자원관리(C)	15	72.22 (14.44)	93.06 (18.61)	83.52 (16.70)	7.37 (1.4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5	80.28 (24.08)	99.17 (29.75)	93.41 (28.02)	5.40 (1.62)
	회원의 권리(E)	15	91.67 (9.17)	100.00 (10.00)	98.89 (9.89)	2.93 (0.29)
	지역사회관계(F)	15	77.00 (7.70)	97.00 (9.70)	85.47 (8.55)	6.64 (0.66)

※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총점기준으로 볼 때, 최우수(A) 49개소(30.06%), 우수(B) 79개소(48.47%), 양호(C) 21개소(12.88%), 보통(D) 8개소(4.91%), 미흡(F) 6개소(3.68%)로 분포되었다. 각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을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94개소(57.67%),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51개소(31.29%),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64개소(39.26%),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103개소(63.19%),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145개소(88.96%),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51개소(31.29%)로 나타났다.

총점이 최우수(A)에 속하는 시설이 가장 많은 유형은 병행시설로써 53.33%에 해당하는 8개소가 해당되었다. 반면, 이용시설과 입소시설 및 주거

시설은 각각 30.14%(22개소)와 31.25%(5개소), 23.73%(14개소)가 최우수(A)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주거시설에서는 양호(C) 등급 이하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이 분포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각 영역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은 <표 II-1-1-2>를 통해 제시되었다.

<표 II-1-1-2>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체 (N=163)	총점	49 (30.06)	79 (48.48)	21 (12.88)	8 (4.91)	6 (3.68)
	시설 및 환경(A)	94 (57.67)	56 (34.36)	7 (4.29)	5 (3.07)	1 (0.61)
	재정 및 조직운영(B)	24 (14.72)	51 (31.29)	51 (31.29)	22 (13.50)	15 (9.20)
	인적자원관리(C)	40 (24.54)	64 (39.26)	38 (23.31)	12 (7.36)	9 (5.5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03 (63.19)	36 (22.09)	11 (6.75)	8 (4.91)	5 (3.07)
	회원의 권리(E)	145 (88.96)	4 (2.45)	5 (3.07)	3 (1.84)	6 (3.68)
	지역사회관계(F)	40 (24.54)	51 (31.29)	47 (28.83)	15 (9.20)	10 (6.13)
이용시설 (N=73)	총점	22 (30.14)	40 (54.79)	7 (9.59)	2 (2.74)	2 (2.74)
	시설 및 환경(A)	45 (61.64)	23 (31.51)	4 (5.48)	1 (1.37)	-
	재정 및 조직운영(B)	11 (15.07)	23 (31.51)	27 (36.99)	8 (10.96)	4 (5.48)
	인적자원관리(C)	20 (27.40)	29 (39.73)	20 (27.40)	1 (1.37)	3 (4.1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0 (68.49)	15 (20.55)	3 (4.11)	4 (5.48)	1 (1.37)
	회원의 권리(E)	67 (91.78)	1 (1.37)	2 (2.74)	1 (1.37)	2 (2.74)
	지역사회관계(F)	19 (26.03)	32 (43.84)	14 (19.18)	4 (5.48)	4 (5.48)
입소시설 (N=16)	총점	5 (31.25)	6 (37.50)	3 (18.75)	2 (12.50)	-
	시설 및 환경(A)	13 (81.25)	1 (6.25)	-	1 (6.25)	1 (6.25)
	재정 및 조직운영(B)	3 (18.75)	5 (31.25)	5 (31.25)	1 (6.25)	2 (12.50)
	인적자원관리(C)	3 (18.75)	8 (50.00)	-	3 (18.75)	2 (12.5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0 (62.50)	2 (12.50)	3 (18.75)	1 (6.25)	-
	회원의 권리(E)	14 (87.50)	1 (6.25)	-	-	1 (6.25)
	지역사회관계(F)	3 (18.75)	4 (25.00)	6 (37.50)	3 (18.75)	-

<표계속>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주거시설 (N=59)	총점	14 (23.73)	27 (45.76)	10 (16.95)	4 (6.78)	4 (6.78)
	시설 및 환경(A)	25 (42.37)	28 (47.46)	3 (5.08)	3 (5.08)	-
	재정 및 조직운영(B)	9 (15.25)	13 (22.03)	16 (27.12)	13 (22.03)	8 (13.56)
	인적자원관리(C)	12 (20.34)	21 (35.59)	14 (23.73)	8 (13.56)	4 (6.78)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1 (52.54)	16 (27.12)	5 (8.47)	3 (5.08)	4 (6.78)
	회원의 권리(E)	49 (83.05)	2 (3.39)	3 (5.08)	2 (3.39)	3 (5.08)
	지역사회관계(F)	15 (25.42)	7 (11.86)	23 (38.98)	8 (13.56)	6 (10.17)
병행시설 (N=15)	총점	8 (53.33)	6 (40.00)	1 (6.67)	-	-
	시설 및 환경(A)	11 (73.33)	4 (26.67)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 (6.67)	10 (66.67)	3 (20.00)	-	1 (6.67)
	인적자원관리(C)	5 (33.33)	6 (40.00)	4 (26.67)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2 (80.00)	3 (20.00)	-	-	-
	회원의 권리(E)	15 (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3 (20.00)	8 (53.33)	4 (26.67)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한편, 지역별 총점의 등급분포는 <표 II-1-1-3>을 통해 제시되었다.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최우수(A) 등급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50.00%(2개소)와 50.00%(7개소)의 분포율을 보인 인천과 전북이다. 전남, 제주는 우수(B) 등급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각각 100.00%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양호(C) 등급에는 울산에서 50.00%(1개소)로 가장 많은 분포율을 보였고, 보통(D) 등급에 경남에서 50.00%(2개소)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미흡(F) 등급에는 울산에서 50.00%(1개소)로 가장 높은 분

포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입지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에 차이가 있으며, 지리적 여건이 상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배경 및 지원체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상과 같은 지역별 등급 간 분포는 절대적일 수 없다(<표Ⅱ-1-1-3> 참조).

<표Ⅱ-1-1-3>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지역구분	서울(N=50)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서울(N=50)	15(30.00)	26(52.00)	6(12.00)	2(4.00)	1(2.00)	
부산(N=9)	2(22.22)	6(66.67)	1(11.11)	-	-	
대구(N=13)	6(46.15)	7(53.85)	-	-	-	
인천(N=4)	2(50.00)	1(25.00)	-	-	1(25.00)	
광주(N=7)	3(42.86)	4(57.14)	-	-	-	
대전(N=12)	3(25.00)	5(41.67)	1(8.33)	1(8.33)	2(16.67)	
울산(N=2)	-	-	1(50.00)	-	1(50.00)	
경기(N=19)	5(26.32)	10(52.63)	3(15.79)	1(5.26)	-	
충북(N=6)	2(33.33)	1(16.67)	2(33.33)	-	1(16.67)	
충남(N=8)	-	3(37.50)	3(37.50)	2(25.00)	-	
전북(N=14)	7(50.00)	7(50.00)	-	-	-	
전남(N=2)	-	2(100.00)	-	-	-	
경북(N=11)	4(36.36)	5(45.45)	2(18.18)	-	-	
경남(N=4)	-	1(25.00)	1(25.00)	2(50.00)	-	
제주(N=2)	-	2(10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2.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

1) 지표수 및 배점의 변화

2008년 평가와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이용된 지표의 수 및 배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표의 수는 병행시설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그것은 2008년에는 병행시설을 분리하여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1년도에는 병행시설을 따로 분리하여 평가에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용시설과 입소시설 역시 각각 9개의 지표가 감소되었으며, 주거시설은 4개의 지표가 감소되었다.

금번 평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2008년과 달리 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지표를 개발하지 않고, 최대한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지표를 공통 적용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관리(C) 영역에서 충원율을,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성과를, 지역사회관계(F) 영역에서 외부자원개발 수와 규모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 및 조직운영(B), 인적자원관리(C) 영역의 배점은 각각 15점에서 20점으로 증가시켰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40점에서 30으로 10점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걸친 정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배점 및 지표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표Ⅱ-1-2-1>를 통해 보다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 II-1-2-1> 2008년과 2011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평가영역	배점(%)			시설유형별 지표개수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총점	100	100	-	50	41	-9	50	41	-9	43	39	-4		41	+41
A. 시설 및 환경	10	10	-	6	5	-1	9	5	-4	6	5	-1		5	+5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20	+5		10	-3		10	-2		10	-2		10	+10
C. 인적자원관리	15	20	+5	13	9	-4		9	-3		9	-3		9	+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0	30	-10	12	9	-3	10	9	-1	10	9	-1		9	+9
E. 회원의 권리	10	10	-	4	3	-1	5	3	-2	3	3	-2		3	+3
F. 지역사회관계	10	10	-	5	5	-	6	5	-1	6	3	-3		5	+5

※증감은 2011년 기준으로 2008년과 달라진 수준을 의미함.

2) 평가결과 비교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금번 평가에서는 총점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4.76점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가장 큰 점수의 변화를 보인 영역은(병행시설 제외) 'C. 인적자원관리'영역과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으로써 각각 평균 8.67점과 평균 7.72점이 증가되었다.

각 시설 유형별로 보면, 먼저 이용시설의 경우 총점이 평균 4.00점 상승되었으나, 'A. 시설 및 환경' 영역과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각각 평균 0.24점과 평균 0.13점이 하락되었다. 'D.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평균 5.99점의 증가되었으며, 'F.지역사회관계'는 평균 5.27점이 상승되었다. 다음으로 입소시설에서는 평균 6.43점의 총점이 높아졌으며, 'C. 인적자원관리'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각각 11.15점, 12.99점이 증가되었다. 주거시설의 경우는 총점이 6.66점이 높아졌다. 특히 'F. 지역사회관계'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각각 16.90점과 9.87점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반면 'A. 시설 및 환경'영역은 1.23점이 향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2008년보다 평가결과가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다. (<표Ⅱ-1-2-2> 참조).

<표Ⅱ-1-2-2> 2008년과 2011년 평가결과 비교

평가영역	전체			시설유형별 점수(점)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총점	79.83	84.59	4.76	82.00	86.00	4.00	78.20	84.63	6.43	75.24	81.90	6.66	-	88.33	88.33
A. 시설 및 환경	88.62	88.71	0.09	89.97	89.73	-0.24	88.68	89.38	0.70	85.30	86.53	1.23	-	91.67	91.67
B. 재정 및 조직운영	75.32	76.44	1.12	78.04	77.91	-0.13	75.52	77.97	2.45	68.57	73.31	4.74	-	80.00	80.00
C. 인적자원관리	72.37	81.04	8.67	72.48	82.93	10.45	67.93	79.08	11.15	74.08	78.60	4.52	-	83.52	83.5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1.13	88.85	7.72	83.92	89.91	5.99	76.68	89.67	12.99	76.29	86.16	9.87	-	93.41	93.41
E. 회원의 권리	90.52	95.09	4.57	91.37	96.35	4.98	92.31	93.75	1.44	87.64	92.94	5.30	-	98.89	98.89
F. 지역사회관계	73.09	80.60	7.51	77.21	82.48	5.27	79.12	80.03	0.91	60.30	77.20	16.90	-	85.47	85.47

※증감은 2011년 기준으로 2008년과 달라진 수준을 의미함.

※총점을 제외한 각 평가영역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제 2 절 지역별 평가결과

1. 서울

서울소재 사회복지시설은 총 50개소이며, 총점의 경우 최우수(A)에 15개소(30.00%), 우수(B)에 26개소(52.00%), 양호(C)에 6개소(12.00%), 보통(D)에 2개소(4.00%), 미흡(F)에 1개소(2.00%)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각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을 보면, '시설 및 환경(A)' 및 '프로그램 및 서비스(D)'와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각각 26개소(52.00%), 36개소(72.00%), 46개소(92.00%)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다(<표Ⅱ

-2-1-1> 참조).

<표Ⅱ-2-1-1> 서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서울	총점	15 (30.00)	26 (52.00)	6 (12.00)	2 (4.00)	1 (2.00)
(N=50)	시설 및 환경(A)	26(52.00)	21(42.00)	3(6.00)	-	-
	재정 및 조직운영(B)	8(16.00)	10(20.00)	20(40.00)	9(18.00)	3(6.00)
	인적자원관리(C)	16(32.00)	21(42.00)	9(18.00)	3(6.00)	1(2.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6(72.00)	10(20.00)	1(2.00)	3(6.00)	-
	회원의 권리(E)	46(92.00)	1(2.00)	2(4.00)	-	1(2.00)
	지역사회관계(F)	12(24.00)	10(20.00)	20(40.00)	5(10.00)	3(6.00)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서울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평균 85.81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88.90(8.89)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76.10(15.22)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4.14(16.8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0.93(27.28)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96.67(9.67)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79.24(7.92)점이었다(<표Ⅱ-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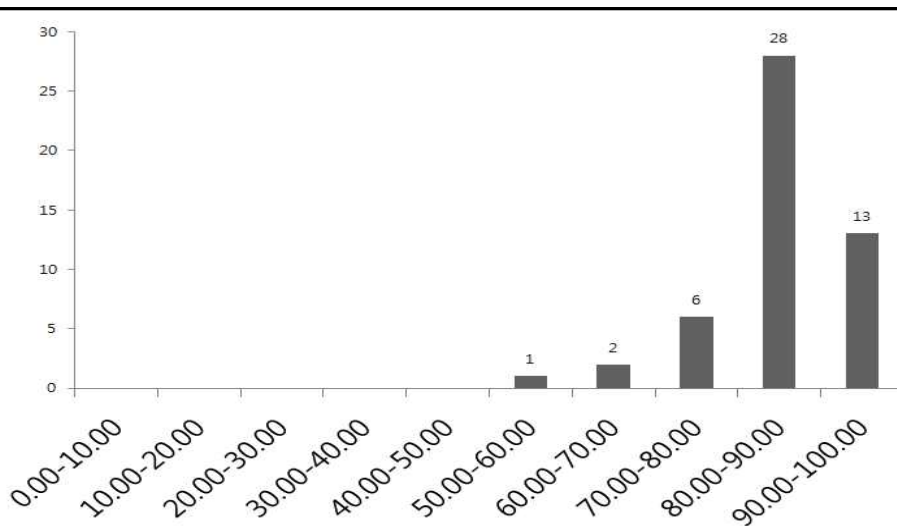
<표Ⅱ-2-1-2> 서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50	59.86	98.19	85.81	7.69
시설 및 환경(A)	50	75.00 (7.50)	100.00 (10.00)	88.90 (8.89)	7.65 (0.76)
재정 및 조직운영(B)	50	55.00 (11.00)	100.00 (20.00)	76.10 (15.22)	11.31 (2.26)
인적자원관리(C)	50	47.22 (9.44)	98.61 (9.72)	84.14 (16.83)	10.35 (2.0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0	63.89 (19.17)	100.00 (30.00)	90.93 (27.28)	8.82 (2.65)
회원의 권리(E)	50	50.00 (5.00)	100.00 (10.00)	96.67 (9.67)	8.91 (0.89)
지역사회관계(F)	50	37.50 (3.75)	100.00 (10.00)	79.24 (7.92)	12.42 (1.24)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의 총점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면 <그림Ⅱ-2-1-1>과 같다. 80.00점 이상~90.00점미만 및 90.00점 이상~100.00점미만의 구간에 각각 가장 많은 28개, 13개 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그림Ⅱ-2-1-1> 서울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2. 부산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총 9개이며, 최우수(A) 2개소(22.22%), 우수(B) 6개소(66.67%), 양호(C) 1개소(11.11%)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4개소(44.44%),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 1개소(11.11%), 우수(B) 2개소(22.22%), 양호(C) 3개소(33.33%), 보통(D) 2개소(22.22%), 미흡(F) 1개소(11.11%), ‘인적자원관리(C)’는 최우수(A) 4개소(44.44%), 우수(B) 3개소(33.33%), 양호(C) 2개소(22.22%),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7개소(77.78%)와 2개소(22.22%),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 우수(B)에 각각 8개소(88.89%), 1개소(11.11%),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 1개소(11.11%), 우수(B) 3개소(33.33%), 양호(C) 4개소(44.44%), 보통(D) 1개소(11.11%)등이 분포하였다(<표 II-2-2-1> 참조).

<표 II-2-2-1> 부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부산	총점	2(22.22)	6(66.67)	1(11.11)	-	--
(N=9)	시설 및 환경(A)	4(44.44)	4(44.44)	1(11.11)	-	-
	재정 및 조직운영(B)	1(11.11)	2(22.22)	3(33.33)	2(22.22)	1(11.11)
	인적자원관리(C)	4(44.44)	3(33.33)	2(22.22)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7(77.78)	2(22.22)	-	-	-
	회원의 권리(E)	8(88.89)	1(11.11)	-	-	-
	지역사회관계(F)	1(11.11)	3(33.33)	4(44.44)	1(11.11)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은 평균 86.40점이었다. 각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 평균 87.78(8.78)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75.28(15.06)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6.11(17.2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2.38(27.71)점, ‘회원의 권리(E)’ 평균 96.30(9.63)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0.00(8.00)점으로 나타났다(<표 II-2-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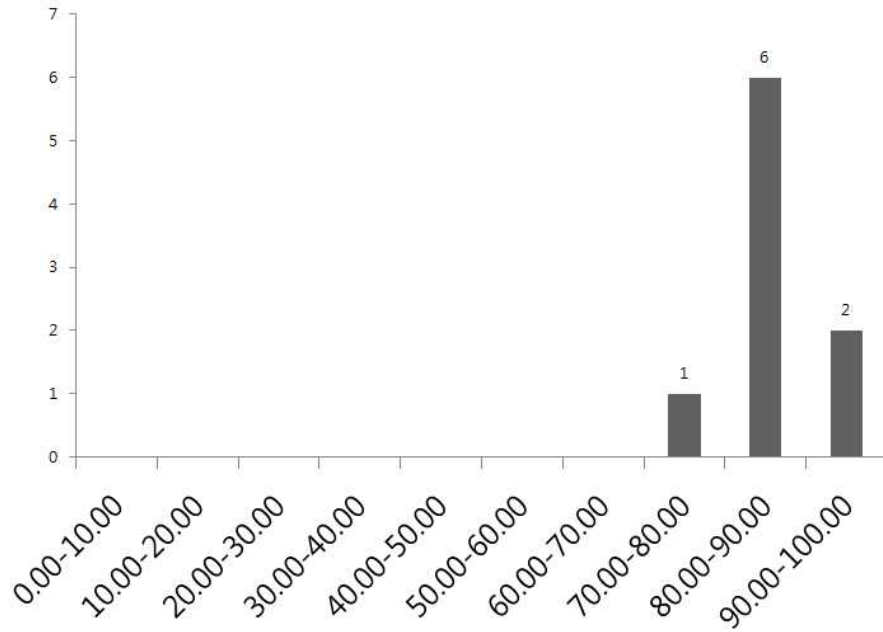
<표 II-2-2-2> 부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9	78.72	94.15	86.40	5.12
시설 및 환경(A)	9	75.00 (7.50)	100.00 (10.00)	87.78 (8.78)	8.33 (0.83)
재정 및 조직운영(B)	9	57.50 (11.50)	90.00 (18.00)	75.28 (15.06)	10.11 (2.02)
인적자원관리(C)	9	72.22 (14.44)	95.83 (19.17)	86.11 (17.22)	7.58 (1.5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9	86.11 (25.83)	97.22 (29.17)	92.38 (27.71)	4.01 (1.20)
회원의 권리(E)	9	83.33 (8.33)	100.00 (10.00)	96.30 (9.63)	6.05 (0.61)
지역사회관계(F)	9	64.50 (6.45)	95.00 (9.50)	80.00 (8.00)	10.22 (1.02)

※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의 총점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면 <그림 II-2-2-1>과 같다.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가장 많은 6개 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I-2-2-1> 부산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3. 대구

대구에는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고 있었다.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6개소(46.15%)와 7개소(53.85%)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각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는 최우수(A)에 8개소(61.54%),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우수(B)에 8개소(61.54%),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7개소(53.85%), '프로그램 및 서비스(D)'와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각각 12개소(92.31%), 13개소(100.00%), '지역사회관계(F)'에서는 최우수(A)에 8개소(61.54%)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으로 나타났다(<표 II-2-3-1> 참조).

<표 II-2-3-1> 대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대구 (N=13)	총점	6(46.15)	7(53.85)	-	-	-
	시설 및 환경(A)	8(61.54)	4(30.77)	1(7.69)	-	-
	재정 및 조직운영(B)	1(7.69)	8(61.54)	4(30.77)	-	-
	인적자원관리(C)	5(38.46)	7(53.85)	1(7.69)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2(92.31)	-	1(7.69)	-	-
	회원의 권리(E)	13(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8(61.54)	4(30.77)	1(7.69)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평균은 89.61점이며,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88.85(8.88)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80.38(16.08)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7.29(17.46)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3.87(28.16)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100.00(10.00)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90.27(9.03)점으로 나타났다(<표 II-2-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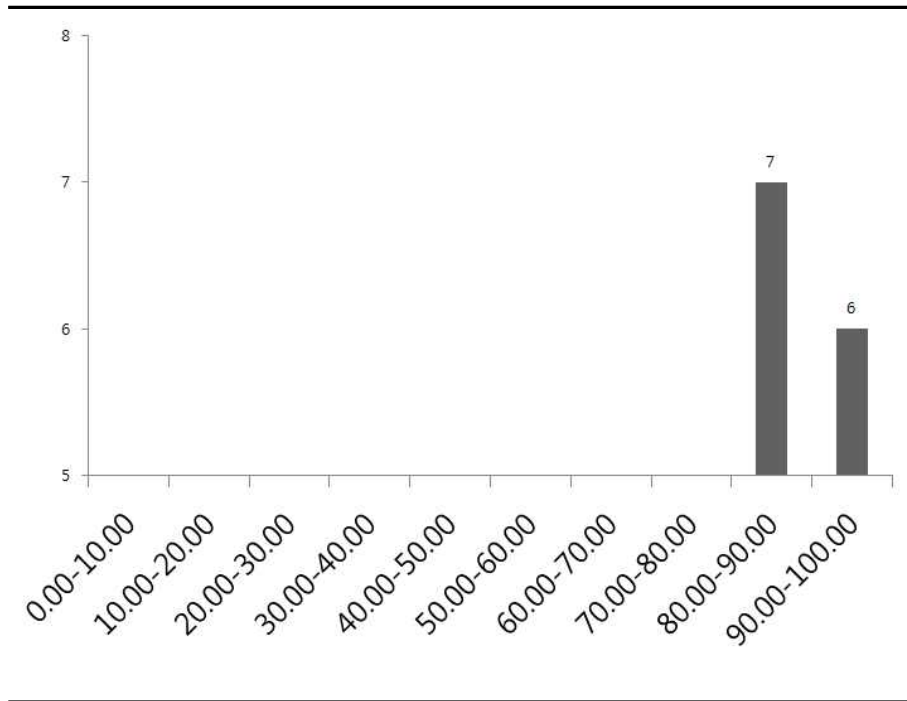
<표 II-2-3-2> 대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3	84.00	93.94	89.61	3.22
시설 및 환경(A)	13	75.00 (7.50)	100.00 (10.00)	88.85 (8.88)	6.82 (0.68)
재정 및 조직운영(B)	13	75.00 (15.00)	90.00 (18.00)	80.38 (16.08)	4.31 (0.86)
인적자원관리(C)	13	79.17 (15.83)	97.22 (19.44)	87.29 (17.46)	5.89 (1.18)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3	77.78 (23.33)	100.00 (30.00)	93.87 (28.16)	5.73 (1.72)
회원의 권리(E)	13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
지역사회관계(F)	13	79.50 (7.95)	95.00 (9.50)	90.27 (9.03)	5.14 (0.51)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대구 사회복지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과 90.00점 이상~100.00점 미만 구간에 각각 7개와 6개 시설이 분포되었다(<그림Ⅱ-2-3-1> 참조).



<그림Ⅱ-2-3-1> 대구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4. 인천

인천 소재 4개의 사회복지시설은 최우수(A)에 2개소(50.00%), 양호(C), 미흡(F) 등급에 각각 1개소(25.00%)씩 분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회원의 권리(E)에서 최우수 3개소(75.00%)를 보였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B)', 인적자원관리(C), 지역사회관계(F)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미흡(F)에 각각 1개소(25.00%)의 시설이 분포되었다. 각 영역별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등급분포는 <표Ⅱ-2-4-1>을 통해 제시되었다.

<표 II-2-4-1> 인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인천 (N=4)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총점	2(50.00)	-	1(25.00)	-	1(25.00)
	시설 및 환경(A)	2(50.00)	1(25.00)	1(25.00)	-	-
	재정 및 조직운영(B)	-	2(50.00)	1(25.00)	-	1(25.00)
	인적자원관리(C)	1(25.00)	1(25.00)	1(25.00)	-	1(25.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25.00)	1(25.00)	1(25.00)	1(25.00)	-
	회원의 권리(E)	3(75.00)	-	-	1(25.00)	-
	지역사회관계(F)	1(25.00)	1(25.00)	1(25.00)	-	1(25.00)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인천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평균 78.98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83.75(8.38)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71.25(14.25)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5.00(15.0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1.94(24.58)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89.58(8.96)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78.17(7.82)점으로 나타났다(<표 II-2-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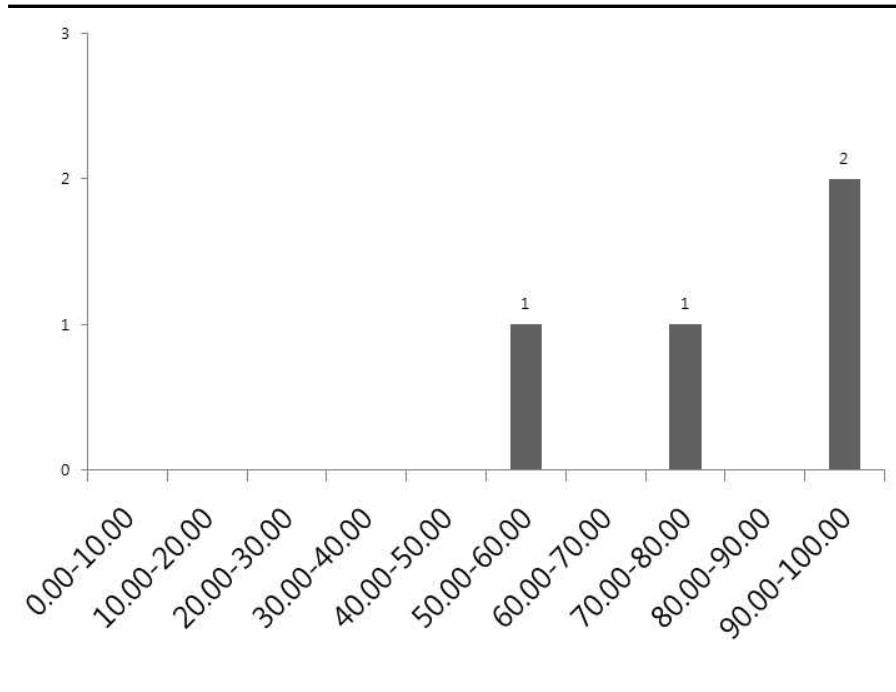
<표 II-2-4-2> 인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55.44	90.31	78.98	16.43
시설 및 환경(A)	4	70.00 (7.00)	90.00 (9.00)	83.75 (8.38)	9.46 (0.95)
재정 및 조직운영(B)	4	40.00 (8.00)	85.00 (17.00)	71.25 (14.25)	21.07 (4.21)
인적자원관리(C)	4	47.22 (9.44)	93.06 (18.61)	75.00 (15.00)	19.61 (3.9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63.89 (19.17)	97.22 (29.17)	81.94 (24.58)	14.43 (4.33)
회원의 권리(E)	4	66.67 (6.67)	100.00 (10.00)	89.58 (8.96)	15.77 (1.58)
지역사회관계(F)	4	51.67 (5.17)	97.50 (9.75)	78.17 (7.82)	20.18 (2.0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한편, 인천 소재 4개의 사회복지시설은 50.00점 이상~60.00점미만, 70.00점 이상~80.00점 미만에 각각 1개소씩, 90.00점 이상~100.00점미만 구간에 2개소가 분포되었다(<그림Ⅱ-2-4-1> 참조).



<그림Ⅱ-2-4-1> 인천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5. 광주

광주지역에는 최우수(A)에 3개소(42.86%), 우수(B)에 4개소(57.14%)로 총 7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였다. ‘시설 및 환경(A)’에서는 최우수(A)에 6개소(85.71%),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최우수(A)에 3개소(42.86%),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3개소(42.86%), ‘프로그램 및 서비스(D)’에서는 최우수(A)에 5개소(71.43%),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7개소(100.00%), ‘지역사회관계(F)’는 양호(C) 4개소(57.14%)로 각각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으로 나타났다(<표Ⅱ-2-5-1> 참조).

<표 II-2-5-1> 광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광주 (N=7)	총점	3(42.86)	4(57.14)	-	-	-
	시설 및 환경(A)	6(85.71)	1(14.29)	-	-	-
	재정 및 조직운영(B)	3(42.86)	2(28.57)	2(28.57)	-	-
	인적자원관리(C)	1(14.29)	3(42.86)	3(42.86)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71.43)	2(28.57)	-	-	-
	회원의 권리(E)	7(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14.29)	2(28.57)	4(57.14)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광주는 사회복지시설의 총점 평균이 87.99점이었으며, 각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 평균 92.14(9.21)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2.86(16.57)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1.75(16.35)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2.42(27.73)점, ‘회원의 권리(E)’ 평균 100.00(10.00)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1.29(8.13)점이었다(<표 II-2-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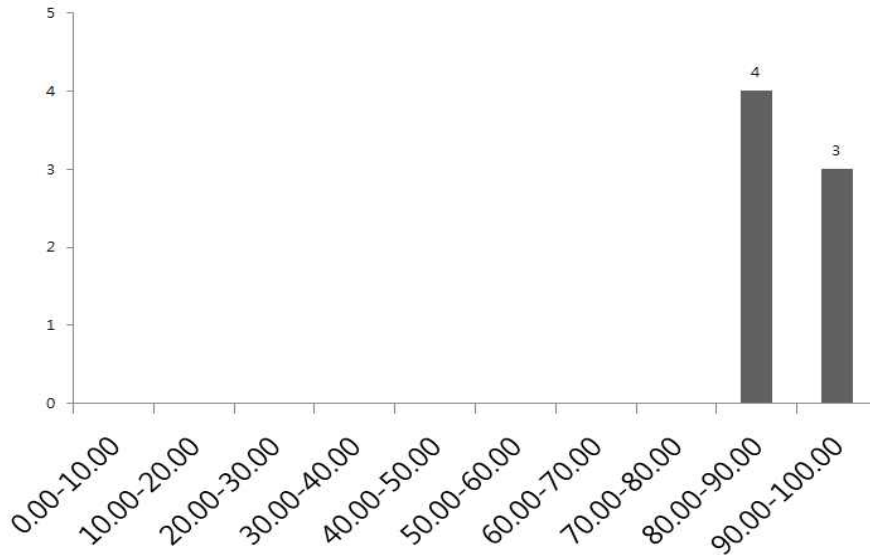
<표 II-2-5-2> 광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7	81.41	92.56	87.99	4.54
시설 및 환경(A)	7	85.00 (8.50)	100.00 (10.00)	92.14 (9.21)	4.88 (0.49)
재정 및 조직운영(B)	7	70.00 (14.00)	90.00 (18.00)	82.86 (16.57)	8.09 (1.62)
인적자원관리(C)	7	75.00 (15.00)	90.28 (18.06)	81.75 (16.35)	5.92 (1.18)
프로그램 및 서비스(D)	7	83.33 (25.00)	100.00 (30.00)	92.42 (27.73)	6.40 (1.92)
회원의 권리(E)	7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
지역사회관계(F)	7	75.00 (7.50)	94.50 (9.45)	81.29 (8.13)	6.99 (0.70)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히스토그램으로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총점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80.00점 이상~90.00점미만 및 90.00이상~100.00미만 구간에 각각 4개소, 3개소의 시설이 분포되어 있었다(<그림 II-2-5-1> 참조).



<그림 II-2-5-1> 광주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6. 대전

대전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총 12개소이며, 최우수(A)에 3개소(25.00%), 우수(B)에 5개소(41.67%), 양호(C)와 보통(D)에 각각 1개소(8.33%), 미흡(F)에 2개소(16.67%)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었다. 각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된 구간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우수(B)에 7개소(58.33%),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양호(C)에 4개소(33.33%),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5개소(41.67%),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7개소(58.33%),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10개소(83.33%),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4개소(33.33%)로 나타났다(<표 II-2-6-1> 참조).

<표 II-2-6-1> 대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대전	총점	3(25.00)	5(41.67)	1(8.33)	1(8.33)	2(16.67)
(N=12)	시설 및 환경(A)	3(25.00)	7(58.33)	-	2(16.67)	-
	재정 및 조직운영(B)	3(25.00)	2(16.67)	4(33.33)	3(25.00)	-
	인적자원관리(C)	-	5(41.67)	3(25.00)	3(25.00)	1(8.3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7(58.33)	2(16.67)	-	1(8.33)	2(16.67)
	회원의 권리(E)	10(83.33)	-	-	-	2(16.67)
	지역사회관계(F)	3(25.00)	4(33.33)	1(8.33)	3(25.00)	1(8.33)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대전 소재 사회복지시설들의 총점은 평균 80.21점이었으며,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84.17(8.42)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75.83(15.17)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3.96(14.7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3.56(25.07)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88.89(8.89)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78.81(7.88)점이었었다(<표 II-2-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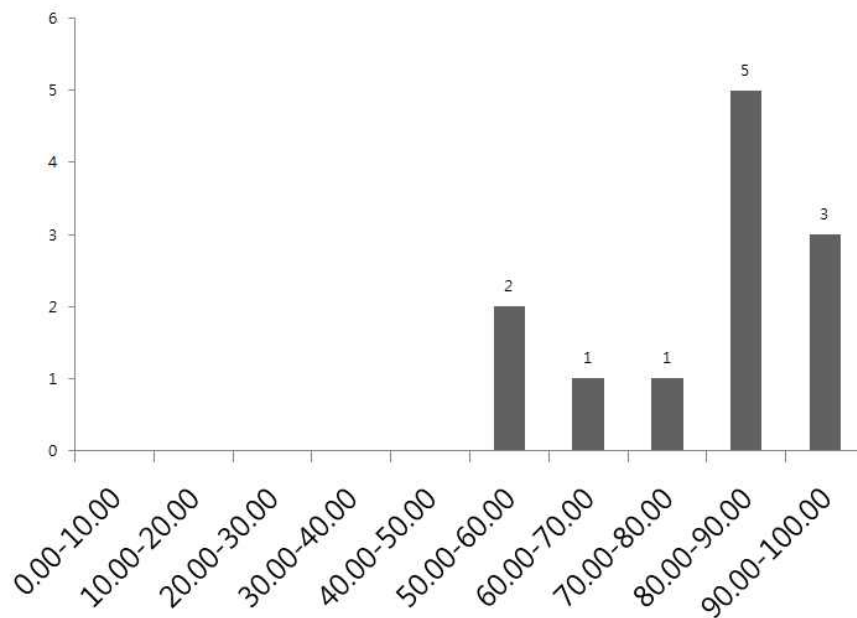
<표 II-2-6-2> 대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2	50.44	95.86	80.21	14.02
시설 및 환경(A)	12	65.00 (6.50)	100.00 (10.00)	84.17 (8.42)	11.25 (1.12)
재정 및 조직운영(B)	12	55.00 (11.00)	95.00 (19.00)	75.83 (15.17)	14.03 (2.81)
인적자원관리(C)	12	47.22 (9.44)	88.89 (17.78)	73.96 (14.79)	12.25 (2.45)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2	41.67 (12.50)	98.61 (29.58)	83.56 (25.07)	18.92 (5.68)
회원의 권리(E)	12	50.00 (5.00)	100.00 (10.00)	88.89 (8.89)	18.58 (1.86)
지역사회관계(F)	12	55.00 (5.50)	100.00 (10.00)	78.81 (7.88)	14.05 (1.41)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총점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면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5개 시설이 분포하였고, 90.00점 이상~100.00점미만 구간에 3개 시설이 분포되어 있다(<그림 II-2-6-1> 참조).



<그림 II-2-6-1> 대전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7. 울산

울산에는 2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였다. 총점을 포함하여 전 영역에서 양호(C)와 미흡(F)에 각각 1개소(50.00%)가 해당되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최우수(A)와 우수(B) 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었다. (<표 II-2-7-1> 참조).

<표Ⅱ-2-7-1> 울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울산 (N=2)	총점	-	-	1(50.00)	-	1(50.00)
	시설 및 환경(A)	-	-	1(50.00)	1(50.00)	-
	재정 및 조직운영(B)	-	-	1(50.00)	-	1(50.00)
	인적자원관리(C)	-	-	1(50.00)	-	1(5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	-	-	1(50.00)	1(50.00)
	회원의 권리(E)	-	-	-	1(50.00)	1(50.00)
	지역사회관계(F)	-	-	1(50.00)	-	1(50.00)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울산 소재 사회복지시설들의 총점은 평균 62.53점이었으며,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70.00(7.00)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65.00(13.00)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59.72(11.9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61.11(18.33)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62.50(6.25)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60.00(6.00)점이었다(<표Ⅱ-2-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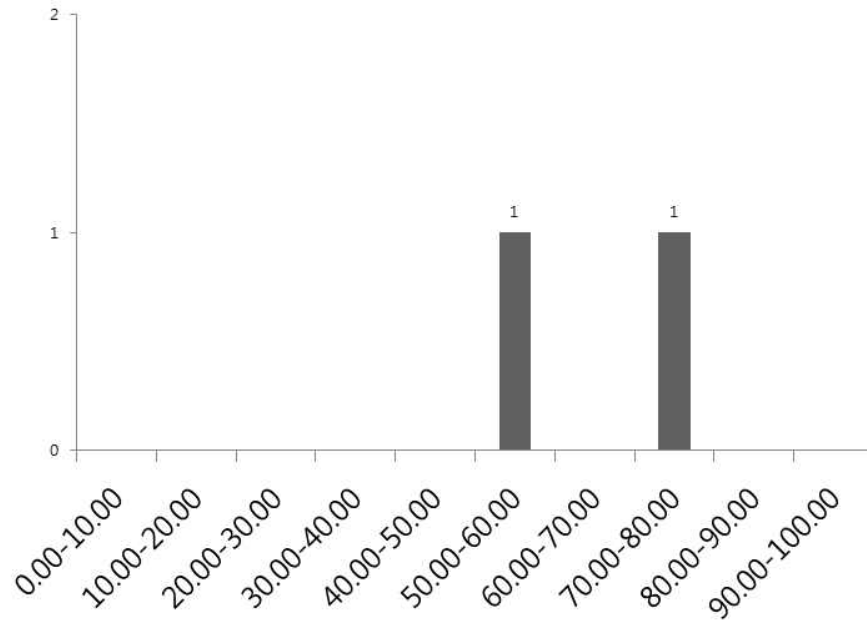
<표Ⅱ-2-7-2> 울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2	53.79	71.27	62.53	12.36
시설 및 환경(A)	2	65.00 (6.50)	75.00 (7.50)	70.00 (7.00)	7.07 (0.71)
재정 및 조직운영(B)	2	55.00 (11.00)	75.00 (15.00)	65.00 (13.00)	14.14 (2.83)
인적자원관리(C)	2	44.44 (8.89)	75.00 (15.00)	59.72 (11.94)	21.61 (4.3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	55.56 (16.67)	66.67 (20.00)	61.11 (18.33)	7.86 (2.36)
회원의 권리(E)	2	58.33 (5.83)	66.67 (6.67)	62.50 (6.25)	5.89 (0.59)
지역사회관계(F)	2	49.00 (4.90)	71.00 (7.10)	60.00 (6.00)	15.56 (1.56)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울산의 사회복지시설은 50.00점 이상~60점미만, 70.00점 이상~80.00점미만 구간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하였다(<그림 II-2-7-1> 참조).



<그림 II-2-7-1> 울산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8. 경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총점은 최우수(A)에 5개소(26.32%), 우수(B)에 10개소(52.63%), 양호(C)에 3개소(15.79%), 보통(D)에 1개소(5.26%)가 분포하였다. 영역별로 가장 많은 등급을 받은 결과를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 12개소(63.16%),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 8개소(42.11%),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 9개소(47.37%),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와 우수(B)가 각각 8개소(42.11%),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 17개소(89.47%), '지역사회관계(F)'는 양호(C) 7개소(36.84%)의 분포를 보였다(<표 II-2-8-1> 참조).

<표 II-2-8-1> 경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기	총점	5(26.32)	10(52.63)	3(15.79)	1(5.26)	-
(N=19)	시설 및 환경(A)	12(63.16)	6(31.58)	-	1(5.26)	-
	재정 및 조직운영(B)	8(42.11)	3(15.79)	5(26.32)	3(15.79)	-
	인적자원관리(C)	3(15.79)	9(47.37)	6(31.58)	-	1(5.26)
	프로그램 및 서비스(D)	8(42.11)	8(42.11)	2(10.53)	1(5.26)	-
	회원의 권리(E)	17(89.47)	1(5.26)	1(5.26)	-	-
	지역사회관계(F)	3(15.79)	6(31.58)	7(36.84)	3(15.79)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은 총점의 경우 평균 85.52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및 환경(A)' 평균 89.21(8.92)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1.84(16.37)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0.56(16.1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88.45(26.54)점, '회원의 권리(E)' 평균 96.49(9.65)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79.32(7.93)점이었다 (<표 II-2-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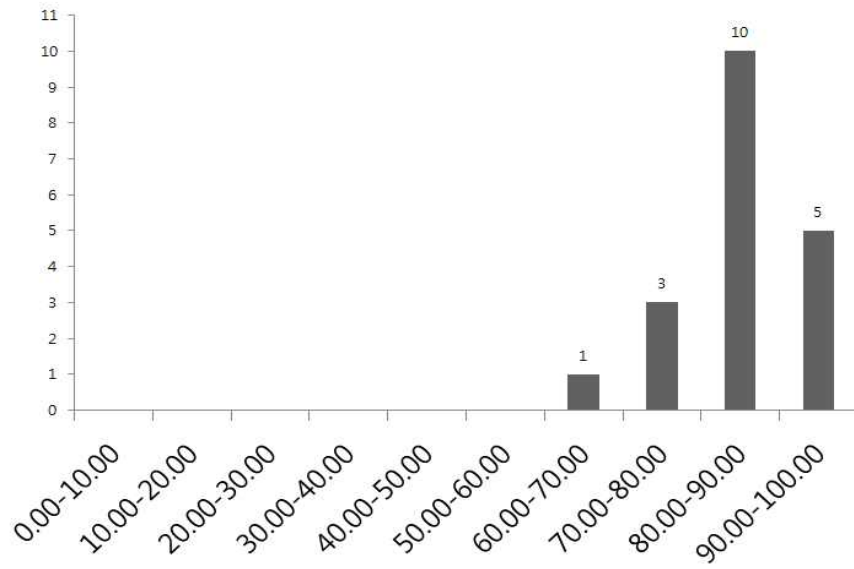
<표 II-2-8-2> 경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9	68.44	94.62	85.52	7.36
시설 및 환경(A)	19	65.00 (6.50)	100.00 (10.00)	89.21 (8.92)	8.54 (0.85)
재정 및 조직운영(B)	19	60.00 (12.00)	95.00 (19.00)	81.84 (16.37)	11.36 (2.27)
인적자원관리(C)	19	47.22 (9.44)	94.44 (18.89)	80.56 (16.11)	10.38 (2.08)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9	63.89 (19.17)	100.00 (30.00)	88.45 (26.54)	9.59 (2.88)
회원의 권리(E)	19	75.00 (7.50)	100.00 (10.00)	96.49 (9.65)	6.98 (0.70)
지역사회관계(F)	19	63.50 (6.35)	94.00 (9.40)	79.32 (7.93)	8.68 (0.87)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경기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 및 90.00점 이상~100.00점미만구간이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으로써 각각 10개소, 5개소가 분포하였다(<그림 II-2-8-1> 참조).



<그림 II-2-8-1> 경기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9. 중복

충북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총 6개 시설로 총점기준으로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2개소(33.33%)와 1개소(16.67%), 양호(C)와 미흡(F)에 각각 2개소(33.33%)와 1개소(16.67%)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3개소(50.00%),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에 3개소(50.00%), '인적자원관리(C)'는 보통(D)에 2개소(33.33%),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3개소(50.00%),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4개소(66.67%),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2개소(33.33%)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 II-2-9-1> 참조).

<표 II-2-9-1> 충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충북	총점	2(33.33)	1(16.67)	2(33.33)	-	1(16.67)
(N=6)	시설 및 환경(A)	3(50.00)	3(50.00)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3(50.00)	1(16.67)	1(16.67)	1(16.67)
	인적자원관리(C)	1(16.67)	1(16.67)	1(16.67)	2(33.33)	1(16.6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50.00)	-	2(33.33)	-	1(16.67)
	회원의 권리(E)	4(66.67)	-	1(16.67)	1(16.67)	-
	지역사회관계(F)	2(33.33)	2(33.33)	1(16.67)	-	1(16.67)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충북 소재 시설 총점은 평균 79.64점이었다.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시설 및 환경(A)' 89.17(8.92)점, '재정 및 조직운영(B)' 72.08(14.42)점, '인적자원관리(C)' 73.61(14.7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82.18(24.65)점, '회원의 권리(E)' 90.28(9.03)점, '지역사회관계(F)' 79.03(7.90)점으로 나타났다(<표 II-2-9-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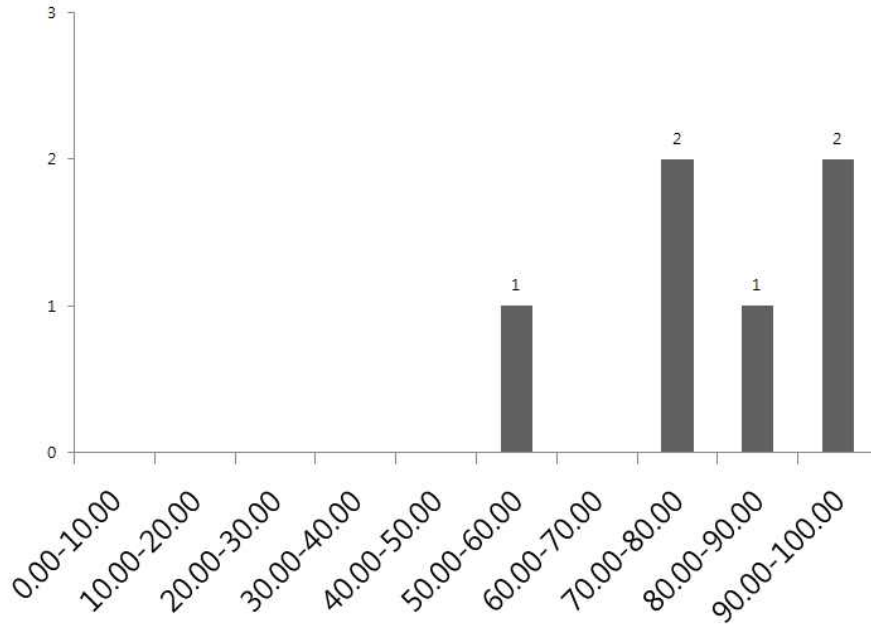
<표 II-2-9-2> 충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6	59.78	90.49	79.64	12.30
시설 및 환경(A)	6	80.00 (8.00)	100.00 (10.00)	89.17 (8.92)	8.61 (0.86)
재정 및 조직운영(B)	6	52.50 (10.50)	82.50 (16.50)	72.08 (14.42)	11.98 (2.40)
인적자원관리(C)	6	55.56 (11.11)	91.67 (18.33)	73.61 (14.72)	13.03 (2.6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6	58.33 (17.50)	100.00 (30.00)	82.18 (24.65)	15.17 (4.55)
회원의 권리(E)	6	66.67 (6.67)	100.00 (10.00)	90.28 (9.03)	15.29 (1.53)
지역사회관계(F)	6	51.67 (5.17)	90.00 (9.00)	79.03 (7.90)	15.33 (1.53)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충북 사회복지시설은 70.00점 이상~80.00점미만, 90.00점 이상~100.00점미만 구간에 각각 2개소씩 분포되어 있다.<그림Ⅱ-2-9-1> 참조).



<그림Ⅱ-2-9-1> 충북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10. 충남

충남의 사회복지시설은 우수(B), 양호(C)에 각각 3개소(37.50%), 보통(D)에 2개소(25.00%)의 분포를 보였다. ‘시설 및 환경(A)’ 영역은 양호(C)에 3개소(60.00%)가 분포하였고,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은 보통(D)에 3개소(37.50%),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우수(B)에 3개소(37.50%)가 분포되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최우수(A)에 3개소(37.50%)가 분포하였고, ‘회원의 권리(E)’ 영역은 최우수(A)에 6개소(75.00%),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우수(B)에 3개소(37.50%)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였다(<표Ⅱ-2-10-1> 참조).

<표 II-2-10-1> 충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충남	총점	-	3(37.50)	3(37.50)	2(25.00)	-
(N=8)	시설 및 환경(A)	1(20.00)	1(20.00)	3(60.00)	-	-
	재정 및 조직운영(B)	-	2(25.00)	2(25.00)	3(37.50)	1(12.50)
	인적자원관리(C)	-	3(37.50)	2(25.00)	2(25.00)	1(12.5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37.50)	2(25.00)	1(12.50)	1(12.50)	1(12.50)
	회원의 권리(E)	6(75.00)	1(12.50)	1(12.50)	-	-
	지역사회관계(F)	-	3(37.50)	1(12.50)	2(25.00)	2(25.00)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충남 사회복지시설 총점은 평균 77.48점이었으며, 영역별 평균 점수는 '시설 및 환경' 83.13(8.31)점, '재정 및 조직운영(B)' 68.13(13.63)점, '인적자원관리(C)' 72.92(14.58)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82.12(24.64)점, '회원의 권리(E)' 90.62(9.06)점, '지역사회관계(F)' 72.62(7.26)점으로 나타났다(<표 II-2-1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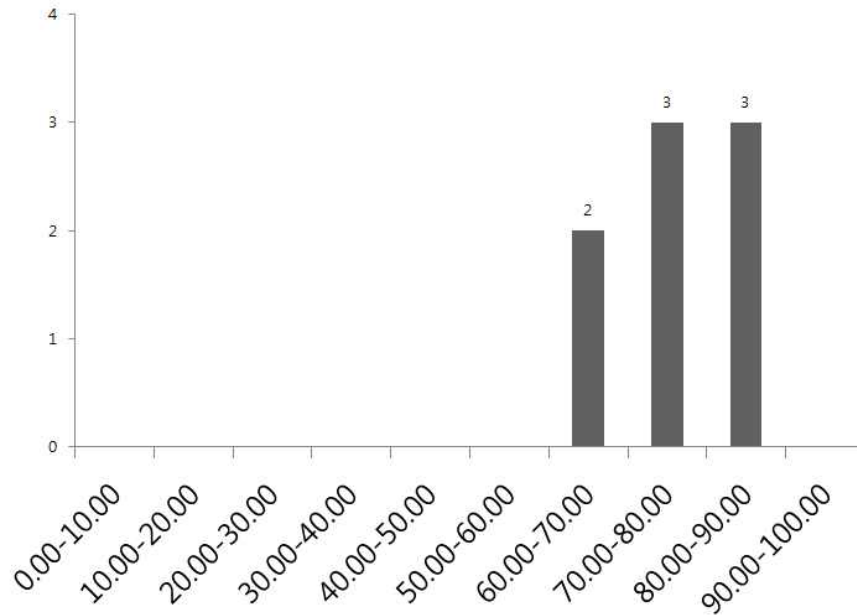
<표 II-2-10-2> 충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8	62.00	89.44	77.48	9.35
시설 및 환경(A)	8	50.00 (5.00)	100.00 (10.00)	83.13 (8.31)	15.57 (1.56)
재정 및 조직운영(B)	8	45.00 (9.00)	85.00 (17.00)	68.13 (13.63)	12.59 (2.52)
인적자원관리(C)	8	55.56 (11.11)	81.94 (16.39)	72.92 (14.58)	9.99 (2.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8	58.33 (17.50)	97.22 (29.17)	82.12 (24.64)	14.50 (4.35)
회원의 권리(E)	8	75.00 (7.50)	100.00 (10.00)	90.62 (9.06)	8.26 (0.83)
지역사회관계(F)	8	58.33 (5.83)	86.50 (8.65)	72.62 (7.26)	12.42 (1.24)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충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은 70.00점 이상~80.00점미만 및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각각 3개소의 시설이 분포하였다(<그림 II-2-10-1> 참조).



<그림 II-2-10-1> 충남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11. 전북

전북은 총점등급 최우수(A), 우수(B)에 각각 7개소(50.00%)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등급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12개소(85.71%),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에 8개소(57.14%), '인적자원관리(C)'는 최우수(A)에 6개소(42.86%),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10개소(71.43%),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14개소(100.00%),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8개소(57.14%)로 나타났다(<표 II-2-11-1> 참조).

<표Ⅱ-2-11-1> 전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북 (N=14)	총점	7(50.00)	7(50.00)	-	-	-
	시설 및 환경(A)	12(85.71)	2(14.29)	-	-	-
	재정 및 조직운영(B)	8(57.14)	4(28.57)	1(7.14)	1(7.14)	-
	인적자원관리(C)	6(42.86)	5(35.71)	3(21.43)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0(71.43)	3(21.43)	1(7.14)	-	-
	회원의 권리(E)	14(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3(21.43)	8(57.14)	3(21.43)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전북 소재 사회복지시설 총점은 평균 87.82점이었으며, 영역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은 93.93(9.39)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78.04(15.61)점, ‘인적자원관리(C)’는 85.22(17.0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91.01(27.30)점, ‘회원의 권리(E)’는 100.00(10.00)점, ‘지역사회관계(F)’는 84.68(8.47)점으로 나타났다(<표Ⅱ-2-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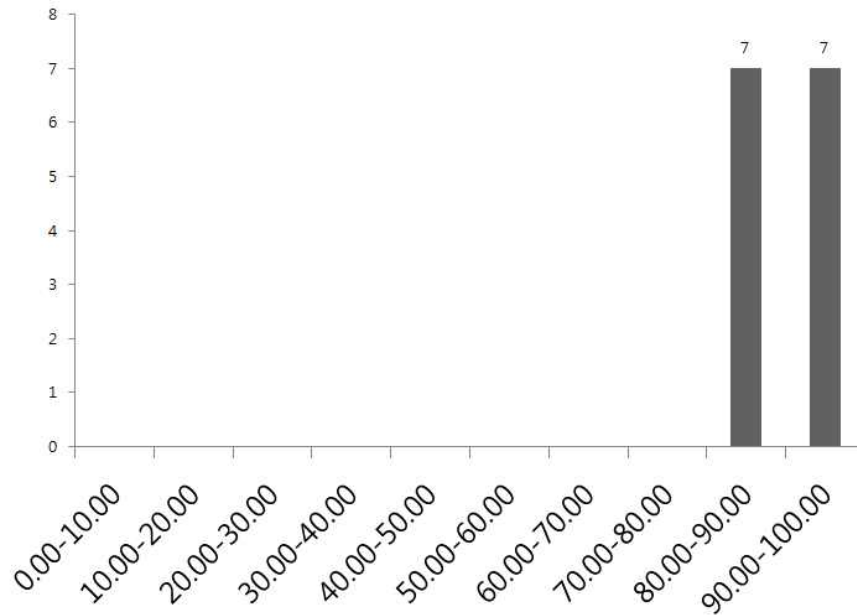
<표Ⅱ-2-11-2> 전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4	80.44	94.01	87.82	4.44
시설 및 환경(A)	14	85.00 (8.50)	100.00 (10.00)	93.93 (9.39)	5.61 (0.56)
재정 및 조직운영(B)	14	50.00 (10.00)	87.50 (17.50)	78.04 (15.61)	10.39 (2.08)
인적자원관리(C)	14	72.22 (14.44)	93.06 (18.61)	85.22 (17.04)	6.95 (1.39)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4	75.00 (22.50)	99.17 (29.75)	91.01 (27.30)	7.21 (2.16)
회원의 권리(E)	14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
지역사회관계(F)	14	75.00 (7.50)	97.00 (9.70)	84.68 (8.47)	6.85 (0.69)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전북 사회복지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과 90.00점 이상~100.00점 미만에 각각 7개소가 분포하였다(<그림 II-2-11-1> 참조).



<그림 II-2-11-1> 전북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12. 전남

전남의 사회복지시설 2개소는 총점이 우수(B) 등급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 별로는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에, '인적자원관리(C)'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 및 우수(B)에 각각 1개소씩(50.00%),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2개소(100.00%)가,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 및 우수(B)에 각각 1개소(50.00%)씩 해당되었다(<표 II-2-12-1> 참조).

<표 II-2-12-1> 전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전북 (N=2)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총점	-	2(100.00)	-	-	-
	시설 및 환경(A)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2(100.00)	-	-	-
	인적자원관리(C)	1(50.00)	1(5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50.00)	1(50.00)	-	-	-
	회원의 권리(E)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50.00)	1(5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전남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총 2개소로 총점은 평균 89.01점이었으며, 영역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은 95.00(9.50)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82.50(16.50)점, ‘인적자원관리(C)’는 86.11(17.2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91.81(27.54)점, ‘회원의 권리(E)’는 95.83(9.58)점, ‘지역사회관계(F)’는 86.58(8.66)점으로 나타났다(<표 II-2-1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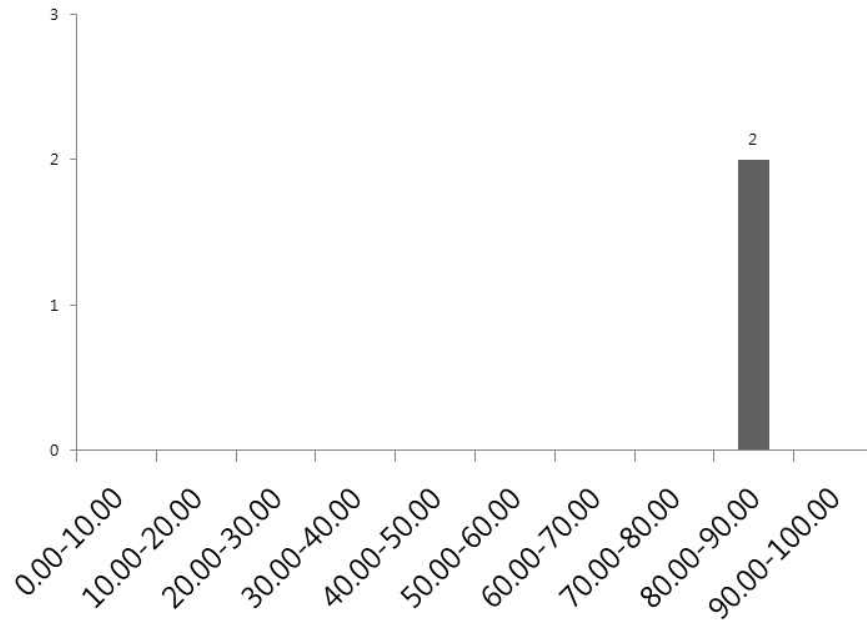
<표 II-2-12-2> 전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2	88.68	89.33	89.01	0.46
시설 및 환경(A)	2	90.00 (9.00)	100.00 (10.00)	95.00 (9.50)	7.07 (0.71)
재정 및 조직운영(B)	2	80.00 (16.00)	85.00 (17.00)	82.50 (16.50)	3.54 (0.71)
인적자원관리(C)	2	80.56 (16.11)	91.67 (18.33)	86.11 (17.22)	7.86 (1.5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	88.89 (26.67)	94.72 (28.42)	91.81 (27.54)	4.12 (1.24)
회원의 권리(E)	2	91.67 (9.17)	100.00 (10.00)	95.83 (9.58)	5.89 (0.59)
지역사회관계(F)	2	81.50 (8.15)	91.67 (9.17)	86.58 (8.66)	7.19 (0.7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또한, 히스토그램으로 볼 때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2개소가 분포하고 있었다(<그림 II-2-12-1> 참조).



<그림 II-2-12-1> 전남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13. 경북

경북지역 11개 사회복지시설은 최우수(A), 우수(B), 양호(C) 등급에 각각 4개소(36.36%), 5개소(45.45%), 2개소(18.18%)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등급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10개소(90.91%),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우수(B)에 6개소(54.55%),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4개소(36.36%),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8개소(72.73%),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11개소(100.00%),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5개소(45.45%)로 나타났다(<표 II-2-13-1> 참조).

<표Ⅱ-2-13-1> 경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북	총점	4(36.36)	5(45.45)	2(18.18)		
(N=11)	시설 및 환경(A)	10(90.91)	1(9.09)			
	재정 및 조직운영(B)		6(54.55)	3(27.27)	1(9.09)	1(9.09)
	인적자원관리(C)	2(18.18)	4(36.36)	4(36.36)	1(9.09)	
	프로그램 및 서비스(D)	8(72.73)	3(27.27)			
	회원의 권리(E)	11(100.00)				
	지역사회관계(F)	5(45.45)	5(45.45)	1(9.09)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경북 사회복지시설은 총점이 평균 86.39점이었으며, 각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92.27(9.23)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77.05(15.41)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9.80(15.96)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0.51(27.15)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97.73(9.77)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8.65(8.87)점이었다(<표Ⅱ-2-1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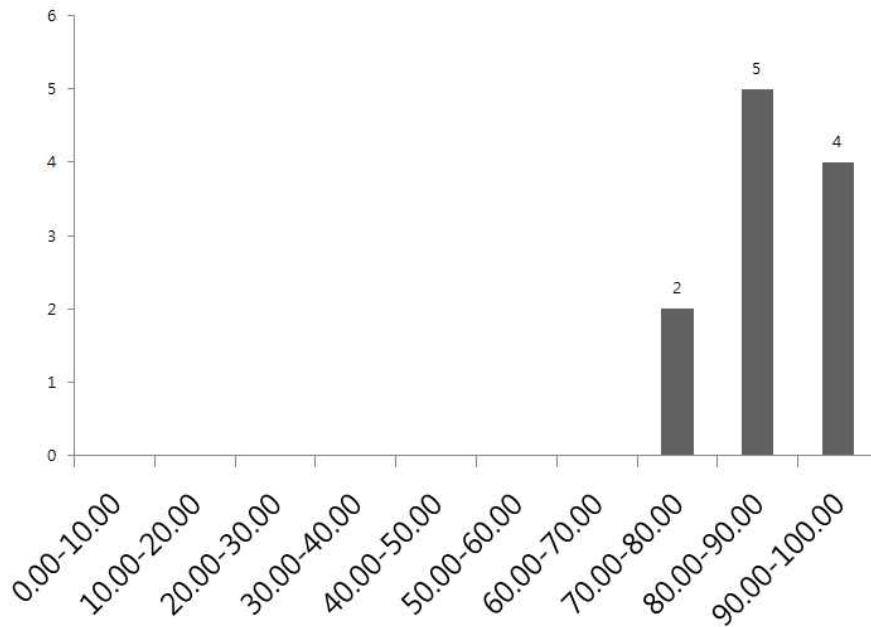
<표Ⅱ-2-13-2> 경북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1	76.83	94.19	86.39	5.48
시설 및 환경(A)	11	80.00 (8.00)	100.00 (10.00)	92.27 (9.23)	5.18 (0.52)
재정 및 조직운영(B)	11	57.50 (11.50)	87.50 (17.50)	77.05 (15.41)	9.07 (1.81)
인적자원관리(C)	11	63.89 (12.78)	93.06 (18.61)	79.80 (15.96)	9.69 (1.9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	80.28 (24.08)	100.00 (30.00)	90.51 (27.15)	6.58 (1.97)
회원의 권리(E)	11	91.67 (9.17)	100.00 (10.00)	97.73 (9.77)	3.89 (0.39)
지역사회관계(F)	11	79.00 (7.90)	98.33 (9.83)	88.65 (8.87)	5.67 (0.57)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경북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과 90.00점 이상~100.00점 미만에 각각 5개소, 4개소가 각각 분포하였다(<그림Ⅱ-2-13-1> 참조).



<그림Ⅱ-2-13-1> 경북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14. 경남

경남지역에는 총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였는데, 우수(B), 양호(C)에 각각 1개소(25.00%), 보통(D)에 2개소(50.00%)가 분포되었다.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등급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우수(B)에 2개소(50.00%), ‘재정 및 조직운영(B)’은 미흡(F)에 2개소(50.00%), ‘인적자원관리(C)’는 미흡(F)에 2개소(5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양호(C)에 2개소(50.00%),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와 미흡(F)에 각각 2개소(50.00%), ‘지역사회관계(F)’는 양호(C)에 2개소(50.00%)로 나타났다(<표Ⅱ-2-14-1> 참조).

<표 II-2-14-1> 경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남 (N=4)	총점	-	1(25.00)	1(25.00)	2(50.00)	-
	시설 및 환경(A)	1(25.00)	2(50.00)	1(25.00)	-	-
	재정 및 조직운영(B)	-	1(25.00)	-	1(25.00)	2(50.00)
	인적자원관리(C)	-	1(25.00)	1(25.00)	-	2(5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25.00)	1(25.00)	2(50.00)	-	-
	회원의 권리(E)	2(50.00)	-	-	-	2(50.00)
	지역사회관계(F)	-	-	2(50.00)	1(25.00)	1(25.00)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경남의 사회복지시설들은 평균 73.08점의 점수를 받았다. 각 하위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은 평균 82.50(8.25)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63.13(12.63)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67.71(13.5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1.39(24.42)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75.00(7.50)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67.50(6.75)점으로 나타났다(<표 II-2-1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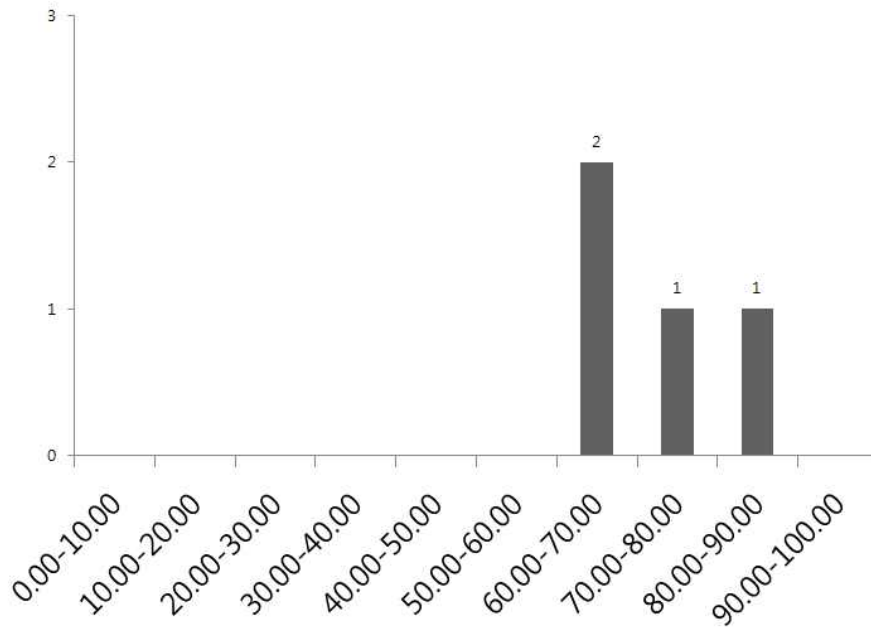
<표 II-2-14-2> 경남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61.60	87.31	73.08	11.28
시설 및 환경(A)	4	65.00 (6.50)	95.00 (9.50)	82.50 (8.25)	12.58 (1.26)
재정 및 조직운영(B)	4	50.00 (10.00)	82.50 (16.50)	63.13 (12.63)	13.90 (2.78)
인적자원관리(C)	4	58.33 (11.67)	80.56 (16.11)	67.71 (13.54)	11.19 (2.2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72.22 (21.67)	95.00 (28.50)	81.39 (24.42)	9.71 (2.91)
회원의 권리(E)	4	41.67 (4.17)	100.00 (10.00)	75.00 (7.50)	29.66 (2.97)
지역사회관계(F)	4	55.00 (5.50)	77.00 (7.70)	67.50 (6.75)	11.24 (1.1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경남지역 시설 분포 현황은 <그림Ⅱ-2-14-1>과 같다. 60.00점 이상~70.00점미만 구간에 2개소, 70.00점 이상~80.00점미만과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하였다(<그림Ⅱ-2-14-1> 참조).



<그림Ⅱ-2-14-1> 경남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15. 제주

제주지역의 2개 사회복지시설은 우수(B)에 2개소(100.00%)가 분포하였다. 제주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2개소(100.00%),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양호(C)와 보통(B)에 각각 1개소(50.00%), '인적자원관리(C)'도 양호(C)와 보통(B)에 각각 1개소(5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1개소(50.00%),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2개소,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2개소(100.00%)가 분포되었다(<표Ⅱ

-2-15-1> 참조).

<표 II-2-15-1> 제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제주 (N=2)	총점	-	2(100.00)	-	-	-
	시설 및 환경(A)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	1(50.00)	1(50.00)	-
	인적자원관리(C)	-	-	1(50.00)	1(50.00)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50.00)	1(50.00)	-	-	-
	회원의 권리(E)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	2(10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제주의 사회복지시설들은 평균 81.84점의 점수를 받았다. 각 하위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은 평균 97.50(9.75)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68.75(13.75)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2.22(14.4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7.50(26.25)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91.67(9.17)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4.75(8.48)점으로 나타났다(<표 II-2-1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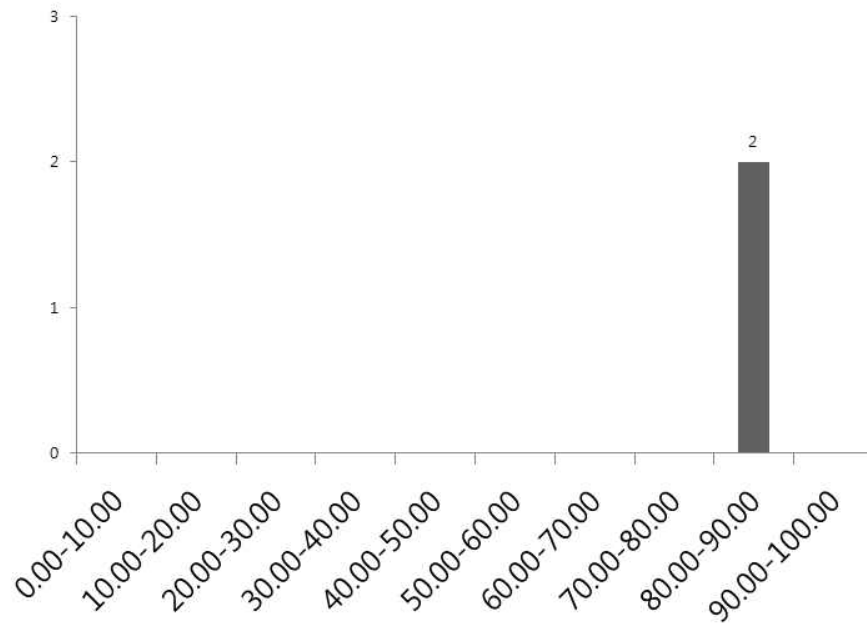
<표 II-2-15-2> 제주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2	81.08	82.59	81.84	1.06
시설 및 환경(A)	2	95.00 (9.50)	100.00 (10.00)	97.50 (9.75)	3.54 (0.35)
재정 및 조직운영(B)	2	67.50 (13.50)	70.00 (14.00)	68.75 (13.75)	1.77 (0.35)
인적자원관리(C)	2	69.44 (13.89)	75.00 (15.00)	72.22 (14.44)	3.93 (0.79)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	80.56 (24.17)	94.44 (28.33)	87.50 (26.25)	9.82 (2.95)
회원의 권리(E)	2	91.67 (9.17)	91.67 (9.17)	91.67 (9.17)	-
지역사회관계(F)	2	82.00 (8.20)	87.50 (8.75)	84.75 (8.48)	3.89 (0.39)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

제주에 총 2개의 시설들은 각각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각각 1개소가 분포하였다(<그림 II-2-15-1> 참조).



<그림 II-2-15-1> 제주 사회복지시설 총점 분포

제 3 절 유형별 평가결과

1. 사회복지 이용시설

금번 평가에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총 73개소이며, 각 등급별로는 최우수(A) 22개소(30.14%), 우수(B) 40개소(54.79%), 양호(C) 7개소(9.59%), 보통(D) 2개소(2.74%), 미흡(F) 2개소(2.74%)의 분포를 보였다.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

설이 해당되고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45개소(61.64%),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양호(C)에 27개소(36.99%),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29개소(39.73%), '프로그램 및 서비스(D)'와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각각 50개소(67.49%)와 67개소(91.78%),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32개소(43.84%)로 나타났다(<표 II-3-1-1> 참조).

<표 II-3-1-1> 사회복지 이용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이용시설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N=73)		22(30.14)	40(54.79)	7(9.59)	2(2.74)	2(2.74)
	시설 및 환경(A)	45(61.64)	23(31.51)	4(5.48)	1(1.37)	-
	재정 및 조직운영(B)	11(15.07)	23(31.51)	27(36.99)	8(10.96)	4(5.48)
	인적자원관리(C)	20(27.40)	29(39.73)	20(27.40)	1(1.37)	3(4.1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0(68.49)	15(20.55)	3(4.11)	4(5.48)	1(1.37)
	회원의 권리(E)	67(91.78)	1(1.37)	2(2.74)	1(1.37)	2(2.74)
	지역사회관계(F)	19(26.03)	32(43.84)	14(19.18)	4(5.48)	4(5.48)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은 평균 86.00점의 점수를 받았다. 각 하위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은 평균 89.73(8.97)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77.91(15.58)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2.93(16.5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9.91(26.97)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96.35(9.63)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2.48(8.25)점으로 나타났다(<표 II-3-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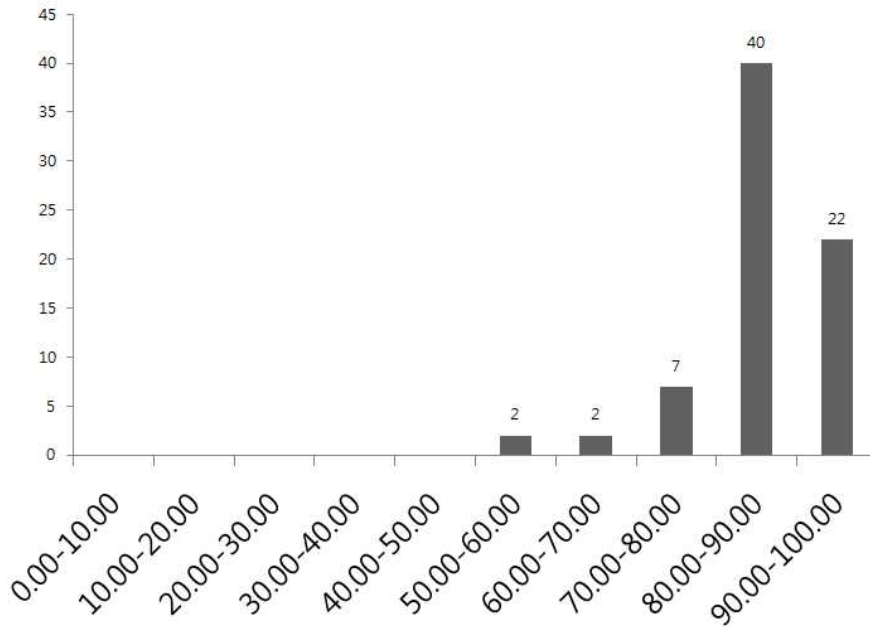
히스토그램으로 볼 때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40개 시설이 분포하였다(<그림 II-3-1-1> 참조).

<표Ⅱ-3-1-2> 사회복지 이용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73	53.79	98.19	86.00	7.96
시설 및 환경(A)	73	65.00 (6.50)	100.00 (10.00)	89.73 (8.97)	7.72 (0.77)
재정 및 조직운영(B)	73	50.00 (10.00)	100.00 (20.00)	77.91 (15.58)	10.04 (2.01)
인적자원관리(C)	73	44.44 (8.89)	98.61 (19.72)	82.93 (16.59)	10.14 (2.0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73	55.56 (16.67)	100.00 (30.00)	89.91 (26.97)	9.49 (2.85)
회원의 권리(E)	73	58.33 (5.83)	100.00 (10.00)	96.35 (9.63)	9.00 (0.90)
지역사회관계(F)	73	37.50 (3.75)	98.00 (9.80)	82.48 (8.25)	11.48 (1.15)

※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



<그림Ⅱ-3-1-1>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점 분포

2. 사회복지 입소시설

사회복지 입소시설은 총 16개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총점을 보면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에 대해 각각 5개소(31.25%), 6개소(37.50%), 3개소(18.75%), 2개소(12.50%)의 시설이 각각의 등급에 분포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는 최우수(A)에 13개소(81.25%), '재정 및 조직운영(B)'과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주로 분포되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10개소(62.50%),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14개소(87.50%), 지역사회관계(F)는 양호(C)에 6개소(37.50)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표II-3-2-1>참조).

<표II-3-2-1> 사회복지 입소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입소시설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5 (31.25)	6 (37.50)	3 (18.75)	2 (12.50)	-
(N=16)	시설 및 환경(A)	13 (81.25)	1 (6.25)	-	1 (6.25)	1 (6.25)
	재정 및 조직운영(B)	3 (18.75)	5 (31.25)	5 (31.25)	1 (6.25)	2 (12.50)
	인적자원관리(C)	3 (18.75)	8 (50.00)	-	3 (18.75)	2 (12.5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0 (62.50)	2 (12.50)	3 (18.75)	1 (6.25)	-
	회원의 권리(E)	14(87.50)	1(6.25)	-	-	1(6.25)
	지역사회관계(F)	3(18.75)	4(25.00)	6(37.50)	3(18.75)	-

※최우수(A): 90점이상, 우수(B): 80점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입소시설들의 총점은 평균 84.63점이었다. 평가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의 경우 평균 89.38(8.94)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77.97(15.59)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9.08(15.8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9.67(26.90)

점, '회원의 권리(E)'는 평균 93.75(9.38)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0.03(8.00)점으로 나타났다(<표Ⅱ-3-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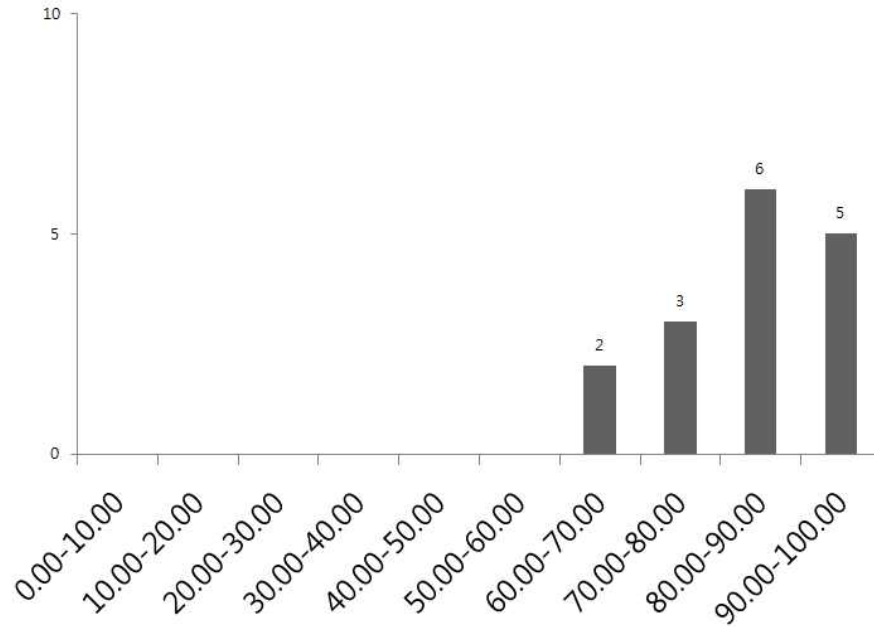
<표Ⅱ-3-2-2> 사회복지 입소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6	61.60	95.86	84.63	9.90
시설 및 환경(A)	16	50.00 (5.00)	100.00 (10.00)	89.38 (8.94)	13.77 (1.38)
재정 및 조직운영(B)	16	57.50 (11.50)	92.50 (18.50)	77.97 (15.59)	10.89 (2.18)
인적자원관리(C)	16	55.56 (11.11)	97.22 (19.44)	79.08 (15.82)	12.84 (2.5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6	65.28 (19.58)	100.00 (30.00)	89.67 (26.90)	11.10 (3.33)
회원의 권리(E)	16	41.67 (4.17)	100.00 (10.00)	93.75 (9.38)	14.75 (1.48)
지역사회관계(F)	16	61.00 (6.10)	100.00 (10.00)	80.03 (8.00)	10.20 (1.0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

사회복지 입소시설은 가장 많은 6개 시설이 80.00점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90.00점이상~100.00점미만 구간에 5개소, 70.00점이상~80.00점미만 구간에 3개소, 60.00점이상~70.00점미만 구간에 2개소가 분포되어 있다.<그림Ⅱ-3-2-1> 참조).



<그림 II-3-2-1> 사회복지귀 입소시설 총점 분포

3. 사회복지귀 주거시설

주거시설 총 59개는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에 대해 각각 14개소(23.73%), 27개소(45.76%), 10개소(16.95%), 4개소(6.78%), 4개소(6.78%)의 분포를 보였다. 각 평가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시설 및 환경(A)'의, 우수(B)에 28개소(47.46%),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양호(C) 16개소(27.12%),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21개소(35.59%),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31개소(52.54%),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49개소(83.05%), '지역사회관계(F)'는 양호(C)에 23개소(38.98%)로 각각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표 II-3-3-1> 참조).

<표 II-3-3-1> 사회복지 주거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주거시설 (N=59)	총점	14 (23.73)	27 (45.76)	10 (16.95)	4 (6.78)	4 (6.78)
	시설 및 환경(A)	25 (42.37)	28 (47.46)	3 (5.08)	3 (5.08)	-
	재정 및 조직운영(B)	9 (15.25)	13 (22.03)	16 (27.12)	13 (22.03)	8 (13.56)
	인적자원관리(C)	12 (20.34)	21 (35.59)	14 (23.73)	8 (13.56)	4 (6.78)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1 (52.54)	16 (27.12)	5 (8.47)	3 (5.08)	4 (6.78)
	회원의 권리(E)	49 (83.05)	2 (3.39)	3 (5.08)	2 (3.39)	3 (5.08)
	지역사회관계(F)	15 (25.42)	7 (11.86)	23 (38.98)	8 (13.56)	6 (10.17)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입소시설의 총점은 평균 81.90점이었고, '시설 및 환경' 평균 86.53(8.65)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73.31(14.66)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78.60(15.7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86.16(25.85)점, '회원의 권리(E)' 평균 92.94(9.29)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77.20(7.72)점이었다(<표 II-3-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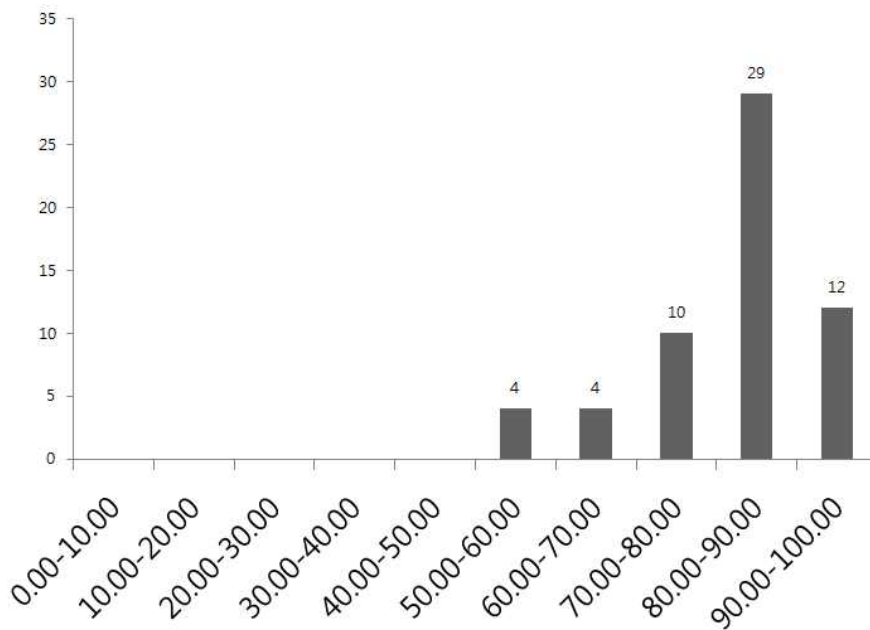
주거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과 90.00점 이상~100.00점미만에 각각 29개소와 12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그림 II-3-3-1> 참조).

<표Ⅱ-3-3-2> 사회복지 주거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59	50.44	93.94	81.90	10.02
시설 및 환경(A)	59	65.00 (6.50)	100.00 (10.00)	86.53 (8.65)	9.01 (0.90)
재정 및 조직운영(B)	59	40.00 (8.00)	95.00 (19.00)	73.31 (14.66)	13.39 (2.68)
인적자원관리(C)	59	47.22 (9.44)	97.22 (19.44)	78.60 (15.72)	12.20 (2.4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59	41.67 (12.50)	100.00 (30.00)	86.16 (25.85)	12.60 (3.78)
회원의 권리(E)	59	50.00 (5.00)	100.00 (10.00)	92.94 (9.29)	13.11 (1.31)
지역사회관계(F)	59	50.00 (5.00)	100.00 (10.00)	77.20 (7.72)	12.58 (1.26)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



<그림Ⅱ-3-3-1> 사회복지 주거시설 총점 분포

4. 사회복지 병행시설

병행시설 총 15개소는 최우수(A), 우수(B), 양호(C)에 대해 각각 8개소(53.33%), 6개소(40.00%), 1개소(6.67%)의 분포를 보였다. 각 평가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시설 및 환경(A)'의 최우수(A)에 11개소(73.33%), '재정 및 조직운영(B)' 우수(B)에 10개소(66.67%),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6개소(4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12개소(80.00%), '회원의 권리(E)'는 최우수(A)에 15개소(100.00%),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8개소(53.33%)로 각각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표 II-3-3-1> 참조).

<표 II-3-4-1> 사회복지 병행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병행시설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N=15)						
	시설 및 환경(A)	11(73.33)	4(26.67)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6.67)	10(66.67)	3(20.00)	-	1(6.67)
	인적자원관리(C)	5(33.33)	6(40.00)	4(26.67)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2(80.00)	3(20.00)	-	-	-
	회원의 권리(E)	15(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3(20.00)	8(53.33)	4(26.67)	-	-

※최우수(A): 90점이상, 우수(B): 80점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병행시설의 총점은 평균 88.33점이었고, '시설 및 환경' 평균 91.67(9.17)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0.00(16.00)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2.52(16.7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3.41(28.02)점, '회원의 권리(E)' 평균 98.89(9.89)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5.47(8.55)점이었다(<표 II-3-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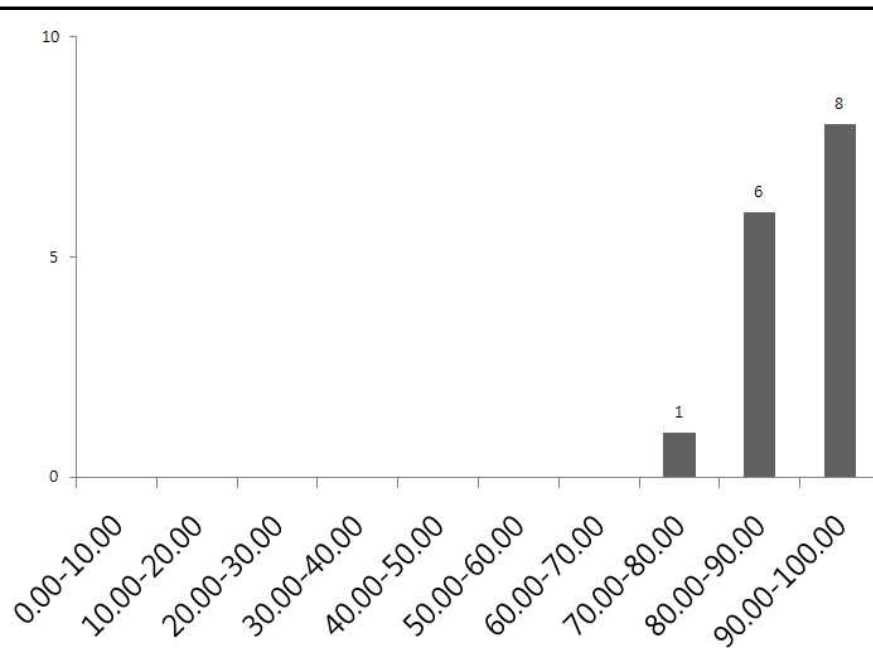
병행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미만과 80.00점 이상~90.00점미만에 각각 8개소와 6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그림 II-3-4-1> 참조).

<표II-3-4-2> 사회복지 병행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15	79.09	94.15	88.33	4.64
시설 및 환경(A)	15	85.00 (8.50)	100.00 (10.00)	91.67 (9.17)	5.23 (0.52)
재정 및 조직운영(B)	15	57.50 (11.50)	90.00 (18.00)	80.00 (16.00)	8.45 (1.69)
인적자원관리(C)	15	72.22 (14.44)	93.06 (18.61)	83.52 (16.70)	7.37 (1.4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5	80.28 (24.08)	99.17 (29.75)	93.41 (28.02)	5.40 (1.62)
회원의 권리(E)	15	91.67 (9.17)	100.00 (10.00)	98.89 (9.89)	2.93 (0.29)
지역사회관계(F)	15	77.00 (7.70)	97.00 (9.70)	85.47 (8.55)	6.64 (0.66)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20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0점 만점, 회원의 권리(E): 10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10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



<그림II-3-4-1> 사회복지 병행시설 총점 분포

제 4 절 사회복지 영역별 평가결과6)

1. 시설 및 환경(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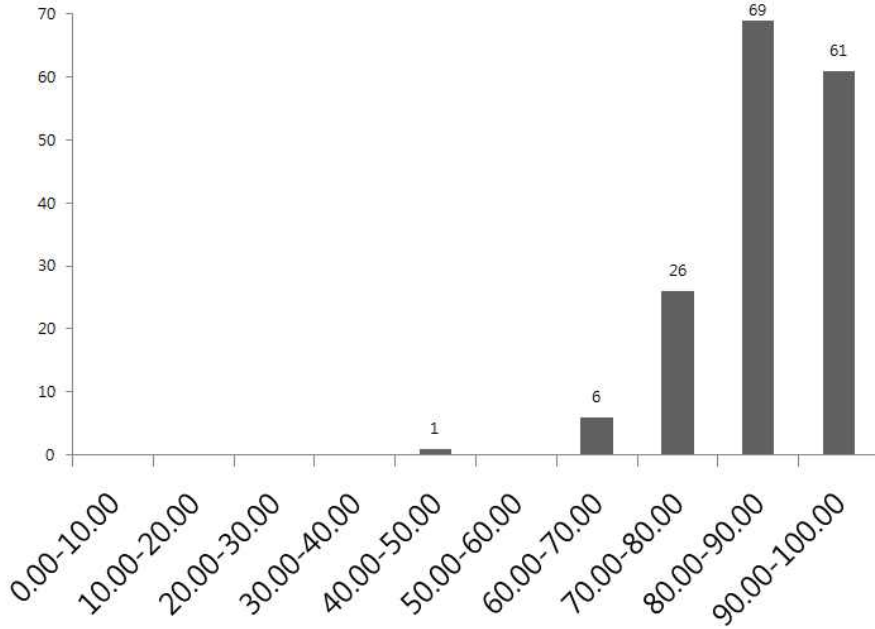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시설 및 환경(A)' 영역 평균점수는 88.71(8.87)점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이용시설의 '시설 및 환경(A)' 영역 평균 점수는 <표Ⅱ-4-1-1>을 통해 제시되었다(<표Ⅱ-4-1-1> 참조).

<표Ⅱ-4-1-1>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163	50.00 (5.00)	100.00 (10.00)	88.71 (8.87)	8.86 (8.86)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분포는 <그림Ⅱ-4-1-1>과 같다. 80.00점 이상~90.00점 구간에 가장 많은 69개 시설과, 90.00점이상~100.00점미만 구간에 61개 시설 등 비교적 높은 점수대로 평가되고 있었다(<그림Ⅱ-4-1-1> 참조).

6) 강원도는 금번 평가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이 없다.



<그림Ⅱ-4-1-1>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 분포

1) 공간의 크기

본 지표는 전체 시설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대평가방식으로 배점하는 정량지표로서 시설의 공간 확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평가 내용 중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의미한다.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된다. 평가 시 시설에서 제시하는 건축물대상을 통해 전용면적을 확인하며, 본 지표에서 정원의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산출된 전체점수는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으로 평균 2.55점이었으며, 정원 평균 28.52명, 전용면적 평균 287.26㎡이며, 정원대비면적은 평균 11.07㎡이었다. 시설유형별로 평균 대비면적을 살펴보면 이용시설의 경우 7.60㎡, 입소시설, 21.10㎡, 병행시설 11.43㎡로 나타났다.

다(<표 II-4-1-2> 참조).

<표 II-4-1-2> 공간의 크기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공간의 크기	1)공간의 확보는 어떠한가?	전체	1.00	4.00	2.55	1.12	
		정원(명)	5.00	140.00	28.52	23.39	
		전용면적(m ²)	39.54	2,071.21	287.26	314.14	
		정원대비면적	1.17	56.00	11.07	7.61	
		이용시설	전체	19 (26.03)	18 (24.66)	18 (24.66)	18 (24.66)
			정원(명)	6.00	120.00	37.23	18.93
			전용면적(m ²)	46.62	997.87	258.52	173.24
			정원대비면적	1.17	56.00	7.60	6.57
		입소시설	전체	5 (31.25)	4 (25.00)	4 (25.00)	3 (18.75)
			정원(명)	15.00	50.00	31.69	13.37
			전용면적(m ²)	180.09	2,071.21	745.41	580.61
			정원대비면적	8.58	41.42	21.10	8.95
		주거시설	전체	15 (25.42)	15 (25.42)	15 (25.42)	14 (23.73)
			정원(명)	5.00	10.00	8.69	1.65
			전용면적(m ²)	39.54	399.87	106.92	56.76
			정원대비면적	4.96	39.99	12.55	6.30
병행시설	전체	4 (26.67)	4 (26.67)	4 (26.67)	3 (20.00)		
	정원(명)	30.00	140.00	60.67	33.36		
	전용면적(m ²)	311.26	1,420.28	647.76	304.15		
	정원대비면적	4.96	18.79	11.43	3.19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정원대비면적 = $\frac{\text{전용면적()m}^2}{\text{정원()명}}$

2) 시설 내·외부 환경

본 지표는 시설의 내·외부 환경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출결의서와 현장 확인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시 시설 건물의 외관에 파손이 있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건물 내관의 경우는 통풍과 쾌적한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시설에서 추진한 실적에 관한 평가는 시설자체 예산이나, 법인, 지자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한 모두를 인정하였고, 기능보강을 포함하며, 재무회계규칙관02 재산조성비 항21시설비에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단, 외부에서 지원 받아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했을 경우 지정해당 '목'을 인정 건물 내관의 경우에는 통풍과 쾌적한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단, 기능보강을 포함하여 회원을 위해 시설에서 환경개선노력을 기울여 지출한 경우 인정하며, 그 범위는 단순히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전체 4점 만점에 평균 3.74점이었고, 우수(4) 128개소(78.53%), 양호(3) 30개소(18.40%), 보통(2) 3개소(1.84%), 미흡(1) 2개소(1.23%)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로 평균은 이용시설 3.79점, 입소시설 3.69점, 주거시설 3.68점, 병행시설 3.80점으로 나타났다(<표Ⅱ-4-1-3> 참조).

<표Ⅱ-4-1-3> 시설 내·외부 환경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전체	128 (78.53)	30 (18.40)	3 (1.84)	2 (1.23)	3.74(0.55)
이용시설	59 (80.82)	13 (17.81)	1 (1.37)	18 (24.66)	3.79(0.44)
입소시설	13 (81.25)	2 (12.50)	-	1 (6.25)	3.69(0.79)
주거시설	43 (72.88)	14 (23.73)	1 (1.69)	1 (1.69)	3.68(0.60)
병행시설	13 (86.67)	1 (6.67)	1 (6.67)	3 (20.00)	3.80(0.5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3)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노력

본 지표는 소방시설 및 화재 예방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시

화재보험증서, 소방훈련 관련기록, 현장 확인,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소방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에 근거하여 각 시설이 시설물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며, 조치 결과를 반영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하였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에 의한 소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방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을 관련 내부기안 또는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보험의 대인을 기타보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인정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된 보험증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방화관리자범위는 소방교육을 필히 받은 직원으로서 방화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 인정하였다. 본 지표에서 현원의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산출된 전체점수는 우수(4) 149개소(91.41%), 양호(3) 13개소(7.98%), 보통(2) 1개소(0.61%)이며 평균 3.91점을 받았다(<표Ⅱ-4-1-4> 참조).

<표Ⅱ-4-1-4>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노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 노력	전체	149 (91.41)	13 (7.98)	1 (0.61)	-	3.91(0.31)
	이용시설	65 (89.04)	8 (10.96)	-	-	3.89(0.31)
	입소시설	16 (100.00)	-	-	-	4.00(0.00)
	주거시설	53 (89.83)	5 (8.47)	1 (1.69)	-	3.88(0.38)
	병행시설	15 (100.00)	-	-	-	4.00(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4) 위생 안전에 대한 노력

위생안전교육 실시여부, 위생안전 물품구비, 위기상황 매뉴얼 등 위생안전 확보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평가내용 중 위생안전 물품은 상비약,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을 의미하며, 매뉴얼이란 상황별 응급(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매뉴얼을 의미하며, 화재취약 주변 관리는 외부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적으로 시설물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기록이 확인될 경우 인정하였다. 전기누전·합선 예방은 전기제품의 전원을 장시간 켜두지 않고,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용량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가스폭발 예방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에 점화원을 제거하고, 비눗물이나 세제의 거품으로 가스기구와 호스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 시 위생안전관련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 위기대처 업무매뉴얼, 비상연락망, 안전점검기록 등 관련문서를 활용하고 현장 확인하였다. 전체 점수를 살펴보면 4점 만점에 평균 3.96점이며, 우수(4) 158개소(96.93%), 양호(3) 3개소(1.84%), 보통(2) 2개소(1.23%)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평균에서는 이용시설의 경우 4.00점, 입소시설 3.81점, 주거시설 3.39점, 병행시설 4.00점을 얻었다(<표Ⅱ-4-1-5> 참조).

<표Ⅱ-4-1-5> 위생 안전에 대한 노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위생 안전에 대한 노력	4)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158 (96.93)	3 (1.84)	2 (1.23)	-	3.96 (0.26)
	이용시설	73 (100.00)	-	-	-	4.00(0.00)
	입소시설	14 (87.50)	1 (6.25)	1 (6.25)	-	3.81(0.54)
	주거시설	56 (94.92)	2 (3.39)	1 (1.69)	-	3.93(0.31)
	병행시설	15 (100.00)	-	-	-	4.00(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5) 시설의 정보화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인터넷 접속 여부를 통해 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되었는데, 각종 DBDHK 프로그램, 비품관리대장(PC보유대수 확인) 및 평가위원들이 전산프로그램 및 인터넷 접속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홈페이지 구축 시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DB는 한글파일이 아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활용이 가능해야 인정하였다. 또한 pc는 펜티엄급 이상으로 실제 작동이 되어야 하고, 판정 시 홈페이지가 인터넷상에서 검색될 경우만 인정하였다. 전체 산출 값에서 4점 만점에 평균 3.59점이며, 우수(4) 111(68.10%), 양호(3) 40개소(24.54%), 보통(2) 9개소(5.52%), 미흡(1) 3개소(1.84%)가 분포되었다. 각 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이용시설 3.74점, 입소시설 3.69점, 주거시설 3.29점, 병행시설 3.93점으로 각각 평균 점수를 보였다. (<표Ⅱ-4-1-6> 참조).

<표Ⅱ-4-1-6> 시설의 정보화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의 정보화	5)시설의 정보화 수준은 적절한가?	전체	111 (68.10)	40 (24.54)	9 (5.52)	3 (1.84)	3.59(0.68)
		이용시설	56 (76.71)	15 (20.55)	2 (2.74)	-	3.74(0.50)
		입소시설	13 (81.25)	1 (6.25)	2 (12.50)	-	3.69(0.70)
		주거시설	28 (47.46)	23 (38.98)	5 (8.47)	3 (5.08)	3.29(0.83)
		병행시설	14 (93.33)	1 (6.67)	-	-	3.93(0.2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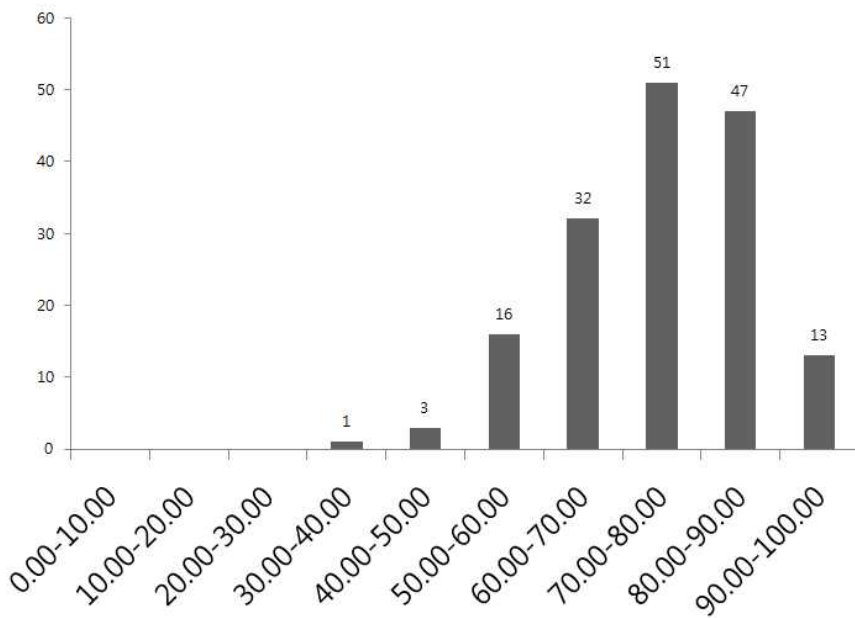
2. 재정 및 조직운영(B)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은 평균 76.44(15.29)점의 수준이었다. '재정 및 조직운영(B)'에 대한 각 지역별 기술통계량은 <표Ⅱ-4-2-1>에 자세히 기술되었다.

<표Ⅱ-4-2-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163	40.00 (8.00)	100.00 (20.00)	76.44 (15.29)	11.50 (2.30)

<그림Ⅱ-4-2-1>은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분포이다. 70.00점 이상~80.00점미만 및 80.00점 이상~90.00점미만에 각각 51개소와 47개소로 가장 밀집되어 분포하였다.



<그림Ⅱ-4-2-1>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 분포

1) 시설장의 전문성

본 지표는 시설장이 소지한 자격증과 경력의 확인을 통해 시설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평가시 자격증,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참고하였다. 전체 평균 2.93점의 점수를 받았고, 각 등급별로는 우수(4)에 69개소(42.33%), 양호(3)에 36개소(22.09%), 보통(2)에 36개소(22.09%), 미흡(1)에 22개소(13.50%)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었다. 시설 유형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시설 3.07점, 입소시설 2.94점, 주거시설 2.83점, 병행시설 2.67로 이용시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II-4-2-2> 참조).

<표II-4-2-2> 시설장의 전문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장의 전문성	1)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전체	69 (42.33)	36 (22.09)	36 (22.09)	22 (13.50)	2.93(1.09)
		이용시설	37 (50.68)	11 (15.07)	18 (24.66)	7 (9.59)	3.07 (1.07)
		입소시설	6 (37.50)	5 (31.25)	3 (18.75)	2 (12.50)	2.94 (1.06)
		주거시설	23 (38.98)	14 (23.73)	11 (18.64)	11 (18.64)	2.83 (1.15)
		병행시설	3 (20.00)	6 (40.00)	4 (26.67)	2 (13.33)	2.67 (0.9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운영위원회의 구성여부와 회의 개최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현장평가위원이 시설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명부, 회의록, 위촉장, 사업계획서 등 관련문서를 검토함으로써 평가하였다. 서면회의 또는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실적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서면회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서면회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4

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68점이었고, 우수(4) 126(77.30%), 양호(3) 25개소 (15.34%), 보통(2)에 9개소(5.52%), 미흡(1) 3개소(1.84%)가 분포되었다. 시설 유형별 평균 점수는 이용시설 3.67점, 입소시설 3.81점, 주거시설 3.59점, 병행시설 3.93점으로 병행시설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표Ⅱ-4-2-3> 참조).

<표Ⅱ-4-2-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운영위원회 의 구성과 활동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적절한가?	전체	126 (77.30)	25 (15.34)	9 (5.52)	3 (1.84)	3.68 (0.66)
	이용시설	58 (79.45)	8 (10.96)	5 (6.85)	2 (2.74)	3.67 (0.73)	
	입소시설	14 (87.50)	1 (6.25)	1 (6.25)	-	3.81 (0.54)	
	주거시설	40 (67.80)	15 (25.42)	3 (5.08)	1 (1.69)	3.59 (0.67)	
	병행시설	14 (93.33)	1 (6.67)	-	-	3.93 (0.26)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우수(4), 보통(2)의 2개 배점 범주로 평가됨.

※ N=163

3) 서류의 비치 및 관리

본 지표에서는 문서 관리 규정 및 규정에 열거된 서류를 얼마나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및 기록내용의 충실성과 문서공유체계 마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서류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5조 및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서에 따른 필수비치 서류를 의미하고 있으며, 직원 간 문서공유체계란 공람, 협조, 회람, 결재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로 문서파일을 직원간 공유할 수 있도록 메인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웹하드 사용, 대표메일 공유 등을 포함시켰다. 비품관리대장과 재물조사하는 비품에 재물조사표 부착여부를 확인하였다. 평가시 시설의 관리·사무·재무·회계에 관한 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확인, 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비품관리대장 등 관련문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4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 3.86점을 취득하였으며, 배점등급별로는 우수(4)에 143개소(83.73%), 양호(3)에 17개소

(10.43%), 보통(2)에 3개소(1.84%)의 시설이 분포되었다. 시설유형별로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점수는 각각 3.90점, 3.88점, 3.76점, 4.00점을 나타내었다(<표 II-4-2-4>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5조>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정신보건사업안내>

필수비치 서류: 시설 설치 신고 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입소·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진료·투약, 생활·작업훈련내용에 관한 서류,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 시설운영일지,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소속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부,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표 II-4-2-4> 서류의 비치 및 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서류의 비치 및 관리	3)서류는 제대로 관리 비치되어 있는가?	전체	143 (87.73)	17 (10.43)	3 (1.84)	- (0.40)	3.86 (0.40)
		이용시설	67 (91.78)	5 (6.85)	1 (1.37)	-	3.90 (0.34)
		입소시설	14 (87.50)	2 (12.50)	-	-	3.88 (0.34)
		주거시설	47 (79.66)	10 (16.95)	2 (3.39)	-	3.76 (0.50)
		병행시설	15 (100.00)	-	-	-	4.00 (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4) 회계의 투명성

본 지표는 시설의 회계의 투명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2010년 회계처리 관련문서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54점이었고, 우수(4)에 107개소(65.64%), 양호(3) 37개소(22.70%), 보통(2) 19개소(11.66%)의 분포를 보였다. 이용시설은 우수(4)에 50개소(68.49%), 입소시설은 우수(4)에 13개소(81.25%), 주거시설은 우수(4)에 30개소(50.85%), 병행시설은 우수(4)에 14개소(93.33%)의 분포를 보였다(<표 II-4-2-5> 참조).

<표 II-4-2-5> 회계의 투명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회계의 투명성	4)시설은 재정 및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전체	107 (65.64)	37 (22.70)	19 (11.66)	-	3.54 (0.70)
		이용시설	50 (68.49)	15 (20.55)	8 (10.96)	-	3.58 (0.69)
		입소시설	13 (81.25)		3 (18.75)	-	3.63 (0.81)
		주거시설	30 (50.85)	21 (35.59)	8 (13.56)	-	3.37 (0.72)
		병행시설	14 (93.33)	1 (6.67)	-	-	3.93 (0.2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우수(4), 양호(3), 보통(2)의 3개 배점 범주로 평가됨.

※N=163

5) 후원금(품)의 모금 및 관리

본 지표는 후원금(품)의 모금 및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로써, 후원금의 모금과 관리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소식지에 후원자 이름과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통보'로 인정하는 등 시설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지표의 증빙자료로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후원자 통보서류, 수령액·사용처 등을 게재한 공식소식지, 관공서 게시판, 시설홈페이지 게시물 등이 해당되었다. 평균 4.00점이었고, 우수(4) 117개소(71.78%), 양호(3) 21개소(12.88%), 보통(2) 4개소(2.45%), 미흡(1) 21개소

(12.88%)가 분포되었다. 이용시설은 우수(4)에 54개소(73.97%), 입소시설은 우수(4)에 13개소(81.25%), 주거시설은 37개소(62.71%), 병행시설은 우수(4)에 13개소(86.67%)로 평가되었다(<표Ⅱ-4-2-6> 참조).

<표Ⅱ-4-2-6> 후원금(품)의 모금 및 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후원금(품)의 모금 및 관리	전체	117 (71.78)	21 (12.88)	4 (2.45)	21 (12.88)	4.00 (0.00)
	이용시설	54 (73.97)	9 (12.33)	2 (2.74)	8 (10.96)	3.49 (0.99)
	입소시설	13 (81.25)	2 (12.50)	-	1 (6.25)	3.69 (0.79)
	주거시설	37 (62.71)	9 (15.25)	1 (1.69)	12 (20.34)	3.20 (1.20)
	병행시설	13 (86.67)	1 (6.67)	1 (6.67)	-	3.80 (0.56)
	5) 후원금(품)의 모금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0)에 해당되는 2개 시설은 'B8.후원금 비율'에서 실적이 없는 시설임.

※N=163

6) 직원급여 자부담액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정량지표이며 상대평가방식으로 배점되었다. 시설이 직원들의 급여를 위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지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지원 직원과 자부담 직원을 모두 포함하였다(촉탁의 제외). 또한, 평가의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1년으로 하였다. 한 직원이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에 포함하였으며, 동일법인 내 인사이동 및 정년 퇴임한 직원 등은 이직한 직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종사자관리카드 명단 및 퇴사자 명단,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평가에 임하였는데, 근거서류는 해당기간(4분기) 시·군·구에 보고한 종사자 현황 자료와 해당기간(4분기) 종사자 명단(월급명세서 등 참조) 등을 의미한다. 본 지표의 점수는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으로 평균 2.28점이었다. 자부담 총액은 평균 4,214천원이었으나, 시설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평균 988천원이

었다. 이용시설은 평균 2.21점으로 자부담 총액은 평균 4,864천원이며,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평균 991천원이었다. 입소시설은 평균 2.69점으로 자부담 총액은 평균 8,537천원이며,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평균 939천원이었다. 주거시설은 평균 2.15점으로 자부담 총액은 평균 1,878천원이며,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평균 1,069천원이었다. 병행시설은 평균 2.67점으로 자부담 총액은 평균 5,631천원이며, 직원 1인당 자부담액은 평균 707천원이었다(<표 II-4-2-7> 참조).

<표 II-4-2-7> 직원급여 자부담액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원 급여 자부 담액	6)직원에 대한 급여 자부담액은 얼마인가?	전체	1.00	4.00	2.28	1.29	
		자부담총액(천원)	0	76,789	4,214	10,019	
		법정직원수(명)	1.00	16.00	4.28	2.72	
		1인당 자부담액(원)	0.00	21,423	988	2,418	
		이용 시설	전체	1.00	4.00	2.21	1.21
			자부담총액(천원)	0	76,789	4,864	13,345
			법정직원수(명)	2.00	12.00	4.63	1.59
			1인당 자부담액(천원)	0	21,423	991	2,983
		입소 시설	전체	1.00	4.00	2.69	1.40
			자부담총액(천원)	0	26,163	8,537	9,269
			법정직원수(명)	4.00	15.00	7.94	3.04
			1인당 자부담액(천원)	0	2,713	939	919
		주거 시설	전체	1.00	4.00	2.15	1.35
			자부담총액(천원)	0	19,744	1,878	3,878
			법정직원수(명)	1.00	3.00	1.93	0.41
			1인당 자부담액(천원)	0.00	10,051	1,069	2,212
		병행 시설	전체	1.00	4.00	2.67	1.29
			자부담총액(천원)	0	23,554	5,631	6,529
			법정직원수(명)	5.00	16.00	7.87	3.00
			1인당 자부담액(천원)	0	2,348	707	761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직원 1인당 자부담액 = $\frac{2008.1.1 \sim 2010.12.31 \text{ 총급여 중 기관 자부담 총금액()원}}{2010년 \text{ 월평균 확보 직원수()명}}$

7)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세입세출 결산서를 근거로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이다. 본 지표의 평가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으로 한정하였다. 단, 개인 시설인 경우는 개인 출연금(보증금 및 월세 제외)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였다. 근거서류로는 2008년~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의미한다. 평균 2.5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전체 법인 전입금은 평균 22,026천원, 보조금 결산액은 평균 436,966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평균 27,823천원, 전입금 비율은 평균 7.70%였다. 이용시설은 평균 2.4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의 전체 법인 전입금은 평균 23,230천원, 보조금 결산액은 평균 463,408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평균 17,430천원, 전입금 비율은 평균 9.73%였다. 입소시설은 평균 2.44점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설의 전체 법인 전입금은 평균 50,877천원, 보조금 결산액은 평균 901,550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평균 169,852천원, 전입금 비율은 평균 14.40%였다. 주거시설은 평균 2.20점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시설의 전체 법인 전입금은 평균 7,795천원, 보조금 결산액은 평균 198,663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평균 3,506천원, 전입금 비율은 평균 3.85%였다. 병행시설은 평균 2.80점으로 나타났으며, 병행시설의 전체 법인 전입금은 평균 41,365천원, 보조금 결산액은 평균 750,058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평균 22,554천원, 전입금 비율은 평균 5.87%였다.<표II-4-2-8> 참조).

<표II-4-2-8>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	4.00	2.50	2.12
법인전입금(천원)		0	340,570	22,026	50,844
보조금(천원)		57,938	1,788,063	436,966	317,066
기능보강비(천원)		0	990,000	27,823	111,538
전입금비율(%)		0.00	267.70	7.70	26.17
이용 시설		1.00	4.00	2.40	1.16
법인전입금(천원)		0	293,913	23,230	48,912
보조금(천원)		77,910	1,380,516	463,408	217,863
기능보강비(천원)		0	359,794	17,430	62,086
전입금비율(%)		0.00	267.70	9.73	35.27
운영 법인 의 전입 금 비율	전체	1.00	4.00	2.44	1.36
	법인전입금(천원)	0	340,570	50,877	93,665
	보조금(천원)	381,625	1,788,063	901,550	407,323
	기능보강비(천원)	0	990,000	169,852	293,634
	전입금비율(%)	0.00	84.18	14.40	26.23
가)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 금)이 어느 정도인가?	전체	1.00	4.00	2.20	1.32
	법인전입금(천원)	0	156,000	7,795	24,288
	보조금(천원)	57,938	771,007	198,663	91,404
	기능보강비(천원)	0	183,000	3,506	23,821
	전입금비율(%)	0.00	77.22	3.85	11.82
주거 시설	전체	1.00	4.00	2.80	1.08
	법인전입금(천원)	0	180,324	41,365	59,612
	보조금(천원)	404,019	1,630,346	750,058	334,875
	기능보강비(천원)	0	221,155	22,554	57,134
	전입금비율(%)	0.00	33.78	5.87	8.72
병행 시설	전체	1.00	4.00	2.80	1.08
	법인전입금(천원)	0	180,324	41,365	59,612
	보조금(천원)	404,019	1,630,346	750,058	334,875
	기능보강비(천원)	0	221,155	22,554	57,134
	전입금비율(%)	0.00	33.78	5.87	8.72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운영법인의 전입금 비율 = $\frac{2008 \sim 2010 \text{ 법인 전입금()원}}{2008 \sim 2010 \text{ 보조금 결산액()원} - \text{기능보강사업비()원}} \times 100$

8)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본 지표는 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이다. 본 지표에서의 평가기간은 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에 국한하였고,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법인(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 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경우는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자부담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하였다. 4점 만점에서 평균 2.53점이었고,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비율에 대한 평균은 각각 33,980원과 12.33%였다. 이용시설은 평균 2.48점이었고,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비율에 대한 평균은 각각 40,919천원과 14.77%였다. 입소시설은 평균 2.19점이었고,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비율에 대한 평균은 각각 41,904천원과 20.98%였다. 주거시설은 평균 2.53점이었고,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비율에 대한 평균은 각각 13,440천원과 7.20%였다. 이용시설은 평균 3.13점이었고,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비율에 대한 평균은 각각 72,549천원과 11.43%였다.(<표Ⅱ-4-2-9> 참조).

<표Ⅱ-4-2-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전체	전체	1.00	4.00	2.53	1.12
		보조금(천원)	57,938	1,788,063	436,9660	317,066
		기능보강비(천원)	0	990,000	27,823	111,538
		후원금(천원)	0	617,355	33,980	62,820
		후원금비율(%)	0.00	332.42	12.33	36.10
	이용 시설	전체	1.00	4.00	2.48	1.14
		보조금(천원)	77,910	1,380,516	463,408	217,863
		기능보강비(천원)	0	359,794	17,430	62,086
		후원금(천원)	0	617,355	40,919	80,992
		후원금비율(%)	0.00	332.42	14.77	43.03
	입소 시설	전체	1.00	4.00	2.19	1.17
		보조금(천원)	381,625	1,788,063	901,550	407,323
		기능보강비(천원)	0	990,000	169,852	293,634
		후원금(천원)	0	154,340	41,904	49,499
		후원금비율(%)	0.00	266.02	20.98	65.60

	전체	1.00	4.00	2.53	1.12
주거 시설	보조금(천원)	57,938	771,007	198,663	91,404
	기능보강비(천원)	0	183,000	3,506	23,821
	후원금(천원)	0	142,626	13,440	23,449
	후원금비율(%)	0.00	70.60	7.20	12.13
	전체	2.00	4.00	3.13	0.74
병행 시설	보조금(천원)	404,019	1,630,346	750,058	334,875
	기능보강비(천원)	0	221,155	22,554	57,134
	후원금(천원)	18,013	233,253	72,549	57,727
	후원금비율(%)	1.80	42.74	11.43	10.57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매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text{※산출식: 후원금 비율} = \frac{2008 \sim 2010 \text{ 후원금 수입 ()원}}{2008 \sim 2010 \text{ 보조금 결산액()원} - \text{기능보강사업비()원}} \times 100$$

9)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본 지표는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을 파악하는 정량지표이며, 2008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평가기간으로 하였다. 사업비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관 '03 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이고, 본 지표의 근거 서류로는 2008년~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가 해당되었다. 평균 2.53점이었으며, 3개년간 사업비 수입은 평균 71,774천원이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평균 19.06%로 나타났다. 두 사항 모두 각 시설별로 편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이용시설은 평균 2.73점이었으며, 3개년간 사업비 수입은 평균 79,986천원이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평균 17.00%로 나타났다. 입소시설은 평균 2.50점이었으며, 3개년간 사업비 수입은 평균 139,051천원이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평균 41.75%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은 평균 2.53점이었으며, 3개년간 사업비 수입은 평균 29,020천원이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평균 16.06%로 나타났다. 병행시설은 평균 1.60점이었으며, 3개년간 사업비 수입은 평균 128,207천원이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평균 16.70%로 나타났다.<표Ⅱ-4-2-10> 참조).

<표 II-4-2-10>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업비 비율 9)시설의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전체	1.00	4.00	2.53	1.12	
	보조금(천원)	57,938	1,788,063	436,966	317,066	
	기능보강비(천원)	0	990,000	27,823	111,538	
	사업비(천원)	0	1,126,467	71,774	118,665	
	사업비비율	0.00	408.56	19.06	39.44	
	이	전체	1.00	4.00	2.73	1.08
	용	보조금(천원)	77,910	1,380,516	463,408	217,863
	시	기능보강비(천원)	0	359,794	17,430	62,086
	설	사업비(천원)	2,800	1,126,467	79,986	154,655
	사업비비율	2.03	277.65	17.00	33.03	
	소	전체	1.00	4.00	2.50	1.10
	시	보조금(천원)	381,625	1,788,063	901,550	407,323
	설	기능보강비(천원)	0	990,000	169,852	293,634
	사업비(천원)	12,180	358,340	139,051	97,895	
	사업비비율	2.15	408.56	41.75	98.27	
	주	전체	1.00	4.00	2.53	1.12
	거	보조금(천원)	57,938	771,007	198,663	91,404
	시	기능보강비(천원)	0	183,000	3,506	23,821
	설	사업비(천원)	0	213,418	29,020	29,156
	사업비비율	0.00	136.92	16.06	18.04	
병	전체	1.00	3.00	1.60	0.91	
행	보조금(천원)	404,019	1,630,346	750,058	334,875	
시	기능보강비(천원)	0	221,155	22,554	57,134	
설	사업비(천원)	30,382	433,568	128,207	97,491	
사업비비율	5.83	27.71	16.70	6.42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 $\frac{2008 \sim 2010 \text{ 사업비()원}}{2008 \sim 2010 \text{ 보조금 결산액()원} - \text{기능보강사업비()원}} \times 100$

10)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사회복지시설의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여부 및 내용 충실성, 운영철학 유무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시설의 운영철학은 시설의 목적 및 목표, 시설장의 비전 및 운영의 방향 등을 포함하며, 문서화되어 있어야 인정하였다. 지표에서의 구체성과 충실성은 시설의 이전 계획, 신축 또는 증·개축, 도색, 도배 등 회원의 편의를 위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인지를 확인하였다. 한

편, 중장기 사업계획은 최소 3년 이상의 계획을 의미하며, 현재 실천 중인 사업은 운영일지나 업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지표에서는 평균 3.43점의 점수를 보였으며, 우수(4) 113개소(69.33%), 양호(3) 21개소(12.88%), 보통(2) 15개소(9.2%), 미흡(1) 14개소(8.59%)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다. 이용시설은 우수(4)에 57개소(78.08%), 입소시설은 우수(4)에 11개소(68.75%), 주거시설은 33개소(55.93%), 병행시설은 우수(4)에 12개소(80.00%)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다(<표Ⅱ-4-2-11> 참조).

<표Ⅱ-4-2-11>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10)사업(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며 평가되는가?	전체	113 (69.33)	21 (12.88)	15 (9.20)	14 (8.59)	3.43 (0.97)
		이용시설	57 (78.08)	8 (10.96)	6 (8.22)	2 (2.74)	3.64 (0.75)
		입소시설	11 (68.75)	2 (12.50)	2 (12.50)	1 (6.25)	3.44 (0.96)
		주거시설	33 (55.93)	11 (18.64)	6 (10.17)	9 (15.25)	3.15 (1.13)
		병행시설	12 (80.00)	-	1 (6.67)	2 (13.33)	3.47 (1.13)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우수(4), 양호(3), 보통(2)의 3개 배점 범주로 평가됨.

※N=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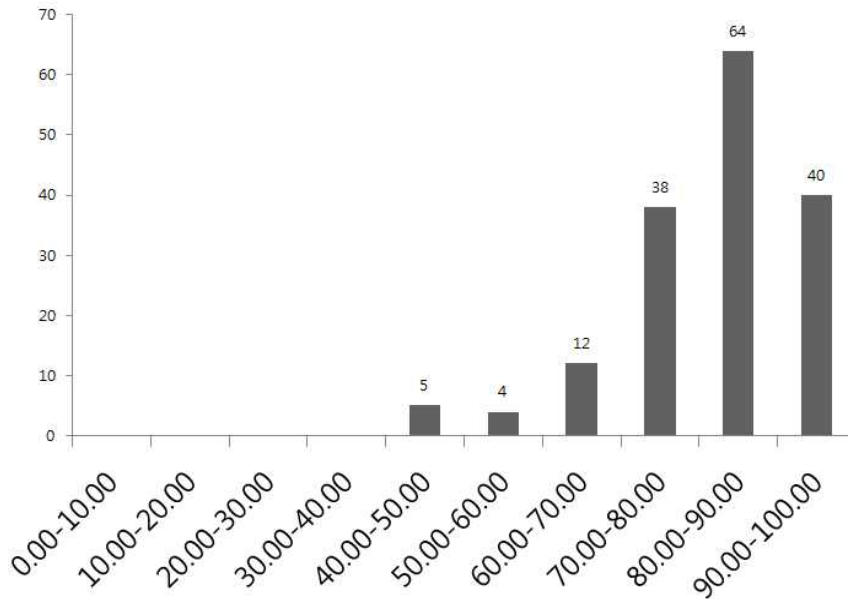
3. 인적자원관리(C)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평균 81.04(16.21)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 기술통계량은 <표Ⅱ-4-3-1>에 명시되었다.

<표Ⅱ-4-3-1>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163	44.44 (8.89)	98.61 (19.72)	81.04 (16.21)	11.12 (2.22)

사회복지시설의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과 90.00점이상~100.00점미만 구간에 각각 64개소, 40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64개소)이 분포되었다(<그림Ⅱ-4-3-1> 참조).



<그림Ⅱ-4-3-1> 인적자원관리(C) 영역 점수 분포

1) 직원 충원율

본 지표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총 1년 동안 직원의 충원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본 지표에서 의미하는 직원의 범위는 정규직과 계약직(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가 있는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이 가입된 자)으로 2010년 12월31일 현재 법정 직원(2008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인력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축타의 제외, 비상근 시설장 제외) 배치기준에 따른 현 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직종별 직원 수를 평가자료로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평균 3.96점을 받았는데, 최소점수는 2.00점, 최대점수는 4.00점으로 나타났다. 법정직원수는 평균 4.28명이었으며, 충원율은 평균 100.88%였다. 이용시설은 평균 3.96점이며, 법정직원수는 평균 4.28명, 충원율은 평균 100.88%였다. 입소시설은 평균 3.88점이며, 법정직원수는 평균 7.94명, 충원율은 평균 97.95%였다. 주거시설은 평균 4.00점이며, 법정직원수는 평균 1.93명, 충원율은 평균 105.20%였다. 병행시설은 평균 3.93점이며, 법정직원수는 평균 7.87명, 충원율은 평균 98.77%였다.(<표 II-4-3-2> 참조).

<표 II-4-3-2> 직원 충원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원 충원율	1)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은?	전체	2.00	4.00	3.96	0.22	
		월평균직원수(명)	1.00	18.00	4.27	2.86	
		법정직원수(명)	1.00	16.00	4.28	2.72	
		충원율(%)	47.50	200.00	100.88	18.20	
		이용시설	전체	3.00	4.00	3.96	0.20
		월평균직원수(명)	2.00	16.00	4.57	1.93	
		법정직원수(명)	2.00	12.00	4.63	1.59	
		충원율(%)	50.00	166.67	98.46	17.27	
		입소시설	전체	2.00	4.00	3.88	0.50
		월평균직원수(명)	3.80	15.00	7.78	3.32	
		법정직원수(명)	4.00	15.00	7.94	3.04	
		충원율(%)	47.50	127.14	97.95	18.32	
		주거시설	전체	4.00	4.00	4.00	0.00
		월평균직원수(명)	1.00	4.00	2.02	0.50	
		법정직원수(명)	1.00	3.00	1.93	0.41	
		충원율(%)	91.67	200.00	105.20	20.21	
병행시설	전체	3.00	4.00	3.93	0.26		
월평균직원수(명)	5.00	18.00	7.87	3.54			
법정직원수(명)	5.00	16.00	7.87	3.00			
충원율(%)	71.43	114.29	98.77	11.16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매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직원 충원율= $\frac{2010\text{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2010.12.31\ \text{현재 법정 직원 수}} \times 100$

2)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본 지표는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자격증 사본을 확인하였고,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격증의 범위는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을 인정하였고, 또한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 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재학생은 제외하였다. 단, 직무관련 복수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하였다.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지원 직원과 자부담 직원을 모두 포함하였다.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으로 평균 3.88점이었고, 자격증소지 직원은 평균 3.97명, 자격증소지 비율은 평균 93.15%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용시설은 평균 3.96%를 보였으며, 자격증소지 직원은 평균 4.47명, 자격증소지 비율은 평균 97.6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입소시설은 평균 4.00%를 보였으며, 자격증소지 직원은 평균 6.88명, 자격증소지 비율은 평균 90.31%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거시설은 평균 3.76%를 보였으며, 자격증소지 직원은 평균 1.81명, 자격증소지 비율은 평균 89.51%를 보였다. 병행시설은 평균 3.87%를 보였으며, 자격증소지 직원은 평균 6.93명, 자격증소지 비율은 평균 88.50%를 보였다(<표Ⅱ-4-3-3> 참조).

<표 II-4-3-3>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2)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전체	1.00	4.00	3.88	0.39
		자격증소지 직원수(명)	0.00	16.00	3.97	2.64
		월평균직원수(명)	1.00	18.00	4.27	2.86
		자격증소지직원비율(%)	0.00	133.33	93.15	17.28
	이용시설	전체	2.00	4.00	3.96	0.26
		자격증소지 직원수(명)	1.00	16.00	4.47	1.97
		월평균직원수(명)	2.00	16.00	4.57	1.93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33.33	133.33	97.67	11.40
	입소시설	전체	4.00	4.00	4.00	0.00
		자격증소지 직원수(명)	3.00	14.00	6.88	2.78
		월평균직원수(명)	3.80	15.00	7.78	3.32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75.00	131.58	90.31	13.58
	주거시설	전체	1.00	4.00	3.76	0.54
		자격증소지 직원수(명)	0.00	3.00	1.81	0.63
		월평균직원수(명)	1.00	4.00	2.02	0.50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0.00	130.43	89.51	23.21
병행시설	전체	3.00	4.00	3.87	0.35	
	자격증소지 직원수(명)	3.00	16.00	6.93	3.24	
	월평균직원수(명)	5.00	18.00	7.87	3.54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60.00	100.00	88.50	12.83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매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frac{2010.12.31 \text{ 현재 자격증소지 직원수}}{2010년 \text{ 월 평균 확보 직원수}} \times 100$

3) 직원 이(퇴)직률

본 지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총 3년 동안 직원의 이(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본 지표에서 의미하는 이(퇴)직)자의 범위 중 이(퇴)직 사유가 본인의 사망, 동일 법인 내 인사 발령, 정

년퇴직에 의한 것은 제외하였고, 재입사의 경우는 퇴직시기가 평가기간 중이면 이(퇴)직 직원 수에 산정하였다. 다만, 유학, 결혼으로 인한 지자체 행정구역 외 이사로 인하여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였으나, 반드시 그 근거가 확인될 수 있어야 적용하였다.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 포함 정부지원 직원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되, 수습직원, 임시직, 파트직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지표의 근거서류는 해당기간(12분기) 시·군·구에 보고한 종사자 현황 자료와 해당기간(12분기) 종사자 명단(월급명세서 등 참조), 종사자관리카드 명단, 급여(임금)대장, 인사관리카드, 발령(임명)장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인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평균 2.38점을 받았는데, 최소점수는 1.00점, 최대점수는 4.00점으로 나타났다. 이(퇴)직 직원은 평균 2.53명, 이(퇴)직률은 평균 63.60%였다. 이용시설은 평균 2.40점에 이(퇴)직 직원은 평균 2.56명, 이(퇴)직률은 평균 58.35%였다. 입소시설은 평균 2.00점에 이(퇴)직 직원은 평균 5.31명, 이(퇴)직률은 평균 71.19%였다. 주거시설은 평균 2.41점에 이(퇴)직 직원은 평균 1.36명, 이(퇴)직률은 평균 70.73%였다. 병행시설은 평균 2.60점에 이(퇴)직 직원은 평균 4.07명, 이(퇴)직률은 평균 52.98%였다 (<표II-4-3-4> 참조).

<표II-4-3-4> 직원 이(퇴)직률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	2)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전체	1.00	4.00	2.38	1.19	
		이(퇴)직 직원수(명)	0.00	14.00	2.53	2.55	
		월평균직원수(명)	1.00	18.00	4.27	2.86	
		직원 이(퇴)직률(%)	0.00	300.00	63.60	61.04	
		전체	1.00	4.00	2.40	1.13	
		이용 시설	이(퇴)직 직원수(명)	0.00	12.00	2.56	2.30
		월평균직원수(명)	2.00	16.00	4.57	1.93	
		직원 이(퇴)직률(%)	0.00	200.00	58.35	48.05	
		전체	1.00	4.00	2.00	1.03	
		입소 시설	이(퇴)직 직원수(명)	0.00	14.00	5.31	3.50
		월평균직원수(명)	3.80	15.00	7.78	3.32	
		직원 이(퇴)직률(%)	0.00	150.00	71.19	43.29	
		전체	1.00	4.00	2.41	1.33	
		주거 시설	이(퇴)직 직원수(명)	0.00	5.00	1.36	1.54
		월평균직원수(명)	1.00	4.00	2.02	0.50	
직원 이(퇴)직률(%)	0.00	300.00	70.73	81.48			

	전체	1.00	4.00	2.60	1.12
병행	이(퇴)직 직원수(명)	0.00	11.00	4.07	2.81
시설	월평균직원수(명)	5.00	18.00	7.87	3.54
	직원 이(퇴)직율(%)	0.00	140.00	52.98	34.35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71

※산출식: 직원 이(퇴)직율= $\frac{2008.1.1 \sim 2010.12.31 \text{ 이(퇴)직한 직원수}}{2010년 \text{ 월 평균 확보 직원수}} \times 100$

4) 외부교육 참여시간

사회복지 이용시설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외부교육이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의미한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수교육만 인정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 당 10시간을 인정하였고, 휴학 중일 경우 제외하였다. 또한, 해외연수 중의 기관견학은 방문기관 당 3시간 인정하였으며,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한편, 수료중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중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으로 기준을 삼았다. 본 사항에서는 1인당 최대 60시간 한도만 인정하였다. 본 지표는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는데, 사회복지 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평균 2.14점의 점수를 받았다. 전체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163.82시간이었고,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38.64시간,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은 평균 6.2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은 평균 2.32점으로,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177.42시간이었고,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39.03시간,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은 평균 8.93시간으로 나타났다. 입소시설은 평균 1.97점으로,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248.50시간이었고,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32.07시간,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은 평균 8.7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은 평균 1.92점으로,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72.66시간

이었고,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37.77시간,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은 평균 1.67시간으로 나타났다. 병행시설은 평균 2.33점으로,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365.87시간이었고,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47.21시간,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은 평균 8.26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I-4-3-5> 참조).

<표 II-4-3-5> 외부교육 참여시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원 외부교육 참여시간	4)연간 직원 1인당 교육에 참여한 평균시간은?	전체	1.00	4.00	2.14	0.84	
		직원의 외부교육참여시간	0.00	1,108.00	163.82	151.92	
		1인당 외부교육참여시간	0.00	101.00	38.64	20.09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	0.00	72.00	6.22	12.77	
		월평균 직원수(명)	1.00	18.00	4.27	2.86	
		이용 시설	전체	1.00	4.00	2.32	0.86
		직원의 외부교육참여시간	0.00	798.50	177.42	115.21	
		1인당 외부교육참여시간	0.00	79.75	39.03	17.48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	0.00	72.00	8.93	15.38	
		월평균 직원수(명)	2.00	16.00	4.57	1.93	
		입소 시설	전체	1.00	4.00	1.97	1.10
		직원의 외부교육참여시간	0.00	569.00	248.50	169.18	
		1인당 외부교육참여시간	0.00	90.40	32.07	22.79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	0.00	41.00	8.76	14.13	
		월평균 직원수(명)	3.80	15.00	7.78	3.32	
		주거 시설	전체	1.00	3.50	1.92	0.72
직원의 외부교육참여시간	16.00	179.83	72.66	37.82			
1인당 외부교육참여시간	5.33	101.00	37.77	20.08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	0.00	20.00	1.67	3.83			
월평균 직원수(명)	1.00	4.00	2.02	0.50			
병행 시설	전체	1.00	3.50	2.33	0.70		
직원의 외부교육참여시간	36.50	1,108.00	365.87	272.53			
1인당 외부교육참여시간	7.30	96.00	47.21	27.24			
외부강사초청교육시간	0.00	62.00	8.26	16.02			
월평균 직원수(명)	5.00	18.00	7.87	3.54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 $\frac{2010\text{년 외부강사초청 교육시간}}{2010\text{년 월 평균 확보 직원수}}$

※산출식: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 $\frac{2010\text{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2010\text{년 월 평균 확보 직원수}}$

5) 교육활동비

지표에서 의미하는 교육비란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박비, 회비, 교재비 등)을 지칭한다. 단,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았다. 내부교육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내부문서와 강사로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지원 직원과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본 지표에 대한 결과는 4점 만점에 평균 2.53점의 점수로 나타났다. 내부교육활동비는 평균 198천원, 외부교육활동비는 평균 853천원이었으며,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221천원이었다. 이용시설은 평균 2.56점에, 1인당 평균교육비는 294천원이었다. 입소시설은 평균 2.44점에, 1인당 평균교육비는 226천원이었다. 주거시설은 평균 2.53점에, 1인당 평균교육비는 131천원이었다. 병행시설은 평균 2.47점에, 1인당 평균교육비는 213천원이었다(<표 II-4-3-6> 참조).

<표 II-4-3-6> 교육활동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	4.00	2.53	1.12
내부 교육활동비(천원)			0	3,950	198	530
외부 교육활동비(천원)			0	9,827	853	1,228
1인당 평균교육비(천원)			0	1,255	221	222
월평균 직원수(명)			1.00	18.00	4.27	2.86
5년간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교육 활동비	이용 시설	전체	1.00	4.00	2.56	1.15
		내부 교육활동비(천원)	0	3,950	266	636
		외부 교육활동비(천원)	0	9,827	1,127	1,437
		1인당 평균교육비(천원)	0	1,255	294	262
		월평균 직원수(명)	2.00	16.00	4.57	1.93
		전체	1.00	4.00	2.44	1.03
	입소 시설	내부 교육활동비(천원)	0	1,407	283	463
		외부 교육활동비(천원)	0	6,117	1,704	1,644
		1인당 평균교육비(천원)	0	595	226	167
		월평균 직원수(명)	3.80	15.00	7.78	3.32
	주거 시설	전체	1.00	4.00	2.53	1.12
		내부 교육활동비(천원)	0	650	34	144
외부 교육활동비(천원)		0	1,500	224	269	

	1인당 평균교육비(천원)	0	750	131	161
	월평균 직원수(명)	1.00	4.00	2.02	0.50
	전체	1.00	4.00	2.47	1.13
병행 시설	내부 교육활동비(천원)	0	2,747	423	811
	외부 교육활동비(천원)	0	2,600	1,088	840
	1인당 평균교육비(천원)	29	502	213	138
	월평균 직원수(명)	5.00	18.00	7.87	3.54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frac{2010\text{년 전체 직원의 내부교육활동비} + \text{외부교육활동비}}{2010\text{년 월 평균 확보 직원수}}$

6) 직원채용의 공정성

본 지표는 직원의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평가에 있어 최근 3년간 채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점수를 인정하였다. 4점 만점 중에 평균 3.82점이었고, 우수(4), 양호(3), 보통(2)에 각각 136개소(83.44%), 25개소(15.34%), 2개소(1.23%)의 시설이 해당되었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82점, 3.88점, 3.78점, 3.93점으로 병행시설이 직원채용의 공정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표Ⅱ-4-3-7> 참조).

<표Ⅱ-4-3-7> 직원채용의 공정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전체	136 (83.44)	25 (15.34)	2 (1.23)	-	3.82(0.41)
이용시설	62 (84.9)	9 (12.3)	2 (2.70)	-	3.82 (0.45)
입소시설	14 (87.50)	2 (12.50)	-	-	3.88 (0.34)
주거시설	46 (78.00)	13 (22.00)	-	-	3.78 (0.42)
병행시설	14 (93.30)	1 (6.70)	-	-	3.93 (0.2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7) 직원(신입) 교육

신입직원 교육지침, 교육자료, 신입직원 교육계획서(직원들의 교육희망 욕구 및 연차별 필요한 교육에 따라 당해 연도 실시예정인 직원교육계획서를 의미), 교육보고서, 회의록, 민간자격증 등 관련문서를 통해 신입직원의 교육 여부를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시설들은 평균 3.56점이었고, 각 시설들은 우수(4) 121개소(74.23%), 양호(3) 24개소(14.72%), 보통(2) 7개소(4.29%), 미흡(1) 11개소(6.75%)의 분포를 보였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71점, 3.38점, 3.41점, 3.67점으로 이용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II-4-3-8> 참조).

<표II-4-3-8> 직원(신입) 교육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직원(신입) 교육	7)직원(신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121 (74.23)	24 (14.72)	7 (4.29)	11 (6.75)	3.56(0.86)
	이용시설	61 (83.56)	6 (8.22)	3 (4.11)	3 (4.11)	3.71 (0.74)
	입소시설	11 (68.75)	2 (12.50)	1 (6.25)	2 (12.50)	3.38 (1.09)
	주거시설	37 (62.71)	14 (23.73)	3 (5.08)	5 (8.47)	3.41 (0.93)
	병행시설	12 (80.00)	2 (13.33)	-	1 (6.67)	3.67 (0.8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8) 슈퍼비전

이 지표는 직원에 대한 슈퍼비전의 활용여부 및 체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슈퍼비전 지침이란 슈퍼비전 대상, 슈퍼바이저 자격, 슈퍼비전 제공 시기, 집단·개별 슈퍼비전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내부결재에 의해 마련된 지침을 지칭한다. 슈퍼바이저가 소지한 전문자격증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법적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가 해당된다. 지

표에서의 정기적 여부의 범위는 시설 자체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회의, 부서 회의, 팀별 회의, 개별 면담 등을 근거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면 정기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업무일지, 전체(부서)회의록, 개별 면담일지, 내부기안 등 관련 서류 등을 보고 확인하되, 단순 업무내용이나 회의안건 중심 등으로 기록되어 슈퍼비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록이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53점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우수(4) 12개소(73.62%), 양호(3) 21개소(12.88%), 보통(2) 11개소(6.75%), 미흡(1) 11개소(6.7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75점, 3.50점, 3.25점, 3.60점으로 이용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Ⅱ-4-3-9> 참조).

<표Ⅱ-4-3-9> 슈퍼비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120 (73.62)	21 (12.88)	11 (6.75)	11 (6.75)	3.53(0.89)
직원대상 슈퍼비전	8)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이용시설 60 (82.19)	10 (13.70)	1 (1.37)	2 (2.74)	3.75 (0.62)
	입소시설	12 (75.00)	-	4 (25.00)	-	3.50 (0.89)
	주거시설	36 (61.02)	10 (16.95)	5 (8.47)	8 (13.56)	3.25 (1.09)
	병행시설	12 (80.00)	1 (6.67)	1 (6.67)	1 (6.67)	3.60 (0.91)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9) 직원복리후생제도

본 지표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마련 및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규정된 휴가란, 근로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자체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포상제도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에 부상이 주어지는 경우만을 인정한다. 기타에는 직원상조회, 자녀 장학금 제도, 경조사비 지급, 안식년(월), 해외연수, 성과급, 직원을 위한 도서구입(연 1회이상) 등 직원 복리후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하나로 인정하였다. 평균 3.36점으로 나타났다고,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99개소(60.74%), 양호(3) 33개소(20.25%), 보통(2) 21개소(12.88%), 미흡(1) 10개소(6.13%)로 나타났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37점, 3.44점, 3.24점, 3.67점을 획득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Ⅱ-4-3-10> 참조).

<표Ⅱ-4-3-10> 직원 후생복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99 (60.74)	33 (20.25)	21 (12.88)	10 (6.13)	3.36(0.93)
이용시설	46 (63.01)	13 (17.81)	9 (12.33)	5 (6.85)	3.37 (0.95)
직원복리후 생제도 9)직원복리후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가?	10 (62.50)	3 (18.75)	3 (18.75)	- (0.81)	3.44 (0.81)
입소시설	31 (52.54)	15 (25.42)	9 (15.25)	4 (6.78)	3.24 (0.95)
주거시설	12 (80.00)	2 (13.33)		1 (6.67)	3.67 (0.82)
병행시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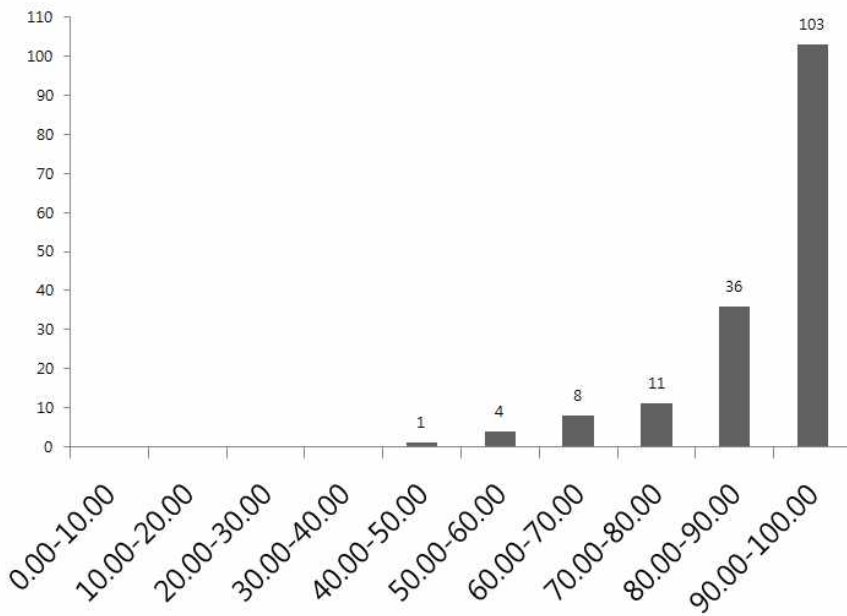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이용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100점으로 표준화한 경우 평균 88.85(26.65)점이었다. <표Ⅱ-4-4-1>을 통해 각 지역별 점수를 제시하였다(<표Ⅱ-4-4-1> 참조).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전체 163개 시설 중 가장 많은 103개소가 90.00점이상~100.00점에 분포하였고, 다음으로는 36개소가 80.00점이상~90.00점미만에 분포하였다(<그림Ⅱ-4-4-1> 참조).

<표 II-4-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163	41.67 (12.50)	100.00 (30.00)	88.85 (26.65)	10.77 (3.23)



<그림 II-4-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점수 분포

1) 재활 프로그램의 질

본 지표는 평가기간이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1년 간으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재활활동(사회기술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스트레스관리훈련(긴장이완훈련), 약물 및 증상관리 훈련, 여가활동훈련, 작업훈련 등)중에서 3개 이상 실시되고 있는지 재활프로그램별 기록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재활프로그램별 운영기록지를 통해 재활프로그램 내에서 회원들의 개별화

육구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프로그램 과정 기록 여부를 통해 확인 하였다. 또한 연간 혹은 분기별 사업평가 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평가보고서를 확인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 계획서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평가자료로는 재활프로그램 운영기록지를 통해 평가하였다. 전체 평균 3.69점에,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128개소(78.53%), 양호(3) 25개소(15.34%), 보통(2) 5개소(3.07%), 미흡(1) 5개소(3.07%)로 나타났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77점, 3.69점, 3.56점, 3.87점을 획득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Ⅱ-4-4-2> 참조).

<표Ⅱ-4-4-2> 프로그램의 질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128 (78.53)	25 (15.34)	5 (3.07)	5 (3.07)	3.69(0.68)
재활프로그램의 질	1)회원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용시설 62 (84.93)	7 (9.59)	2 (2.74)	2 (2.74)	3.77 (0.64)
	입소시설	11 (68.75)	5 (31.25)	-	-	3.69 (0.48)
	주거시설	42 (71.19)	11 (18.64)	3 (5.08)	1	3.56 (0.82)
	병행시설	13 (86.67)	2 (13.33)	-	-	3.87 (0.3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2)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회원개인기록(차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기록지 등을 통해 시설이 개별회원의 변화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재활활동(사회기술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스트레스관리훈련(긴장이완훈련), 약물 및 증상관리 훈련, 여가활동훈련, 작업훈련 등)중에서 3개 이상의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기록을 인정하였으며, 개별회원의 재활계획과 실행에 따른 담당직원의 평가기록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유여부는 회원개인별 재활계획에서 회원의 서명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주거시설의 경

우 주거시설 회원이 낮 시간에 이용시설에 가서 참여한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평균 3.41점을 획득하였고, 각 배점 등급에 따라서는 우수(4) 109개소(66.87%), 양호(3) 28개소(17.18%), 보통(2) 10개소(6.13%), 미흡(1) 16개소(9.82%)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53점, 3.31점, 3.24점, 3.60점을 획득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Ⅱ-4-4-3> 참조).

<표Ⅱ-4-4-3>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109 (66.87)	28 (17.18)	10 (6.13)	16 (9.82)	3.41(0.98)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2) 개별회원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이용시설	53 (72.60)	12 (16.44)	2 (2.74)	6 (8.22)	3.53 (0.90)
	입소시설	10 (62.50)	3 (18.75)	1 (6.25)	2 (12.50)	3.31 (1.08)	
	주거시설	35 (59.32)	11 (18.64)	5 (8.47)	8 (13.56)	3.24 (1.09)	
	병행시설	11 (73.33)	2 (13.33)	2 (13.33)	-	3.60 (0.7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3) 주치의와의 협조

정보제공관련 서류, 회원개인기록(차트), 프로그램 운영일지, 주치의 의뢰(활동) 보고서, 사례검토회의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주치의와의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82점이었으며,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142개소(87.12%), 13개소(7.98%), 7개소(4.29%), 1개소(0.61%)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79점, 4.00점, 3.75점, 4.00점을 획득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Ⅱ-4-4-5> 참조).

<표Ⅱ-4-4> 주치의와의 협조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주치의와의 3)회원에 관하여 주치의와 협조 얼마나 협조하는가?	전체	142 (87.12)	13 (7.98)	7 (4.29)	1 (0.61)	3.82 (0.52)
	이용시설	62 (84.93)	7 (9.59)	4 (5.48)	-	3.79 (0.53)
	입소시설	16 (100.00)	-	-	-	4.00 (0.00)
	주거시설	49 (83.05)	6 (10.17)	3 (5.08)	1 (1.69)	3.75 (0.63)
	병행시설	15 (100.00)	-	-	-	4.00 (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4) 가족교육 및 모임

시설에서 회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증빙자료로는 가족교육일지 및 관련 기록지를 활용하였다. 전체 평균 3.77점에 우수(4) 136개소(83.44%), 양호(3) 19개소(11.66%), 보통(2) 5개소(3.07%), 미흡(1) 3개소(1.84%)의 시설 분포를 보였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90점, 3.50점, 3.61점, 4.00점을 획득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Ⅱ-4-4-5> 참조).

<표Ⅱ-4-4-5> 가족교육 및 모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가족교육 및 모임 4)가족교육 및 모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전체	136 (83.44)	19 (11.66)	5 (3.07)	3 (1.84)	3.77(0.59)
	이용시설	66 (90.41)	7 (9.59)	-	-	3.90 (0.30)
	입소시설	11 (68.75)	2 (12.50)	3 (18.75)	-	3.50 (0.82)
	주거시설	44 (74.58)	10 (16.95)	2 (3.39)	3 (5.08)	3.61 (0.79)
	병행시설	15 (100.00)	-	-	-	4.00 (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5)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회원에 대한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지표로써, 조사결과는 반드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조사와 함께 실시하였어도 인정하였다. 평가 자료는 욕구조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만족도조사보고서 등 관련서류가 활용되었다. 평균 3.40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111개소(68.10%), 20개소(12.27%), 18개소(11.04%), 14개소(8.59%)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62점, 3.56점, 2.98점, 3.80점을 보이고 있다(<표Ⅱ-4-4-6> 참조).

<표Ⅱ-4-4-6>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5)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전체	111 (68.10)	20 (12.27)	18 (11.04)	14 (8.59)	3.40(0.99)
	이용시설	58 (79.45)	7 (9.59)	3 (4.11)	5 (6.85)	3.62 (0.86)	
	입소시설	12 (75.00)	2 (12.50)	1 (6.25)	1 (6.25)	3.56 (0.89)	
	주거시설	29 (49.15)	8 (13.56)	14 (23.73)	8 (13.56)	2.98 (1.14)	
	병행시설	12 (80.00)	3 (20.00)	-	-	3.80 (0.41)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6) 시설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본 지표는 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내용이다. 평가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1년으로 하되,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월평균 이용인원대장, 등록회원 대장, 수급자 증명서류, 수급자 지원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평가에 임하였다. 본 지표는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로써, 4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나타났다. 각 사항별 기술통계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전체 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인원은 평균 19.49명이었고, 시설 정원은 평균 28.80명임에 따라 수급권자 비율은 평균 72.90%로 조사되었다. 이용시설은 전체 평균 3.66점에 수급자 실인원 평균 23.28명, 시설 정원 평균 38.00명, 수급권자 비율이 63.46%를 보였다. 입소시설은 전체 평균 3.94점에 수급자 실인원 평균 25.88명, 시설 정원 평균 31.69명, 수급권자 비율이 81.90%를 보였다. 주거시설은 전체 평균 3.83점에 수급자 실인원 평균 7.17명, 시설 정원 평균 8.69명, 수급권자 비율이 80.94%를 보였다. 병행시설은 전체 평균 3.93점에 수급자 실인원 평균 42.67명, 시설 정원 평균 60.00명, 수급권자 비율이 77.58%를 보였다(<표 II-4-4-7> 참조).

<표 II-4-4-7>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0	4.00	3.50	0.71	
	수급자 실인원(명)	0.00	158.00	19.49	19.87	
	시설 정원(명)	5.00	140.00	28.80	23.36	
	수급자비율(%)	0.00	910.00	72.90	78.51	
6)시설은 이용(입소)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율 이용(입소)하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이용시설	전체	1.00	4.00	3.66	0.82
		수급자 실인원(명)	0.00	158.00	23.28	20.22
		시설 정원(명)	12.00	120.00	38.00	18.45
		수급자비율(%)	0.00	451.43	63.46	54.09
	입소시설	전체	3.00	4.00	3.94	0.25
		수급자 총합(명)	5.00	56.00	25.88	13.18
		시설 정원(명)	15.00	50.00	31.69	13.37
		수급자비율(%)	33.33	140.00	81.90	30.22
	주거시설	전체	1.00	4.00	3.83	0.56
		수급자 총합(명)	1.00	91.00	7.17	11.41
		시설 정원(명)	5.00	10.00	8.69	1.65
		수급자비율(%)	12.50	910.00	80.94	113.70
병행시설	전체	3.00	4.00	3.93	0.26	
	수급자 총합(명)	13.00	83.00	42.67	20.04	
	시설 정원(명)	20.00	140.00	60.00	34.11	
	수급자비율(%)	30.71	128.57	77.58	29.88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1): 월평균 수급권자= $\frac{\text{최근 1년간 등록된 수급권자 실인원}}{\text{시설 정원}}$

7) 시설 이용(입소)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시설 이용(입소)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평가 자료로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인원 현황표, 이용(입소)인 대장 등 관련서류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으며, 전체 평균 3.81점에, 입원한 회원수가 평균 3.67명, 지역생활 유지율이 평균 89.30%로 분포하였다. 이용시설은 평균 3.78점에, 입원한 회원수가 평균 4.82명, 지역생활 유지율이 평균 90.02%로 분포하였다. 입소시설은 평균 3.81점에, 입원한 회원수가 평균 5.00명, 지역생활 유지율이 평균 89.40%로 분포하였다. 주거시설은 평균 3.85점에, 입원한 회원수가 평균 1.17명, 지역생활 유지율이 평균 88.18%로 분포하였다. 병행시설은 평균 3.80점에, 입원한 회원수가 평균 6.47명, 지역생활 유지율이 평균 90.12%로 분포하였다(<표Ⅱ-4-4-8> 참조).

<표Ⅱ-4-4-8> 시설 이용(입소)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시설 이용(입 소)자의 지역사회 생활 유지율	7)시설 이용(입소)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어떠한가?	전체	1.00	4.00	3.81	0.66	
		등록실인원	3.00	210.00	41.25	34.95	
		입원한 회원수(명)	0.00	26.00	3.67	4.19	
		지역생활 유지율(%)	0.00	100.00	89.30	14.62	
		이용 시설	전체	1.00	4.00	3.78	0.73
			등록실인원	15.00	154.00	56.21	30.17
			입원한 회원수(명)	0.00	26.00	4.82	4.81
		입소 시설	지역생활 유지율(%)	14.29	100.00	90.02	11.49
			전체	2.00	4.00	3.81	0.54
			등록실인원	15.00	83.00	45.81	21.31
		주거 시설	입원한 회원수(명)	0.00	11.00	5.00	3.37
			지역생활 유지율(%)	72.00	100.00	89.40	7.40
			전체	1.00	4.00	3.85	0.58
		병행 시설	등록실인원	3.00	99.00	11.83	12.07
			입원한 회원수(명)	0.00	8.00	1.17	1.72
			지역생활 유지율(%)	0.00	100.00	88.18	20.00
			전체	1.00	4.00	3.80	0.77
			등록실인원	32.00	210.00	79.33	44.44
입원한 회원수(명)	0.00		14.00	6.47	4.07		
		지역생활 유지율(%)	65.85	100.00	90.12	8.4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 산출식: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 $\frac{\text{최근 1년간 등록실인원} - \text{입원한 회원수}}{\text{최근 1년간 등록실인원}} \times 100$

8) 자치활동

프로그램 기록지, 회의록 등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회원이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132개소(80.98%), 양호(3) 18개소(11.04%), 보통(2) 8개소(4.91%), 미흡(1) 5개소(3.07%)로 각각 분포하였다. 또한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은 각각 평균 3.79점, 3.81점, 3.47점, 4.00점으로 병행시설 회원의 자치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표Ⅱ-4-4-9> 참조).

<표Ⅱ-4-4-9> 자치활동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132 (80.98)	18 (11.04)	8 (4.91)	5 (3.07)	3.70(0.70)
자치활동	8)시설은 회원들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하고 있는가?	이용시설 62 (84.93)	7 (9.59)	4 (5.48)	-	3.79 (0.53)
	입소시설	14 (87.50)	1 (6.25)	1 (6.25)	-	3.81 (0.54)
	주거시설	41 (69.49)	10 (16.95)	3 (5.08)	5 (8.47)	3.47 (0.94)
	병행시설	15 (100.00)	-	-	-	4.00 (0.00)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163

9) 사회복지 시설의 성과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 8일 이상 혹은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업(임시취업, 독립취업, 지원고용, 외부공동작업장 포함)을 유지하고 있는 등

록회원의 수를 통해 취업자 비율을 평가하였다. 최저임금(가)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취업자로 인정하되, 학교 복귀도 함께 인정하였다. 전체 사회복지 시설의 성과의 평균은 2.55점이다. 이용시설은 평균은 2.50점이었고, 취업회원 비율은 22.33%였다. 입소시설은 평균은 2.66점이었고, 취업회원비율은 36.74%, 사회복지회원비율은 27.28%였다. 주거시설은 평균은 2.73점이었고, 사회복지회원비율은 64.27%였다. 병행시설은 평균은 2.63점이었다(<표Ⅱ-4-4-10> 참조).

<표Ⅱ-4-4-10> 사회복지 시설의 성과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	4.00	2.55	1.12	
9)지난 1년 동안 취업 회원의 비율은?	전체	1.00	4.00	2.50	1.13	
	이용 시설	취업유지회원수(명)	0.00	443.00	17.16	53.15
	등록실인원(명)	15.00	720.00	64.68	83.40	
	취업회원비율(%)	0.00	357.26	22.33	41.44	
9)지난 1년 동안 사회복지 회원의 비율은?	전체	1.00	4.00	2.66	0.77	
	입소 시설	취업유지회원수(명)	0.00	199.00	18.70	48.56
	등록실인원(명)	15.00	83.00	45.81	21.31	
	사회복지 회원수(명)	0.00	40.00	13.75	11.70	
	취업회원비율(%)	0.00	355.36	36.74	86.59	
사회복지 시설의 성과	사회복지 회원비율(%)	0.00	61.90	27.28	19.21	
9)지난 1년 동안 취업 및 사회복지 회원의 비율은?	전체	1.00	4.00	2.73	1.13	
	주거 시설	사회복지회원수(명)	0.00	8.00	3.03	2.22
	퇴소회원수(명)	0.00	17.00	4.39	3.36	
	사회복지회원비율(%)	0.00	150.00	64.27	37.94	
9)지난 1년 동안 취업 회원의 비율은?	전체	1.90	3.70	2.63	0.50	
	병행-입소 사회복지회원수	2.00	29.00	9.33	7.31	
	병행-입소 등록실인원	10.00	75.00	29.73	18.26	
	병행-입소 월평균취업유지회원 수	1.00	38.00	9.27	10.65	
	병행-이용 월평균취업유지회원 수	0.00	102.00	14.73	26.64	

7)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병행-이용) 등록실인원	0.00	152.00	48.13	35.52
사회복지회원수(입소)	10.00	60.00	31.71	15.55
취업유지회원수(입소)	5.00	200.00	35.94	48.70
취업유지회원수(이용)	0.00	188.00	28.96	47.24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이용(N=73), 입소(N=16), 주거(N=59), 병행(N=15)

※산출식:	사회복지시설의성과 (이용시설)=	$\frac{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월평균 취업유지회원 수()명}}{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등록실인원}}$	x 100
※산출식:	사회복지시설의성과 (주거시설)=	$\frac{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사회복지 회원 수()명}}{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퇴소 회원 수}}$	x 100
※산출식:	사회복지시설의성과 (입소시설)=	$\frac{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월평균 사회복지회원 수()명}}{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등록실인원}}$	x 100
※산출식:	사회복지시설의성과 (병행시설)=	$\frac{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월평균 취업유지회원 수()명}}{2010년1월1일 \sim 12월31일 \text{ 등록실인원}}$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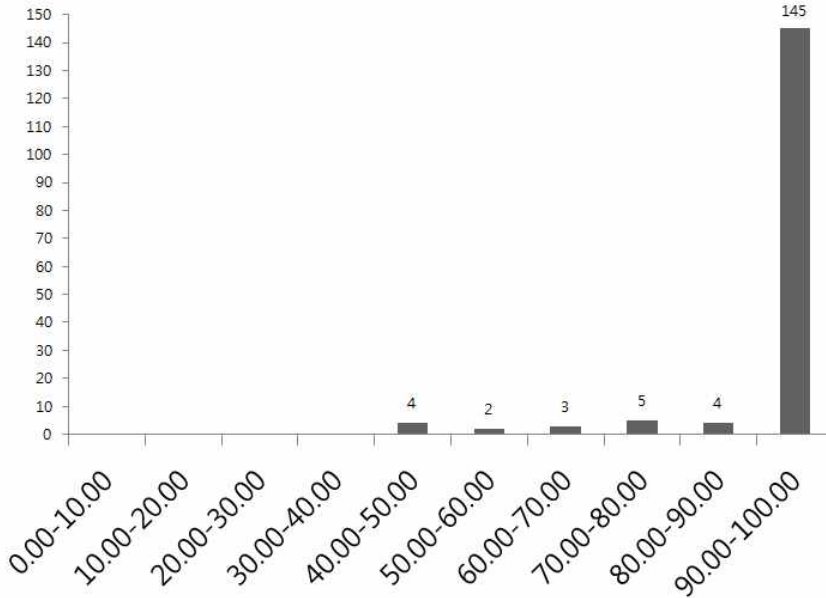
5. 회원의 권리(E)

‘회원의 권리(E)’는 10.00점 배점으로 구성되었다. 이용시설들은 본 영역에서 100점 표준화 기준으로 평균 95.09(9.51)점이었다(<표 II-4-5-1> 참조).

<표 II-4-5-1> 회원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163	41.67 (4.17)	100.00 (10.00)	95.09 (9.51)	11.06 (1.11)

사회복지시설의 ‘회원의 권리(E)’ 영역은 총 163개 시설 중 145개 시설이 90.00점 이상~100.00점에 분포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영역이었다(<그림 II-4-5-1> 참조).



<그림II-4-5-1> 회원의 권리(E) 영역 점수 분포

1) 회원의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본 사항은 시설에서 준수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의 수준과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규정이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하였으며, 개인정보나 기록 역시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고,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142개소(87.12%), 양호(3) 17개소(10.43%), 보통(2) 2개소(1.23%), 미흡(1) 2개소(1.23%)의 분포를 보였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89점, 3.81점, 3.75점, 3.93점으로 병행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II-4-5-2> 참조).

<표Ⅱ-4-5-2> 회원의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142 (87.12)	17 (10.43)	2 (1.23)	2 (1.23)	3.83(0.49)	
회원의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이용시설	66 (90.41)	6 (8.22)	1 (1.37)	-	3.89 (0.36)
1)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입소시설	15 (93.75)	-	-	1 (6.25)	3.81 (0.75)
	주거시설	47 (79.66)	10 (16.95)	1 (1.69)	1 (1.69)	3.75 (0.58)
	병행시설	14 (93.33)	1 (6.67)	-	-	3.93 (0.2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2) 서비스 정보제공 및 회원의 자기결정권

본 평가지표는 회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평가자료로 안내책자, 및 사업리플렛, 업무분장표, 시설방문 상담일지, 적응기간회원일지 등 관련자료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4점 만점에 평균 3.79점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우수(4)에 134개소(82.21%), 양호(3)에 24개소(14.72%), 보통(2)에 5개소(3.07%)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88점, 3.69점, 3.66점, 4.00점으로 병행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Ⅱ-4-5-3> 참조).

<표Ⅱ-4-5-3> 서비스 정보제공 및 회원의 자기결정권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134 (82.21)	24 (14.72)	5 (3.07)	-	3.79(0.48)
서비스 정보제공 및 회원의 자기결정권	2) 회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이용시설 64 (87.67)	9 (12.33)	-	-	3.88 (0.33)
		입소시설 12 (75.00)	3 (18.75)	1 (6.25)	-	3.69 (0.60)
		주거시설 43 (72.88)	12 (20.34)	4 (6.78)	-	3.66 (0.60)
		병행시설 15 (100.00)	-	-	-	4.00 (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3) 인권보장노력

본 지표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회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회원권리 지침서, 교육안, 교육기록, 관련서류 등을 토대로 평가하였으며, 4점 만점에서 평균 3.79점을 받았는데,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140개소(85.89%), 15개소(9.2%), 4개소(2.45%), 4개소(2.45%)의 시설이 분포되었다.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병행시설의 평균은 각각 3.79점, 3.75점, 3.75점, 3.93점으로 병행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Ⅱ-4-5-4> 참조).

<표Ⅱ-4-5-4> 인권보장노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체	140 (85.89)	15 (9.2)	4 (2.45)	4 (2.45)	3.79(0.61)
인권보장노력	3) 회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이용시설 63 (86.30)	7 (9.59)	1 (1.37)	2 (2.74)	3.79 (0.60)
		입소시설 14 (87.50)	-	2 (12.50)	-	3.75 (0.68)
		주거시설 49 (83.05)	7 (11.86)	1 (1.69)	2 (3.39)	3.75 (0.66)
		병행시설 14 (93.33)	1 (6.67)	-	-	3.93 (0.2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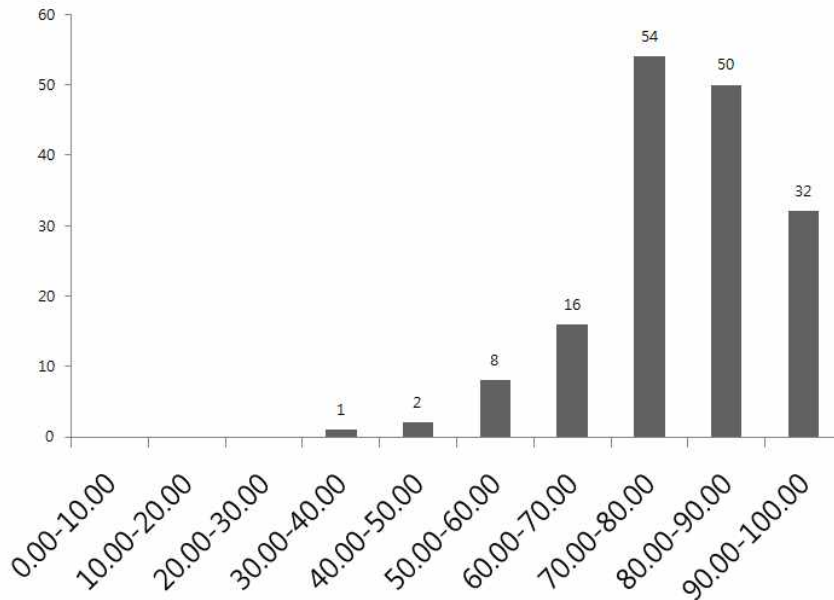
6. 지역사회관계(F)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지역사회관계(F)'는 10.00점 만점이며 평균 8.06점이었다. 이는 100점으로 표준화할 경우 80.60점에 해당된다. 각 지역별 '지역사회관계(F)' 영역의 점수는 아래와 같다(<표Ⅱ-4-6-1> 참조).

<표Ⅱ-4-6-1>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163	37.50 (3.75)	100.00 (10.00)	80.60 (8.06)	11.69 (1.17)

사회복지 시설들의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70.00점 이상~80.00점미만과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각각 가장 많은 54개소와 50개소의 시설이 분포하였다(<그림Ⅱ-4-6-1> 참조).



<그림Ⅱ-4-6-1> 지역사회관계(F) 영역 점수 분포

1)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본 지표는 시설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자원봉사자는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중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1개 시스템을 선택하여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등록된 DB만을 평가근거로 하였다. 2010년 1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전체 자원봉사자 실인원은 평균 85.89명이었고, 이로 인한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는 평균 15.49명이었다. 또한, 1년간 자원봉사자들의 총 봉사시간은 평균 1,141.65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평균 2.61점의 점수를 취득하고 있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시설의 경우 평균 자원봉사 실인원이 74.05명으로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수가 16.13명으로 나타났고, 총 자원봉사시간은 1,037.02시간을 보였다. 입소시설의 실인원 평균 116.31명에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수는 15.36명이었으며 총 자원봉사시간은 1,092.30시간 이었다. 병행시설은 자원봉사 실인원 111.03명으로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수는 12.53명이었고 총 자원봉사 시간은 1,703.52시간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은 본 지표와는 해당이 없다(<표Ⅱ-4-6-2> 참조).

<표Ⅱ-4-6-2>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0	4.00	2.61	0.94	
자원봉사 실인원(명)			0.00	731.00	85.89	126.45	
직원1인당자원봉사자수(명)			0.00	131.25	15.49	22.43	
총자원봉사시간(분)			0.00	7,197.67	1,141.65	1,278.40	
전체			0.50	4.00	2.49	0.98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	1)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용 시설	자원봉사 실인원(명)	0.00	731.00	74.05	121.57
		직원1인당자원봉사자수(명)	0.00	131.25	16.13	25.56	
		총자원봉사시간(분)	0.00	7,197.67	1,037.02	1,140.56	
		전체	2.00	4.00	2.84	0.70	
	입소 시설	자원봉사 실인원(명)	9.00	444.00	116.31	123.81	
		직원1인당자원봉사자수(명)	1.01	54.33	15.36	14.41	
		총자원봉사시간(분)	113.50	7,004.50	1,092.30	1,661.77	

주거 시설	전체	해당없음			
	자원봉사 실인원(명)	해당없음			
	직원1인당자원봉사 자수(명)	해당없음			
	총자원봉사시간(분)	해당없음			
병행 시설	전체	1.00	4.00	2.93	0.92
	자원봉사 실인원(명)	0.00	620.00	111.03	150.80
	직원1인당자원봉사 자수(명)	0.00	34.44	12.53	10.30
	총자원봉사시간(분)	0.00	5,112.00	1,703.52	1,405.98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산출점수(100%) =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의 수'의 점수(50%)+ '총 자원봉사시간'의 점수(50%)

※N=104(주거시설 미해당)

※산출식: 자원봉사자 실인원 = $\frac{2010년\ 1월\ 1일\ \sim\ 2010년\ 12월\ 31일\ 총\ 자원봉사\ 실인원수}{2010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2) 지역사회 홍보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물(리플렛) 등을 통해 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노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기간은 2010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간이며 지표에서의 홈페이지는 법인산하에 여러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 시설에 대한 소개가 있으면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폭넓게 적용하였다. 평가결과 시설 전체 평균 3.82점을 받았고, 우수(4) 141개소(86.50%), 양호(3) 15개소(9.20%), 보통(2) 6개소(3.68%), 미흡(1) 1개소(0.61%)의 분포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평균점수는 이용시설과 입소시설이 각각 3.88점, 주거시설 3.68점, 병행시설 4.00점을 얻었다(<표 II-4-6-3> 참조).

<표Ⅱ-4-6-3> 지역사회 홍보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지역사회 홍보	2)기관을 홍보하는 노력이 있는가?	전체	141 (86.50)	15 (9.20)	6 (3.68)	1 (0.61)	3.82(0.51)
		이용시설	66 (90.41)	5 (6.85)	2 (2.74)	-	3.88 (0.41)
		입소시설	15 (93.75)	-	1 (6.25)	-	3.88 (0.50)
		주거시설	45 (76.27)	10 (16.95)	3 (5.08)	1 (1.69)	3.68 (0.65)
		병행시설	15 (100.00)	-	-	-	4.00 (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3) 자원봉사자의 관리

본 지표는 시설에서 자원봉사자의 계발 및 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자원봉사자는 단순 방문이 아닌 2시간 이상 프로그램이나 회원의 케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한정하였다. 단,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는 자원봉사자만 인정하였다. 전체평균 3.73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4) 87개소(53.37%), 양호(3) 10개소(6.13%), 보통(2) 3개소(1.84%), 미흡(1) 4개소(2.45%)의 분포로 보였다. 시설유형별로 평균은 이용시설 3.77점, 입소시설 3.44점, 병행시설 3.87점이었으며, 주거시설은 본 지표에 해당이 없다(<표Ⅱ-4-6-4> 참조).

<표 II-4-6-4> 자원봉사자의 관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자원봉사 자의 관리	3)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전체	87 (53.37)	10 (6.13)	3 (1.84)	4 (2.45)	3.73(0.70)
		이용시설	62 (84.93)	7 (9.59)	2 (2.74)	2 (2.74)	3.77 (0.64)
		입소시설	12 (75.00)	1 (6.25)	1 (6.25)	2 (12.50)	3.44 (1.09)
		주거시설	해	당	없	음	
		병행시설	13 (86.67)	2 (13.33)	-	-	3.87 (0.3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04(주거시설 미해당)

4) 외부자원개발

본 지표는 시설에서 외부 자원을 개발한 건수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민간지원은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한 민간 재원을 의미하며, 정부지원은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자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한다.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총액으로 환산하지 않았다. 또한 지정후원금이 사업비의 성격을 가질 경우(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사업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에는 본 지표 B8 후원금의 비율의 내용과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체평균 2.21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시설유형별 지원금 형태별 금액과 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민간지원은 9,081천원으로 2.89%이고, 정부지원금 12,306천원으로 3.03%였다.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3.47건으로 직원 1인당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0.85 건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평균 액수 및 비율 등을 살펴보면 이용시설은 민간지원금 13,345천원에 4.28%, 정부지원금 14,557천원에 2.93%였으며, 프로포절은 평균 3.62건으로 직원 1인당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0.81건이었다. 입소시설의 경우 민간지원금 11,960천원에 2.95%, 정부지원금 7,350천원에 7.50%였으며, 프로포절은 평균 3.06건으로 직원 1인당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0.38건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는 민간지원금 3,138천원에 1.64%, 정부지원금 3,344천원에 1.59%였으며 프로포절은 평균 2.02건으로 직원 1인당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0.97건을 보였다. 병행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지원금 8,635천원으로 1.00%였고, 정부지원금 41,884천원에 4.38%였으며, 프로포절은 평균 8.93건으로 직원 1인당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1.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Ⅱ-4-6-5> 참조).

<표Ⅱ-4-6-5> 외부자원개발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	4.00	2.21	1.01	
민간지원금(천원)		0	90,446	9,081	15,658	
정부지원금(천원)		0	315,084	12,306	43,858	
프로포절체결건수(건)		0.00	20.00	3.47	3.93	
민간지원금 비율(%)		0.00	111.33	2.89	9.25	
정부지원금 비율(%)		0.00	111.13	3.03	12.68	
직원1인당프로포절체결건수(건)		0.00	6.00	0.85	1.02	
외부 자원 개발	3)시설의 외부 자원개발 건수 및 규모는 어떠한가					
	이용 시설	전체	1.00	4.00	2.45	1.02
		민간지원금(천원)	0	90,446	13,345	19,216
		정부지원금(천원)	0	313,744	14,557	44,992
		프로포절체결건수(건)	0.00	14.00	3.62	3.23
		민간지원금 비율(%)	0.00	111.33	4.28	13.22
		정부지원금 비율(%)	0.00	77.33	2.93	9.87
		직원1인당프로포절체결 건수(건)	0.00	2.60	0.81	0.70
	입소 시설	전체	1.00	4.00	2.04	0.91
		민간지원금(천원)	0	74,819	11,960	18,337
		정부지원금(천원)	0	64,478	7,350	17,801
		프로포절체결건수(건)	0.00	16.00	3.06	4.15
		민간지원금 비율(%)	0.00	19.65	2.95	5.21
	정부지원금 비율(%)	0.00	111.13	7.50	27.68	
	직원1인당프로포절체결	0.00	1.78	0.38	0.46	

		건수(건)			
주거 시설	전체	1.00	4.00	1.94	1.02
	민간지원금(천원)	0	24,130	3,138	5,753
	정부지원금(천원)	0	183,000	3,344	23,817
	프로포절체결건수(건)	0.00	12.00	2.02	3.09
	민간지원금 비율(%)	0.00	13.54	1.64	3.06
	정부지원금 비율(%)	0.00	78.81	1.59	10.36
	직원1인당프로포절체결 건수(건)	0.00	6.00	0.97	1.45
병행 시설	전체	1.40	3.80	2.29	0.74
	민간지원금(천원)	0	35,840	8,635	13,679
	정부지원금(천원)	0	315,084	41,884	88,471
	프로포절체결건수(건)	3.00	20.00	8.93	5.12
	민간지원금 비율(%)	0.00	4.98	1.00	1.59
	정부지원금 비율(%)	0.00	26.15	4.38	7.84
	직원1인당프로포절체결 건수(건)	0.57	1.88	1.12	0.45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163

※산출식:	$\frac{2008년 \sim 2010년 \text{ 외부민간지원금 총액}}{2008년 \sim 2010년 \text{ 보조금 결산액} - \text{기능보강사업비}}$	×100
	$\frac{2008년 \sim 2010년 \text{ 정부지원금 총액}}{2008년 \sim 2010년 \text{ 보조금 결산액} - \text{기능보강사업비}}$	×100
	$\frac{2008년 \sim 2010년 \text{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2010년 \text{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100

5)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지역사회연계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의 네트워크 연계모임 참석여부, 공동사업기획 및 추진, 지역행사 참요, 지원목록 구비, 지역주민이 참가 가능한 자체행사 기획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계모임의 예로는 바자회, 자원봉사활동, 공동행사, 캠페인참여, 공동문화행사 등을 들 수 있다. 공동사업은 본 기관이 주체가 되거나 혹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의 행사에 일반적으로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평가시 출장명령서, 연계 모임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지역사회지원 목록, 사업관련 공문 등의 관련문서를 활용하였다. 전체 시설유형의 산출값은 4점 만점에 평균 3.81점으로 나타났고,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143개소(87.73%), 12개소(7.36%), 5개소(3.07%), 3개소(1.84%)의 분포를 보였다. 시설유형별 평균값은 이용시설 3.90점, 입소시설 3.81점, 주거시설 3.64점, 병행시설 4.00점으로 병행시설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표Ⅱ-4-6-6> 참조).

<표Ⅱ-4-6-6>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지역사회와 의 연계활동	5)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전체	143 (87.73)	12 (7.36)	5 (3.07)	3 (1.84)	3.81(0.57)
		이용시설	68 (93.15)	3 (4.11)	2 (2.74)	-	3.90 (0.38)
		입소시설	14 (87.50)	1 (6.25)	1 (6.25)	-	3.81 (0.54)
		주거시설	46 (77.97)	8 (13.56)	2 (3.39)	3 (5.08)	3.64 (0.78)
		병행시설	15 (100.00)	-	-	-	4.00 (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163

III.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론 및 제언

제 1 절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배경 및 의의

2011년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2001년 보건복지부 주최로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66개 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2005년 74개 시설을 대상으로
제2차 평가를, 2008년 1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제3차 평가에 이어 163개 시설
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4차 평가에 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은 2008년 3월 개정된 정신보건법 제3조 4항(4차 개정법 정신
보건법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설로써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정신보건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
사회복지시설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에 따라 2009년 3월 22
일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능별로는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되고, 이용형태로는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 전환
하도록 시설 유형이 개편되었다. 이번 2011년의 평가는 지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3년에 대한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개편된 유형을 따르지 않
고 종전의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 이용 및 입소 병행시설의 4가지 시
설유형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
면을 고려하였다. 첫째는 이용, 입소, 주거시설 등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던
지표들을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

는 공통영역의 지표를 확대 적용하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지표수를 축소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전체 41개의 지표 중에서 D영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성과’ 한 항목을 제외하고 40개의 지표를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표의 수도 2008년의 51개 지표에서 41개 지표로 축소하였다.

둘째, 가급적 전체 사회복지시설과 평가구조는 유사하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구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총괄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평가영역별 비율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의 운영에 있어 전체 시설의 유형, 지역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실무자들과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함으로써 지역별, 종별시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번 평가에서 중점을 둔 것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요구되는 각종 영역들에 대한 지표를 균형 있게 적용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과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2008년 평가에서 비중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다소 낮추어 보다 현실성 있는 지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3년 전에 비해 과거관리적 성격의 지표들을 과거수준과 비교하여 보다 상향된 내용으로 평가자료 및 해설을 정교하게 수정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지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체 6개의 평가영역 중 시설 및 환경 10점, 회원의 권리 10점, 지역사회 관계 10점에 비하여 나머지 3개 영역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30점, 재정 및 조직운영 20점, 인적자원관리 20점으로 배정하여 비중도를 높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된 지표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2011년 평가를 받은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총 73개소로써 가

장 많았고 주거시설은 59개소, 입소시설은 16개소, 그리고 병행시설(이용 및 입소)은 15개소였다. 2008년과 비교하면 이용시설이 2개소(2008년 71개소), 주거시설이 30개소(2008년 29개소), 입소시설이 3개소(2008년 13개소) 증가하였다. 단, 병행시설의 경우는 2008년도에는 이용시설과 입소시설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평가하였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이 50개소(25개소 증가), 부산 9개소(3개소 증가), 대구 13개소(2개소 증가), 인천 4개소(1개소 증가), 광주 7개소(동일), 대전 12개소(1개소 증가), 울산 2개소(1개소 증가), 경기 19개소(2개소 증가), 강원 0개소(2개소 감소), 충북 6개소(2개소 증가), 충남 8개소(3개소 증가), 경북 11개소(5개소 증가), 경남 4개소(1개소 증가), 전북 14개소(5개소 증가), 전남 2개소(1개소 증가), 제주 2개소(동일)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의의는 정부차원에서는 정신보건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재검토하여 지역의 중장기적 지역정신보건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시설운영차원에서는 이용(입소)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이용(입소)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부양부담 경감 등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형성할 수 없었던 사회적 지지망을 재형성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제 2 절 분과위원회 및 포커스그룹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정서비스를 유지하며, 이용(입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분과위원회는 학계에서 교수 1인,

정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서울시청 보건정책과)에서 공무원 2인, 사회복지시설협회에서 사무총장 1인, 현장대표 실무자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5회의 분과위원회의를 가졌다. 분과위원회에서는 평가 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평가방법과 평가 자료의 결정 등을 하였다. 지표는 2008년도의 평가지표의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기존의 문항을 영역별로 재배치하고, 유사문항을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에서 사용하는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인 지표를 삭제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은 모두 정량화하고 평가지표의 내용과 평가자료 및 해설을 정교하게 수정하였다.

분과위원회 회의 후 각 유형별로 포커스그룹(이용시설 대표 4인, 입소시설 대표 4인, 주거시설 대표 4인, 병행시설 대표 4인, 기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시설 1인)을 구성하여 포커스 회의를 가졌다. 각 시설의 유형별로 공통되는 항목들을 함께 점검하였으며, 다시 각 시설유형별로 나누어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포커스그룹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시설구비 및 안정성, 침실 공간의 쾌적성, 체육오락시설, 시설장의 실제근무여부, 시설의 자율적 운영, 직원의 다학제적 접근, 관리인의 시설관련 근무시간과 야간상주여부, 사회적응을 위한 외부활동, 낮 프로그램 실시 또는 연계프로그램, 고충처리절차 마련여부 등 시설유형별로 공통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과거 지향적이거나 관리 통제적인 성격의 지표들에 대하여 삭제하기로 하였다.

반면 회계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사회복지시설의 성과 등의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성과 항목은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따로 분류하였다. 또한 직원급여 자부담액에 포함되는 법정직원 수는 시설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지표 내 법정직원의 범위를 주40시간 이상 근무자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공통지표 영역인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 독립생활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오히려 주거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외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게 되는 아이존과 halfway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과정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제 3 절 지표에 대한 공청회, 사전평가, 지표 설명회

사회복지시설 163개의 평가 대상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분과위원회와 포커스그룹회의를 통해 수정된 평가지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제기되었던 문제들 중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에서 추진한 실적의 평가는 시설자체 예산이나, 법인, 지자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한 모두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시설장의 전문성 여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석사학위 이상의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법인이 없는 소규모 개인주거시설의 경우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직원의 이(퇴)직률을 평가하기 위해 직원의 유학이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의 경우 근거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성과지표에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 결혼, 독립주거를 그 성과로 보는 것으로 인정하되 노숙이나 쪽방, 고시원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대상연령의 상이함으로 이 지표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회원의 권리 영역에서는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문장이 지표 3개에 걸쳐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 전 적용기간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주거시설에 한하여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 여부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 2가지 항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공청회를 통해 보완된 지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의견수렴의 기간을 가졌다. 평가지표 설명회는 163개 피평가시설을 대상으로 확정된 지표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방법과 평가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제 4 절 현장평가위원 교육과 현장평가시스템

현장평가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장평가위원은 교수 1인, 공무원 1인, 현장실무자 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평가위원교육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개요를 설명하고 평가에 임하는 현장평가위원의 평가에 임하는 자세, 현장평가의 진행절차,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으로 평가지표의 목적과 내용, 평가기준과 평가자료의 구성에 대하여 교

육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8년 평가 후 제기되었던 현장평가위원회에 대한 불만사례를 들어 평가위원의 권위적이고도 고압적인 평가 자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이번 현장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 교수의 인력 구성에 각 지자체별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현장평가위원이 소속한 지역의 여러 시설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현장평가위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평가위원회에 대한 재교육에도 일정상의 어려움을 주게 되었는데 추후에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장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 교육의 시기를 연초에 실시하여 현장평가위원 교육시 미참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계의 교수를 포함한 현장평가위원의 인력풀 확보를 위해 현장평가위원회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지표의 설명 외에 개별 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평가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개별 지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전제로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5 절 평가결과의 통계적 의미

1. 총점

이번 2011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84.59점으로 지난 2008년의 평가결과인 79.83점과 비교할 때 금번 평가에서는 총점 기준으로 4.76점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4번째 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준비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안정화되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점수가 최소 50.44점에서 최대 98.19점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최소와 최대 점수 차이가 47.75점이나 되어 편차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점수

각 영역별로는 이용자의 권리(E)가 95.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시설 및 환경(A)이 88.7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88.85점, 인적자원관리(C) 81.04점, 지역사회관계(F)가 80.60점으로 평균 이상이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B)은 76.4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별히 2008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6개 영역 모두에서 향상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영역은 8.67점이 향상된 인적자원관리(C) 영역과 7.51점이 향상된 지역사회관계(F) 영역이었다. 그 뒤로 이용자의 권리(E) 영역은 4.57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7.72점 상승하였으며,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과 시설 및 환경(A) 영역은 각각 1.12점과 0.09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 상승의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들은 4차례에 걸친 평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인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재정 및 조직운영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예산운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력활용 면에서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와 같은 휴먼서비스 조직의 특성상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부분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속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등급별 기관의 점수

총점을 등급에 따라 구분한 결과, 90점 이상인 최우수(A) 기관은 49개소(30.06%)였으며, 우수(B: 80~89점)기관 79개소(48.47%), 양호(C: 70~79점)기관 21개소(12.88%)로,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149개소로 조사대상의 91.41%를 차지하였다. 보통(D: 60~69점)기관은 8개소(4.91%), 미흡(F: 50~59점)기관이 6개소(3.68%)로 나타나 이들 기관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서비스품질관리단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영역별로 60점 미만인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15개소(9.20%), 지역사회관계(F) 영역 10개소(6.13%), 인적자원관리(C) 영역 9개소(5.52%)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용자의 권리(E) 영역 6개소(3.68%),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5개소(3.06%), 시설 및 환경(A) 영역은

1개소(0.61%)가 해당되었다.

4. 지역별 등급 분포

다음으로 각 등급별 분포를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최우수(A) 등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50.0%), 인천(50.0%), 대구(46.1%), 광주(42.8%)였으며, 서울은 30.0%의 비율을 보였으나 전체 시·도 중에서 15개소로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B) 등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100.0%), 제주(100.0%), 부산(66.7%), 광주(57.1%), 대구(53.8%), 경기(52.6%), 서울(52.0%) 순이었으며, 양호(C) 등급은 울산(50.0%), 보통(D) 등급은 경남(50.0%), 미흡(F) 등급은 울산(50.0%)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평가대상시설 수가 지역별로 최소 2개소에서 최대 50개소까지 지역 간 시설 수의 차이가 크며, 각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이 상이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배경 및 지원체계 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여 절대적인 결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미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설유형별 점수

시설유형별 평균 점수는 병행시설(15개소)이 88.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이용시설(73개소)이 86.00점, 입소시설(16개소)이 84.63점, 주거시설(59개소)이 81.90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최우수 등급(A)에는 병행시설(53.33%)과 입소시설(31.25%)이 많이 포함되었

으며, 보통(D)은 주거시설(6.78%), 입소시설(12.50%), 이용시설(2.74%)이, 미흡(F)에는 주거시설(6.78%)과 이용시설(2.74%)이 포함되었다. 입소시설, 병행시설(이용 및 입소) 중에는 미흡(F)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보통(D)와 미흡(F) 등급을 받은 전체 14개소 중 주거시설이 9개소로 64.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시설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함께 질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 평가결과

지난 2008년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은 양호(D)와 미흡(F) 등급을 받았던 19개소였으나, 이번 2011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에서는 14개소로 다소 낮아졌다. 총점을 보면, 100점 만점에 74.98점으로 지난 2008년의 평가결과인 60.90점과 비교할 때 금번 평가에서는 총점 기준으로 14.08점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평가이후 2009년과 2010년의 2년에 걸친 서비스품질관리 서비스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서비스품질관리 서비스의 유용성과 지속적인 지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 간의 점수가 최소 50.44점에서 최대 69.33점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2008년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 19개소 중에 여전히 2011년 평가에서도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머무른 기관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2차례의 평가에서 연속하여 상위의 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별 비교에서는 이용자의 권리(E)가 89.22점, 시설 및 환경(A)은 84.1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D) 78.69점, 인적자원관리(C) 69.53점, 지역사회관계(F)가 68.10점이었고, 재정 및 조직운영(B)은 66.62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별히 2008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1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5개 영역에서 모두 향상되었으며, 그 폭은 7.83점에서 23.95점까지 상승폭을 보였다. 즉,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에서 23.95점, 이용자의 권리(E) 영역 17.55점, 인적자원관리(C) 영역 10.95점, 지역사회관계(F) 영역 10.24점,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에서 7.83점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및 환경(A)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0.31점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품질관리 서비스가 시설 및 환경(A) 영역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추후 진행되는 서비스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평가 이후 각 기관에서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품질관리단의 컨설팅을 심도있게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6 절 정책제언

1. 2008년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비교

이번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항목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졌다.

금번 평가에서 사회복지시설은 100점 만점에 평균 84.59점을 취득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 88.71점,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76.44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1.04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8.85점, '이용자의 권리(E)'는 평균 95.09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0.60점이었다. 2008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점수의 변화를 보인 영역은 'C.인적자원관리' 영역과 'F.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각각 평균 8.67점과 평균 7.51점이 상승하였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 평가에서도 이용자의 권리(E) 영역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였고, 그 뒤를 시설 및 환경(A) 영역이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의무화 이후 개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타 영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입소)자들을 위한 보다 섬세한 항목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시설 및 환경 영역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2011년 함께 평가한 대상시설 등과 비교하면 총점에서도 약 9~10점 정도 낮으며 최우수 등급 차지비율이 1/2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과 타 복지시설과의 설치기준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시설이며, 필요한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되어 있어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신고가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추후 설치신고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국가정신보건체계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신고하여 위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간의 크기의 열악성과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D)영역은 지난 2008년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항목이었는데, 2011년 평가결과 4.11점이 상승되었다. 이는 열악한 시설과 재정 및 조직에도 불구하고

고 지역사회 이용자들의 욕구에 근거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정신보건수련 제도의 의한 우수한 인력의 배출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개선방향

(1) 유형개편에 따른 세부지표의 개발

2011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개편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평가받았던 이용, 입소, 주거, 병행(이용 및 입소)시설의 4개 유형에서 최대 9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앞으로 3년 뒤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시설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시설유형 중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시설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Halfaway 등은 그 대상과 특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세부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평가 영역별 평가 항목의 조정

지역사회관계(F) 영역의 경우 주거시설의 기존 평가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시설의 경우 그 기능과 목적에 따른 항목조절이 필요한데, 주거시설의 인력이 대부분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시설에서 진행되어야 할 모든 홍보나 자원봉사자개발 관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주거시설의 기능과 목적이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 준비를 위한 과정이므로 자원봉사자 등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평가에서는 자원봉사자 영역을 제외하였으나 추후 그 기능과 목적에 따른 항목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설립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초기 홍보 등 이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한계가 있어 추후 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 영역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세입구조가 단순하고 열악한 시설의 분포가 절대적이다. 시설운영 입장에서 고정비용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프로그램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정예산지원에 대한 현실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인적자원관리 영역(E)의 직원의 이(퇴)직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급여체계의 문제, 시설의 환경(입소 이용회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환경)과 소규모시설로 인한 대체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학제적 접근의 경우 타 정신보건전문요원영역(간호, 심리)의 고용이 될 수 있는 급여체계의 마련과 소규모시설(주거시설)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이 따라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3) 정신보건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의 개발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추후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항목 이외에 정신보건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서비스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2011년 개편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유형별로 시설의 목적에 따른 평가지표를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필요한 중요업무지표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계속되어 온 평가 항목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제 4 장]

부랑인복지시설

I.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제 1 절 유형, 법인 및 종교성향의 분포

금번 평가에 참여한 37개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4개소(10.81%), 부산 3개소(8.11%), 대구 1개소(2.70%), 인천 1개소(2.70%), 광주 1개소(2.70%), 대전 1개소(2.70%), 경기 3개소(8.11%), 강원 3개소(8.11%), 충북 2개소(5.41%), 충남 1개소(2.70%), 전북 3개소(8.11%), 전남 6개소(16.67%), 경북 2개소(5.41%), 경남 4개소(10.81%), 제주 2개소(5.41%)로써 전남지역에 6개로 가장 많은 시설이 입지하였으며, 경남과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북에 각각 4개소와 3개소씩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이 분포하였다. 2008년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시설이 1개소 증가하였다(<표 I-1-1-1> 참조).

<표 I-1-1-1>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분포

지역구분	2011년 계	2008년 참여기관	증감 (2011-2008)	
전국	37(100.00)	36(100.00)	1	
지역	서울	4(10.81)	3(8.33)	1
	부산	3(8.11)	3(8.33)	-
	대구	1(2.70)	1(2.78)	-
	인천	1(2.70)	1(2.78)	-
	광주	1(2.70)	1(2.78)	-
	대전	1(2.70)	1(2.78)	-
	경기	3(8.11)	3(8.33)	-
	강원	3(8.11)	3(8.33)	-
	충북	2(5.41)	2(5.56)	-
	충남	1(2.70)	1(2.78)	-
	전북	3(8.11)	3(8.33)	-
	전남	6(16.22)	6(16.67)	-
	경북	2(5.41)	2(5.56)	-
	경남	4(10.81)	4(11.11)	-
	제주	2(5.41)	2(5.56)	-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전체 시설 중에 78.40%인 29개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었으며, 8개소(21.6%)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의 종교성향은 천주교 성향의 시설이 14개소(37.84%)였으며, 종교적 성향이 없는 시설은 9개소(24.32%)였다. 그 외에는 기독교가 10개소(27.02%), 원불교와 불교가 2개소(5.41%)에 해당되었다(<표 I -1-1-2> 참조).

<표 I -1-1-2> 지역별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지역구분	계	법인유형		종교성향					
		사회 복지 법인	재단 법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없다
전국	37 (100.00)	29 (78.40)	8 (21.60)	10 (27.02)	14 (37.84)	2 (5.41)	2 (5.41)	-	9 (24.32)
서울	4 (100.00)	3 (75.0)	1 (25.0)	-	4 (100.00)	-	-	-	-
부산	3 (100.00)	2 (66.67)	1 (33.33)	-	2 (66.67)	-	-	-	1 (33.33)
대구	1 (100.00)	-	1 (100.00)	-	1 (100.00)	-	-	-	-
인천	1 (100.00)	1 (100.00)	-	-	-	-	-	-	1 (100.00)
광주	1 (100.00)	1 (100.00)	-	-	-	-	1 (100.00)	-	-
대전	1 (100.00)	1 (100.00)	-	1 (100.00)	-	-	-	-	-
경기	3 (100.00)	2 (66.67)	1 (33.33)	1 (33.33)	1 (33.33)	-	-	-	1 (33.33)
지역	3 (100.00)	2 (66.67)	1 (33.33)	-	1 (33.33)	2 (66.67)	-	-	-
충북	2 (100.00)	1 (50.00)	1 (50.00)	-	1 (50.00)	-	-	-	1 (50.00)
충남	1 (100.00)	1 (100.00)	-	-	-	-	-	-	1 (100.00)
전북	3 (100.00)	3 (100.00)	-	1 (33.33)	1 (33.33)	-	1 (33.33)	-	-
전남	6 (100.00)	6 (100.00)	-	3 (50.00)	-	-	-	-	3 (50.00)
경북	2 (100.00)	2 (100.00)	-	-	2 (100.00)	-	-	-	-
경남	4 (100.00)	2 (50.00)	2 (50.00)	2 (50.00)	1 (33.33)	-	-	-	1 (33.33)
제주	2 (100.00)	2 (100.00)	-	2 (100.00)	-	-	-	-	-

제 2 절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1. 생활인 현황

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 현황

전국 부랑인복지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정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1,770명으로 평균 274.97명이었으며, 현원은 최소 45명에서 최대 1,135명으로 평균 216.68명이었다. 정원대비 현원비율의 입소율은 77.05%로 나타났다. 현원의 구성을 보면 비장애인이 61.86명, 장애인 중에서 정신 장애인이 7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 장애인 43.64명, 지체 장애인 14.86명, 자폐증 13.79명, 뇌병변 장애인 9.97명, 간질 장애인 4.33명, 청각언어 장애인 3.91명, 시각 장애인 3.41명, 신장·심장·간·호흡기 장애인 2.13명, 안면 0.31명, 장루·요루 장애인 0.17명으로 집계되었다(<표 I -2-1-1> 참조).

<표 I -2-1-1>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정원	37	50	1,770	274.97	332.15	77.05%
현원	37	45	1,135	216.68	260.32	
비장애인	37	1	398	61.86	79.95	
정신	37	0	749	73.97	131.16	
지체	36	1	94	14.86	20.33	
시각	27	0	17	3.41	4.23	
청각언어	33	0	25	3.91	5.71	
지적	36	1	269	43.64	55.60	
뇌병변	33	0	72	9.97	17.79	
자폐성	14	0	180	13.79	47.89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5	0	9	2.13	2.72	
안면	13	0	3	0.31	0.85	
장루, 요루	12	0	1	0.17	0.39	
간질	24	0	23	4.33	5.93	

※입소율: 정원대비 현원비율을 의미하며, 정원 및 현원의 평균을 통해 계산됨.

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 현황

지역별로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원 및 현원을 살펴보면 <표 I -2-1-2>와 같다. 입소율을 기준할 때 대구 104.61%, 대전 96.54%, 제주 84.36%, 경남 81.92%, 광주 81.60%, 전남 81.15%, 부산 80.76%, 경북 77.08%, 경기 77.62%, 충북 76.71%, 서울 76.47%, 강원 71.28%, 인천 67.40%, 충남 65.61%, 전북 49.8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I -2-1-2> 참조).

<표 I -2-1-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 현황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단위: 명
							입소율
서울	정원	4	60	1,770	657.50	768.61	76.47%
	현원	4	45	1,047	450.00	442.78	
	비장애인	4	1	398	112.50	190.84	
	정신	4	0	314	164.00	128.54	
	시각	4	2	80	28.00	35.96	
	청각언어	4	0	16	5.00	7.44	
	지적	4	0	22	8.75	10.37	
	뇌병변	4	2	131	56.25	63.09	
	지체	3	0	72	25.00	40.73	
	자폐성	3	0	180	60.00	103.92	
	신장, 심장, 간, 호흡기	3	0	3	1.33	1.53	
	안면	3	0	0	0.00	0.00	
	장루, 요루	3	0	0	0.00	0.00	
	간질	4	1	23	10.75	10.53	
	부산	정원	3	120	300	188.33	
현원		3	63	329	166.33	142.58	
비장애인		3	56	99	73.00	22.87	
정신		3	1	67	25.67	36.02	
시각		3	3	27	11.33	13.58	
청각언어		1	3	3	3.00	.	
지적		3	1	5	2.33	2.31	
뇌병변		3	1	102	42.67	52.77	
지체		2	3	18	10.50	10.61	
자폐성		1	1	1	1.00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1	1	1.00	.	
안면		2	0	1	0.50	0.71	
장루, 요루		1	0	0	0.00	.	
간질		2	1	6	3.50	3.54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대구	정원	1	1,085	1,085	1,085.00	.	104.61%
	현원	1	1,135	1,135	1,135.00	.	
	비장애인	1	61	61	61.00	.	
	정신	1	749	749	749.00	.	
	시각	1	10	10.00	10.00	.	
	청각언어	1	25	25.00	25.00	.	
	지적	1	182	182.00	182.00	.	
	뇌병변	1	33	33.00	33.00	.	
	지체	1	54	54.00	54.00	.	
	자폐성	1	1	1	1.00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3	3	3.00	.	
	안면	
	장루, 요루	
	간질	1	17	17	17.00	.	
	정원	1	500	500	500.00	.	67.40%
	현원	1	337	337	337.00	.	
인천	비장애인	1	181	181	181.00	.	
	정신	1	84	84	84.00	.	
	시각	1	3	3	3.00	.	
	청각언어	1	3	3	3.00	.	
	지적	1	44	44	44.00	.	
	뇌병변	1	7	7	7.00	.	
	지체	1	15	15	15.00	.	
	자폐성	1	0	0	0.00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0	0	0.00	.	
	안면	1	0	0	0.00	.	
	장루, 요루	1	0	0	0.00	.	
간질	1	0	0	0.00	.		
광주	정원	1	250	250	250.00	.	81.60%
	현원	1	204	204	204.00	.	
	비장애인	1	142	142	142.00	.	
	정신	1	26	26	26.00	.	
	시각	1	2	2	2.00	.	
	청각언어	0	
	지적	1	24	24	24.00	.	
	뇌병변	1	3	3	3.00	.	
	지체	1	7	7	7.00	.	
	자폐성	0	
	신장, 심장, 간, 호흡기	0	
	안면	0	
	장루, 요루	0	
	간질	0	

<표계속>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충북	정원	2	170	850	510.00	480.83	76.71%
	현원	2	98	814	456.00	506.29	
	비장애인	2	34	272	153.00	168.29	
	정신	2	21	66	43.50	31.82	
	시각	2	1	17	9.00	11.31	
	청각언어	2	3	10	6.50	4.95	
	지적	2	30	269	149.50	169.00	
	뇌병변	2	4	72	38.00	48.08	
	지체	2	4	94	49.00	63.64	
	자폐성	1	3	3	3.00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9	9	9.00	.	
	안면	0	
	장루, 요루	1	1	1	1.00	.	
	간질	1	2	2	2.00	.	
	충남	정원	1	221	221	221.00	
현원		1	144	144	144.00	.	
비장애인		1	22	22	22.00	.	
정신		1	20	20	20.00	.	
시각		1	2	2	2.00	.	
청각언어		1	6	6	6.00	.	
지적		1	41	41	41.00	.	
뇌병변		1	7	7	7.00	.	
지체		1	12	12	12.00	.	
자폐성		0	
신장, 심장, 간, 호흡기		0	
안면		0	
장루, 요루		0	
간질		1	10	10	10.00	.	
전북		정원	3	102	160	122.33	32.65
	현원	3	46	82	61.33	18.58	
	비장애인	3	13	43	25.33	15.70	
	정신	3	2	17	9.00	7.55	
	시각	2	1	3	2.00	1.41	
	청각언어	3	1	1	1.00	0.00	
	지적	3	9	31	18.33	11.37	
	뇌병변	3	1	4	2.00	1.73	
	지체	3	1	5	3.33	2.08	
	자폐성	0	
	신장, 심장, 간, 호흡기	0	
	안면	0	
	장루, 요루	0	
	간질	1	3	3	3.00	.	

<표계속>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전남	정원	6	50	353	158.83	112.04	81.15%
	현원	6	49	251	125.67	83.95	
	비장애인	6	7	79	37.67	24.80	
	정신	6	5	153	62.67	69.67	
	시각	4	0	2	1.25	0.96	
	청각언어	5	1	4	1.80	1.30	
	지적	5	7	37	16.20	12.28	
	뇌병변	5	1	2	1.20	0.45	
	지체	5	4	11	7.20	3.11	
	자폐성	2	0	8	4.00	5.66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0	0	0.00	.	
	안면	1	0	0	0.00	.	
	장루, 요루	1	0	0	0.00	.	
	간질	3	1	3	2.33	1.15	
	경북	정원	2	120	300	210.00	
현원		2	73	280	176.50	146.37	
비장애인		2	17	19	18.00	1.41	
정신		2	5	106	55.50	71.42	
시각		1	3	3	3.00	.	
청각언어		2	1	4	2.50	2.12	
지적		2	27	124	75.50	68.59	
뇌병변		1	10	10	10.00	.	
지체		2	8	23	15.50	10.61	
자폐성		0	
신장, 심장, 간, 호흡기		0	
안면		0	
장루, 요루		0	
간질		1	6	6	6.00	.	
경남		정원	4	56	190	130.25	56.28
	현원	4	51	126	100.75	34.21	
	비장애인	4	7	26	18.50	8.35	
	정신	4	20	56	37.50	14.80	
	시각	3	0	4	2.33	2.08	
	청각언어	3	0	2	1.00	1.00	
	지적	4	8	45	29.25	15.44	
	뇌병변	4	0	5	1.75	2.22	
	지체	4	4	12	8.75	3.40	
	자폐성	1	0	0	0.00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2	1	4	2.50	2.12	
	안면	2	0	3	1.50	2.12	
	장루, 요루	1	0	0	0.00	.	
	간질	3	0	1	0.67	0.58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대전	정원	1	231	231	231.00	.	96.54%
	현원	1	223	223	223.00	.	
	비장애인	1	99	99	99.00	.	
	정신	1	50	50	50.00	.	
	시각	1	1	1	1.00	.	
	청각언어	1	5	5	5.00	.	
	지적	1	41	41	41.00	.	
	뇌병변	1	12	12	12.00	.	
	지체	1	12	12	12.00	.	
	자폐성	1	0	0	0.00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0	0	0.00	.	
	안면	1	0	0	0.00	.	
	장루, 요루	1	0	0	0.00	.	
	간질	1	3	3	3.00	.	
경기	정원	3	120	440	282.67	160.07	77.62%
	현원	3	97	316	214.67	110.41	
	비장애인	3	20	162	78.33	74.31	
	정신	3	40	90	61.67	25.66	
	시각	2	2	3	2.50	0.71	
	청각언어	3	1	2	1.67	0.58	
	지적	3	22	43	35.33	11.59	
	뇌병변	3	3	29	15.33	13.05	
	지체	3	9	21	15.00	6.00	
	자폐성	1	0	0	0.00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7	7	7.00	.	
	안면	1	0	0	0.00	.	
	장루, 요루	1	0	0	0.00	.	
	간질	3	2	6	3.33	2.31	
강원	정원	3	100	150	117.33	28.31	71.28%
	현원	3	76	95	82.33	10.97	
	비장애인	3	5	37	17.33	17.21	
	정신	3	20	56	36.00	18.33	
	시각	2	2	3	2.50	0.71	
	청각언어	3	1	3	2.00	1.00	
	지적	3	11	26	18.33	7.51	
	뇌병변	3	2	2	2.00	0.00	
	지체	3	3	6	4.33	1.53	
	자폐성	2	0	0	0.00	0.00	
	신장, 심장, 간, 호흡기	2	0	1	0.50	0.71	
	안면	2	0	0	0.00	0.00	
	장루, 요루	2	0	1	0.50	0.71	
	간질	2	0	0	0.00	0.00	

<표계속>

지역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입소율
제주	정원	2	105	106	105.50	0.71	84.36%
	현원	2	88	90	89.00	1.41	
	비장애인	2	33	54	43.50	14.85	
	정신	2	8	16	12.00	5.66	
	시각	1	4	4	4.00	.	
	청각언어	1	4	4	4.00	.	
	지적	2	5	17	11.00	8.49	
	뇌병변	2	3	11	7.00	5.66	
	지체	2	8	13	10.50	3.54	
	자폐성	0	
	신장, 심장, 간, 호흡기	1	2	2	2.00	.	
	안면	0	
	장루, 요루	0	
	간질	0	

2. 종사자 현황

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부랑인복지시설이 법정직원은 최소 9명에서 최대 123명으로 평균 23.46명이었으며, 현재직원은 최소 9명에서 최대 118명으로 평균 24.05명이었다. 이에 따른 직원충원율은 103.57%로 조사되었다. 각 직종별 종사인력 현황 중 가장 많은 인력구조를 보인 직종은 생활복지사로서 평균 6.38명이었으며, 시설별로 가장 큰 편차를 보인 인력은 생활복지사(평균 6.38명)와 생활지도원(평균 5.76명)이었다(<표 I-2-2-1> 참조).

<표 I-2-2-1>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직원수 및 직종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법정직원수	37	9	123	23.46	20.84	103.57%
현직원수	37	9	118	24.05	20.50	
시설장(원장)	36	0	1	0.97	0.17	
사무국장	37	1	2	1.03	0.16	

상담요원	37	1	2	1.08	0.28
생활복지사	37	1	47	6.38	8.52
자활지도원	11	0	3	0.55	0.93
의사(축탁의사)	19	0	3	0.95	0.91
간호사 또는 조무사	37	1	8	1.81	1.66
생활지도원	37	1	38	5.76	6.82
영양사	36	0	1	0.97	0.17
조리원	37	1	14	2.73	2.86
사무원	37	1	3	1.11	0.39
경비원	37	1	3	1.14	0.42
설비기사	10	0	3	0.90	0.99

※충원율: 법정직원대비 현직원비율을 의미하며, 법정직원수 및 현직원수의 평균치를 통해 계산됨.

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각 지역별로 부랑인복지시설의 법정직원 및 현직원, 법정직원대비 현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표 I-2-2-2>와 같다.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인 곳은 부산 지역으로 평균 17.67명의 법정직원과 평균 21.33명의 현직원으로 나타나 118.90%의 직원 충원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평균 53.25명의 법정직원과 평균 56.50명의 현직원이 충원되어 113.96%의 충원율을 보인 서울지역이었다. 그 외에 각 지역별로 직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경북 113.39%, 제주 113.33%, 전북 107.69%, 인천 106.25%, 대구 104.84%, 경남 103.24%, 강원 102.38%, 충남 100.00%, 경기 99.88%, 전남 95.59%, 광주 89.47%, 충북 88.57%, 대전 72.00%의 순서로 조사되었다(<표 I-2-2-2> 참조).

<표 I -2-2-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직원수 및 직종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서울	법정직원수	4	14	123	53.25	47.86	113.96%
	현직원수	4	17	118	56.50	43.70	
	시설장	4	1	1	1.00	0.00	
	사무국장	4	1	1	1.00	0.00	
	상담요원	4	1	2	1.25	0.50	
	생활복지사	4	5	47	17.50	19.82	
	자활지도원	3	0	3	1.33	1.53	
	의사(축탁의사)	4	0	3	1.25	1.26	
	간호사 또는 조무사	4	1	8	4.25	2.99	
	생활지도원	4	3	38	16.00	15.25	
	영양사	4	1	1	1.00	0.00	
	조리원	4	1	14	6.75	5.62	
	사무원	4	1	2	1.50	0.58	
	경비원	4	1	3	2.00	0.82	
	설비기사	4	1	3	1.75	0.96	
부산	법정직원수	3	13	27	17.67	8.08	118.90%
	현직원수	3	14	34	21.33	11.02	
	시설장	3	0	1	0.67	0.58	
	사무국장	3	1	2	1.33	0.58	
	상담요원	3	1	1	1.00	0.00	
	생활복지사	3	2	10	5.00	4.36	
	자활지도원	2	0	1	0.50	0.71	
	의사(축탁의사)	2	1	1	1.00	0.00	
	간호사 또는 조무사	3	1	2	1.33	0.58	
	생활지도원	3	3	5	3.67	1.15	
	영양사	3	1	1	1.00	0.00	
	조리원	3	1	5	2.33	2.31	
	사무원	3	1	3	1.67	1.15	
	경비원	3	1	1	1.00	0.00	
	설비기사	2	0	1	0.50	0.71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직원수 및 직종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대구	법정직원수	1	62	62	62.00	.	104.84%
	현직원수	1	65	65	65.00	.	
	시설장	1	1	1	1.00	.	
	사무국장	1	1	1	1.00	.	
	상담요원	1	2	2	2.00	.	
	생활복지사	1	29	29	29.00	.	
	자활지도원	0	
	의사(축탁의사)	1	3	3	3.00	.	
	간호사또는 조무사	1	6	6	6.00	.	
	생활지도원	1	14	14	14.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원	1	5	5	5.00	.	
	사무원	1	1	1	1.00	.	
	경비원	1	1	1	1.00	.	
	설비기사	0	
	인천	법정직원수	1	32	32	32.00	.
현직원수		1	34	34	34.00	.	
시설장		1	1	1	1.00	.	
사무국장		1	1	1	1.00	.	
상담요원		1	1	1	1.00	.	
생활복지사		1	12	12	12.00	.	
자활지도원		
의사(축탁의사)		1	2	2	2.00	.	
간호사 또는 조무사		1	4	4	4.00	.	
생활지도원		1	6	6	6.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원		1	4	4	4.00	.	
사무원		1	1	1	1.00	.	
경비원		1	1	1	1.00	.	
설비기사		
광주		법정직원수	1	19	19	19.00	.
	현직원수	1	17	17	17.00	.	
	시설장	1	1	1	1.00	.	
	사무국장	1	1	1	1.00	.	
	상담요원	1	1	1	1.00	.	
	생활복지사	1	4	4	4.00	.	
	자활지도원	
	의사(축탁의사)	
	간호사 또는 조무사	1	1	1	1.00	.	
	생활지도원	1	3	3	3.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원	1	3	3	3.00	.	
	사무원	1	1	1	1.00	.	
	경비원	1	1	1	1.00	.	
	설비기사	

지역	직원수 및 직종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원율
제주	법정직원수	2	15	15	15.00	0.00	113.33%
	현직원수	2	15	19	17.00	2.83	
	시설장	2	1	1	1.00	0.00	
	사무국장	2	1	1	1.00	0.00	
	상담요원	2	1	1	1.00	0.00	
	생활복지사	2	2	6	4.00	2.83	
	자활지도원	1	1	1	1.00	.	
	의사(축탁의사)	2	1	1	1.00	0.00	
	간호사또는 조무사	2	1	1	1.00	0.00	
	생활지도원	2	2	3	2.50	0.71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원	2	1	3	2.00	1.41	
	사무원	2	1	1	1.00	0.00	
	경비원	2	1	1	1.00	0.00	
	설비기사	

※충원율: 법정직원대비 현직원비율을 의미하며, 법정직원수 및 현직원수의 평균치를 통해 계산됨.

3. 자격증 소지현황

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부랑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는 평균 33.78명으로써 125.38%의 자격증 소지율을 보였다.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평균 8.05명이 소지한 사회복지사 2급과 평균 5.54명이 소지한 사회복지사 1급이었다(<표 I -2-3-1> 참조).

<표 I -2-3-1> 부랑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단위: 명

자격증 소지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총 자격증 소지자	37	8.00	299.00	33.78	48.61	125.38%
사회복지사	1급	37	1	32	5.54	6.48
	2급	37	0	66	8.05	10.32
	3급	37	0	10	0.38	1.66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37	0	1	0.03	0.16
	2급	37	0	4	0.32	0.88
간호(조무)사	37	0	28	3.14	5.14	
의사	37	0	6	0.59	1.14	
물리치료사	37	0	4	0.16	0.69	
초·중·고 교사	37	0	2	0.19	0.46	
특수교사	37	0	0	0.00	0.00	
영양사	37	0	2	0.95	0.40	
조리사	37	0	7	2.38	1.78	
기타	37	0	141	12.05	24.43	

※ 소지율: <표 I -2-2-1>의 현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을 의미함.
 ※ 1인 다수 자격증 모두 인정함.
 ※ 기타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함.

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각 지역별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율을 살펴보면, 경북 220.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164.71%, 경남 161.12%, 대전 161.11%, 강원 152.31%, 서울 146.26%, 경기 109.95%, 충북 106.35%, 전북 105.89%, 제주 105.27%, 전남 96.33%, 광주 94.12%, 부산 87.90% 충남 78.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 -2-3-2> 참조).

<표 I-2-3-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자격증 소지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서울	총 자격증 소지자	4	8.00	299.00	110.00	130.2	146.26%	
	사회복지사	1급	4	7	32	14.75	11.70	
		2급	4	0	66	21.00	30.34	
		3급	4	0	10	2.50	5.00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4	0	0	0.00	0.00	
		2급	4	0	4	1.25	1.89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4	0	28	9.25	12.74	
		의사	4	0	6	2.00	2.71	
		물리치료사	4	0	4	1.00	2.00	
		초·중·고 교사	4	0	1	0.25	0.50	
		특수교사	4	0	0	0.00	0.00	
		영양사	4	0	2	1.00	0.82	
		조리사	4	0	6	3.75	2.87	
		기타	4	0	141	53.25	61.98	
		총 자격증 소지자	3	10.00	25.00	18.00	7.55	87.90%
	사회복지사	1급	3	3	9	5.67	3.06	
2급		3	4	7	5.33	1.53		
3급		3	0	0	0.00	0.00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3	0	0	0.00	0.00		
	2급	3	0	0	0.00	0.00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3	1	2	1.67	0.58		
	의사	3	1	1	1.00	0.00		
	물리치료사	3	0	0	0.00	0.00		
	초·중·고 교사	3	0	0	0.00	0.00		
	특수교사	3	0	0	0.00	0.00		
	영양사	3	1	1	1.00	0.00		
	조리사	3	0	2	1.33	1.15		
	기타	3	0	3	2.00	1.73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대구	총 자격증 소지자	1	65.00	65.00	65.00	.	100.00%
	사회복지사	1급	1	28	28	28.00	.
		2급	1	9	9	9.00	.
		3급	1	0	0	0.00	.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1	0	0	0.00	.
		2급	1	0	0	0.00	.
	간호(조무)사	1	6	6	6.00	.	
	의사	1	3	3	3.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초·중·고 교사	1	0	0	0.00	.	
	특수교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5	5	5.00	.	
	기타	1	13	13	13.00	.	
총 자격증 소지자	1	56.00	56.00	56.00	.	164.71%	
인천	사회복지사	1급	1	10	10	10.00	.
		2급	1	10	10	10.00	.
		3급	1	0	0	0.00	.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1	0	0	0.00	.
		2급	1	2	2	2.00	.
	간호(조무)사	1	5	5	5.00	.	
	의사	1	2	2	2.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초·중·고 교사	1	1	1	1.00	.	
	특수교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4	4	4.00	.	
	기타	1	21	21	21.00	.	
	총 자격증 소지자	1	16.00	16.00	16.00	.	94.12%
광주	사회복지사	1급	1	4	4	4.00	.
		2급	1	7	7	7.00	.
		3급	1	0	0	0.00	.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1	0	0	0.00	.
		2급	1	0	0	0.00	.
	간호(조무)사	1	1	1	1.00	.	
	의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초·중·고 교사	1	0	0	0.00	.	
	특수교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3	3	3.00	.	
	기타	1	0	0	0.00	.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대전	총 자격증 소지자	1	29.00	29.00	29.00	.	161.11%
	1급	1	2	2	2.00	.	
	사회복지사 2급	1	10	10	10.00	.	
	3급	1	0	0	0.00	.	
	정신보건전문 1급	1	0	0	0.00	.	
	요원 2급	1	0	0	0.00	.	
	간호(조무)사	1	1	1	1.00	.	
	의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초·중·고 교사	1	0	0	0.00	.	
	특수교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4	4	4.00	.	
	기타	1	11	11	11.00	.	
	총 자격증 소지자	3	16.00	35.00	22.67	10.69	109.95%
1급	3	2	4	3.33	1.15		
사회복지사 2급	3	4	9	6.67	2.52		
3급	3	0	0	0.00	0.00		
정신보건전문 1급	3	0	0	0.00	0.00		
요원 2급	3	0	1	0.33	0.58		
간호(조무)사	3	1	7	3.67	3.06		
의사	3	0	0	0.00	0.00		
물리치료사	3	0	0	0.00	0.00		
초·중·고 교사	3	0	0	0.00	0.00		
특수교사	3	0	0	0.00	0.00		
영양사	3	1	1	1.00	0.00		
조리사	3	1	2	1.67	0.58		
기타	3	0	15	6.00	7.94		
총 자격증 소지자	3	18.00	24.00	21.67	3.21	152.31%	
1급	3	2	5	3.33	1.53		
사회복지사 2급	3	3	5	4.00	1.00		
3급	3	0	1	0.33	0.58		
정신보건전문 1급	3	0	0	0.00	0.00		
요원 2급	3	0	3	1.00	1.73		
간호(조무)사	3	1	3	1.67	1.15		
의사	3	0	0	0.00	0.00		
물리치료사	3	0	1	0.33	0.58		
초·중·고 교사	3	0	1	0.33	0.58		
특수교사	3	0	0	0.00	0.00		
영양사	3	1	1	1.00	0.00		
조리사	3	2	3	2.33	0.58		
기타	3	0	13	7.33	6.66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충북	총 자격증 소지자	2	11.00	73.00	42.00	43.84	106.35%
	사회복지사	1급	2	1	8	4.50	4.95
		2급	2	4	14	9.00	7.07
		3급	2	0	1	0.50	0.71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2	0	0	0.00	0.00
		2급	2	0	0	0.00	0.00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2	1	17	9.00	11.31
		의사	2	0	0	0.00	0.00
		물리치료사	2	0	0	0.00	0.00
		초·중·고 교사	2	0	0	0.00	0.00
		특수교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0	2	1.00	1.41
		조리사	2	2	3	2.50	0.71
		기타	2	1	30	15.50	20.51
	총 자격증 소지자	1	15.00	15.00	15.00	.	78.95%
충남	사회복지사	1급	1	3	3	3.00	.
		2급	1	9	9	9.00	.
		3급	1	0	0	0.00	.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1	0	0	0.00	.
		2급	1	0	0	0.00	.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1	1	1	1.00	.
		의사	1	0	0	0.00	.
		물리치료사	1	0	0	0.00	.
		초·중·고 교사	1	0	0	0.00	.
		특수교사	1	0	0	0.00	.
		영양사	1	1	1	1.00	.
		조리사	1	1	1	1.00	.
		기타	1	0	0	0.00	.
	총 자격증 소지자	3	11.00	19.00	15.33	4.04	105.89%
	전북	사회복지사	1급	3	1	7	4.00
2급			3	0	8	4.67	4.16
3급			3	0	1	0.33	0.58
정신보건전문 요원		2급	3	0	0	0.00	0.00
		2급	3	0	0	0.00	0.00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3	1	3	2.33	1.15
		의사	3	0	0	0.00	0.00
		물리치료사	3	0	0	0.00	0.00
		초·중·고 교사	3	0	0	0.00	0.00
		특수교사	3	0	0	0.00	0.00
		영양사	3	1	1	1.00	0.00
		조리사	3	0	3	1.67	1.53
		기타	3	0	4	1.33	2.31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전남	총 자격증 소지자	6	10.00	23.00	13.67	4.93	96.33%	
	사회복지사	1급	6	2	5	3.00	1.10	
		2급	6	3	11	5.00	3.03	
		3급	6	0	0	0.00	0.00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6	0	0	0.00	0.00	
		2급	6	0	1	0.17	0.41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6	1	4	1.50	1.22	
		의사	6	0	1	0.33	0.52	
		물리치료사	6	0	0	0.00	0.00	
		초·중·고 교사	6	0	1	0.17	0.41	
		특수교사	6	0	0	0.00	0.00	
		영양사	6	0	1	0.67	0.52	
		조리사	6	1	1	1.00	0.00	
		기타	6	0	4	1.83	1.60	
		총 자격증 소지자	2	41.00	50.00	45.50	6.36	220.72%
		사회복지사	1급	2	2	3	2.50	0.71
2급	2		10	12	11.00	1.41		
3급	2		0	0	0.00	0.00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2	0	1	0.50	0.71		
	2급	2	0	0	0.00	0.00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2	1	2	1.50	0.71		
	의사	2	1	1	1.00	0.00		
	물리치료사	2	0	0	0.00	0.00		
	초·중·고 교사	2	0	0	0.00	0.00		
	특수교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5	5	5.00	0.00		
	기타	2	20	26	23.00	4.24		
	총 자격증 소지자	4	15.00	33.00	25.75	7.72	161.12%	
	사회복지사	1급	4	1	4	2.75	1.26	
2급		4	5	9	7.50	1.91		
3급		4	0	1	0.25	0.50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4	0	0	0.00	0.00		
	2급	4	0	0	0.00	0.00		
간호(조무)사 의사 물리치료사 초·중·고 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간호(조무)사	4	1	1	1.00	0.00		
	의사	4	0	0	0.00	0.00		
	물리치료사	4	0	0	0.00	0.00		
	초·중·고 교사	4	0	2	0.75	0.96		
	특수교사	4	0	0	0.00	0.00		
	영양사	4	1	1	1.00	0.00		
	조리사	4	1	7	2.50	3.00		
	기타	4	0	21	10.00	9.35		

<표계속>

<표계속>

지역	자격증 소지자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소지율
제주	총 자격증 소지자	2	15.00	21.00	18.00	4.24	105.27%
	사회복지사	1급	2	3	4	3.50	0.71
		2급	2	3	4	3.50	0.71
		3급	2	0	0	0.00	0.00
	정신보건전문 요원	1급	2	0	0	0.00	0.00
		2급	2	0	0	0.00	0.00
	간호(조무)사	2	1	2	1.50	0.71	
	의사	2	1	1	1.00	0.00	
	물리치료사	2	0	1	0.50	0.71	
	초·중·고 교사	2	0	0	0.00	0.00	
	특수교사	2	0	0	0.00	0.00	
	영양사	2	1	1	1.00	0.00	
	조리사	2	2	2	2.00	0.00	
	기타	2	2	8	5.00	4.24	

※소지율: <표 I -2-2-2>의 현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직원 비율을 의미함.

※1인 다수 자격증 모두 인정함.

※기타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함.

제 3 절 재정 현황

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전국의 부랑인복지시설의 세입총액은 평균 1,844,858천원이었으며, 세출총액은 평균 1,813,124천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표준편차를 고려해 볼 때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이 각 시설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후원금 총액은 평균 70,299천원이었으며, 보조금 총액은 평균 1,573,977천원, 인건비 총액은 평균 823,680천원, 운영비 총액은 평균 480,393천원, 사업비 총액은 평균 45,679천원이었다(<표 I -3-1-1> 참조).

<표 I -3-1-1>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 단위: 천원

재정항목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세입 총액	37	442,091	8,130,315	1,844,858	1,870,835
세출 총액	37	442,091	8,130,315	1,813,124	1,869,531
후원금 총액	37	.	340,002	70,299	81,718
보조금 총액	37	408,539	6,880,384	1,573,977	1,545,823
인건비 총액	37	286,413	4,412,232	823,680	748,534
운영비 총액	37	17,152	3,491,608	480,393	707,477
사업비 총액	36	.	476,076	45,679	82,778

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표 I -3-1-2>를 통해 각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의 재정현황을 비교해보면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타난 지역은 대구(1개소)로써 각각 8,130,315천원과 8,130,315천원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세입 총액 및 세출 총액을 보인 지역은 전남(6개소)으로써 각각 856,943천원과 844,424천원이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입지시설이 1개소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지역간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원금 총액 평균은 70,299천원이며 서울(1개소)지역의 후원금이 가장 큰 금액으로 집계되었고 220,618천원이다. 경기(3개소)지역의 후원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집계되었다. 보조금 총액 평균은 1,573,977천원이다. 서울(1개소)지역의 보조금이 가장 큰 금액으로 집계되었고 전남(6개소)지역의 보조금이 가장 작은 금액으로 집계되었으며 각각 3,093,267천원과 786,745천원이다. 인건비 총액 평균은 823,680천원이며, 서울(1개소)지역의 인건비가 가장 큰 금액으로 집계되었고 전남(6개소)지역의 인건비가 가장 작은 금액으로 집계되었으며 각각 1,948,816천원과 471,228천원이다. 운영비 총액 평균은 480,393천원이며 가장 큰 금액은 2,482,276천원으로 대구이며, 가장 작은 금액은 112,308천원으로 전북이다. 사업비 총액 평균은 45,679천원으로써 가장 큰 금액은 각각 경기(3

개소) 172,256천원이다.

<표 I -3-1-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현황

※단위: 천원

지역	재정항목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서울	세입 총액	4	1,000,659	8,021,132	3,733,472	3,168,297
	세출 총액	4	829,000	8,021,132	3,690,558	3,218,418
	후원금 총액	4	87,876	340,002	220,618	106,515
	보조금 총액	4	718,072	6,811,871	3,093,267	2,769,466
	인건비 총액	4	555,694	4,412,232	1,948,816	1,711,383
	운영비 총액	4	17,152	3,491,608	1,211,352	1,614,712
	사업비 총액	4	42,524	125,629	85,134	42,396
부산	세입 총액	3	652,848	4,855,316	2,169,970	2,332,111
	세출 총액	3	652,848	4,855,316	2,153,500	2,344,628
	후원금 총액	3	6,610	188,872	91,865	91,697
	보조금 총액	3	622,939	3,343,398	1,588,658	1,522,216
	인건비 총액	3	417,802	1,122,698	720,435	362,856
	운영비 총액	3	167,049	708,589	355,080	306,356
	사업비 총액	3	11,300	18,500	14,463	3,679
대구	세입 총액	1	8,130,315	8,130,315	8,130,315	.
	세출 총액	1	8,130,315	8,130,315	8,130,315	.
	후원금 총액	1	89,307	89,307	89,307	.
	보조금 총액	1	6,880,384	6,880,384	6,880,384	.
	인건비 총액	1	2,350,980	2,350,980	2,350,980	.
	운영비 총액	1	2,482,276	2,482,276	2,482,276	.
	사업비 총액	1	40,175	40,175	40,175	.
인천	세입 총액	1	2,455,534	2,455,534	2,455,534	.
	세출 총액	1	2,166,093	2,166,093	2,166,093	.
	후원금 총액	1	59,719	59,719	59,719	.
	보조금 총액	1	2,190,528	2,190,528	2,190,528	.
	인건비 총액	1	1,061,842	1,061,842	1,061,842	.
	운영비 총액	1	863,412	863,412	863,412	.
	사업비 총액	1	16,838	16,838	16,838	.

<표 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재정항목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광주	세입 총액	1	992,307	992,307	992,307	.
	세출 총액	1	972,136	972,136	972,136	.
	후원금 총액	1	30,895	30,895	30,895	.
	보조금 총액	1	912,754	912,754	912,754	.
	인건비 총액	1	535,128	535,128	535,128	.
	운영비 총액	1	262,181	262,181	262,181	.
	사업비 총액	1	16,593	16,593	16,593	.
대전	세입 총액	1	1,243,689	1,243,689	1,243,689	.
	세출 총액	1	1,228,660	1,228,660	1,228,660	.
	후원금 총액	1	24,169	24,169	24,169	.
	보조금 총액	1	1,183,569	1,183,569	1,183,569	.
	인건비 총액	1	620,350	620,350	620,350	.
	운영비 총액	1	471,490	471,490	471,490	.
	사업비 총액	1	6,538	6,538	6,538	.
경기	세입 총액	3	1,274,612	1,836,801	1,523,620	286,536
	세출 총액	3	1,274,612	1,836,801	1,508,509	292,740
	후원금 총액	3	.	44,206	23,885	22,318
	보조금 총액	3	1,177,585	1,631,511	1,407,737	227,030
	인건비 총액	3	557,096	750,053	684,503	110,353
	운영비 총액	3	191,687	776,153	414,431	316,048
	사업비 총액	3	16,172	476,076	172,256	263,149
강원	세입 총액	3	659,149	2,479,182	1,340,339	992,580
	세출 총액	3	629,928	2,446,787	1,319,800	984,148
	후원금 총액	3	7,393	231,286	103,242	115,367
	보조금 총액	3	625,113	2,194,016	1,166,335	890,419
	인건비 총액	3	439,293	1,465,374	781,730	592,053
	운영비 총액	3	138,411	540,469	294,644	215,482
	사업비 총액	2	9,153	32,467	20,810	16,485
충북	세입 총액	2	743,349	4,999,060	2,871,204	3,009,242
	세출 총액	2	743,349	4,852,291	2,797,820	2,905,461
	후원금 총액	2	17,554	147,549	82,551	91,921
	보조금 총액	2	708,521	4,016,565	2,362,543	2,339,140
	인건비 총액	2	494,930	1,627,829	1,061,380	801,080
	운영비 총액	2	43,149	1,675,946	859,547	1,154,562
	사업비 총액	2	63,152	183,678	123,415	85,225
충남	세입 총액	1	1,030,082	1,030,082	1,030,082	.
	세출 총액	1	1,023,186	1,023,186	1,023,186	.
	후원금 총액	1	12,284	12,284	12,284	.
	보조금 총액	1	985,011	985,011	985,011	.
	인건비 총액	1	599,587	599,587	599,587	.
	운영비 총액	1	291,568	291,568	291,568	.
	사업비 총액	1	4,823	4,823	4,823	.
전북	세입 총액	3	621,834	2,383,225	1,257,306	977,767
	세출 총액	3	621,834	2,304,059	1,223,952	937,457
	후원금 총액	3	17,317	26,784	23,481	5,342
	보조금 총액	3	549,949	2,230,411	1,152,208	935,885
	인건비 총액	3	418,981	499,541	464,334	41,227
	운영비 총액	3	90,469	134,504	112,308	22,020
	사업비 총액	3	14,078	39,685	26,280	12,846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재정항목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전남	세입 총액	6	442,091	1,550,826	856,943	424,539
	세출 총액	6	442,091	1,550,826	844,424	424,221
	후원금 총액	6	10,515	59,607	32,083	16,531
	보조금 총액	6	408,539	1,385,533	786,745	375,311
	인건비 총액	6	286,413	785,403	471,228	202,525
	운영비 총액	6	74,208	551,759	242,322	187,714
	사업비 총액	6	.	38,454	17,247	15,200
경북	세입 총액	2	955,821	1,848,301	1,402,061	631,079
	세출 총액	2	827,255	1,848,301	1,337,778	721,989
	후원금 총액	2	65,560	180,847	123,204	81,520
	보조금 총액	2	606,231	1,511,245	1,058,738	639,942
	인건비 총액	2	529,315	761,423	645,369	164,125
	운영비 총액	2	162,590	570,431	366,510	288,387
	사업비 총액	2	38,481	40,637	39,559	1,524
경남	세입 총액	4	717,600	1,970,029	1,275,656	523,661
	세출 총액	4	665,348	1,970,029	1,262,593	542,534
	후원금 총액	4	12,100	88,675	37,135	35,165
	보조금 총액	4	536,621	1,940,009	1,178,458	588,270
	인건비 총액	4	429,426	643,783	533,300	106,436
	운영비 총액	4	122,201	243,292	193,309	50,945
	사업비 총액	4	1,600	32,107	16,204	12,983
제주	세입 총액	2	761,933	1,047,492	904,712	201,920
	세출 총액	2	761,933	1,035,625	898,779	193,529
	후원금 총액	2	6,237	15,997	11,117	6,901
	보조금 총액	2	744,222	745,936	745,079	1,212
	인건비 총액	2	528,948	656,995	592,971	90,543
	운영비 총액	2	157,471	192,077	174,774	24,470
	사업비 총액	2	10,000	34,066	22,033	17,017

제 4 절 시설 구조 및 규모

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전국의 부랑인복지시설의 대지면적은 평균 20,750.54㎡로써 최소 1,194.00㎡에서 최대 134,925.00㎡까지 분포하였다. 건물 즉, 건축면적은 평균 5,524.33㎡이며 최소 345.46㎡에서 최대 58,184.98㎡까지 나타났다. 특별히 대지면적과 건물에 있어서는 각 시설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각 실(室)별 개수와 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실개수는 평균 21.83개로써 면적은 평균 2,055.93㎡로 나타났으며 최소 1개에서 최대 153개까지, 최소 60.00㎡에서 최대 44,535.00㎡까지 분포하고 있다. 사무실은 평균 3.08개였고, 면적은 평균 167.68㎡였다. 상담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15개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1.78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적은 적게는 7.97㎡에서 크게는 535.00㎡로 평균 41.21㎡로 나타났다. 의무실의 개수를 살펴보면 평균 1.51개가 있었고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가 분포하였으며 면적을 살펴보면 평균 82.11㎡로써 최소 5.67㎡에서 최대 692.82㎡로 분포하였다. 프로그램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로 평균 2.33개의 규모를 보였으며, 면적은 최소 21.78㎡에서 최대 1,129.72㎡이며 평균 161.05㎡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장을 살펴보면 평균 1.82개의 규모로 평균 264.80㎡를 보였다. 도서관(오락실)은 평균 1.34개의 규모로써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까지이며, 평균 면적은 196.75㎡로써 작게는 15.30㎡에서 크게는 3,536.44㎡였다. 조리실을 살펴보면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이며 평균 1.46개며, 최소 31.40㎡에서 최대 1,025.20㎡로써 평균 201.83㎡로 나타났다. 목욕실은 1개에서 30개로서 평균 4.41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작게는 27.63㎡에서 크게는 798.80㎡까지 평균 153.53㎡로 나타났다. 화장실은 평균 16.30개였는데, 1개에서 62개까지 시설마다 다양하게 나타났고, 면적 또한 23.49㎡에서 1,121.03㎡까지 평균 181.17㎡였다. 급/배수 시설의 경우 평균 3.86개로 평균 140.03㎡이며 비상재해대비시설은 평균

25.53개로써 평균 면적은 271.98㎡로 나타났다. 옥외운동장은 평균 4.20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면적은 1,700.49㎡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간은 평균 10.50개로서, 면적은 평균 1,322.04㎡였다(<표 I-4-1-1> 참조).

<표 I-4-1-1>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규모

※단위: 개(개수), ㎡(면적)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지면적	37	1,194.00	134,925.00	20,750.54	265,554.54	
건물	37	345.46	58,184.98	5,524.33	953,1.88	
거실	개수	36	1.00	153.00	21.83	28.63
	면적	36	60.00	44,535.00	2,055.93	7,358.89
사무실	개수	37	1.00	21.00	3.08	3.54
	면적	37	25.80	1,138.45	167.68	215.09
상담실	개수	36	1.00	15.00	1.78	2.42
	면적	36	7.97	535.00	41.21	86.25
의무실	개수	37	1.00	7.00	1.51	1.26
	면적	37	5.67	692.82	82.11	129.52
프로그램실	개수	36	1.00	9.00	2.33	1.82
	면적	36	21.78	1,129.72	161.05	197.21
자활사업장	개수	33	1.00	6.00	1.82	1.31
	면적	34	24.36	1,479.50	264.80	315.10
도서관 (오락실)	개수	35	1.00	5.00	1.34	0.80
	면적	34	15.30	3,536.44	196.75	601.44
조리실	개수	37	1.00	10.00	1.46	1.57
	면적	37	31.40	1,025.20	201.83	228.60
목욕실	개수	37	1.00	30.00	4.41	5.45
	면적	37	27.63	798.80	153.53	150.40
화장실	개수	37	1.00	62.00	16.30	14.46
	면적	37	23.49	1,121.03	181.17	194.74
급/배수시설	개수	28	1.00	34.00	3.86	6.22
	면적	22	19.83	693.96	140.03	160.98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19	1.00	446.00	25.53	101.84
	면적	18	15.34	1,066.88	271.98	338.81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35	1.00	34.00	4.20	6.08
	면적	36	3.52	10,789.65	1,700.49	2,119.19
기타	개수	14	1.00	50.00	10.50	13.81
	면적	27	67.26	4914.46	1,322.04	1,335.38

※무응답 시설 제외.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조사됨.

2.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구조 및 규모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지면적은 경북(2개소) 평균 70,568.00㎡로 가장 넓었으며, 충북(2개소) 평균 59,388.00㎡, 대구(1개소) 평균 41,884.00㎡, 경기(3개소) 32,757.33㎡, 인천(1개소) 평균 25,051.00㎡, 서울(4개소) 평균 23,786.20㎡, 대전(1개소) 21,222.00㎡ 순으로 비교적 넓은 대지면적을 나타냈다. 반면, 평균 7,473.33㎡의 전북(3개소), 평균 7,353.00㎡의 제주(2개소), 평균 7,103.33㎡의 부산(3개소), 평균 7,002.00㎡ 충남(1개소)은 상대적으로 대지 면적이 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건축면적은 인천(1개소) 58,184.98㎡로 가장 넓고 경남(4개소) 21,947.2가장 좁으며 나머지 지역의 부랑인복지시설은 5,000.00㎡ ~ 20,000.00㎡ 수준으로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각 실(室)별로 비교해보면 거실면적의 경우 전국 평균 2,055.93㎡로 나타났으며 경기(3개소)이 15,478.19㎡ 가장 넓으며 제주(2개소)가 89.13㎡로 가장 좁다.

사무실 개수는 대구(1개소) 평균 21.00개로 가장 많고 충남(1개소)이 평균 1.00으로 가장 적다. 사무실 면적은 대구(1개소) 1,138.45㎡로 가장 넓고 강원(3개소) 61.02㎡로 가장 좁게 나타났다.

상담실은 전국평균 1.78개였으며 서울(4개소)이 4.75개로 가장 많았고, 의무실은 서울(4개소)이 3.50개로 가장 많은 의무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대구(1개소) 692.82㎡으로 가장 넓었다.

프로그램실에 대해서는 대구(1개소) 9.00개로 많은 프로그램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실 면적도 대구(1개소) 1,129.72㎡로 넓게 나타났다.

자활사업장은 서울(4개소)이 평균 3.75개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충남(1개소)에서는 1,189.50㎡로 가장 넓게 운영하고 있었다.

도서관(오락실)은 대구(1개소)에서 5.00개, 평균 3,536.44㎡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리실이 확보된 지역은 서울(4개소) 3.50개가 있었으며, 인천(1개소)이 798.00㎡로 가장 넓었다.

목욕실의 경우 대구(1개소) 30.00개와 798.80㎡로 가장 넓었다.

화장실은 대구(1개소) 평균 62.00개로 가장 많은 개수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대구(1개소) 448.82㎡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급/배수시설은 제주(2개소)이 평균 17.50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4개소)이 299.17㎡로 가장 넓은 급/배수시설 면적을 확보하고 있었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의 경우는 경북(2개소)이 가장 많은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면적의 경우 인천(1개소)이 977.40㎡로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옥외운동장 및 창고를 갖춘 지역은 대구(1개소) 34.00개, 가장 넓은 면적을 갖춘 지역은 경기(3개소) 4,534.34㎡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간은 서울(4개소)의 부랑인복지시설이 37.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1개소)의 부랑인복지시설이 평균 4,324.50㎡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표 I-4-2-1> 참조).

<표 I-4-2-1>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규모

※단위: 개(개수), m²(면적)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서울	대지면적	4	10,386.00	40,421.00	23,786.20	13,805.17	
	건물	4	1,079.74	14,587.98	6,397.07	5,898.73	
	거실	개수 4 면적 4	2.00 61.65	57.00 5,136.14	17.25 1,631.64	26.59 2,399.18	
	사무실	개수 4 면적 4	2.00 81.77	7.00 434.90	4.25 251.19	2.06 174.49	
	상담실	개수 4 면적 4	1.00 9.24	15.00 535.00	4.75 154.50	6.85 254.15	
	의무실	개수 4 면적 4	1.00 31.35	7.00 340.15	3.50 161.39	2.65 135.96	
	프로그램실	개수 4 면적 4	2.00 53.20	4.00 144.34	2.75 114.14	0.96 41.99	
	자활사업장	개수 4 면적 4	1.00 97.20	6.00 1,479.50	3.75 490.34	2.22 662.16	
	도서관 (오락실)	개수 4 면적 4	1.00 19.38	2.00 100.00	1.25 54.73	0.50 41.06	
	조리실	개수 4 면적 4	1.00 64.26	10.00 1025.20	3.50 330.12	4.36 465.37	
	목욕실	개수 4 면적 4	1.00 27.63	14.00 250.00	5.50 147.74	5.92 101.71	
	화장실	개수 4 면적 4	7.00 79.47	59.00 1,121.03	25.50 419.32	24.34 475.64	
	급/배수시설	개수 4 면적 4	2.00 33.06	8.00 693.96	5.00 299.17	2.94 308.56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2 면적 2	1.00 54.60	2.00 319.00	1.50 186.80	0.71 186.96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4 면적 4	1.00 76.14	4.00 4,112.00	3.25 2,334.54	1.50 1,724.37	
	기타	개수 2 면적 4	24.00 1,055.22	50.00 2,897.02	37.00 2,073.36	18.38 768.08	
	부산	대지면적	3	3,260.00	11,564.00	7,103.33	4,186.28
		건물	3	1,739.40	9,657.80	4,896.36	4,195.95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부산	거실	개수	3	11.00	66.00	34.00	28.58
		면적	3	396.00	1,848.20	913.07	811.36
	사무실	개수	3	2.00	5.00	3.00	1.73
		면적	3	72.50	324.00	168.17	136.12
	상담실	개수	3	1.00	3.00	1.67	1.15
		면적	3	18.00	60.00	32.67	23.69
	의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36.00	127.50	67.50	51.98
	프로그램실	개수	3	1.00	3.00	2.33	1.15
		면적	3	50.40	420.00	265.49	192.10
	자활사업장	개수	3	1.00	3.00	2.00	1.00
		면적	3	79.70	295.20	202.97	111.05
	도서관 (오락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36.00	389.68	160.09	199.05
	조리실	개수	3	1.00	3.00	1.67	1.15
		면적	3	42.00	237.60	127.87	99.96
	목욕실	개수	3	2.00	8.00	4.00	3.46
		면적	3	54.00	290.00	147.17	125.59
	화장실	개수	3	3.00	34.00	15.67	16.26
		면적	3	69.60	442.00	217.40	197.72
	급/배수시설	개수	3	1.00	4.00	2.00	1.73
		면적	3	54.00	172.80	119.60	60.36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2	2.00	4.00	3.00	1.41
면적		2	100.80	150.40	125.60	35.07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3	1.00	7.00	3.33	3.21	
	면적	3	757.00	1542.00	1135.67	393.23	
기타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3	115.07	957.99	564.29	424.19	
대구	대지면적		1	41,884.00	41,884.00	41,884.00	.
	건물		1	15,436.00	15,436.00	15,436.00	.
	거실	개수	1	153.00	153.00	153.00	.
		면적	1	2,593.23	25,93.23	2,593.23	.
	사무실	개수	1	21.00	21.00	21.00	.
		면적	1	1,138.45	1,138.45	1,138.45	.
	상담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38.64	38.64	38.64	.

<표계속>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구	의무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692.82	692.82	692.82	.
	프로그램실	개수	1	9.00	9.00	9.00	.
		면적	1	1,129.72	1,129.72	1,129.72	.
	자활사업장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453.75	453.75	453.75	.
	도서관 (오락실)	개수	1	5.00	5.00	5.00	.
		면적	1	3,536.44	3,536.44	3,536.44	.
	조리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476.99	476.99	476.99	.
	목욕실	개수	1	30.00	30.00	30.00	.
		면적	1	798.80	798.80	798.80	.
	화장실	개수	1	62.00	62.00	62.00	.
		면적	1	448.82	448.82	448.82	.
	급/배수시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72.46	172.46	172.46	.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면적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1	34.00	34.00	34.00	.
		면적	1	3,715.62	3,715.62	3,715.62	.
기타	개수	1	24.00	24.00	24.00	.	
	면적	1	241.12	241.12	241.12	.	
대지면적			1	25,051.00	25,051.00	25,051.00	.
	건물		1	58,184.98	58,184.98	58,184.98	.
거실	개수	1	4.00	4.00	4.00	.	
	면적	1	388.80	388.80	388.80	.	
사무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172.80	172.80	172.80	.	
상담실	개수	1	4.00	4.00	4.00	.	
	면적	1	45.70	45.70	45.70	.	
의무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43.20	43.20	43.20	.	
프로그램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43.20	43.20	43.20	.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인천	자활사업장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433.30	433.30	433.30	.
	도서관 (오락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66.00	66.00	66.00	.
	조리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798.00	798.00	798.00	.
	목욕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51.20	151.20	151.20	.
	화장실	개수	1	7.00	7.00	7.00	.
		면적	1	135.20	135.20	135.20	.
	급/배수시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64.80	64.80	64.80	.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977.40	977.40	977.40	.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1	5.00	5.00	5.00	.
		면적	1	850.40	850.40	850.40	.
	기타	개수
		면적
대지면적			1	17,411.00	17,411.00	17,411.00	.
건물			1	2,834.75	2,834.75	2,834.75	.
광주	거실	개수	1	12.00	12.00	12.00	.
		면적	1	638.00	638.00	638.00	.
	사무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115.00	115.00	115.00	.
	상담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5.10	15.10	15.10	-
	의무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27.00	27.00	27.00	-
	프로그램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130.05	130.05	130.05	.
	자활사업장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16.35	116.35	116.35	-
	도서관 (오락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53.00	53.00	53.00	-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광주	조리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79.37	179.37	179.37	.
	목욕실	개수	1	6.00	6.00	6.00	.
		면적	1	82.71	82.71	82.71	.
	화장실	개수	1	11.00	11.00	11.00	.
		면적	1	142.62	142.62	142.62	.
	급/배수시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19.83	19.83	19.83	.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면적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1	15.00	15.00	15.00	.
		면적	1	1,458.02	1,458.02	1,458.02	.
	기타	개수
		면적
대지면적			1	21,226.00	21,226.00	21,226.00	.
건물			1	3,865.96	3,865.96	3,865.96	.
대전	거실	개수	1	32.00	32.00	32.00	.
		면적	1	743.10	743.10	743.10	.
	사무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86.00	86.00	86.00	.
	상담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13.20	13.20	13.20	.
	의무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10.80	10.80	10.80	.
	프로그램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122.00	122.00	122.00	.
	자활사업장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388.80	388.80	388.80	-
	도서관 (오락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80.00	80.00	80.00	.
	조리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44.00	144.00	144.00	.
	목욕실	개수	1	10.00	10.00	10.00	.
		면적	1	117.00	117.00	117.00	.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전	화장실	개수	1	33.00	33.00	33.00	.
		면적	1	226.10	226.10	226.10	.
	급/배수시설	개수	1	3.00	3.00	3.00	.
		면적	1	156.72	156.72	156.72	.
	비상재해대비 시설	개수	1	8.00	8.00	8.00	.
		면적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1	6.00	6.00	6.00	.
		면적	1	122.00	122.00	122.00	.
	기타	개수
		면적	1	2,045.04	2,045.04	2,045.04	.
경기	대지면적		3	7,734.00	80,055.00	32,757.33	40,984.04
	건물		3	1,805.10	6,167.55	3,652.08	2,256.75
	거실	개수	3	7.00	27.00	14.33	11.02
		면적	3	513.00	44,535.00	15,478.19	25,167.73
	사무실	개수	3	3.00	7.00	5.33	2.08
		면적	3	74.00	387.75	206.18	162.60
	상담실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24.00	35.10	27.93	6.22
	의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24.70	51.00	38.88	13.27
	프로그램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56.00	100.00	76.00	22.27
	자활사업장	개수	3	1.00	3.00	1.67	1.15
		면적	3	106.38	703.40	393.68	299.14
	도서관 (오락실)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49.50	84.00	67.90	17.36
	조리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49.50	485.37	273.34	218.17
	목욕실	개수	3	1.00	3.00	1.67	1.15
		면적	3	140.40	270.60	192.00	69.17
	화장실	개수	3	12.00	33.00	19.67	11.59
		면적	3	125.40	366.24	246.65	120.43
	급/배수시설	개수	2	1.00	6.00	3.50	3.54
		면적	2	27.93	82.50	55.22	38.59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기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1	6.00	6.00	6.00	.
		면적	1	844.99	844.99	844.99	.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3	1.00	6.00	3.67	2.52
		면적	3	1,295.38	10,789.65	4,534.34	5,418.40
	기타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3	198.00	4,914.46	1,814.21	2,685.71
	대지면적		3	6,342.00	15,745.00	11,432.67	4,749.57
	건물		3	1,926.19	4,292.00	2,738.90	1,345.51
	거실	개수	3	3.00	32.00	19.67	14.98
		면적	3	60.00	560.46	351.81	260.39
	사무실	개수	3	1.00	4.00	2.00	1.73
		면적	3	50.40	76.40	61.02	13.64
	상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13.20	36.40	22.13	12.49
	의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15.75	26.40	20.70	5.37
	프로그램실	개수	3	2.00	5.00	3.00	1.73
		면적	3	52.00	458.87	248.64	203.78
	자활사업장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3	54.65	382.47	181.59	175.98
	도서관 (오락실)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33.60	165.00	78.33	75.07
	조리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39.20	166.00	87.62	68.50
	목욕실	개수	3	1.00	5.00	3.00	2.00
		면적	3	58.80	140.00	99.30	40.60
	화장실	개수	3	8.00	12.00	9.67	2.08
		면적	3	72.34	120.98	98.74	24.59
	급/배수시설	개수	2	2.00	4.00	3.00	1.41
		면적	1	99.65	99.65	99.65	.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40.00	105.20	72.60	46.10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78.22	2,393.95	1,057.39	1,198.52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강원	기타	개수	1	8.00	8.00	8.00	.
		면적	1	804.05	804.05	804.05	.
	대지면적	개수	2	53,009.00	65,767.00	59,388.00	9,021.27
		면적	2	1,322.36	10,154.92	5,738.64	6,245.56
	거실	개수	2	4.00	25.00	14.50	14.85
		면적	2	332.89	3,811.35	2,072.12	2,459.64
	사무실	개수	2	2.00	4.00	3.00	1.41
		면적	2	51.11	106.29	78.70	39.02
	상담실	개수	2	1.00	4.00	2.50	2.12
		면적	2	13.72	84.15	48.94	49.80
	의무실	개수	2	1.00	4.00	2.50	2.12
		면적	2	10.89	130.29	70.59	84.43
	프로그램실	개수	2	1.00	4.00	2.50	2.12
		면적	2	21.78	189.69	105.74	118.73
	자활사업장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78.00	133.68	105.84	39.37
충북	도서관 (오락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30.00	30.00	30.00	.
	조리실	개수	2	1.00	4.00	2.50	2.12
		면적	2	32.67	473.25	252.96	311.54
	목욕실	개수	2	3.00	8.00	5.50	3.54
		면적	2	53.08	540.14	296.61	344.40
	화장실	개수	2	6.00	15.00	10.50	6.36
		면적	2	78.81	403.84	241.33	229.83
	급/배수시설	개수
		면적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면적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2	2.00	10.00	6.00	5.66
		면적	2	1,150.00	1,652.89	1,401.45	355.60
	기타	개수	1	10.00	10.00	10.00	.
		면적	2	594.00	3,498.00	2,046.00	2053.44
충남	대지면적	개수	1	7,002.00	7,002.00	7,002.00	.
		면적	1	6,816.50	6,816.50	6,816.50	.

<표계속>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충남	거실	개수	1	4.00	4.00	4.00	.
		면적	1	298.50	298.50	298.50	.
	사무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11.30	111.30	111.30	.
	상담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45.00	45.00	45.00	.
	의무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31.50	31.50	31.50	.
	프로그램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214.50	214.50	214.50	.
	자활사업장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189.50	1,189.50	1,189.50	.
	도서관 (오락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25.85	25.85	25.85	.
	조리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144.00	144.00	144.00	.
	목욕실	개수	1	5.00	5.00	5.00	.
		면적	1	206.25	206.25	206.25	.
	화장실	개수	1	6.00	6.00	6.00	.
		면적	1	140.40	140.40	140.40	.
급/배수시설	개수	
	면적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면적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878.10	878.10	878.10	.	
기타	개수	
	면적	1	4,324.50	4,324.50	4,324.50	.	
전북	대지면적		3	2,924.00	11,237.00	7,473.33	4,211.82
	건물		3	2,260.04	3,866.70	3,019.01	807.00
	거실	개수	3	2.00	32.00	20.33	16.07
		면적	3	72.00	913.67	539.40	428.49
	사무실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67.24	90.00	75.81	12.37

<표계속>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북	상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19.80	34.68	28.94	8.00
	의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5.67	72.00	34.22	34.11
	프로그램실	개수	3	1.00	6.00	2.67	2.89
		면적	3	64.30	92.00	79.70	14.11
	자활사업장	개수	3	1.00	5.00	2.33	2.31
		면적	3	155.26	351.00	278.75	107.46
	도서관 (오락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18.00	85.00	42.00	37.32
	조리실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36.00	362.43	247.53	183.42
	목욕실	개수	3	2.00	13.00	6.33	5.86
		면적	3	51.00	126.60	87.77	37.84
	화장실	개수	3	6.00	32.00	21.67	13.80
		면적	3	37.20	87.00	58.68	25.59
	급/배수시설	개수	2	2.00	2.00	2.00	0.00
		면적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2	328.32	340.02	334.17	8.27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3	1.00	10.00	4.00	5.20	
	면적	3	410.00	1641.31	836.77	697.18	
기타	개수	1	7.00	7.00	7.00	.	
	면적	1	141.49	141.49	141.49	.	
전남	대지면적		6	1,610.00	41,409.00	12,479.00	14,439.69
	건물		6	766.02	5,703.21	2,710.30	1,753.14
	거실	개수	5	3.00	62.00	24.20	27.16
		면적	5	215.81	1,442.57	633.04	550.06
	사무실	개수	6	1.00	3.00	1.50	0.84
		면적	6	40.71	266.36	113.17	78.91
	상담실	개수	6	1.00	1.00	1.00	0.00
		면적	6	7.97	30.00	15.96	7.42
	의무실	개수	6	1.00	4.00	1.50	1.22
		면적	6	8.10	156.00	57.33	54.96

<표계속>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남	프로그램실	개수	6	1.00	5.00	2.33	2.07
		면적	6	22.50	280.46	116.74	90.96
	자활사업장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4	34.00	330.00	145.51	128.26
	도서관 (오락실)	개수	6	1.00	3.00	1.50	0.84
		면적	5	15.60	563.85	232.87	220.87
	조리실	개수	6	1.00	1.00	1.00	0.00
		면적	6	36.00	497.56	176.57	193.01
	목욕실	개수	6	1.00	3.00	1.83	0.98
		면적	6	32.76	231.40	103.18	89.42
	화장실	개수	6	2.00	29.00	10.50	10.05
		면적	6	23.49	203.15	88.27	64.07
	급/배수시설	개수	5	1.00	6.00	2.60	2.07
		면적	3	22.50	389.64	186.88	186.55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4	1.00	2.00	1.50	0.58
		면적	5	15.34	1,066.88	290.85	448.08
	육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5	1.00	3.00	1.80	0.84
		면적	6	3.52	2,294.40	1,265.70	1,019.00
	기타	개수	3	1.00	5.00	2.33	2.31
		면적	5	145.39	1526.29	580.55	581.68
경북	대지면적		2	6,211.00	134,925.00	70,568.00	91,014.54
	건물		2	2,682.00	3,593.14	3,137.57	644.27
	거실	개수	2	9.00	25.00	17.00	11.31
		면적	2	564.86	700.00	632.43	95.56
	사무실	개수	2	2.00	7.00	4.50	3.54
		면적	2	75.00	715.10	395.05	452.62
	상담실	개수	2	1.00	3.00	2.00	1.41
		면적	2	22.00	57.84	39.92	25.34
	의무실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42.00	251.91	146.96	148.43
	프로그램실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149.76	238.20	193.98	62.54
	자활사업장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02.60	102.69	102.65	0.06

<표계속>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북	도서관 (오락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93.60	102.69	98.15	6.43
	조리실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50.00	267.06	158.53	153.48
	목욕실	개수	2	5.00	6.00	5.50	0.71
		면적	2	102.00	137.69	119.85	25.24
	화장실	개수	2	8.00	21.00	14.50	9.19
		면적	2	100.00	271.22	185.61	121.07
	급/배수시설	개수	2	2.00	4.00	3.00	1.41
		면적	2	92.80	128.04	110.42	24.92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2	2.00	446.00	224.00	313.96
		면적	1	100.00	100.00	100.00	.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2	4.00	4.00	4.00	0.00
		면적	2	1,293.40	7,508.40	4,400.90	4,394.67
	기타	개수	1	11.00	11.00	11.00	.
		면적	1	1,522.90	1,522.90	1,522.90	.
대지면적			4	1,194.00	14,342.00	8,564.75	6,686.97
건물			4	345.46	2,966.60	2,194.72	1,237.75
거실	개수	4	1.00	31.00	13.50	14.18	
	면적	4	127.60	1194.12	556.31	467.09	
사무실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4	25.80	100.80	68.95	34.72	
상담실	개수	3	1.00	1.00	1.00	0.00	
	면적	3	14.40	24.54	18.48	5.35	
의무실	개수	4	1.00	1.00	1.00	0.00	
	면적	4	8.30	245.52	72.04	115.75	
프로그램실	개수	3	1.00	2.00	1.67	0.58	
	면적	3	39.48	204.00	104.76	87.36	
자활사업장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4	24.36	66.00	43.68	18.66	
도서관 (오락실)	개수	3	1.00	2.00	1.33	0.58	
	면적	3	57.70	111.07	78.26	28.72	
조리실	개수	4	1.00	1.00	1.00	0.00	
	면적	4	31.40	108.38	60.69	34.18	
목욕실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4	28.30	296.00	145.33	126.97	
화장실	개수	4	1.00	12.00	7.75	4.99	
	면적	4	23.80	185.95	107.81	68.52	
급/배수시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25.00	26.79	25.90	1.27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1	60.72	60.72	60.72	.	
옥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4	1.00	2.00	1.25	0.50	
	면적	4	51.40	1000.00	568.54	435.80	
기타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3	67.26	1453.16	641.76	722.68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지역	구조 및 규모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제주	대지면적	2	6,141.00	8,565.00	7,353.00	1,714.03	
	건물	2	2,442.29	3,519.48	2,980.89	761.69	
	거실	개수	2	3.00	6.00	4.50	2.12
		면적	2	64.86	113.40	89.13	34.32
	사무실	개수	2	1.00	2.00	1.50	0.71
		면적	2	55.20	84.93	70.07	21.02
	상담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3.86	30.13	22.00	11.50
	의무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1.61	24.36	17.99	9.02
	프로그램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35.28	42.92	39.10	5.40
	자활사업장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115.50	115.50	115.50	.
	도서관 (오락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15.30	23.76	19.53	5.98
	조리실	개수	2	1.00	1.00	1.00	0.00
		면적	2	31.95	38.70	35.33	4.77
	목욕실	개수	2	1.00	5.00	3.00	2.83
		면적	2	44.18	77.73	60.96	23.72
	화장실	개수	2	12.00	26.00	19.00	9.90
		면적	2	114.42	139.16	126.79	17.49
	급/배수시설	개수	2	1.00	34.00	17.50	23.33
		면적	1	68.00	68.00	68.00	.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수	1	2.00	2.00	2.00	.
		면적	1	20.00	20.00	20.00	.
	육외운동장 및 창고	개수	1	1.00	1.00	1.00	.
		면적	1	690.00	690.00	690.00	.
	기타	개수
		면적	1	2,266.93	2,266.93	2,266.93	.

※무응답 시설 제외.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조사됨.

II. 전국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결과

제 1 절 평가결과 개요

1. 평가결과 종합

2011년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평균 89.85점을 취득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는 평균 96.99(9.70)점, '재정 및 조직운영(B)'에서는 평균 86.22(12.93)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1.53(16.3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3.24(35.43)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97.07(8.74)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4.28(6.74)점을 취득하였다 (<표 II-1-1-1> 참조).

<표 II-1-1-1>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7	67.44	97.55	89.85	6.58
시설 및 환경(A)	37	65.91 (6.59)	100.00 (10.00)	96.99 (9.70)	6.25 (0.62)
재정 및 조직운영(B)	37	67.50 (10.13)	100.00 (15.00)	86.22 (12.93)	7.85 (1.18)
인적자원관리(C)	37	58.33 (11.67)	97.92 (19.58)	81.53 (16.31)	9.50 (1.9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7	61.36 (23.32)	100.00 (38.00)	93.24 (35.43)	8.46 (3.22)
생활인의 권리(E)	37	75.00 (6.75)	100.00 (9.00)	97.07 (8.74)	5.40 (0.49)
지역사회관계(F)	37	59.17 (4.73)	96.67 (7.73)	84.28 (6.74)	9.17 (0.73)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전국의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기준으로 등급별 분포를 보면 최우수(A) 22개소(59.46%), 우수(B) 13개소(35.14%), 양호(C) 1개소(2.70%), 보통(D) 1개소(2.70%)로 분포되어있다. 각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을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 34개소(91.89%),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 17개소(45.95%), '인적자원관리(C)'는 양호(C) 14개소(37.84%),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 28개소(75.68%),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 33개소(89.19%),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 19개소(51.53%)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각 영역에 따른 등급분포 현황은 <표 II-1-1-2>를 통해 보다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 II-1-1-2>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총점	22(59.46)	13(35.14)	1(2.70)	1(2.70)	.
시설 및 환경(A)	34(91.89)	2(5.41)	.	1(2.70)	.
재정 및 조직운영(B)	17(45.95)	13(35.14)	6(16.22)	1(2.70)	.
인적자원관리(C)	8(21.62)	12(32.43)	14(37.84)	1(2.70)	2(5.40)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8(75.68)	6(16.22)	2(5.41)	1(2.70)	.
생활인의 권리(E)	33(89.19)	3(8.11)	1(2.70)	.	.
지역사회관계(F)	10(27.03)	19(51.35)	6(16.22)	1(2.70)	1(2.70)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한편, 지역별 총점의 등급분포는 <표 II-1-1-3>을 통해 제시되었다.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최우수(A) 등급에 가장 많은 부랑인복지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강원 100.00%(3개소)와 경북 100.00%(2개소), 대구, 인천, 대전 100.00%(1개소)이다. 광주와 충북, 충남은 우수(B) 등급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각각 1개소, 2개소, 1개소로 모두 100.00%의 시설이 분포하였다. 양호(C) 등급은 전남 16.67%(1개소)가 유일하게 해당하였다. 이 지역별 등급 분포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시설 수, 각 시설의 지역적 차이, 시설의 운영 배경, 지원체계를 고려하여 절대적일 수 없음을 밝힌다(<표 II-1-1-3> 참조).

<표II-1-1-3> 지역별 총점 등급 분포

지역구분	지역구분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서울(N=4)	3(75.00)	1(25.00)	-	-	-	
부산(N=3)	1(33.33)	2(66.67)	-	-	-	
대구(N=1)	1(100.00)	-	-	-	-	
인천(N=1)	1(100.00)	-	-	-	-	
광주(N=1)	-	1(100.00)	-	-	-	
대전(N=1)	1(100.00)	-	-	-	-	
경기(N=3)	2(66.67)	1(33.33)	-	-	-	
강원(N=3)	3(100.00)	-	-	-	-	
충북(N=2)	-	2(100.00)	-	-	-	
충남(N=1)	-	1(100.00)	-	-	-	
전북(N=3)	2(66.67)	2(33.33)	-	-	-	
전남(N=6)	3(50.00)	2(33.33)	1(16.67)	-	-	
경북(N=2)	2(100.00)	-	-	-	-	
경남(N=4)	2(50.00)	2(50.00)	-	-	-	
제주(N=2)	1(50.00)	1(50.00)	-	-	-	

※ 최우수(A): 90점이상, 우수(B): 80점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2.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

1) 지표수 및 배점의 변화

부랑인복지시설의 2008년 평가와 2011년 평가에서 이용된 지표수와 배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표수는 2008년 총 66개 지표에서 2011년 총 59개 지표로 5개 지표가 감소되었다. 이와 함께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영역에서 배점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다

양한 각도로 평가를 시도하였다. 배점 및 지표수 변화에 대해서 <표 II-1-2-1>를 통해 보다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 II-1-2-1> 2008년과 2011년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비교

평가영역	배점(%)			지표수(개)		
	2008	2011	증감	2008	2011	증감
총점	100	100	-	66	59	-5
A.시설 및 환경	10	10	-	11	11	-
B.재정 및 조직운영	13	15	+2	11	10	-1
C.인적자원관리	17	20	+3	13	12	-1
D.프로그램 및 서비스	40	38	-2	17	11	-6
E.생활인의 권리	10	9	-1	9	9	-
F.지역사회관계	10	8	-2	5	6	+1

2) 평가결과 비교

금번 평가에서는 2008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총점이 5.78점 증가하였다. 가장 큰 점수의 변화를 보인 영역은 'D.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으로 평균 8.20점이 증가하였고,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E.생활인의 권리'영역은 각각 평균 4.00점, 8.02점, 6.95점, 4.63점이 증가하였으며, 'F.지역사회관계'영역에서는 2.35점이 감소하였다.

<표Ⅱ-1-2-2> 2008년과 2011년 평가결과 비교

평가영역	전체 점수(점)		
	2008	2011	증감
총점	84.07	89.85	+5.78
A.시설 및 환경	92.99	96.99	+4.00
B.재정 및 조직운영	78.20	86.22	+8.02
C.인적자원관리	74.58	81.53	+6.95
D.프로그램 및 서비스	85.04	93.24	+8.20
E.생활인의 권리	92.44	97.07	+4.63
F.지역사회관계	86.63	84.28	-2.35

※증감은 2011년 기준으로 2008년과 달라진 수준을 의미함.

※총점을 제외한 각 평가영역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제 2 절 지역별 평가결과

1. 서울

서울소재 부랑인복지시설은 총 4개소이며, 총점의 경우 최우수(A)에 3개소(75.00%), 우수(B)에 1개소(25.00%)가 분포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에 각각 4개(100.00%) 시설이 분포하고 있고, 양호(C)등급에는 '인적자원관리(C)'에 2개(50.00%)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다(<표Ⅱ-2-1-1> 참조).

<표Ⅱ-2-1-1> 서울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서울	총점	3(75.00)	1(25.00)	-	-	-
(N=4)	시설 및 환경(A)	4(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2(50.00)	2(50.00)	-	-	-
	인적자원관리(C)	1(25.00)	1(25.00)	2(5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4(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25.00)	3(75.00)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서울 소재 부랑인복지시설은 평균 92.65점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 평균 100.00(10.00)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9.38(13.41)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3.07(16.61)점, '프로그램 및 서

비스(D)' 평균 97.16(36.92)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98.61(8.88)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5.42(6.83)점이었다(<표 II-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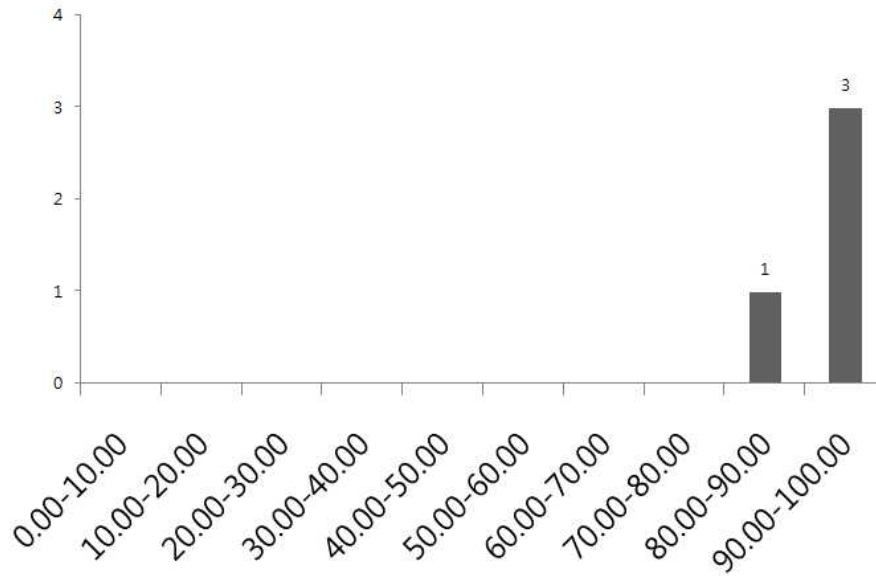
<표 II-2-1-2> 서울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89.05	96.21	92.65	3.11
시설 및 환경(A)	4	100.00(10.00)	100.00(10.00)	100.00(10.00)	0.00(0.00)
재정 및 조직운영(B)	4	87.50(13.13)	92.50(13.88)	89.38(13.41)	2.39(0.36)
인적자원관리(C)	4	75.00(15.00)	93.75(18.75)	83.07(16.61)	8.35(1.6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90.91(34.55)	100.00(38.00)	97.16(36.92)	4.30(1.63)
생활인의 권리(E)	4	94.44(8.50)	100.00(9.00)	98.61(8.88)	2.78(0.25)
지역사회관계(F)	4	82.50(6.60)	91.67(7.33)	85.42(6.83)	4.26(0.34)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서울지역 부랑인복지시설의 총점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살펴보면 80.00점 이상~90.00점미만 및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각각 1개와 3개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그림 II-2-1-1> 참조).



<그림Ⅱ-2-1-1> 서울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2. 부산

부산은 총 3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입지하고 있었다. 총점을 보면, 최우수(A)에 1개소(33.33)우수(B)에 2개소(66.67%)의 분포를 보였다. 각 영역에 대해서는 '시설 및 환경(A)'의 경우, 최우수(A)에 3개소(100.00%), '재정 및 조직 운영(B)'은 최우수(A), 우수(B), 양호(C)에 각각 1개소(33.33%),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1개소(33.33%), 양호(C)에 2개소(66.67%), '프로그램 및 서비스(D)'의 최우수(A)에 3개소(100.00%), '생활인의 권리(E)' 최우수(A)에 2개소(66.67%), 우수(B)에 1개소(33.33%), '지역사회관계(F)' 최우수(A)에 1개소(33.33), 양호(C)에 2개소(66.67%)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Ⅱ-2-2-1> 참조).

<표 II-2-2-1> 부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부산	총점	1(33.33)	2(66.67)	-	-	-
(N=3)	시설 및 환경(A)	3(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33.33)	1(33.33)	1(33.33)	-	-
	인적자원관리(C)	-	1(33.33)	2(66.67)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2(66.67)	1(33.33)	-	-	-
	지역사회관계(F)	1(33.33)	-	2(66.67)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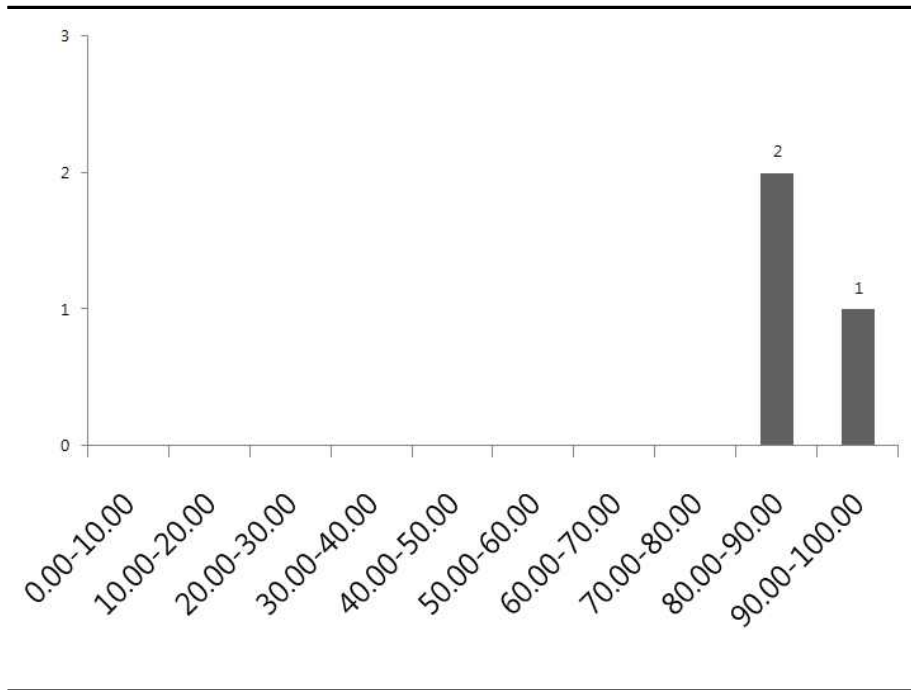
부산의 부랑인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88.56점이다. 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98.48(9.85)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86.67(13.00)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6.04(15.21)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3.18(35.41)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93.52(8.42)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3.47(6.68)점이었다(<표 II-2-2-2> 참조).

<표 II-2-2-2> 부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	85.34	90.35	88.56	2.79
시설 및 환경(A)	3	97.73(9.77)	100.00(10.00)	98.48(9.85)	1.31(0.13)
재정 및 조직운영(B)	3	77.50(11.63)	97.50(14.63)	86.67(13.00)	10.10(1.52)
인적자원관리(C)	3	72.92(14.58)	82.29(16.46)	76.04(15.21)	5.41(1.08)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	90.91(34.55)	97.73(37.14)	93.18(35.41)	3.94(1.50)
생활인의 권리(E)	3	88.89(8.00)	97.22(8.75)	93.52(8.42)	4.24(0.38)
지역사회관계(F)	3	75.83(6.07)	96.67(7.73)	83.47(6.68)	11.47(0.9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부산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 90.00점 이상~100.00점미만 및 구간에 각각 2개 및 1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그림Ⅱ-2-2-1>.



<그림Ⅱ-2-2-1> 부산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3. 대구8)

대구의 1개 부랑인복지시설은 총점 및 '시설 및 환경(A)', '인적자원관리(C)',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에, '재정 및 조직운영(B)'과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해당되었다(<표Ⅱ-2-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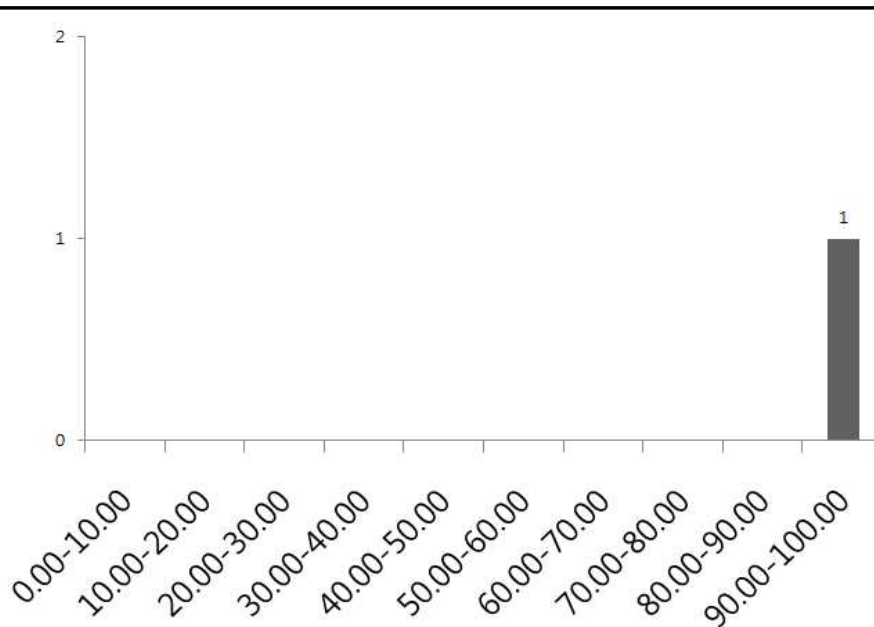
8) 대구처럼 지역 내 입지 부랑인복지시설의 수가 1개소인 경우, 개(個) 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에 대한 상세한 기술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동일한 경우 재언급없이 적용된다.

또한, 히스토그램으로 볼 때 대구의 부랑인복지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분포하였다(<그림Ⅱ-2-3-1> 참조).

<표Ⅱ-2-3-1> 대구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대구	총점	1(100.00)	-	-	-	-
(N=1)	시설 및 환경(A)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C)	1(100.00)	-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	1(10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그림Ⅱ-2-3-1> 대구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4. 인천

인천의 1개 부랑인복지시설은 '인적자원관리(C)'를 제외하고 총점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최우수(A) 등급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해당되었다(<표 II-2-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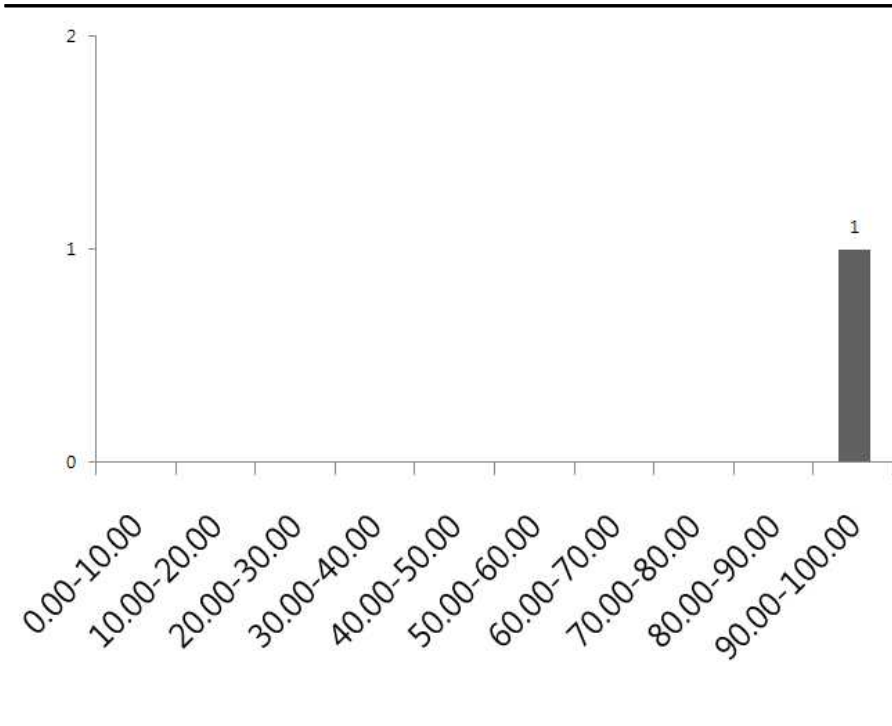
<표 II-2-4-1> 인천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인천	총점	1(100.00)	-	-	-	-
(N=1)	시설 및 환경(A)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100.00)	-	-	-	-
	인적자원관리(C)	-	1(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100.00)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인천의 부랑인복지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에 해당되었다<그림 II-2-4-1>.



<그림Ⅱ-2-4-1> 인천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5. 광주

광주는 부랑인복지시설이 총 1개 입지하였다. 총점은 우수(B)에 위치하였고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인적자원관리(C)'과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 '재정 및 조직운영(B)'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는 양호(C) 등급에 해당되었다(<표Ⅱ-2-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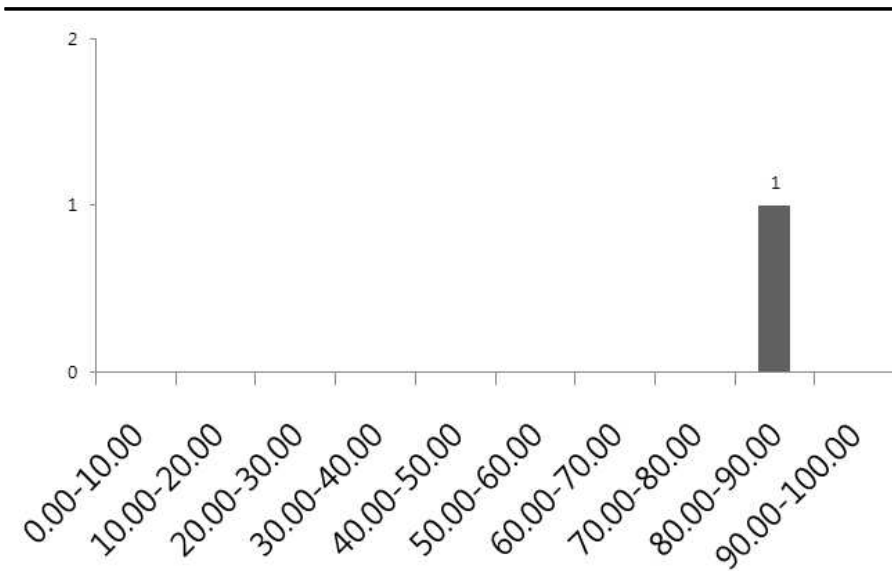
한편, 광주의 부랑인복지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 구간에 분포하였다(<그림Ⅱ-2-5-1> 참조).

<표Ⅱ-2-5-1> 광주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광주 (N=1)	총점	-	1(100.00)	-	-	-
	시설 및 환경(A)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	1(100.00)	-	-
	인적자원관리(C)	-	1(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	-	1(100.00)	-	-
	생활인의 권리(E)	-	-	1(100.00)	-	-
	지역사회관계(F)	-	1(10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그림Ⅱ-2-5-1> 광주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6. 대전

대전 역시 1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입지하였는데, 총점이 최우수(A) 등급이었다. 각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에, '재정 및 조직운영(B)',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인적자원관리(C)'는 양호(C)에 해당되는 점수를 보였다(<표 II-2-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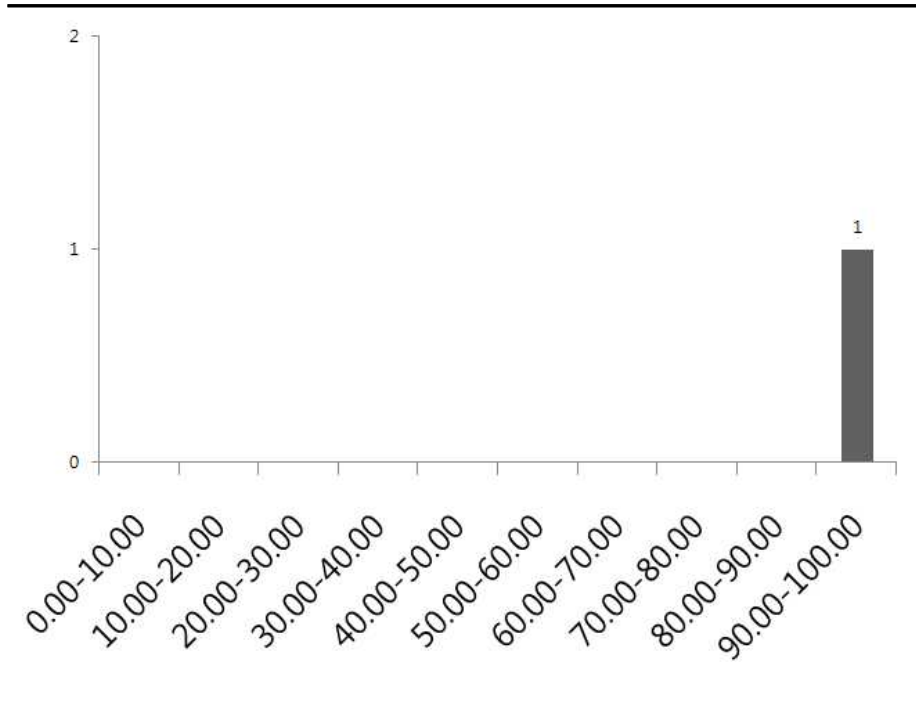
<표 II-2-6-1> 대전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대전	총점	1(100.00)	-	-	-	-
(N=1)	시설 및 환경(A)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	1(100.00)	-	-	-
	인적자원관리(C)	-	-	1(10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	1(10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대전의 1개 부랑인복지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미만에 위치하였다 (<그림 II-2-6-1> 참조).



<그림Ⅱ-2-6-1> 대전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7. 경기

경기에는 총 3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입지하였는데,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2개소와 1개소가 분포하였다. 각 영역별로 부랑인복지시설의 등급분포는 <표Ⅱ-2-7-1>과 같다.

또한, 경기의 부랑인복지시설의 평균 점수는 90.06점이었는데, 시설 및 환경(A) 평균 100.00(10.00)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90.00(13.50)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1.60(16.32)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1.67(34.38)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98.15(8.83)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2.22(6.58)점의 점수를 보였다(<표Ⅱ-2-7-2> 참조).

<표Ⅱ-2-7-1> 경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기 (N=3)	총점	2(66.67)	1(33.33)	-	-	-
	시설 및 환경(A)	3(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2(66.67)	1(33.33)	-	-	-
	인적자원관리(C)	-	2(66.67)	1(33.33)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66.67)	1(33.33)	-	-	-
	생활인의 권리(E)	3(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33.33)	1(33.33)	1(33.33)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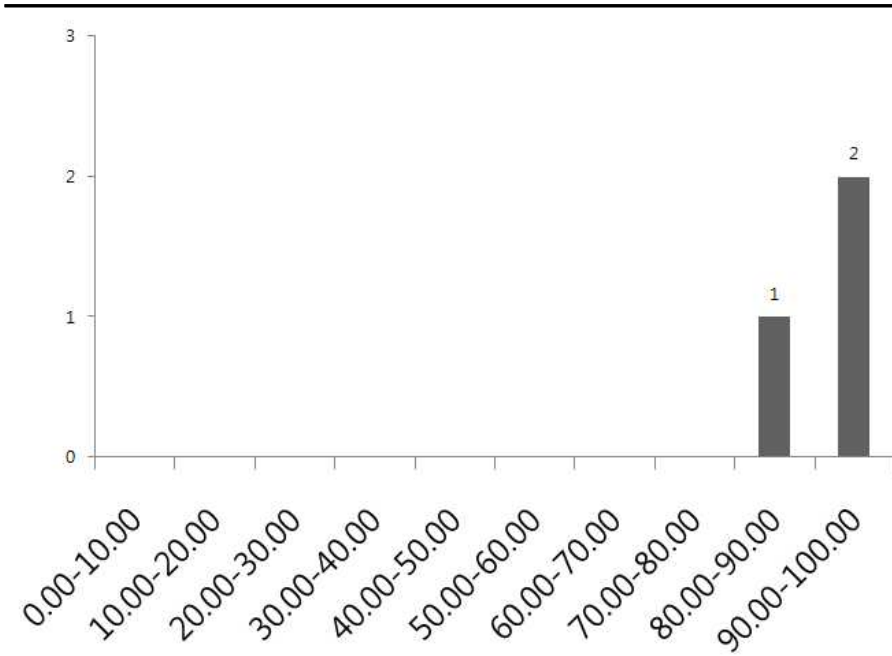
<표Ⅱ-2-7-2> 경기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	83.45	94.91	90.06	5.93
시설 및 환경(A)	3	100.00 (10.00)	100.00 (10.00)	100.00 (10.00)	0.00 (0.00)
재정 및 조직운영(B)	3	85.00 (12.75)	92.50 (13.88)	90.00 (13.50)	4.33 (0.65)
인적자원관리(C)	3	72.92 (14.58)	87.50 (17.50)	81.60 (16.32)	7.68 (1.5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	84.09 (31.95)	97.73 (37.14)	91.67 (34.83)	6.94 (2.64)
생활인의 권리(E)	3	94.44 (8.50)	100.00 (9.00)	98.15 (8.83)	3.21 (0.29)
지역사회관계(F)	3	70.83 (5.67)	92.50 (7.40)	82.22 (6.58)	10.88 (0.87)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경기지역 부랑인복지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 90.00점 이상~100.00점미만과 각각 1개와 2개 시설이 분포하였다(<그림Ⅱ-2-7-1> 참조).



<그림Ⅱ-2-7-1> 경기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8. 강원

총 3개의 시설이 입지한 강원은 최우수(A)에 3개소의 부랑인복지시설이 분포하였다.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3개소(100.00%), '재정 및 조직 운영(B)'은 최우수(A)에 2개소(66.67%), 양호(C)에 1개소(33.33%), '인적자원관리(C)'는 최우수(A)에 2개소(66.67%), 우수(B)에 1개소(33.33%),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에 3개소(100.00%),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에 1개소(33.33%), 우수(B)에 2개소(66.67%)가 해당되고 있었다(<표Ⅱ-2-8-1> 참조).

강원의 부랑인복지시설의 총점은 평균 94.74점 이었는데, 각각의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 평균 99.24(9.92)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5.00(12.75)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92.01(18.4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9.24(37.71)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99.07(8.92)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7.92(7.03)점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2-8-2> 참조).

<표 II-2-8-1> 강원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강원	총점	3(100.00)	-	-	-	-
(N=3)	시설 및 환경(A)	3(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2(66.67)	-	1(33.33)	-	-
	인적자원관리(C)	2(66.67)	1(33.33)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3(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33.33)	2(66.67)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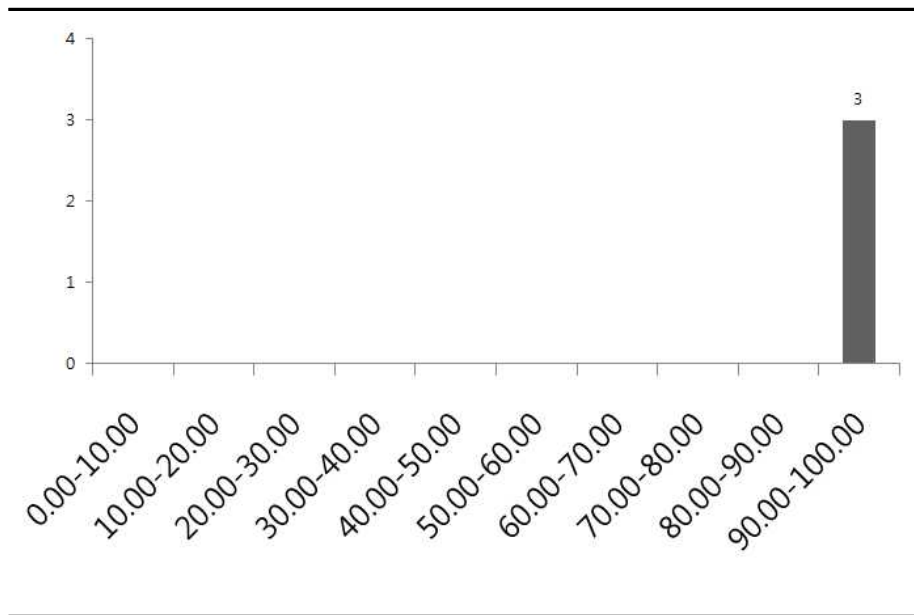
<표 II-2-8-2> 강원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	93.74	96.56	94.74	1.58
시설 및 환경(A)	3	97.73 (9.77)	100.00 (10.00)	99.24 (9.92)	1.31 (0.13)
재정 및 조직운영(B)	3	75.00 (11.25)	90.00 (13.50)	85.00 (12.75)	8.66 (1.30)
인적자원관리(C)	3	88.54 (17.71)	94.79 (18.96)	92.01 (18.40)	3.18 (0.6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	97.73 (37.14)	100.00 (38.00)	99.24 (37.71)	1.31 (0.50)
생활인의 권리(E)	3	97.22 (8.75)	100.00 (9.00)	99.07 (8.92)	1.60 (0.14)
지역사회관계(F)	3	85.00 (6.80)	90.00 (7.20)	87.92 (7.03)	2.60 (0.21)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강원지역은 90.00점 이상~100.00점에 3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각각 해당되었다(<그림 II-2-8-1> 참조).



<그림 II-2-8-1> 강원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9. 중복

충북의 2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은 우수(B) 등급에 해당되었다. 각 영역별로 취득한 점수의 등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2개소(100.00%),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 우수(B)에 각각 1개소(50.00%), '인적자원관리(C)'는 양호(C)에 2개소(100.00%),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우수(B)와 양호(C)에 각각 1개소(50.00%),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에 각각 2개소(100.00%),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2개소(100.00%)였다(<표 II-2-9-1> 참조).

충북의 부랑인복지시설의 총점은 평균 83.54점 이었는데, 각각의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 평균 97.73(9.77)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5.00(12.75)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73.44(14.6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80.68(30.66)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97.22(8.75)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86.46(6.92)점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2-8-2> 참조).

<표 II-2-9-1> 충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충북	총점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N=2)	총점	-	2(100.00)	-	-	-
	시설 및 환경(A)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50.00)	1(50.00)	-	-	-
	인적자원관리(C)	-	-	2(10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	1(50.00)	1(50.00)	-	-
	생활인의 권리(E)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	2(10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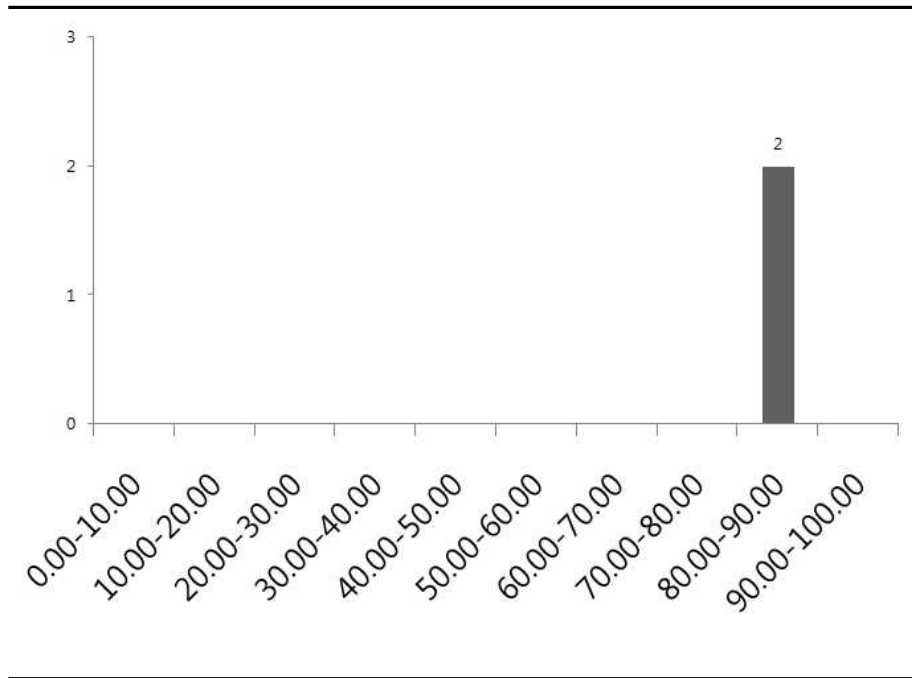
<표 II-2-9-2> 충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2	82.92	84.15	83.54	0.87
시설 및 환경(A)	2	95.45 (9.55)	100.00 (10.00)	97.73 (9.77)	3.21 (0.32)
재정 및 조직운영(B)	2	80.00 (12.00)	90.00 (13.50)	85.00 (12.75)	7.07 (0.44)
인적자원관리(C)	2	71.88 (14.38)	75.00 (15.00)	73.44 (14.69)	2.21 (0.4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	77.27 (29.36)	84.09 (31.95)	80.68 (30.66)	4.82 (1.83)
생활인의 권리(E)	2	97.22 (8.75)	97.22 (8.75)	97.22 (8.75)	0.00 (0.00)
지역사회관계(F)	2	86.25 (6.90)	86.67 (6.693)	86.46 (6.92)	0.29 (0.0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충북지역 부랑인복지시설 2개소는 모두 80.00점 이상~90.00점미만에 위치하였다(<그림 II-2-9-1> 참조).



<그림 II-2-9-3> 충북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10. 충남

충남의 부랑인복지시설은 총 1개소이고 우수(B) 등급에 해당된다. ‘시설 및 환경(A)’, ‘재정 및 조직운영(B)’,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에서는 최우수(A)에, ‘인적자원관리(C)’, ‘지역사회관계(F)’는 우수(B)에 각각 해당되었다(<표 II-2-1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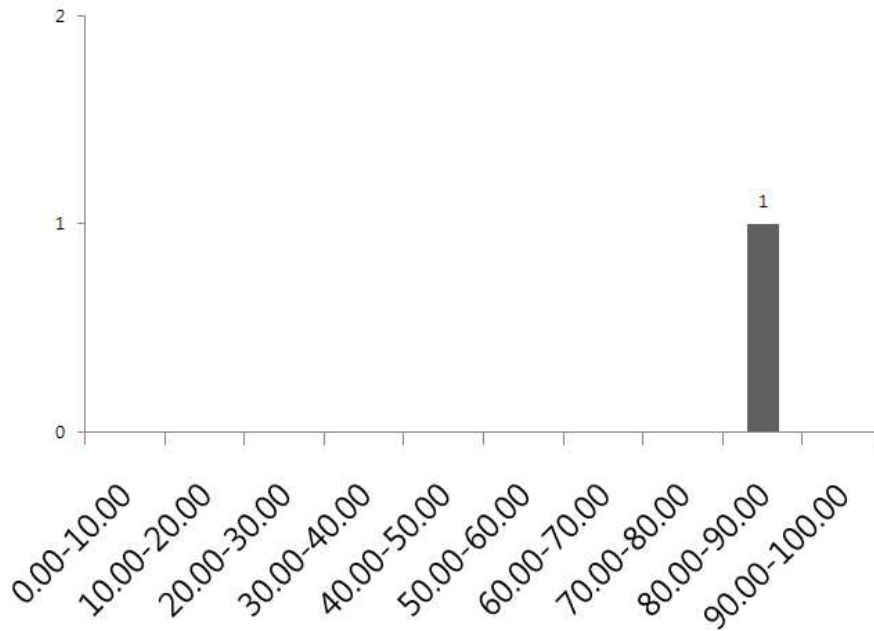
충남의 1개 부랑인복지시설은 80.00점 이상~90.00점미만의 점수를 받았다(<그림 II-2-10-1> 참조).

<표Ⅱ-2-10-1> 충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충남	총점	-	1(100.00)	-	-	-
(N=1)	시설 및 환경(A)	1(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100.00)	-	-	-	-
	인적자원관리(C)	-	1(100.00)	-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1(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1(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	1(100.00)	-	-	-

※최우수(A): 90점이상, 우수(B): 80점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그림Ⅱ-2-10-1> 충남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11. 전북

전북은 부랑인복지시설이 총 3개소였는데, 2개소가 최우수(A)와 1개소가 양호(C)에 각각 분포하였다. 전반적으로 최우수(A)와 우수(B)에 주로 분포된 가운데, '시설 및 환경(A)'이 보통(D)에 1개소, '인적자원관리(C)'와 '지역사회관계(F)' 1개소가 미흡에 각각 분포하였다. <표Ⅱ-2-11-1>을 통해 분포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Ⅱ-2-11-1> 전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북	총점	2(66.67)	-	1(33.33)	-	-
(N=3)	시설 및 환경(A)	2(66.67)	-	-	1(33.33)	-
	재정 및 조직운영(B)	1(33.33)	1(33.33)	1(33.33)	-	-
	인적자원관리(C)	-	2(66.67)	-	-	1(33.33)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66.67)	1(33.33)	-	-	-
	생활인의 권리(E)	2(66.67)	1(33.33)	-	-	-
	지역사회관계(F)	1(33.33)	1(33.33)	-	-	1(33.33)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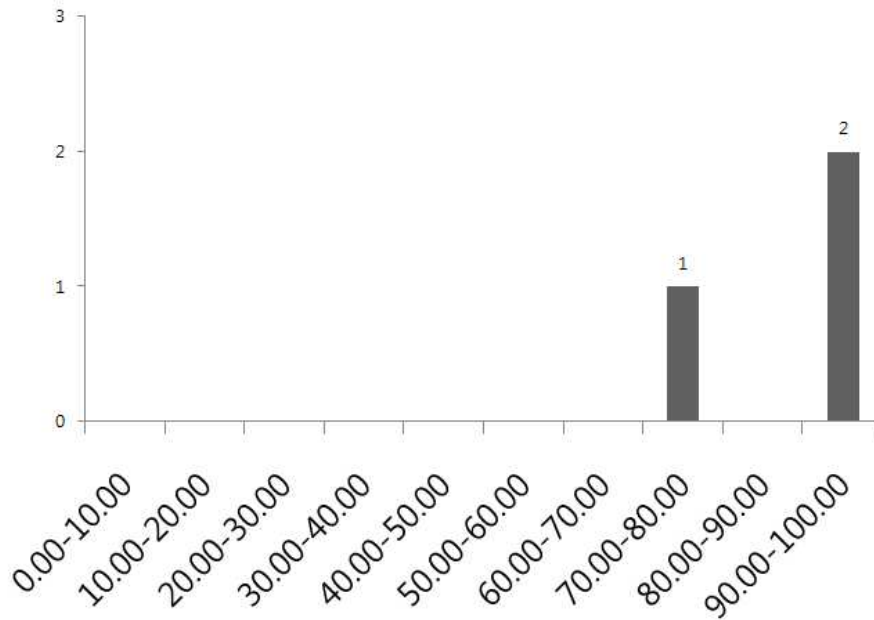
전북의 부랑인복지시설 평균은 88.03점이었다. 각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 평균 87.88(8.79)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4.17(12.63)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77.43(15.4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5.45(36.27)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94.44(8.50)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79.44(6.36)점의 점수를 보였다(<표Ⅱ-2-11-2> 참조).

전북의 3개 시설은 70.00점 이상~80.00점미만과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각각 1개소와 2개소가 분포하였다(<그림Ⅱ-2-11-1> 참조).

<표Ⅱ-2-11-2> 전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3	75.42	95.53	88.03	10.98
시설 및 환경(A)	3	65.91 (6.59)	100.00 (10.00)	87.88 (8.79)	19.06 (1.91)
재정 및 조직운영(B)	3	75.00 (11.25)	92.50 (13.88)	84.17 (12.63)	8.78 (1.32)
인적자원관리(C)	3	58.33 (11.67)	88.54 (17.71)	77.43 (15.49)	16.61 (3.3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	88.64 (33.68)	100.00 (38.00)	95.45 (36.27)	6.01 (2.28)
생활인의 권리(E)	3	83.33 (7.50)	100.00 (9.00)	94.44 (8.50)	9.62 (0.87)
지역사회관계(F)	3	59.17 (4.73)	94.58 (7.57)	79.44 (6.36)	18.26 (1.46)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11-1> 전북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12. 전남

전남에는 총 6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입지하였는데, 최우수(A)에 3개소(50.00%), 우수(B)에 2개소(33.33%), 보통(D)에 1개소(16.67%)가 분포하였다. 개별 평가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은 최우수(A)에 6개소(100.00%), '재정 및 조직운영(B)'은 최우수(A)에 2개소(33.33%), 우수(B)에 2개소(33.33%), 양호(C)에 1개소(16.67%), 보통(D)에 1개소(16.67%), '인적자원관리(C)'는 우수(B)에 2개소(33.33%), 양호(C)에 2개소(33.33%), 보통(D)에 1개소(16.67%), 미흡(F)에 1개소(16.67%),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최우수(A)에 3개소(50.00%), 우수(B)에 2개소(33.33%), 보통(D)에 1개소(16.67%), '생활인의 권리(E)'는 최우수(A)에 5개소(83.33%), 우수(B)에 1개소(16.67%),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에 1개소(16.67%), 우수(B)에 4개소(66.66%), 보통(D)에 1개소(16.67%)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Ⅱ-2-12-1> 참조).

<표Ⅱ-2-12-1> 전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남	총점	3(50.00)	2(33.33)	-	1(16.67)	-
(N=6)	시설 및 환경(A)	6(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2(33.33)	2(33.33)	1(16.67)	1(16.67)	-
	인적자원관리(C)	-	2(33.33)	2(33.33)	1(16.67)	1(16.67)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50.00)	2(33.33)	-	1(16.67)	-
	생활인의 권리(E)	5(83.33)	1(16.67)	-	-	-
	지역사회관계(F)	1(16.67)	4(66.66)	-	1(16.67)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전남지역의 부랑인복지시설 평균은 85.79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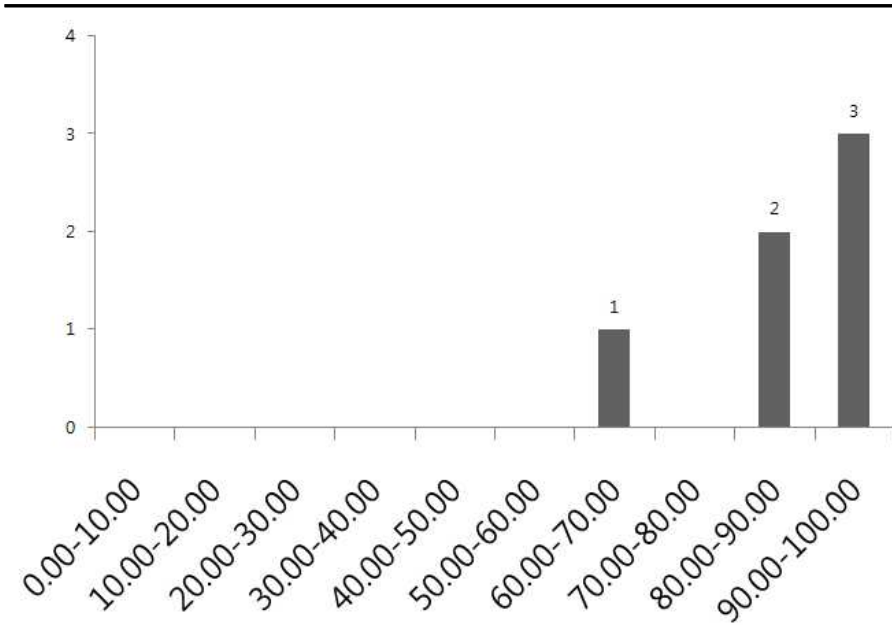
설 및 환경(A)'은 평균 96.97(9.70)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83.33(12.50) 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4.65(14.9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87.50(33.25)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97.69(8.79)점, '지역사회관계(F)'는 평균 82.71(6.62)점이었다(<표 II-2-12-2> 참조).

<표 II-2-12-2> 전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6	67.44	94.70	85.79	10.34
시설 및 환경(A)	6	93.18(9.32)	100.00(10.00)	96.97(9.70)	2.35(0.23)
재정 및 조직운영(B)	6	67.50(10.13)	97.50(14.63)	83.33(12.50)	11.25(1.69)
인적자원관리(C)	6	59.38(11.88)	83.33(16.67)	74.65(14.93)	10.18(2.0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6	61.36(23.32)	100.00(38.00)	87.50(33.25)	14.71(5.59)
생활인의 권리(E)	6	88.89(8.00)	100.00(9.00)	97.69(8.79)	4.45(0.40)
지역사회관계(F)	6	60.00(4.80)	90.00(7.20)	82.71(6.62)	11.50(0.92)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전남에서는 60.00점 이상~70.00점미만 1개소, 80.00점 이상~90.00점미만 2개소, 90.00이상~100.00점미만 3개소의 시설이 각각 분포하였다(<그림 II-2-12-1> 참조).



<그림 II-2-12-1> 전남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13. 경북

경북 지역에서는 최우수(A) 등급에 2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분포하였다. 각 평가영역별로 보면, '시설 및 환경(A)', '재정 및 조직운영(B)',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생활인의 권리(E)', '지역사회관계(F)'는 최우수(A)에 2개소, '인적자원관리(C)'는 최우수(A)와 양호(C)에 각각 1개소의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다(<표 II-2-13-1> 참조).

경북지역의 부랑인복지시설 평균은 96.01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시설 및 환경(A)'은 평균 100.00(10.00)점, '재정 및 조직운영(B)'은 평균 98.75(14.81)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6.46(17.2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는 평균 98.86(37.57)점, '생활인의 권리(E)'는 평균 98.61(8.88)점, '지역사회관계

(F)는 평균 93.33(7.47)점이었다(<표 II-2-13-2> 참조).

<표 II-2-13-1> 경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북	총점	2(100.00)	-	-	-	-
(N=2)	시설 및 환경(A)	2(100.00)	-	-	-	-
	재정 및 조직운영(B)	2(100.00)	-	-	-	-
	인적자원관리(C)	1(50.00)	-	1(5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2(100.00)	-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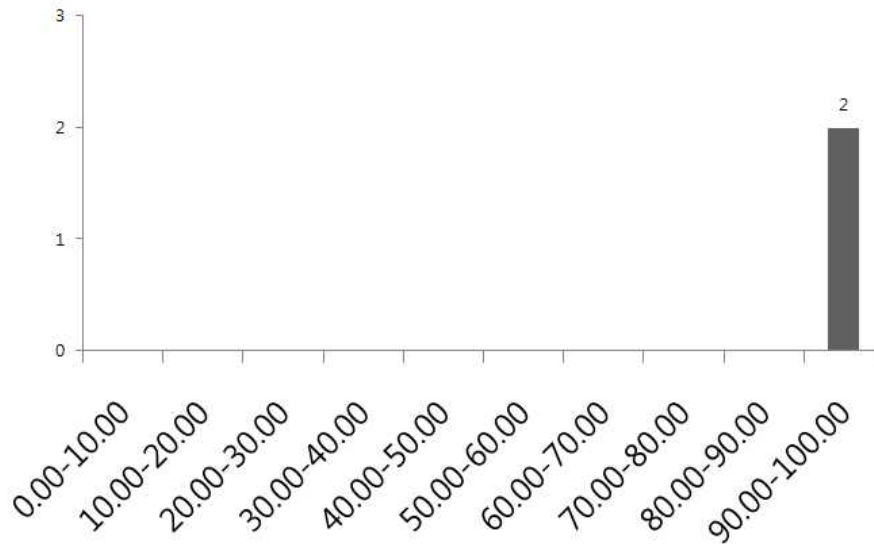
<표 II-2-13-2> 경북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2	94.48	97.55	96.01	2.18
시설 및 환경(A)	2	100.00(10.00)	100.00(10.00)	100.00(10.0)	0.00(0.00)
재정 및 조직운영(B)	2	97.50(14.63)	100.00(15.00)	98.75(14.81)	1.77(0.27)
인적자원관리(C)	2	79.17(15.83)	93.75(18.75)	86.46(17.29)	10.31(2.06)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	97.73(37.14)	100.00(38.00)	98.86(37.57)	1.61(0.61)
생활인의 권리(E)	2	97.22(8.75)	100.00(9.00)	98.61(8.88)	1.96(0.18)
지역사회관계(F)	2	90.83(7.27)	95.83(7.67)	93.33(7.47)	3.540(0.28)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경북 소재 부랑인복지시설은 90.00점 이상~100.00점에 2개 시설 모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Ⅱ-2-13-1> 참조).



<그림Ⅱ-2-13-1> 경북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14. 경남

경남에는 총 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였다. 먼저 총점을 보면, 최우수(A)와 우수(B)에 각각 2개소(50.00%)씩 분포하고 있다. 각 세부 평가영역별로 시설의 등급 분포는 <표Ⅱ-2-14-1>을 통해 제시되었다.

<표Ⅱ-2-14-1> 경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경남	총점	2(50.00)	2(50.00)	-	-	-
(N=4)	시설 및 환경(A)	3(75.00)	1(25.00)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25.00)	2(50.00)	1(25.00)	-	-
	인적자원관리(C)	2(50.00)	-	2(5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75.00)	1(25.00)	-	-	-
	생활인의 권리(E)	4(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1(25.00)	1(25.00)	2(50.00)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안은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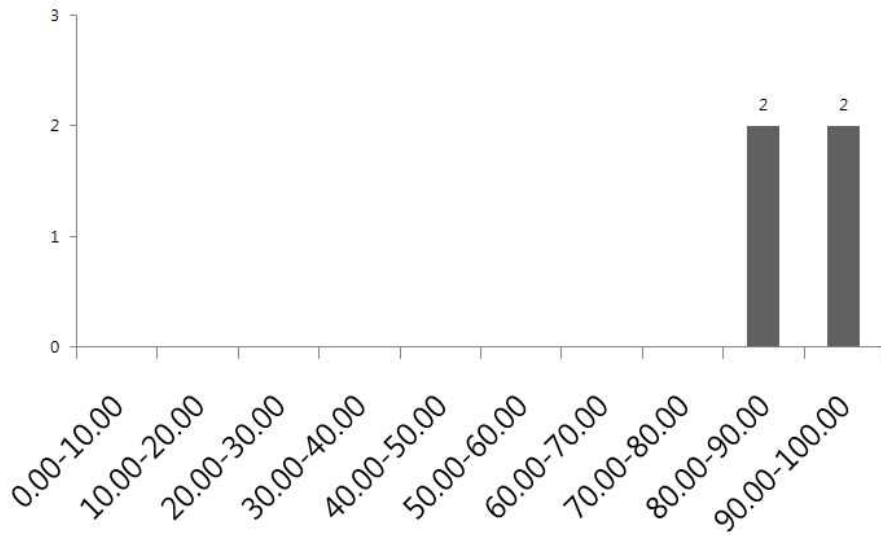
경남지역의 부랑인복지시설 평균은 89.97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시설 및 환경(A)’ 평균 94.32(9.43)점,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균 80.63(12.09)점, ‘인적자원관리(C)’ 평균 85.94(17.19)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균 94.89(36.06)점, ‘생활인의 권리(E)’ 평균 97.92(8.81)점, ‘지역사회관계(F)’ 평균 79.79(6.38)점의 결과를 보였다(<표Ⅱ-2-14-2> 참조).

경남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총점분포를 살펴보면<그림Ⅱ-2-14-1>과 같다. 80.00점 이상~90.00점미만, 90.00점이상~100.00점에 각각 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표Ⅱ-2-14-2> 경남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점	4	84.88	96.53	89.97	5.70
시설 및 환경(A)	4	84.09(8.41)	100.00(10.00)	94.32(9.43)	7.07(0.71)
재정 및 조직운영(B)	4	72.50(10.88)	90.00(13.50)	80.63(12.09)	7.18(1.08)
인적자원관리(C)	4	78.13(15.63)	94.79(18.96)	85.94(17.19)	8.53(1.7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4	88.64(33.68)	100.00(38.00)	94.89(36.06)	5.98(2.27)
생활인의 권리(E)	4	91.67(8.25)	100.00(9.00)	97.92(8.81)	4.17(0.38)
지역사회관계(F)	4	70.00(5.60)	96.25(7.70)	79.79(6.38)	12.28(0.98)

※※시설 및 환경(A): 10점 만점, 재정 및 조직운영(B): 15점 만점, 인적자원관리(C): 20점 만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D): 38점 만점, 생활인의 권리(E): 9점 만점, 지역사회관계(F): 8점 만점.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이며, ()는 실제 취득한 평균점수임.



<그림Ⅱ-2-14-1> 경남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15. 제주

제주에는 총 2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입지하였는데, 총점은 최우수(A), 우수(B)에 각각 1개소씩 분포하고 있다. 각 세부 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는 <표 II-1-1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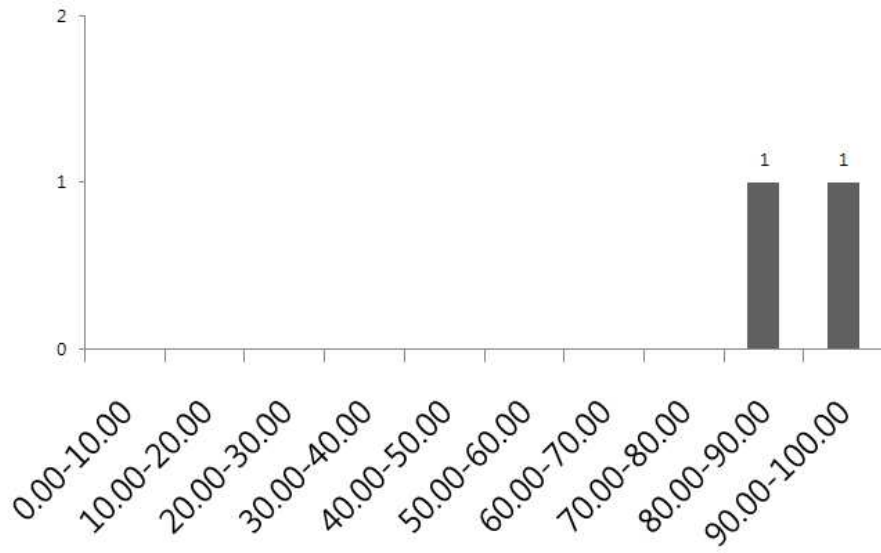
<표 II-1-15-1> 제주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제주 (N=2)	총점	1(50.00)	1(50.00)	-	-	-
	시설 및 환경(A)	1(50.00)	1(50.00)	-	-	-
	재정 및 조직운영(B)	1(50.00)	1(50.00)	-	-	-
	인적자원관리(C)	1(50.00)	-	1(50.00)	-	-
	프로그램 및 서비스(D)	2(100.00)	-	-	-	-
	생활인의 권리(E)	2(100.00)	-	-	-	-
	지역사회관계(F)	-	1(50.00)	1(50.00)	-	-

※ 최우수(A): 90점 이상, 우수(B): 80점 이상~90점미만, 양호(C): 70점 이상~80점미만, 보통(D): 60점 이상~70점미만, 미흡(F): 50점미만.

※ ()안은 비율을 의미함.

제주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총점분포를 살펴보면 80.00점 이상~90.00점미만과 90.00점 이상~100.00점에 각각 1개소씩의 시설이 분포되었다(<그림 II-2-15-1> 참조).



<그림 II-2-15-1> 제주 부랑인복지시설 총점 분포

제 3 절 영역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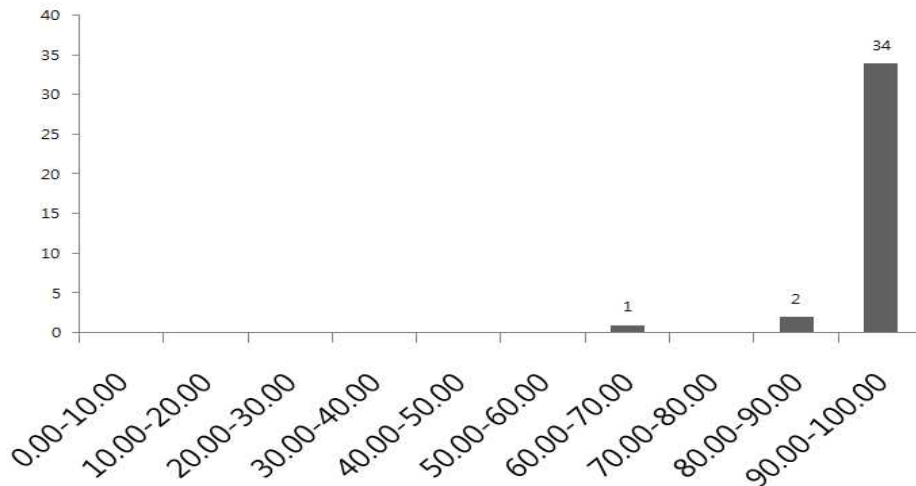
1. 시설 및 환경(A)

부랑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환경(A)' 영역 평균점수는 96.99점이었다. 이는 영역 만점(10점) 기준으로 보면 9.70점에 해당된다(<표Ⅱ-3-1-1> 참조).

<표Ⅱ-3-1-1> 시설 및 환경(A)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	65.91 (6.59)	100.00 (10.00)	96.99 (9.70)	6.25 (0.62)

부랑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분포는 <그림Ⅱ-3-1-1>과 같다. 90.00점 이상~100.00점 구간에 가장 많은 34개 시설 즉, 전체 37개시설 중 9%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었다(<그림Ⅱ-3-1-1> 참조).



<그림Ⅱ-3-1-1> 시설 및 환경(A) 영역 점수 분포

1) 시설의 접근성

본 지표는 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시설의 생활인 및 생활인의 가족, 대리인 등이 접근하기 얼마나 용이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4점 만점에 평균 3.95점을 취득하였으며,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35개소(94.59%)와 2개소(5.41%)로 나타났다(<표Ⅱ-3-1-2> 참조).

<표Ⅱ-3-1-2> 시설의 접근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시설의 접근성	1)시설의 위치는 이용자, 이용자 가족, 대리인 등이 접근하는데 용이한가?	35 (94.59)	2 (5.41)	-	-	3.95 (0.23)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2)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

본 지표는 기본환경의 안전요소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생활인의 거주하는 건물 내부시설의 안전성 보장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소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에 의한 소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방훈련이 실시되고 있음을 관련 내부기안 또는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하였다. 또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 <동법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각 시설은 시설물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야만 반영하였다. 한편, <전기안전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2항>에 의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있어야 하고 동법에 의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써 전압이 600V이하이면서 용량이 200kW 미만인 전기수용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표에서의 방역활동이란 외부의 방역회사에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역활동을 의미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

제34조의 3 (시설의 안전점검등) ①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 3항>

제18조의 3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범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2.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3.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전기사업법 제66조 1항>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⑩제1항·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2항>

제35조의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

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을 제외한다.

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시설

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가로등시설

자.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신호등시설

차.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2.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 교육시설

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수(4)와 양호(3)에 각각 34개소(91.89%)와 3개소(8.11%)의 시설이 분포하였고, 4점 만점에 평균 3.92점을 받았다(<표Ⅱ-3-1-3> 참조).

<표Ⅱ-3-1-3>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기본환경의 안전요소 I	2)건물 내부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34 (91.89)	3 (8.11)	-	-	3.92 (0.28)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3) 기본환경의 안전요소II

본 지표는 생활인의 거주하는 건물 외부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생활인에 대한 과보호 요소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사항이다. 소방법규에 의한 방염처리 여부,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였다. 한편, 생활인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극적인 색상 또는 자극적인 시설과 장비 가령, 철조망의 설치, 자극적 소재나 색상 높은 담벼락 등의 설치는 과보호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미적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함은 예를 들어 가시권에 환경을 저해하는 컨테이너 창고, 쓰레기 처리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평균 3.89점의 점수를 받았고, 우수(4)에 33개소(89.19%), 양호(3)에 4개소(10.81%)의 시설이 분포하였다(<표II-3-1-4> 참조).

<표II-3-1-4> 기본환경의 안전요소II

	3)건물 외부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생활인에 대한 과보호 요소가 없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기본환경의 안전요소II		33 (89.19)	4 (10.81)	-	-	3.89 (0.31)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4) 지원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생활인의 사생활보호 및 생활편의 등을 위한 설비 구성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으로써, 지표에서 의미하는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물함은 임의로 추출한 10개의 개인사물함

중 적절한 개인사물이 들어있고, 평소에 개인사물을 쌓아놓는 등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물함이 8개 이상일 때 인정하였다. 또한, 아주 우수한 조명 시설은 작은 글씨의 책을 읽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조명을 의미한다. 총 36개 시설은 우수(4)에 36개소(97.30%), 양호(3)에 1개소(2.70%)이 각각 분포되었고, 평균 3.97점의 점수를 취득하였다(<표Ⅱ-3-1-5> 참조).

<표Ⅱ-3-1-5> 지원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표준편차)	
지원시설의 쾌적/편리/충분성	4)사생활 보호 및 생활편의 등을 위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36 (97.30)	1 (2.70)	-	-	3.97(0.1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5) 식당과 조리실

본 사항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식당과 조리실의 적절성 등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충분한 용량의 냉장고와 냉동고를 구비하고 식기소독기 등을 사용하며, 취사조리실이 청결해야 하며, 식당을 법인 내 타시설과 공유할 경우는 전체 생활인의 수에 타시설 이용자수 가산하였고, 다용도실을 식당으로 활용하는 것도 식당에 포함시키는 등 폭넓게 적용하였다. 한편, 밥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사 공간이 비좁지 않고, 밥상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없어야 인정하였으며, 의자나 식탁의 높이의 적절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지표에서 편안한 의자라 함은 개인이 따로 사용할 수 있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의미한다. 4점 만점에 평균 3.84점의 수준이었는데, 각 배점등급에 대해 우수(4) 31개소(83.78%), 양호(3) 6개소(16.22%)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다(<표Ⅱ-3-1-6> 참조).

<표Ⅱ-3-1-6> 식당과 조리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식당과 조리실 5)식당과 조리실은 적절한가?	31 (83.78)	6 (16.22)	-	-	3.84(0.37)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6)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

본 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의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의 관리상태를 평가하는 사항으로써, 해당 시설들의 위치 및 위생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화장실의 관리 상태는 벽, 바닥(타일), 창문, 변기 등의 파손여부와 청결여부를 보고 확인하였고, 세면 및 샤워시설의 관리 상태는 벽, 바닥, 창문, 세면대, 샤워기 등의 파손여부와 청결여부를 보고 판단하였다. 전국의 36개 부랑인복지시설들은 우수(4), 양호(3), 보통(2)에 각각 33개소(89.19%), 2개소(5.41%), 2개소(5.41%)의 시설 분포를 보인 가운데 평균 3.84점의 점수를 받고 있었다(<표Ⅱ-3-1-7> 참조).

<표Ⅱ-3-1-7> 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화장실/세면 및 샤워시설/세탁실 6)화장실, 세면 및 샤워시설, 세탁실의 관리상태, 위치,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33 (89.19)	2 (5.41)	2 (5.41)	-	3.84(0.5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7) 상담실

본 지표를 통해서는 부랑인복지시설에 갖추어진 상담실의 적절성 및 안락·쾌적성을 평가하였다. 본 지표는 다른 사항과 달리 미흡을 0점 배점으로 처리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84점을 받았고, 우수(4)에 35개소(94.59%), 보통(2)과 미흡(0)에 각각 1개소(2.70%)의 시설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Ⅱ-3-1-8> 참조).

<표Ⅱ-3-1-8> 상담실

	상담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7)상담실은 적절한가?	35 (94.59)	-	1 (2.70)	1 (2.7)	3.84(0.73)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8) 프로그램실

부랑인복지시설에 마련된 프로그램실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써, 강당, 예배실, 공동작업실 등 다기능 공간은 전용공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 임하였다. 우수(4)와 양호(3), 보통(2)에 대해 각각 33개소(89.19%), 3개소(8.11%), 1개소(2.70%)의 시설이 분포하였고, 취득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86점이었다(<표Ⅱ-3-1-9> 참조).

<표Ⅱ-3-1-9>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8)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있는가?	33 (89.19)	3 (8.11)	1 (2.70)	-	3.86(0.4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9) 의무실

본 지표는 의무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진찰실, 처치실, 요양실 등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실 내 기능별 배치를 의미한다. 시설 내 병원이 있는 경우(동일 법인 내에 병원이 있고 공간적으로 동일 공간으로 판단되며, 시설 생활인이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실은 필요 없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무실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86점이었으며, 우수(4) 33개소(89.19%), 양호(3) 3개소(8.11%), 보통(2) 1개소(2.70%)의 시설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Ⅱ-3-1-10> 참조).

<표Ⅱ-3-1-10> 의무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의무실	9)의무실은 적절한가?	33 (89.19)	3 (8.11)	1 (2.70)	-	3.86(0.42)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10) 도서실과 오락실

부랑인복지시설의 도서실 및 오락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지표에서 의미하는 오락용구란 탁구, 당구, 장기, 바둑, 노래방 기기 등이다. 본 지표에 대해 부랑인복지시설들은 우수(4), 양호(3), 보통(2)에 대해 각각 33개소(89.19%), 3개소(8.11%), 1개소(2.70%)의 시설 분포를 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4점 만점에 3.86점의 수준이었다(<표Ⅱ-3-1-11> 참조).

<표Ⅱ-3-1-11> 도서실 및 오락실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도서실 및 오락실	10)도서실과 오락실은 적절한가?	33 (89.19)	3 (8.11)	1 (2.70)	-	3.86(0.42)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11) 체육공간

부랑인복지시설에 갖추어진 충분한 운동공간 및 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운동공간이란 운동시설이 갖추어지고 운동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운동기구(헬스기구,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등을 3종 이상 비치해야 하며, 3종 미만이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는 부족한 경우로 판단하였다. 평균 3.84점을 받은 가운데 우수(4) 32개소(86.49%), 양호(3) 4개소(10.81%), 보통(2) 1개소(2.70%)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었다(<표Ⅱ-3-1-12> 참조).

<표Ⅱ-3-1-12> 체육공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체육공간	11)체육공간은 적절한가?	32 (86.49)	4 (10.81)	1 (2.70)	-	3.84(0.44)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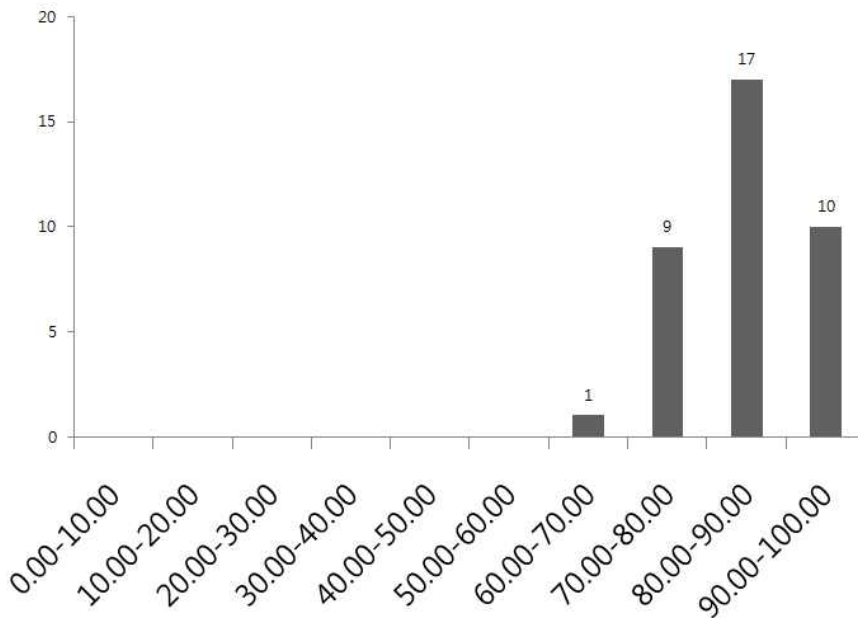
2. 재정 및 조직운영(B)

부랑인복지시설은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에서 평균 86.22점을 받았는데, 이는 총 15점의 영역 만점으로 볼 때 12.93점의 수준이었다(<표Ⅱ-3-2-1> 참조).

<표Ⅱ-3-2-1> 재정 및 조직운영(B)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	67.50 (10.13)	100.00 (15.00)	86.22 (12.93)	7.85 (1.18)

<그림Ⅱ-3-2-1>은 부랑인복지시설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분포이다.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한 구간은 총 17개소의 80.00점 이상~90.00점미만이었다.



<그림Ⅱ-3-2-1>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 점수 분포

1) 재정관리: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본 지표의 평가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으로 한정하였다. 단, 개인 시설인 경우는 개인 출연금(보증금 제외)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였다. 부랑인복지시설들은 4점 만점에 평균 2.68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법인 전입금은 평균 247,143천원, 보조금 결산액은 평균 4,657,112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평균 1,033,950천원, 전입금 비율은 평균 7.24%였다(<표 II-3-2-2> 참조).

<표 II-3-2-2>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재정 관리	1)운영 법인의 자부담(전 입금)이 어느 정도인가?	산출점수	1.00	4.00	2.68	1.00
	법인전입금(천원)	0	1,897,649	247,143	509,021	
	보조금(천원)	1,231,657	32,277,200	4,657,112	5,948,530	
	기능보강비(천원)	0	12,134,000	1,033,950	2,048,117	
	전입금비율(%)	0.00	107.24	7.24	18.63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37

※산출식: 운영법인의전입금 비율 = $\frac{2008\sim 2010\text{ 법인 전입금()원}}{2008\sim 2010\text{ 보조금 결산액()원} - \text{기능보강사업비()원}} \times 100$

2) 재정관리: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본 지표는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을 파악하는 정량지표이며, 2008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평가기간으로 하였다. 사업비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관 '03 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평균 2.10점이었으며, 3개년간 사업비 수입은 평균 1,430,239천원이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비율은 평균 36.65%였다(<표 II-3-2-3> 참조).

<표Ⅱ-3-2-3>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재정 관리	2)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산출점수	1.00	4.00	2.54	1.14
		사업비수입(천원)	70,856	8,543,778	1,430,239	1,822,980
		사업비비율(%)	4.31	68.72	36.65	14.43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37

※산출식: 사업비 비율 = $\frac{2008\sim 2010 \text{ 사업비()원}}{2008\sim 2010 \text{ 보조금 결산액()원} - \text{기능보강사업비()원}} \times 100$

3) 재정관리: 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본 지표는 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이다. 본 지표에서의 평가기간은 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의 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에 국한하였고,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법인(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일괄 모금하여 시설에 법인 자부담 형태로 지급한 경우는 법인의 운영 성격에 따라 법인 전입금 또는 후원금 중 한 항목에만 적용하였다. 4점 만점에서 평균 2.54점이었고,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비율에 대한 평균은 각각 190,910천원과 6.24%였다(<표Ⅱ-3-2-4> 참조).

<표Ⅱ-3-2-4> 후원금 비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재정 관리	3)시설의 후원금비율은?	산출점수	1.00	4.00	2.54	1.14
		후원금수입(천원)	20,763	962,176	190,910	194,002
		후원금비율(%)	1.03	16.61	6.24	4.19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37

※산출식: 후원금비율 = $\frac{2008\sim 2010 \text{ 후원금 수입()원}}{2008\sim 2010 \text{ 보조금 결산액()원} - \text{기능보강사업비()원}} \times 100$

4) 재정관리: 후원금품 관리

본 지표는 후원금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지표로써, 후원금의 관리와 사용처에 대한 통보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소식지, 우편발송대장 등의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평균 3.97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4)는 36개소(97.30%), 양호(3)는 1개소(2.70%)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다(<표Ⅱ-3-2-5> 참조).

<표Ⅱ-3-2-5>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재정관리	4)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36 (97.30)	1 (2.70)	-	-	3.97 (0.1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5) 재정관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예산의 집행이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우수(4) 36개소(97.30%), 양호(3) 1개소(2.70%)의 분포를 보였고, 4점 만점에 평균 3.97점이었다(<표Ⅱ-3-2-6> 참조).

<표Ⅱ-3-2-6> 예산집행의 민주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재정관리	5)예산집행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6 (97.30)	1 (2.70)	-	-	3.97 (0.1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6) 정보화에 대한 노력

본 지표에서 부랑인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홈페이지구축, 시설랜 구축, 자원봉사자와 후원자DB 및 이용자DB활용, 회계프로그램전산화 PC보유대수(직원60%이상)등으로써 파악하고자 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84점이었으며, 우수(4) 32개소(86.49%), 양호(3) 4개소(10.81%), 보통(2) 1개소(2.70%)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2-7> 참조).

<표Ⅱ-3-2-7> 시설 정보화 수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6)기관의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32 (86.49)	4 (10.81)	1 (2.70)	-	3.84(0.4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7) 목표와 계획: 시설 고유목적(사명)의 명확성

본 지표에서는 정관, 운영계획서, 중·단기 계획서, 연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시설 고유의 목적을 수립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27개소(72.97%), 3개소(8.11%), 6개소(16.22%), 1개소(2.70%)의 시설이 분포하였으며, 평균 3.51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2-8> 참조).

<표Ⅱ-3-2-8> 시설 고유목적 수립여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목표와 7)시설의 고유목적(사명)이 수립되어 계획 있는가?	27 (72.97)	3 (8.11)	6 (16.22)	1 (2.70)	3.51 (0.87)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8) 목표와 계획: 시설장의 운영계획과 비전

본 지표를 이용하여 부랑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시설 운영계획 및 비전을 평가하였다. 시설장은 A4용지 1장 분량의 시설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현장평가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 안에는 시설 운영의 기본 이념 및 철학(운영방향), 직원 인사 관리 원칙(채용, 훈련, 면직 등),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등에 대한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10~20분 정도의 시설장 면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92점을 받았으며, 우수(4), 양호(3)에 각각 34개소(91.89%), 3개소(8.11%)의 시설이 각각 분포하였다(<표Ⅱ-3-2-9> 참조).

<표Ⅱ-3-2-9> 시설장의 운영계획 및 비전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목표와 계획	8)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34 (91.89)	3 (8.11)	-	-	3.92 (0.2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9) 목표와 계획: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제 활동과 일치여부

운영계획서, 사업일지, 직능별 평가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운영 계획의 수립 정도와 실제 활동과의 일치성을 평가하였다. 운영계획서를 보고 직능별, 월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며, 구체성이 없으면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사업일지와 직능별 평가서를 비교하여 대부분(70% 이상)의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면 '우수'로 인정하였으며, 그에 미치지 못하면 '양호'에 해당하였다. 우수(4)는 32개소(86.49%), 양호(3)는 3개소(8.11%), 보통(2)은 2개소(5.41%)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으며, 4점 만점에 평균 3.81점으로 나타났다(<표Ⅱ-3-2-10> 참조).

<표Ⅱ-3-2-10>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제 활동과 일치여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목표와 계획	9)운영계획은 연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실제 활동과 일치하는가?	32(86.49)	3(8.11)	2(5.41)	-	3.81(0.5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10) 목표와 계획: 운영위원회의 활동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수준을 평가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이 중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단, 공무원은 시설장의 추천이 필요없다. 평균 3.47점을 받은 가운데 우수(4) 28개소(75.68%), 양호(3) 8개소(21.62%), 미흡(1) 1개소(2.70%)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2-11> 참조).

<표Ⅱ-3-2-11> 운영위원회의 활동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목표와 계획	10)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28 (75.68)	8 (21.62)	-	1 (2.70)	3.70 (0.6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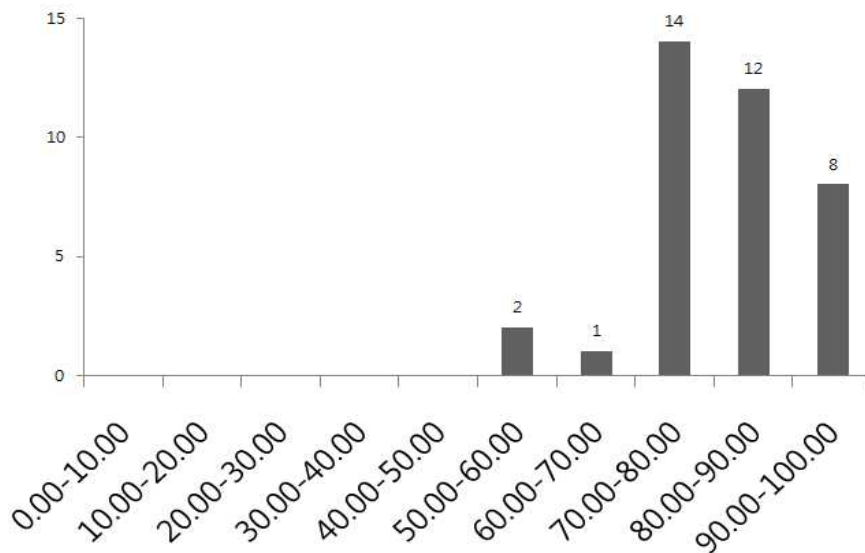
3. 인적자원관리(C)

20.00점이 배점되어 있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평균 16.31점이었다. 100점으로 표준화할 경우 81.53점으로 나타났다(<표Ⅱ-3-3-1> 참조).

<표Ⅱ-3-3-1> 인적자원관리(C)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	58.33 (11.67)	97.92 (19.58)	81.53 (16.31)	9.50 (1.90)

부랑인복지시설의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70.00점이상~80.00점미만에 가장 많은 시설(14개소)이 분포되었다(<그림Ⅱ-3-3-1> 참조).



<그림Ⅱ-3-3-1> 인적자원관리(C) 영역 점수 분포

1) 직원채용: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본 지표는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월평균확보직원수, 법정 직원수 등을 파악하여 계산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직종별 배치기준에 따른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직종별 직원명단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법정 직원수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별표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12조관련)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취득점수는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평균 1.29점이었다. 각각의 기술통계를 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 월평균확보직원수 및 현재 법정 직원수는 각각 평균 23.87명, 22.27명으로 충원율은 평균 104.14%로 나타났다(<표 II-3-3-2> 참조).

<표 II-3-3-2>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산출점수	1.00	4.00	2.78	1.29
직원 채용	1)법정직원 수 대비 직원충원율은?	월평균확보직원수(명)	9.00	118.08	23.87	20.62
		현재 법정직원수(명)	9.00	79.00	22.27	15.80
		직원충원율(%)	69.33	161.59	104.14	19.33

※ 정량지표로서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 N=37

※ 산출식: $\frac{\text{법정직원수}}{\text{대비충원율}} = \frac{2010\text{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2010\text{년 12월 31일 현재 법정 직원 수}} \times 100$

2) 직원채용: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본 지표는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자격증 사본을 확인하였고, 평가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격증의 범위는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점역교정사,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인정 자격증과, 직무 관련하여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정자격증을 인정하였고, 또한 직업재활사, 치료사(물리, 작업치료사 제외), 심리사, 사서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발급 자격증을 인정하며, 해당학부 및 대학원 전공 졸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재학생은 제외하였다. 단, 직무관련 복수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하였다.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지원 직원과 자부담 직원을 모두 포함하였다.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평균 2.54점을 받았으며, 자격증소지 직원의 평균은 19.30명, 자격증소지 비율의 평균은 83.01%였다(<표Ⅱ-3-3-3> 참조).

<표Ⅱ-3-3-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통계량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직원 2)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채용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은?	산출점수	1.00	4.00	2.54	1.14
	자격증소지 직원수(명)	8.00	85.00	19.30	15.23
	자격증소지 비율(%)	64.29	100.00	83.01	9.79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37

※산출식: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 $\frac{2010.12.31 \text{ 현재 자격증소지 직원수()명}}{2010.12.31 \text{ 월평균확보 직원수()명}} \times 100$

3) 직원채용: 직원 이(퇴)직률⁹⁾

본 지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의 총 3년 동안 직원의 이(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본 지표에서 의미하는 이(퇴)직자의 범위 중 이(퇴)직 사유가 본인의 사망, 동일 법인 내 인사 발령, 정년퇴직에 의한 것은 제외하였고, 재입사의 경우는 현직원이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에 포함하였다. 직원의 범위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

9) 직원의 이(퇴)직율은 낮을수록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전문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는데 시설장 포함 정부지원 직원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되, 1년이상 계약된 직원을 포함하였다. 본 지표의 근거서류는 해당기간(12분기) 시·군·구에 보고한 종사자 현황 자료와 해당기간(12분기) 종사자 명단(월급명세서 등 참조), 종사자관리카드 명단, 퇴사자 명단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인정하였다. 부랑인복지시설은 평균 2.46점을 받았는데, 최소점수는 1.00점, 최대점수는 4.00점으로 나타났다. 이(퇴)직 직원은 평균 5.92명, 이(퇴)직율은 평균 23.68%였다(<표Ⅱ-3-3-4> 참조).

<표Ⅱ-3-3-4> 직원 이(퇴)직률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직원 채용	3)직원의 이(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	산출점수	1.00	4.00	2.46	1.14
		이(퇴)직 직원수(명)	0.00	42.00	5.92	7.93
		이(퇴)직률(%)	0.00	93.33	23.68	22.24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37

$$\text{※산출식: 직원 이(퇴)직율} = \frac{2008.1.1 \sim 2010.12.31 \text{ 이(퇴)직 직원수()명}}{2010.12.31 \text{ 월평균 확보 직원수()명}} \times 100$$

4) 직원채용: 직원채용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관련문서, 공개 채용 광고 스크랩 또는 공개 채용시 받은 이력서철, 직원 면담, 인사규정을 근거 자료로 책정하고 있는 본 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표에서의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란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하는 자격과 능력을 채용하기 이전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채용절차 명문화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란 신문이나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채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문은 지역신문, 비록신문과 같은 정보지

도 포함하였다. 직원선발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공식면접을 하게 되면 '직원선발위원회'로 인정하는 등 폭넓게 적용하였다. 다만, 그 구성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의견의 반영이 문서화되어 있어야만 인정하였다. 한편, 평가 자료에는 인사규정을 포함하였으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직원채용이 없는 경우, '직원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를 하고 있다'와 '직원선발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확보되어 있다'를 인정하였다. 평균 3.78점이었고, 우수(4), 양호(3)에 각각 29개소(78.38%), 8개소(21.62%)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3-5> 참조).

<표Ⅱ-3-3-5> 직원채용 선발기준 및 방법의 적절성

	4)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기준과 방법은 적절한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직원채용		29 (78.38)	8 (21.62)	-	-	3.78 (0.4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5) 직원채용: 시설장의 전문성

본 지표는 시설장이 소지한 자격증과 경력의 확인을 통해 시설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지표에서 의미하는 관련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기관 및 시설을 뜻한다. 우수(4) 23개소(62.16%), 양호(3) 5개소(13.51%), 보통(2) 8개소(13.89%), 미흡(1) 1개소(2.70%)의 시설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35점이었다(<표Ⅱ-3-3-6> 참조).

<표Ⅱ-3-3-6> 시설장의 전문성

	5)시설장은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직원채용		23 (62.16)	5 (13.51)	8 (21.62)	1 (2.70)	3.35 (0.9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6) 직원채용: 사무국장의 전문성

본 지표는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총무)가 소지한 자격증, 경력 및 학력수준의 확인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평균 3.73점의 점수를 받았고, 우수(4) 28개소(75.68%), 양호(3) 8개소(21.62%), 보통(2) 1개소(2.70%)의 시설 분포를 보였다(<표Ⅱ-3-3-7> 참조).

<표Ⅱ-3-3-7> 사무국장의 전문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직원채용 6)사무국장의 전문성은 적절한가?	28 (75.68)	8 (21.62)	1 (2.70)	-	3.73 (0.51)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7) 직무분담의 적절성

본 사항은 직무분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직무분담표의 유무 및 수행여부를 확인하였다. 직무분석에 의한 직원의 직무분담표를 갖추고 있는지, 그 직무분담표에 따라 직무분담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 직무분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있다. 직무분담표는 시설의 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직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말하며, 정기적인 평가란 년1회 이상 직무분담의 적절성, 사업추진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실시 여부를 판단하였다. 우수(4)와 양호(3) 미흡(0)에 각각 30개소(81.08%), 6개소(16.22%), 1개소(2.70%)가 해당되고 있었고, 점수는 평균 3.76점이었다(<표Ⅱ-3-3-8> 참조).

<표Ⅱ-3-3-8> 직무분담의 적절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직무분담 7)직원의 직무분담은 적절한가?	30 (81.08)	6 (16.22)	-	1 (2.70)	3.76 (0.60)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8) 교육훈련: 직원의 연간 외부교육 참여시간

본 사항은 부랑인복지시설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외부교육이란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단기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협회 사이버 교육의 경우에는 수료증을 근거로 하여 1일 1시간 인정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 당 10시간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외연수 중의 기관견학은 방문기관 당 3시간 인정하였으며, 순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장기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운영법인이 2개 이상의 운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 역시 외부교육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시간 기준은 1일 교육은 8시간, 반일 교육은 4시간으로 기준을 삼았다. 본 사항에서는 1인당 최대 60시간 한도만 인정하였다. 본 지표는 상대평가방식의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는데, 이용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평균 2.62점의 점수를 받았다. 전체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537.50시간이었고,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22.03시간으로 나타났다(<표Ⅱ-3-3-9> 참조).

<표Ⅱ-3-3-9>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교육훈련	8)직원의 연간 외부교육시간은?	산출점수	1.00	4.00	2.62	0.84
		전체직원 외부교육 참여시간(시간)	23.33	4,438.00	537.50	770.85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시간)	0.63	67.41	22.03	14.78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37

※산출식: 직원 1인당 외부교육 참여시간 = $\frac{2010년\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quad)시간}{2010년\ 월평균\ 확보\ 직원수(\quad)명}$

9) 교육훈련: 교육활동비

지표에서 의미하는 교육비란 직원들의 내·외부 교육활동비 및 지원금액(교통비, 숙박비, 회비, 교재비 등)을 지칭한다. 단, 자문비는 교육비로 산정하지 않았다. 내부교육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내부분서와 강사로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직원의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한 정부지원 직원과 및 자부담 직원을 포함하였다. 부랑인 복지시설의 본 지표에 대한 결과는 4점 만점에 평균 2.54점의 점수로 나타났다. 전체직원의 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5,846,545원이었으며,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269,003원이었다(<표Ⅱ-3-3-10> 참조).

<표Ⅱ-3-3-10> 교육활동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산출점수		1.00	4.00	2.54	1.14
교육 9)직원의 연간 훈련 교육비는?	전체직원 교육비 지출액(천원)	1,078	36,499	5,847	6,589
	1인당 교육비 지출액(천원)	42	1,064	269	215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N=37

※산출식: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 $\frac{2010\text{년 전체 직원 교육비 지출액()원}}{2010\text{년 월평균 확보 직원수()명}}$

10) 근무여건: 복무규정의 마련

본 지표는 시설 내 직원을 위한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복무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써, 직원의 복무규정 유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이행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복무규정 몇 가지(휴가, 상벌 등)

를 직원에게 직접 질의함으로써 복무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97점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우수(4) 36개소(97.30%), 양호(3) 1개소(2.7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II-3-3-11> 참조).

<표 II-3-3-11> 복무규정의 마련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근무여건	10)복무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이 이를 알고 그대로 이행하는가?	36 (97.30)	1 (2.70)	-	-	3.97 (0.16)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11) 근무여건: 후생복지

본 지표는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의 마련 및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규정된 휴가란, 근로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자체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포상제도는 예를 들어 시설의 개원 20주년이 1년 이전이어서 그 기념으로 포상한 것은 비록 최근 1년 동안의 포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외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기타에는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안식년(월) 등 직원 후생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하나로 인정하였다. 한편, 직원을 위한 지정진료기관이라 함은 협약을 맺고 일정 부분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고,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31개소(83.78%), 양호(3) 6개소(16.22%)로 나타났다(<표 II-3-3-12> 참조).

<표 II-3-3-12> 후생복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근무여건	11)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31 (83.78)	6 (16.22)	-	-	3.84 (0.37)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12) 근무여건: 인사평가

본 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에서 현재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명문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목적을 지닌다. 인사평가 관련 규정은 직원들의 능력,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을 의미하며, 인사평가 결과의 반영이란 직원들의 능력,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승진, 포상, 업무 배치, 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랑인복지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우수(4) 32개소(86.49%), 양호(3) 2개소(5.41%), 보통(2) 2개소(5.41%), 미흡(0) 1개소(2.70%)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3.76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3-13> 참조).

<표Ⅱ-3-3-13> 인사평가

	12)시설은 인사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근무여건	12)시설은 인사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2 (86.49)	2 (5.41)	2 (5.41)	1 (2.70)	3.76 (0.6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4. 프로그램 및 서비스(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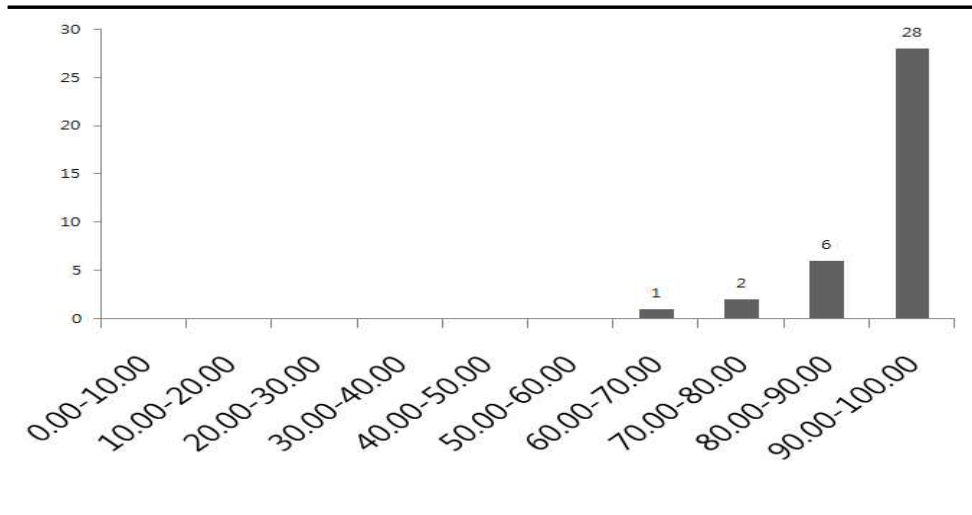
부랑인복지시설들은 38.00점 만점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에서 평균 35.43점을 받았다. 이 점수는 100점으로 표준화할 경우 평균 93.24점에 해당되는 점수이다(<표Ⅱ-3-4-1> 참조).

<표Ⅱ-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	61.36 (23.32)	100.00 (38.00)	93.24 (35.43)	8.46 (3.22)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90.00점 이상~100.00점에 가장 많은 28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분포하였고 60.00이상~70.00점미만에 1개소가 분포하였

다(<그림 II-3-4-1> 참조).



<그림 II-3-4-1>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 점수 분포

1) 기초생활서비스: 연고자 조회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생활인의 초기 입소 시 연고자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총 3.92점이었는데, 우수(4)와 양호(3), 보통(2)에 대해 각각 31개소(83.78%)와 4개소(10.81%), 2개소(5.41%)의 시설이 분포되어 있었다(<표 II-3-4-2> 참조).

<표 II-3-4-2> 연고자 조회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기초생활 서비스	1)연고자 조회는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31 (83.78)	4 (10.81)	2 (5.41)	-	3.78 (0.53)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2) 기초생활서비스: 상담

본 지표는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상담기록은 상담이 가능한 생활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토하였고, 상담이 불가능한 생활인에 한해서는 관찰기록도 상담으로 인정하였다. 평균 3.76점의 수준이었으며, 우수(4),양호(3), 보통(2)에 평균 30개소(81.08%), 5개소(13.51%), 2개소(5.41%)의 시설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 II-3-4-3> 참조).

<표 II-3-4-3> 상담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기초생활 서비스	2)상담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30 (81.08)	5 (13.51)	2 (5.41)	-	3.76 (0.5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3) 기초생활서비스: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시설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으며,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였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제외하였고, 생활인 전체의 2/3이상 참여하는 경우 1회로 인정하였다. 우수(4)와 양호(3)에 대해 각각 34개소(91.89%)와 3개소(8.11%)의 시설이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 3.78점이었다(<표 II-3-4-4> 참조).

<표 II-3-4-4> 나들이 프로그램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기초생활 서비스	3)시설 생활인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외출(나들이) 프로그램이 있는가?	34 (91.89)	3 (8.11)	-	-	3.92 (0.2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4) 기초생활서비스: 건강관리

전염성 환자(결핵환자/간염항원) 관리대장 및 식기·컵·면도기의 분리사용 등을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생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의 노력수준을 평가하였다. 결핵환자 및 간염항원 보유자 대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를 분리 수용하는지, 전염성 있는 결핵 및 간염항원 보유자의 식기, 컵, 면도기 등 분리 사용하는지 등이 주된 점검요인이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관련은 진료기록부(개인 chart)에 부착된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인정하였다. 본 지표는 4점 만점에 평균 3.81점이며 우수(4), 양호(3), 보통(2)이 각각 31개소(83.78%), 5개소(13.51%), 1개소(2.70%)의 시설이 존재하였다(<표Ⅱ-3-4-5> 참조).

<표Ⅱ-3-4-5> 건강관리의 적절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기초생활 서비스 4)생활인의 건강관리는 적절한가?	31 (83.78)	5 (13.51)	1 (2.70)	-	3.81 (0.46)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5) 전문적 재활서비스: 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본 지표에서는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원내 자활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환경은 어떠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균 3.78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4) 32개소(86.49%), 양호(3) 4개소(10.81%), 미흡(0) 1개소(2.70%)의 시설 분포를 나타냈다(<표Ⅱ-3-4-6> 참조).

<표Ⅱ-3-4-6> 원내 자활사업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우수(4)	양호(3)	보통(2)
전문적 재활서비스 5)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32 (86.49)	4 (10.81)	-	1 (2.70)	3.78 (0.71)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6) 전문적 재활서비스: 원의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본 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수준과 환경을 다루고 있다.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에 각각 28개소(75.68%), 5개소(13.51%), 1개소(2.70%), 3개소(8.11%)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고 있었으며, 4점 만점에 평균 3.49점이었다(<표Ⅱ-3-4-7> 참조).

<표Ⅱ-3-4-7> 원의 자활사업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전문적 재활서비스	6)원의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28 (75.68)	5 (13.51)	1 (2.70)	3 (8.11)	3.49 (1.15)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7) 전문적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본 사항은 부랑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전문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운영자가 전문자격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시설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받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포함시켰다. 4점 만점에 평균 3.78점이며,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30개소(81.07%), 양호(3) 6개소(16.22%), 보통(2) 1개소(2.70%)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4-8> 참조).

<표Ⅱ-3-4-8> 프로그램 다양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문적 재활서비스	7)전문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30 (81.07)	6 (16.22)	1 (2.70)	-	3.78 (0.4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8) 전문적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수행

본 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은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 시간, 회기별 진행사항, 준비물, 평가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인정하였다.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34개소(91.89%), 양호(3) 3개소(8.11%)의 시설 분포를 보인 가운데 평균 3.92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4-9> 참조).

<표Ⅱ-3-4-9> 프로그램 수행 적절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전문적 재활서비스	8)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34 (91.89)	3 (8.11)	-	-	3.92 (0.28)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9) 전문적 재활서비스: 사회복지 프로그램

부랑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이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거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을 지칭한다. 4점 만점에 평균 3.39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4), 양호(3)에 각각 23개소(62.16%), 14개소(37.84%)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었다(<표Ⅱ-3-4-10> 참조).

<표Ⅱ-3-4-10>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전문적 재활서비스	9)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존재유무 및 정도는?	23 (62.16)	14 (37.84)	-	-	3.62 (0.49)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10) 전문적 재활서비스: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부랑인복지시설의 특성화 프로그램 존재유무 및 개발을 위한 노력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특성화프로그램이란 재활 혹은 자활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외출 프로그램은 제외하였다. 우수(4), 양호(3), 보통(2)에 32개소(86.49%), 4개소(10.81%), 1개소(2.70%)의 시설이 각각 분포하였으며, 평균 3.84점의 점수를 취득하였다(<표 II-3-4-11> 참조).

<표 II-3-4-11> 특성화 프로그램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전문적 재활서비스 10)시설 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유무 및 노력의 적절성은?	32 (86.49)	4 (10.81)	1 (2.70)	-	3.84 (0.44)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11) 전문적 재활서비스: 사례검토회의

본 사항에서는 사례검토회의의 개최여부와 횟수를 다루고 있다. 사례검토회의는 특정 시설 생활인의 사정 및 개입방법의 결정을 위한 내부 혹은 외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 또는 회의를 의미한다. 주례 또는 월례 직원회의 시 단순히 특정 시설 생활인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는 사례검토회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4점 만점에 평균 3.39점의 점수를 받았고, 각 배점 등급에 따라서는 우수(4) 25개소(67.57%), 양호(3) 5개소(13.51%), 보통(2) 4개소(10.81%), 미흡(0) 3개소(8.11%)의 분포양상을 보였으며, 4점 만점에 평균 3.32점의 수준이었다(<표 II-3-4-12> 참조).

<표 II-3-4-12> 사례검토회의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전문적 재활서비스 11)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는가?	25 (67.57)	5 (13.51)	4 (10.81)	3 (8.11)	3.32 (1.2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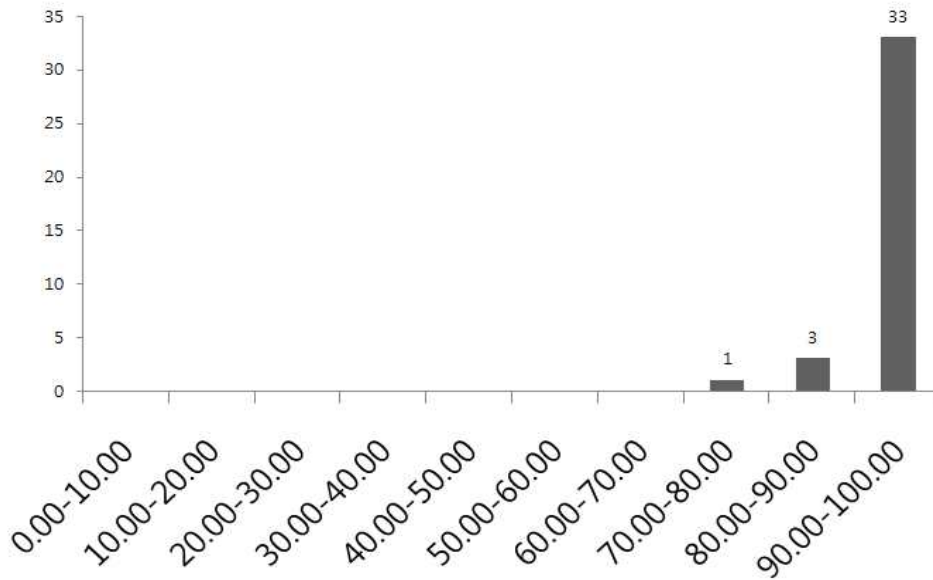
5. 생활인의 권리(E)

‘생활인의 권리(E)’는 금번 평가에서 신설된 영역으로써 9.00점 배점으로 구성되었다. 부랑인복지시설들은 평균 8.74점을 받았는데, 이는 100점 기준으로 97.07점이다(<표Ⅱ-3-5-1> 참조).

<표Ⅱ-3-5-1> 생활인의 권리(E)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	75.00 (6.75)	100.00 (9.00)	97.07 (8.74)	5.40 (0.49)

‘생활인의 권리(E)’ 영역에서는 90.00점이상~100.00점 구간에 가장 많은 시설이 해당되고 있었는데, 총 33개의 시설이 분포하였다(<그림Ⅱ-3-5-1> 참조).



<그림Ⅱ-3-5-1> 생활인의 권리(E) 영역 점수 분포

1) 기본권

본 평가지표는 시설이 제작·배포하고 있는 안내서를 통하여 생활인이 시설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나,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이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따라서 실제의 운영 내용과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는 안내서는 감점 처리하였다. 안내서의 내용에는 시설의 설립목적, 시설의 위치, 입소대상, 시설의 현황(직원, 거주자, 시설물 등), 운영목표, 운영방침, 서비스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인정하였다. 안내서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실제 운영상의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우수의 기준으로는 1년간 시간 계열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정표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안내서 및 연간 운영계획서가 제작되어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전년도 기관평가 보고서의 경우 별도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평가서도 인정하였다. 부랑인복지시설들은 4점 만점에서 평균 3.81점을 받았고, 우수(4) 32개소(86.49%), 양호(3) 3개소(8.11%), 보통(2) 2개소(5.41%)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Ⅱ-3-5-2> 참조).

<표Ⅱ-3-5-2> 시설 홍보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1)시설의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안내서(시설의 운영계획서,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등)가 준비되어 있는가?	32 (86.49)	3 (8.11)	2 (5.41)	-	3.81 (0.52)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2) 기본권: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입·퇴소 동의서 및 의뢰서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시설 생활인의 권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예로써는 ①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②직원이나 다른 시설 생활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③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④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의료, 상담,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⑤작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⑥시설의 운영에 대해 시설 생활인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⑦가족, 친구, 지역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⑧투표권 등 일반인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등이 있다. 각 배점 등급별로 보면, 우수(4) 37개소(100.00%)의 분포를 나타냈고, 취득점수는 평균 4.00점이었다(<표Ⅱ-3-5-3> 참조).

<표Ⅱ-3-5-3>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기본권 2)시설이용을 시작하기 전입소 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인 및 보호자에게 생활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37 (100.00)	-	-	-	4.00(0.0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3) 기본권: 인권의 존중

본 평가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인권 규정이 시설의 명문화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4점 만점에 평균 3.89점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우수(4)에 33개소(89.19%), 양호(3)에 4개소(10.81%)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다(<표Ⅱ-3-5-4> 참조).

<표 II-3-5-4> 생활인 인권보장 노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기본권 3)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시설의 기본문서 및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가?	33 (89.19)	4 (10.81)	-	-	3.89 (0.31)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4) 기본권: 생활인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및 본인 기록 접근성

시설 내 생활인의 개인정보 비밀보장 수준과 본인 기록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지표에서 언급되는 사항들은 규정이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하였으며, 개인정보나 기록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수(4) 35개소(94.59%), 양호(3) 2개소(5.41%)의 시설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95점의 점수를 받았다(<표 II-3-5-5> 참조).

<표 II-3-5-5> 생활인 개인정보 비밀보장 및 접근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기본권 4)생활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며, 본인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35 (94.59)	2 (5.41)	-	-	3.95 (0.23)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5) 기본권: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여부

본 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마련된 고충처리 절차 및 처리 결과의 전달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4점 만점에 평균 3.70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에 각각 30개소(81.08%), 4개소(10.81%), 2개소(5.41%), 1개소(2.70%)의 시설이 분포하였다(<표 II-3-5-6> 참조).

<표Ⅱ-3-5-6> 고충처리 절차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5)생활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기본권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리 결과는 전달되고 있는가?	30 (81.08)	4 (10.81)	2 (5.41)	1 (2.70)	3.70 (0.70)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6)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보장

본 지표를 통해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화적 활동에서는 TV 및 신문의 자유로운 이용, 영화감상, 독서, 취미생활 선택 등에 있어 자유보장 정도를 확인하였다.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지적장애, 발달장애, 중증장애인일지라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활동의 지원은 종교 활동에 자유참가보장 지원, 타종교 활동을 위한 지원, 케이블TV 지원, 지역사회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지원, 부채자 투표 지원, 투표소 유치, 모의투표 실시 등을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통해 검토하였다. 우수(4) 및 양호(3)에 각각 35개소(94.59%)와 2개소(5.41%)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3.95점이었다(<표Ⅱ-3-5-7> 참조).

<표Ⅱ-3-5-7> 자기결정권 보장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자기결정권 6)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35 (94.59)	2 (5.41)	-	-	3.95 (0.23)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7) 자기결정권: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 인정

이 평가지표는 생활인이 자율적으로 금전의 소유 및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시설의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이며, 금전을 스스로 관리

할 능력이 부족한 생활인들에 한해 통장은 직원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도장은 생활인 본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생활인들에게 통장에 얼마나 저금되어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상태가 자율적 소유와 관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86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각 배점 등급별로는 우수(4) 33개소(89.19%), 양호(3) 3개소(8.11%), 보통(2) 1개소(2.70%)의 분포를 보였다(<표Ⅱ-3-5-8> 참조).

<표Ⅱ-3-5-8> 금전소유 및 관리 인정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7)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33 (89.19)	3 (8.11)	1 (2.70)	-	3.86 (0.42)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8) 개별성: 의복의 적절성과 개별성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의 의복의 적절성과 개별성을 파악하고 시설이 이와 관련한 노력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로써, 이 항목은 결과에 초점을 두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은 현장관찰을 통해 평가하며, 개별취향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우수로 평가하였다. 우수(4) 34개소(91.89%), 양호(3) 3개소(8.11%)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4점 만점에 평균 3.92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5-9> 참조).

<표Ⅱ-3-5-9> 생활인 의복의 적절성 및 개별성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개별성 8)생활인의 의복은 적절하며, 개별취향이 고려되었는가?	34 (91.89)	3 (8.11)	-	-	3.92 (0.28)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9) 개별성: 생활인 욕구조사 및 음식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생활인을 대상으로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식단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에 활용한 설문지, 조사표, 게시물 등 기호조사 및 식습관조사 근거가 있어야 인정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69점이었고, 우수(4), 양호(3), 보통(2)에 33개소(89.19%), 3개소(8.11%), 1개소(2.70%)가 각각 해당되었다(<표 II-3-5-10> 참조).

<표 II-3-5-10> 생활인 욕구 및 음식 기호조사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9)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식단에 반영하는가?	33 (89.19)	3 (8.11)	1 (2.70)	-	3.86 (0.42)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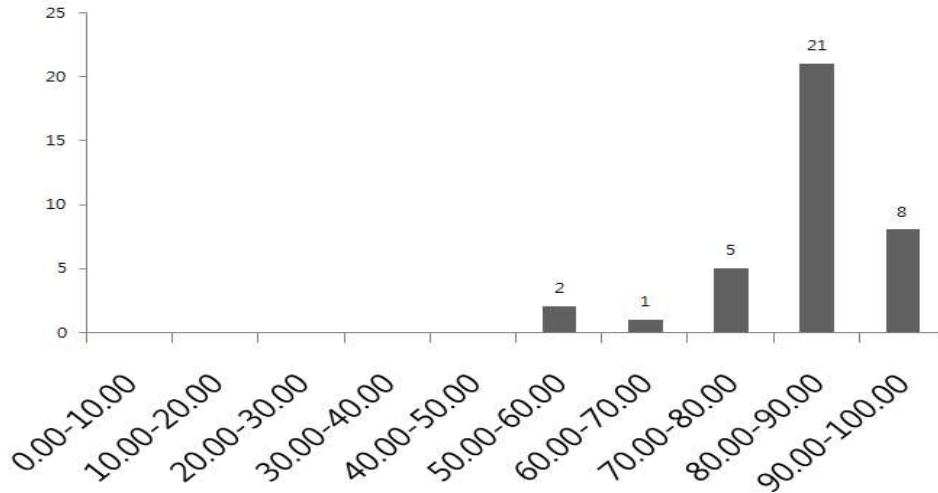
6. 지역사회관계(F)

부랑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관계(F)'는 8.00점 만점이며 평균 6.74점이었다. 이는 100점으로 표준화할 경우 84.28점에 해당된다(<표 II-3-6-1> 참조).

<표 II-3-6-1> 지역사회관계(F) 평가결과 점수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국	37	59.17 (4.73)	96.67 (7.73)	84.28 (6.74)	9.17 (0.73)

부랑인복지시설들의 '지역사회관계(F)'는 50.00점 이상~60.00점 미만에 2개소, 60.00점 이상~70.00점 미만에 1개소, 70.00점 이상~80.00점 미만에 5개소, 80.00점 이상~90.00점 미만에 가장 많은 21개소, 90.00점 이상~100.00점 미만에 8개소의 시설이 분포하였다(<그림 II-3-6-1> 참조).



<그림 II-3-6-1> 지역사회관계(F) 영역 점수 분포

1)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의 인원과 시간

본 지표는 시설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수와 시간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자원봉사자는 국가공공기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중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1개 시스템을 선택하여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등록된 DB만을 평가근거로 하였다. 2010년 1년 동안 자원봉사자 실인원은 평균 1,198.08명이었고,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는 평균 58.91명이었다. 또한, 1년간 자원봉사자들의 총 봉사시간은 평균 7,645.46시간으로 나타났다. 본 지표에서 부랑인복지시설들은 평균 2.66점이었다(<표 II-3-6-2> 참조).

<표Ⅱ-3-6-2> 자원봉사자의 실인원 및 시간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자원봉사	1)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은?	산출점수	1.00	4.00	2.54	0.90
		봉사자실인원(명)	15.00	13,077.00	1,198.08	2260.63
		직원 1인당 봉사자수(명)	0.13	139.06	58.91	51.33
		총봉사시간(시간)	496.00	38,428	7645.46	11,091.63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산출점수(100%) = '직원 1인당 자원봉사자의 수'의 점수(50%) + '총 자원봉사시간'의 점수(50%)
 ※N=37

※산출식: 자원봉사자 실인원 = $\frac{2010.1.1 \sim 2010.12.31 \text{ 총 자원봉사 실인원수()명}}{2010.12.31 \text{ 월 평균 확보 직원수()명}}$

2) 외부자원개발

본 지표는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건수 및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지표로써, 2008년~2010년의 3개년을 평가기간으로 전제하였다. 2008년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함), 선정결과 통보서, 지원서 등 관련문서로 판단한다. 부랑인복지시설 최소기준 표준(안) 3.18에 의하여 민간자원은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민간재원을 의미하고, 정부자원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자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결산액은 세입·세출 결산서 상의 보조금 수입을 의미하며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기능보강, 장비보강을 의미한다.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총액으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배점은 내용1 60%, 내용2 20%, 내용3 20%이다. 평균 2.34점의 점수를 받았고, 외부 민간자원금액 및 비율은 각각 평균 32,815,865원과 평균 1.20%이고, 정부자원 금액 및 비율은 각각 평균 66,010,265원과 평균 2.63%였다 프로포절체결건수 및 직원 1인당 프로포절체결건수는 각각 5.27회, 0.28회이다(<표Ⅱ-3-6-3> 참조).

<표 II-3-6-3> 외부자원개발

	통계량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산출점수	1.00	4.00	2.34	0.81
외부민간자원금 (천원)	0	121,670	32,816	31,798
외부민간자원금 (비율)	0.00	5.32	1.20	1.30
정부자원금(천원)	0	1,621,502	66,010	271,448
정부자원금(비율)	0.00	65.94	2.63	11.06
프로포절 체결건수	0.00	25.00	5.27	4.87
직원1인당프로포 절체결건수	0.00	1.50	0.28	0.29

※ 정량지표로써 최소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배점되었으며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됨.

※ N=37

$$\text{※ 산출식: 민간자원비율} = \frac{2008\text{년}\sim 2010\text{년 민간자원금 총액}}{2008\text{년}\sim 2010\text{년 보조금결산액} - \text{보조금 내 기능보강사업비}} \times 100$$

$$\text{정부자원비율} = \frac{2008\text{년}\sim 2010\text{년 정부자원금 총액}}{2008\text{년}\sim 2010\text{년 보조금결산액} - \text{보조금 내 기능보강사업비}} \times 100$$

$$\text{체결건수비율} = \frac{2008\text{년} \sim 2010\text{년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2010\text{년 월 평균 확보 직원 수}} \times 100$$

3)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교육

본 지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봉사자에 대한 교육의 확인 개별 자원봉사카드의 기록, 사진, 평가서 등을 근거로 하였다. 평균 3.64점의 점수를 받았고, 우수(4) 33개소(89.19%), 양호(3) 3개소(8.11%), 보통(2) 1개소(2.70%)의 분포로 보였다(<표 II-3-6-4> 참조).

<표Ⅱ-3-6-4> 자원봉사자 교육

	3)자원봉사자 교육은 적절하게 실시하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0)	
자원봉사		33 (89.19)	3 (8.11)	1 (2.70)	-	3.86 (0.42)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4) 자원봉사: 자원봉사 개발 및 관리

본 지표는 시설에서 자원봉사자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에서 의미하는 격려지원활동은 감사편지, 포상, 자원봉사자의 밤 등을 뜻한다. 우수(4) 34개소(91.89%), 양호(3) 1개소(2.70%), 보통(2) 1개소(2.70%), 미흡(1) 1개소(2.70%)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고 있었고, 평균 3.84점이었다(<표Ⅱ-3-6-5> 참조).

<표Ⅱ-3-6-5> 자원봉사 개발 및 관리

	4)자원봉사자를 개발 및 관리하고 있는가?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자원봉사		34 (91.89)	1 (2.70)	1 (2.70)	1 (2.70)	3.84 (0.60)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N=37

5) 지역사회와의 교류

본 평가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지표에서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행사는 시설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걷기대회, 일일찾집, 바자회 등을 의미한다. 또한, 생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행사는 대민봉사 및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음악회, 걷기대회, 축제 등을 뜻한다. 한편, 지역사회시설(헬스클럽, 사회체육센터, 사설학원 등) 이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시설 연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랑인복지시설들은 본 지표에서 4점 만점에 평균 3.86점을 받았고, 우수(4), 양호(3)에 각각 32개소(86.49%), 5개소(13.51%)의 시설이 각각 분포되었다(<표Ⅱ-3-6-6> 참조).

<표Ⅱ-3-6-6>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지역사회와의 교류	5)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32 (86.49)	5 (13.51)	-	-	3.86 (0.35)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6) 지역사회 홍보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물(리플렛) 등을 통해 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노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정기적인 소식지는 연 2회 이상 발간되는 것을 의미하며, 시설 홈페이지는 시설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개발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리플렛) 등이 구비되어 있을 때 인정하였으며, 최근의 시설 소식을 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였다. 우수(4), 양호(3), 보통(2)에 31개소(83.78%), 4개소(10.81%), 2개소(5.41%)의 시설이 각각 해당되었고, 4점 만점에 평균 3.78점의 점수를 받았다(<표Ⅱ-3-6-7> 참조).

<표Ⅱ-3-6-7> 지역사회 홍보

		등급별 해당시설분포(개소(%))				평균 (표준편차)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지역사회 홍보	6)지역사회에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가?	31 (83.78)	4 (10.81)	2 (5.41)	-	3.78 (0.53)

※ 등급별 해당시설분포는 4점 단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 N=37

III.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결론 및 제언

제 1 절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의미와 평가지표의 방향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햇수로는 11년째이며, 3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주기에 따라 2011년의 평가는 제 5회 평가에 해당된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많은 긍정적이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시설들 간의 편차는 많이 줄어들었고,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지체된 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은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복지시설로서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보다 나은 서비스 질 경쟁을 위해서는 평가인증 수준에 도달한 시설들 간의 변별력을 지니는 지표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된다.

2011년 부랑인복지시설평가의 방향은 최소기준 충족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가능하다면, 2008년의 평가지표를 수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한 방향을 잡은 이유는 이번 평가가 부랑인복지시설평가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6월부터는 부랑인 서비스영역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므로, 새로운 법에 따라서 기본 조건들이 변화될 예정이다. 예컨대 부랑인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 법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며, 서비스 대상자를 '노숙인'으로 규정하고 '부랑인'이라는 명칭을 폐기하였다. 그러므로 새 법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들은 노숙인시설로 변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명칭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숙인 서비스와 부랑인 서비스는 통합 일원화되어 단일한

원칙과 체계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그 외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예정이지만, 본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부랑인 시설 평가'가 아니라 '노숙인 시설 평가'가 되어야 하고, 기존의 다수 노숙인 쉼터와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등이 본 평가 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지표에 대한 많은 수정과 변화가 예상된다. 노숙인 서비스 체계와 방향에 따라 서비스를 선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의 평가는 '부랑인복지시설'평가로서는 마지막이므로, 새로운 개선과 체계정립보다는 기존의 평가를 마무리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이전 평가지표를 가능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회기 평가와 비교하여 개선의 정도를 확인하는데 최대의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총괄평가위원회가 요구하는 공통지표에 관련된 사항과, 명확하게 확인되는 개선되어야 할 지표에 대한 미시적인 수정에 한정하여 지표에 대한 변화를 주었다. 변화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평가항목을 다소 간소화 하였다. 2008년의 평가지표는 총 66개로 구성되었으나, 금번 평가지표는 최종적인 수정과정에서 59개로 조정되었다.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를 세련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시설환경(A)영역은 2008년의 평가지표에서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금번 평가지표에서도 동일하게 구성하여 변화가 없었다.

재정·조직운영(B)영역은 약간의 미시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평가항목의 개수는 11개 평가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조정되었다. 두 개의 평가항목이 삭제되고 한 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2008년의 평가지표에서 B4 직원1인당 법인자부담 항목과 B7 법인카드 사용 실태 항목은 삭제되었다. B4

는 공통항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B7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목적의 평가항목이었는데, B5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으로 통합하여 지표를 간소화하였다. 새로 추가된 평가항목은 '기관의 정보화(B6)' 관련 사항인데, 기존의 D(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에 속하였던 항목을 B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체크해야할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인적자원관리(C)영역도 미시적인 조정이 있었는데, 평가항목의 개수는 1개 줄어들어 13개 항목에서 12개 평가항목으로 조정되었다. 2008년의 C8 직원 자체교육(내부교육) 항목은 삭제되었는데, 2011년 평가항목의 C9 '직원의 연간교육비'에서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 간소화하였다. 그 외 평가항목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시설장의 전문성과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항목 등에서 미시적인 체크 항목들이 변화되었다.

프로그램과 서비스(D)영역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다. 본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평가항목을 압축하여 간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영역의 평가항목을 압축하고 축소하여 간소한 이유는 새로운 법 적용에 따라 새로운 평가항목이 개발되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평가항목은 최대한 축소하고,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법체계에서 강조되었던 연고자조회의 문제라든지, 외출 외박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간소화하기로 하였고, 관련 평가항목들이 삭제되거나 통합되었다. 입소자 초기 조회(D1)와 생활인의 연고자 조회(D3)로 나뉘어 있던 평가항목을 하나의 항목(D1)으로 통합하였다. D4 외출·외박자 수와 D5 외출·외박의 빈도로 나뉘어 있던 항목을 삭제하고, D6 나들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조정 통합하였다. D7 간식항목은 삭제하였고, D8 치아관리와 D9건강관리는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D17시설정보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조직운영(B)영역으로 수정하여 이동

하였으므로 D영역에서는 삭제되었다. 이상의 변화에 따라 2008년에 17개 평가항목이 2011년에는 11개 항목으로 축소 통합되어 평가지표가 간소화되었다.

이용자권리(E)영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평가항목의 개수도 2008년의 9개로 동일하다. E9 음식기호조사 항목을 이용자의 '욕구조사'를 포함하도록 평가 범주를 확대하는 미시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관계(F) 영역도 미시적인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영역과 달리 유일하게 평가항목이 증가한 분야이다. 2008년의 5개 항목에서 2011년에는 6개 평가항목으로 1개 증가되었다. 증가된 이유는 '외부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항목이 공통평가항목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2008년의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이상의 변화에 따라 총점 100점을 구성하는 영역별 가중치도 수정되었는데, 시설환경(A)영역은 10점, 재정·조직운영(B) 영역은 15점,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20점, 프로그램·서비스(D) 영역은 38점, 이용자권리(E) 영역은 9점,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8점으로 조정되었다.

제 2 절 평가 과정

2011년 시설평가는 3월에 시설평가단을 구성하고, 3월 23일에 연구진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평가대상시설은 총 411개소이며, 부랑인복지시설 37개소를 포함하여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사회복지시설 163개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15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타 시설과 동일하게 공통지표를 적용받게 되어있으므로, 전체 평가단의 평가목표와 평가방향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전체 평가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총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데, 평가과정에서 세 차례 개최되었다. 4월 6일 제 1차 총괄위원회에서는 평가의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6월 10일 제 2차 총괄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논의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마지막 총괄위원회는 11월 15일 개최되었는데, 6월과 7월에 실시된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시설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모임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부랑인복지시설 분과위원회는 시설 중간관리자 3인,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1인, 관련 공무원 2인(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연구진 1인 총 7인으로 구성되었다. 분과위원회는 총 네 차례 개최되었는데, 4월 22일, 5월 2일, 5월 19일, 그리고 5월 30일에 진행되었다. 4월과 5월에 집중된 이유는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에 분과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고, 가능한 한 빨리 논의결론을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여름휴가기간 이전인 7월에 현장평가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분과위원회를 종결한 이후,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포커스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포커스그룹은 지역별, 규모별 시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연합회의 추천과 시설의 자원 등을 통하여 참여한 인원은 총 15명에 달하였다. 5월 19일에 포커스그룹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일날 포커스그룹회의에 이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분과위원회와 포커스그룹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지표의 미시적인 수정사항들이었다. 특히 연고자 조회를 간소화하는 문제, 외출 외박에 대한 평가 문제, 간식제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현실에 맞게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표개선이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회의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의 자격조건을 더 엄밀한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평가기준에 넣기로 합의하였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기준을 포함한 이유

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보편적인 전문성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자격증을 시설장의 전문성 기준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는 중론에 따른 결과였다.

네 차례의 분과위원회의와 한 차례의 포커스그룹회의에 의해 수정된 2011년 부랑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37개 부랑인복지시설 전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5월 10일에 개최하여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청회에서는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항목들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논의들이 시설에서 자체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미시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논쟁점들은 정성적인 평가항목들이었는데,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질적 요소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랑인복지시설 평가단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 현장평가위원들을 교육할 때 주의 깊게 설명하기로 하였다.

공청회를 거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평가가 실시되었는데, 6월 7일 늘푸른자활의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평가에서 세부적인 평가 지침들이 좀 더 다듬어 졌고, 최종적인 평가지표(안)이 6월 10일 총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확정된 2011년 부랑인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회가 6월 15일 개최되었고, 개별시설들은 6월 말까지 자체평가를 하였다.

7월 한 달은 현장평가기간으로 설정되었다. 현장평가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평가 주체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3기 평가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현장평가위원의 자질과 평가자세의 문제, 현장 평가팀 간의 평가기준 편차의 문제는 이번 평가에서도 극복하지 못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현장평가위원 교육은 6월 27일 실시되었다. 모든 현장 평가위원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만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평가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준수되지 못하였다. 일부 현장평가위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교체됨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현장평가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현장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발견되었다. 또 일부 현장평가팀은 현장평가에서 지켜야할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현장 방문 일정 사전 고지의 원칙, 1일 1시설 평가원칙 등이 준수되지 못하였거나, 여러 종류의 시설을 한 위원이 동시에 평가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평가지표에 대한 혼돈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복지시설평가단이 현장평가 이후 확인평가를 위해, 평가결과를 검토하면서 발견되었다.

현장평가단에 대한 피평가자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정지역이 체계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 받았고(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 그 지역의 현장평가단의 일부위원은 현장평가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지역의 일부 시설에서 평가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는데, 현장평가위원이 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강하게 표출하였거나,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평가태도가 극단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부시설들에 대해 평가본부에서 확인평가를 함으로서 현장평가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였지만, 시설평가의 객관성과 평가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평가단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또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확인 평가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시설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현저하게 특이한 평가결과가 나타난 시설을 포함하여, 3개 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제 3 절 평가결과 요약 및 통계적 의미

2011년에 실시된 제 5회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전국시설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9.85점으로 집계되었다. 2008년의 제 4회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5.8점이 상승한 수치이다. 평가지표의 측면에서 전회기의 지표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3년간의 시설 서비스 변화양상을 포착하는데 주안점을 둔 지표방향이 적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평가결과 수치의 변화는 부랑인복지시설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이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향상이 있었고, 특히 전회기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D)에서 나타났다. 영역별로 구체적인 점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A)은 2008년 92.99에서 2011년 96.99점으로 4.00점 상승하였고,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은 78.20에서 86.22점으로 약 8.02점 상승하였다.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74.58에서 81.53으로 6.95점 상승하였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D)은 85.04에서 93.24점으로 8.20점 상승하였다. 이용자권리(E) 영역은 92.44에서 97.07로 4.63점 상승하였다.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영역별 평가결과에서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한 분야였다. 2008년에 86.63점에서 2011년 5회 평가에서는 84.28점으로 2.35점 하락하였다.

영역별 평균점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몇 개 영역에서는 더 이상의 개선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다. 시설환경영역은 평균 96.99점으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1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곧 시설환경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90점대에 도달한 분야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이었다.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이 평균적으로 90점대에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부랑인복지서비스가 이제 낙후된 분야를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해석하여도 서비스의 최소수준 이상은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지속적인 시설평가 정책이 가져다준 매우 긍정적 효과 중의 하나라고 자평하여도 될 만하다. 다만 보다 양질의 수준까지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수 평가 기준과 항목을 더 개발하고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시설평가사업단에게 주어진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영역별 평균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이용자 권리 영역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엄격하여야 한다. 2008년에 92.44점이었고, 금번 평가에서는 97.07점을 획득하였다.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이는 평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설정한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용자 권리 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8년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로 삼입하여야 했고, 준비부족과 시설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해당평가항목의 점수 부여 기준을 상당히 완화한 형태로 평가지표에 포함된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회기의 평가에서는, 즉 이번 평가에서는 좀 더 엄격한 점수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되었다. 그런데 앞의 평가지표 방향설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지막 부랑인복지시설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회기의 평가지표를 가급적 수정하지 않는다는 평가방향에 따라, 이용자권리영역에서도 점수 부여 기준에 대해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점수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랑인복지시설의 이용자권리 영역의 서비스 수준이 97점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다만 3년 전보다 향상되었다는 정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차기 평가 때 좀 더 강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 수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역별 평균점수에서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한 영역이 지역사회관계 영역

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역의 수준이 3년 전보다 하락하였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앞의 지표내용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자원개발노력'이라는 평가항목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이 항목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전의 영역평가항목이 총 5개 항목이었는데, 5개에서 1개 항목이 증가한 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 지표로서, 타복지시설과 비교되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평균점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관계영역의 평균점수 하락에 대해 부랑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부랑인 복지시설의 가장 취약한 영역이었던,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과 인적자원관리영역이 80점대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 영역들은 조직운영의 토대를 구성하는 영역으로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단기간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생산의 기초가 발전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장기적인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조직과 인적환경의 정비는, 단기간의 환경변화로 서비스퇴보가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직적 역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향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에는 개별 시설들의 노력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품리관리단의 노력과 품질관리단의 지원을 받은 시설들의 향상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2008년 부랑인복지시설평가결과 평가점수가 좋지 않거나, 서비스 체계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품질관리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다. 당시 품질관리단의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이 3개소였지만, 1개 시설은 품질관리서비스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2개의 시설이 1년간의 품

질관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품질관리 서비스를 받은 두 시설의 2008년 당시 평가점수의 평균점은 67.96점이었는데, 2011년 평가에서는 두 시설의 평점이 모두 괄목상대하게 증가하여 평균 91.19점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에서 약 23점 이상의 놀라운 점수 상승을 보여주었다. 부랑인복지시설 전체의 평균점수 상승이 5.8점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품질관리 서비스의 시설개선 효과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제 4 절 정책 제언

이번 제5차 부랑인복지시설의 평가를 마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향후 시설평가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와 평가제도, 그리고 평가결과의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지표의 측면으로 변화된 법체계에 따른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3년 후인 2014년 시설평가에서는 '노숙인복지시설 평가'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복지시설로 전환될 것이며, 현재 평가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숙인 쉼터 등이 복지시설평가체계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평가 대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 적용 등에 의해 평가의 목적과 방향이 재설정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가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변화된 체계에 걸맞은 과감한 지표개선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평가제도의 측면으로 평가조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평가결과를 논의하는 지면에서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평가조직의 안정성 확보의 문제이다. 소위 '사회복지시설평가원' 등 안정적 조직의 구축과 평가인력의 양성 등 평가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채택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부랑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최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최소기준 이상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로 변화되거나, 인증평가와 수준평가로 양분되어 평가의 질적 고도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이러한 평가단계에서는 평가지표의 엄밀성과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평가인력의 전문화와 객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장평가단의 자질과 균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며, 또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도 제한을 받게 된다.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인정과 권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를 어떻게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평가체제에서 현장평가단의 비균질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번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장평가요원을 양성하고 균질적인 평가요원들이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직적 정비가 필요하다. 안정된 평가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근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고 다른 분과에서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셋째, 평가결과 활용의 측면으로 인센티브 제공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제약의 문제와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평가결과 낙후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근거에 기초하여 더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낙후된 시설을 지원하는 품질관리단 서비스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해가 올해이다.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이후 3년이 경과하여, 첫 번째 시설평가를 받는 해이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받은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품질관리단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품질관리단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므로, 좀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낙후된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I)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부랑인복지시설-

2011년 12월 인쇄

2011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우편번호	121-020
전화	02)2077-3977 ~ 9
팩스	02)3273-0996

※사전승인없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

I

